

2001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 개혁위원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안문석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2. 2. 26)



안문석 공동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2)



김일섭 경제1분과위원장이 경제1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0)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들 (2002. 4. 10)



이계민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1)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사회분과위원들 (2002. 4. 11)



경제2분과위원회 성낙오 위원이 경제2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26)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2분과위원회 위원들 (2002. 4. 26)

발 간 사



WTO 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통합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규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규제개혁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과정이 보다 현장 지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시일 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룩한 제도적 성과에 더하여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새로이 준비하고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으며, 국내외 기업인들 사이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에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관행과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규제개혁이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국 무 총 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이 한 동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리경제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 내지 개혁하였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양산을 막아 왔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의 규제혁파 작업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원칙하에 하향식 규제개혁이 대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도 규제개혁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현장성을 강화한 상향식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규제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계민 행정사회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고 이 백서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 규제개혁조정관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규 제 개 혁 위 원 회
공 동 위 원 장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 25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 27

1. 우리 정부규제의 특징 · 27
2. 규제개혁의 필요성 · 28
3. 규제정비원칙 · 29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 31

1. 규제개혁 추진체계 · 31
 - 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 31
 - 나. 추진기구 · 31
2. 규제개혁위원회 · 33
 - 가. 구성 및 기능 · 33
 - 나. 회의운영 · 34
 - 다. 심사절차 · 35
3. 분과위원회 · 36
 - 가. 구성 및 기능 · 36
 - 나. 회의운영 · 38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39
 -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39
 -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40

- 기고문 /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하며 · 42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 · 44
-

제2장) 국민의 정부 4년 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 49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 51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 57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58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62

제4절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63

제5절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 65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 · 공표 · 67

1. 추진개요 · 67
2. 등록대상 규제사무 · 68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 68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75

1.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 75
2. 국민제안 접수 · 처리실적 · 76
3. 평가 및 향후계획 · 79

기고문 / 규제개혁의 이상과 현실 · 80

제3장) 규제개혁 특성과제의 정비

제1절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 관련 규제개혁 · 85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 85
2.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공정위) · 86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제한 규제완화(정통부) · 88
4.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 규제개혁(정통부) · 89
5. 대기업집단지정(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공정 위) · 90

제2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 92

1.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문광부) · 92
2. 직업교육 · 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 93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문광부) · 100
4. 해양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수부) · 101
5.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환경부) · 102

제3절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 105

1. 사회복지시설관련 규제개혁방안(복지부) · 105
2. 소음 · 진동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 107
3.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 규제개선(농림부) · 109
4.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건교부) · 110
5.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방안(산자부) · 113
6. 농업 · 농업인 · 가축 등 범위관련 규제개선(농림부) · 114
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관련 규제개선방안(환경부) · 116

기고문 / 사회규제 강화에도 한계는 있다 · 117

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추진개요 · 121

제2절 추진실적 · 123

1. 제1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3
2. 제2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5
3. 제3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7
4. 제4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30
5. 제5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32

기고문 /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 140

제5장)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 145

1.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방안(건교부) · 145
 2.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산자부) · 148
-

3. 단체표준의 활성화(산자부) · 150
4.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산자부) · 153
5.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특허청) · 155
6.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통계청) · 157
7. 생명공학관련 법령정비(복지부 · 과기부) · 159
8.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재경부) · 162
9.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재경부) · 163
10.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재경부 · 금감위) · 164
11.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재경부) · 165
12.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 166
13.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금감위) · 167
14.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168
15.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복지부) · 169
16.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복지부) · 170
17.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복지부) · 171

제2절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173

1. 원격의료제도 도입(복지부) · 173
2. 전자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복지부) · 175
3.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복지부) · 176
4.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복지부) · 177
5.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공정위 · 행자부 · 산자부 · 법무부) · 178
6.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179
7. 전자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산자부) · 180

8.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정통부) · 182
9. 공간정보의 유통 · 활용범위 확대(건교부) · 183
10.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건교부) · 186
11.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개선(건교부) · 190
12. 공공부문 수집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방안(건교부) · 195
13.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지정제도 개선(건교부) · 199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202

1. Cyber교육체제의 구축 · 운영(교육부) · 202
2.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경쟁 제고방안(교육부) · 203
3. 교과서 발행 · 공급 규제개혁(교육부) · 204
4. 학원설립 · 운영제도 개선 · 205
5.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교육부) · 206
6.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법 · 제도정비(교육부) · 206
7. 직업교육 · 훈련제도 개혁(노동부) · 207
8.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노동부) · 210
9. 휴일 · 휴가제도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노동부) · 212
10.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15
11. 여성보호제도 개혁(노동부) · 216
12.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19
13.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제도 개혁(노동부) · 222
14. 근로자 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26

제4절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 228

1. 우수 쇼핑몰 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산자부·정통부) · 228
2.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 · 229
3. 민간의 암호이용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정통부) · 231
4.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정통부) · 232

기고문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 · 233

제6장)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분야 · 237

1. 재경경제부 · 237
2. 관세청 · 252
3. 공정거래위원회 · 253

제2절 금융분야 · 257

1. 금융감독위원회 · 257

제3절 산업자원분야 · 272

1. 산업자원부 · 272
2. 중소기업청 · 300
3. 특허청 · 306

제4절 건설교통분야 · 308

1. 건설교통부 · 308
 2. 철도청 · 377
-

제5절 보건복지분야 · 382

1. 보건복지부 · 382

제6절 일반행정 · 법무 · 경찰분야 · 396

1. 행정자치부 · 396
2. 법무부 · 403
3. 경찰청 · 408

제7절 교육분야 · 413

1. 교육부 · 413

제8절 문화관광분야 · 419

1. 문화관광부 · 419
2. 문화재청 · 422
3. 방송위원회 · 424
4. 여성부 · 427
5. 청소년보호위원회 · 429

제9절 노동분야 · 432

1. 노동부 · 432

제10절 외교 · 국방 및 보존분야 · 458

1. 외교통상부 · 458
2. 통일부 · 458
3. 국방부 · 460
4. 병무청 · 460
5. 국가보훈처 · 460

제11절 환경분야 · 463

1. 환경부 · 463

제12절 해양수산분야 · 476

1. 해양수산부 · 476

제13절 농림분야 · 495

1. 농림부 · 495

2. 산림청 · 513

제14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 519

1. 과학기술부 · 519

2. 정보통신부 · 525

기고문 / 새로운 규제개혁 전략이 필요하다 · 533

제7장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 537

기고문 / 이제는 시스템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 541

제8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제1절 이행실태 점검개요 · 547

1.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 547
2. 점검결과 · 549

제2절 7차이행실태 점검 · 551

1. 점검개요 · 551
2. 점검결과 · 552

제3절 8차이행실태 점검 · 557

1. 점검개요 · 557

기고문 / 금융규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 559

제9장)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규제개혁 4년에 대한 종합평가 · 563

제2절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74

제3절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84

기고문 / 건설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592

제10장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기본 방향 · 599

제2절 세부 추진계획 · 600

제안 /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 보고체계 개선 필요 · 608

너무 하는군요... · 609

주력관리사(보) 법정교육과 공인중개사 사전교육 폐지 요청 · 611

부록 제1장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615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638

부록 제2장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인건·645

제2절 경제1분과위원회 일지·665

제3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일지·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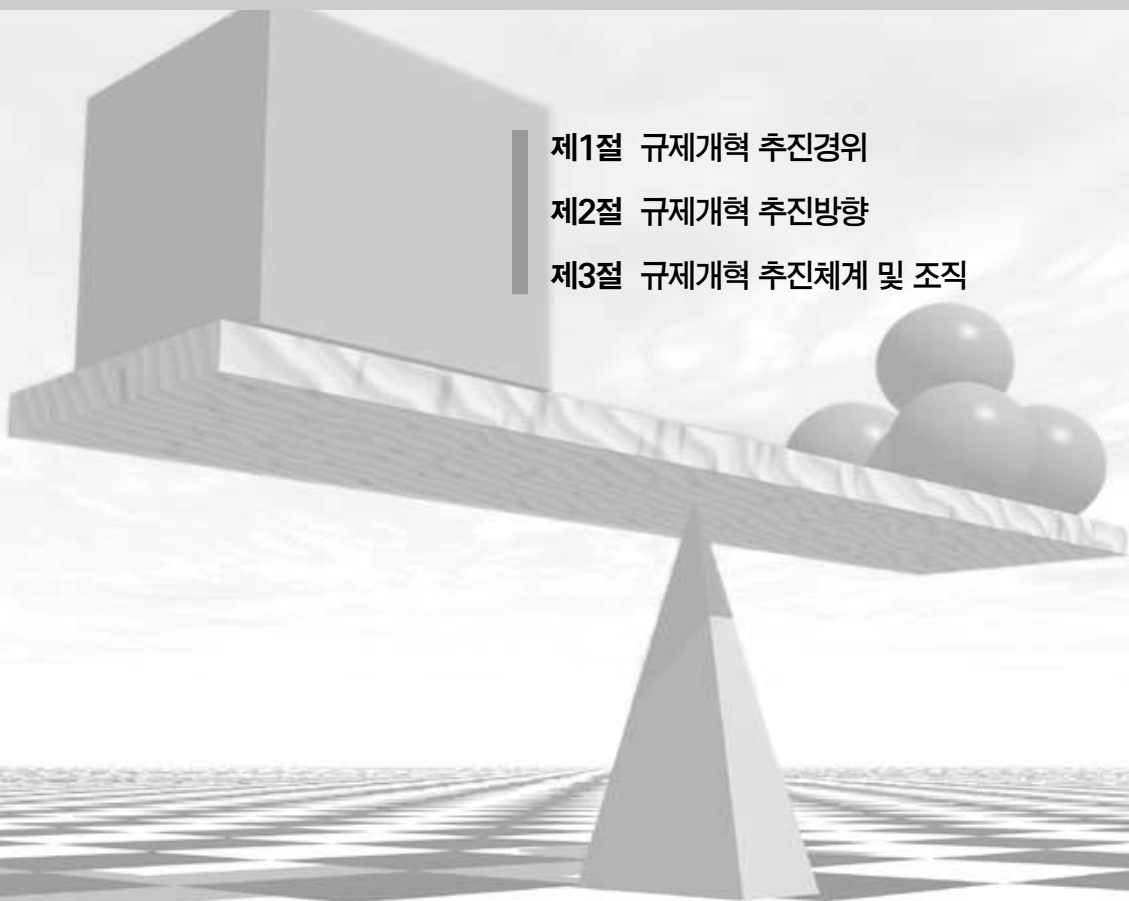
제4절 경제2분과위원회 일지·680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 25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 27

1. 우리 정부규제의 특징 · 27
2. 규제개혁의 필요성 · 28
3. 규제정비원칙 · 29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 31

1. 규제개혁 추진체계 · 31
 - 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 31
 - 나. 추진기구 · 31
2. 규제개혁위원회 · 33
 - 가. 구성 및 기능 · 33
 - 나. 회의운영 · 34
 - 다. 심사절차 · 35
3. 분과위원회 · 36
 - 가. 구성 및 기능 · 36
 - 나. 회의운영 · 38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39
 -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39
 -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40

- 기고문 /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하며 · 42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 · 44
-

제2장) 국민의 정부 4년 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 49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 51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 57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58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62

제4절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63

제5절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 65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 · 공표 · 67

1. 추진개요 · 67
2. 등록대상 규제사무 · 68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 68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75

1.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 75
2. 국민제안 접수 · 처리실적 · 76
3. 평가 및 향후계획 · 79

기고문 / 규제개혁의 이상과 현실 · 80

제3장) 규제개혁 특성과제의 정비

제1절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개혁 · 85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 85
2.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공정위) · 86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제한 규제완화(정통부) · 88
4.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 규제개혁(정통부) · 89
5. 대기업집단지정(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공정 위) · 90

제2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 92

1.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문광부) · 92
2. 직업교육 · 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 93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문광부) · 100
4. 해양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수부) · 101
5.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환경부) · 102

제3절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 105

1. 사회복지시설관련 규제개혁방안(복지부) · 105
2. 소음 · 진동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 107
3.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 규제개선(농림부) · 109
4.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건교부) · 110
5.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방안(산자부) · 113
6. 농업 · 농업인 · 가축 등 범위관련 규제개선(농림부) · 114
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관련 규제개선방안(환경부) · 116

제3장 규제개혁 특정과제의 정비

제1절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개혁

제2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제3절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제1절_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 개혁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가. 검토배경

- 현재 맥주의 생산량 기준을 연간 72,000k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소규모 맥주제조가 가능토록 시설기준 완화방안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제도의 도입
 - 주류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의 제조시설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맥주의 제조와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개선
-

- 소규모 맥주제조장의 생산시설 기준
 - 주질보호 및 소규모 제조장의 난립방지를 위해 적정생산 시설규모를 연간 60~300kl로 제한(일본, 미국, 독일의 경우 120~160kl)
- 제조자에 의한 판매허용
 -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자에 대해서는 직접판매도 허용하되, 맥주의 유통과정상 변질문제와 세원관리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판매범위를 영업장내로 한정
- 소규모 제조맥주의 과세표준 및 세원관리
 - 과세표준은 제조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통상가격으로 하되, 통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10%의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 원료구입·제출수량 등의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수량관리를 위한 유량계 설치의무를 부과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의 준비기간 부여 및 제조시설의 국산화 유도를 위해 2002. 7. 1일부터 시행

2.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공정위)

가. 검토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집되거나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진입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를 연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공정위에서 3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입장권 통합전산망 독점운영제도 개선
 - 국세청에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고시로 모든 문화기관(극장 등)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통합전산망의 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하여 법형식상 문제가 있고 규제수준도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이므로 입장권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독점적지위를 보장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소
- 전자상거래관련 규제개선
 - 문화관광부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의 판매업 등록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시 영업소 등의 장소적 시설구비 요건을 삭제
- 심야전력기기관련 규제개선
 - 심야전력기기 판매·시공점의 등록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입장권통합전산망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입장권통합전산망 구축사업자 복수화가 이루어진 후에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
- 기타 전자상거래 및 심야전력기기관련 규제개선방안은 2001년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완료(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등)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제한 규제완화(정통부)

가. 검토배경

- 통신사업 관련 업종 육성 및 통신사업 수익 이전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업 겸업추진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기업 자율성 제고 및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전환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전기통신망 개선·통합사업, 통신단말장치 판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상에 명기하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없앴
- 겸업승인 대상사업으로 3개 사업 한정
 -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유도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의 균형 발전 및 통신사업자와 통신기기 제조업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기기제조업(단말장치 포함)을 겸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함
 - 또한,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 중소기업 육성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본연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용역업을 겸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함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 공포(2001. 6. 12)

4.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 규제개혁(정통부)

가. 검토배경

- 국민들이 전파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전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 관련 자격제도,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전파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업무범위 확대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의 업무종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격 명칭도 제한급무선통신사로 변경
 - 업무범위의 주파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업무도 무선전신·다중통신설비를 제외한 무선통신 관련 전 업무로 확대
- 무선국 변경허가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채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혼신가능성이 낮으므로 변경허가 대신에 변경신고로 완화
- 환경친화적 기지국의 합리적 구축
 - 공용화구역 내에서 단독 구축이 불가피한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

- 무선국 검사수수료 개선
 - 다중무선설비 무선국의 검사수수료는 25.7% 인하(대상 무선국 수 : 49,387국, 금액 : 21억)
 - 재검사 무선국의 재검사수수료는 최초 수수료의 1/3로 인하(불합격 무선국 수 : 4,564국, 금액 : 2억)
- 무선국 검사주기 연장
 - 정기검사에 합격한 무선국은 정기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 연장
 - 1단계로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및 실험국 등 약 14만국 대상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전파법(2002. 10)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2. 6)

5. 대기업집단정책(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공정위)

가.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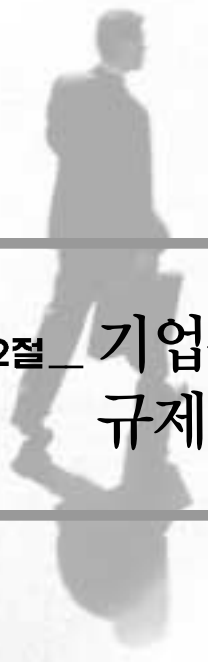
- 최근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집단에 대하여 개별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완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틀은 유지하되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대상축소)하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하되,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추가
 - 동종·관련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 등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출자는 제한
- 한도초과출자 해소부담 완화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일(2001. 4. 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시한(2002. 3월 말) 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 경영건전성관련 규제의 정비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 2001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 2002. 4. 1일부터 시행예정



제2절_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정은영 사무관(Tel. 3703-3938, eyjung@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55, yhomo@opc.go.kr)
김창환 서기관(Tel. 3703-3942, kch318@opc.go.kr)
김영환 사무관(Tel. 3703-3946, hwan49@opc.go.kr)

1.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문광부)

가. 검토배경

-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 구축 촉진, 관광사업자와 소비자간 균형있는 관계 설정으로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관련 규제를 정비함

나. 주요규제개혁 내용

-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부지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매입 완료시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 허용
 - 민간개발자도 공공법인과 같이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
-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근거 규정 마련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서 체결시 당해 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
- 관광포함 상호 사용 금지 삭제
-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승인시 타법의 인·허가 의제사항에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허가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변경시 변경승인신청대상을 명시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등 명시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관광진흥법 개정(2002. 1. 26)
- 2002년 상반기 중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 직업교육·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가. 직업훈련제도 규제개혁방안

(1) 실업자훈련

(가) 현 황

- 실업자직업훈련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업률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 훈련비는 직종별로 정한 시간당훈련비에 훈련시간을 곱하여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훈련생이 부담
 - 훈련생의 개인조건을 고려하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훈련수당 지급
- * 교통비 3, 가족수당 10, 우선직종수당 10, 보육수당 5, 능력개발수당 7

(나) 문제점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훈련 중 적성부적합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
- 3D업종의 훈련실적 저하

(다) 개선방안

- 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상담의 강화
- 훈련비 자비부담수준의 확대
-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훈련수당 인상
- 훈련기관평가를 통한 훈련비 차등지원 수준의 확대

(2) 재직자훈련

(가) 현 황

- 재직자훈련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사업주의 훈련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훈련 참여기업과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
 - 사업주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

(나) 문제점

-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참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훈련기관에서 훈련부실문제가 발생
-

- 훈련기관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미흡하여 훈련기관 선정에 애로
- 중소기업(150인 미만)의 경우 여유인력의 부족, 임금부담 등으로 훈련참여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3.2%)

(다) 개선방안

- 재직자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
 - 현재에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상설점검반(4명)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배제 등 강력제재
- 재직자 훈련기관에 대한 적정 정보제공
 -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

(3) 인력양성훈련

(가) 현 황

- 제조업 등 국가기간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공공훈련기관과 직업훈련전문기관 등에서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 실시
 - 기계장비, 금형,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의 훈련직종(117개)

(나) 문제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산업화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지식정보화사회라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한편,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은 훈련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데 애로가 큼

(다) 개선방안

- 공공훈련기관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양성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직종의 지식산업화 추진
-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 지원한도 및 이자율 인하

* 인력공단 조직개편방안마련 및 시설장비대부규정 개정(2002년 상반기)

나. 직업교육체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실업계 고등학교

- 현 황
 - 실업계 고교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 예술계, 실업, 종합고등학교가 포함
 - 2001년 현재 총 759개교(전체 고등학교의 38.5%)에 약 65만명(전 고등학생수의 34%) 재학
- 문제점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재학생수도 감소
 - 신입생 미달 : 1999년 22천명(7.8%), 2000년 20천명(8.3%), 2001년 17천명(7.5%)
 - 학생수 : 1995년 911천명, 2000년 747천명, 2001년 651천명
 -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조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음
 - 실업고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급증

(나) 전문대학

- 현 황
 - 전문대학의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기여
-

- 학교수 대비 45%, 학생수 대비 33%
- 2001년 현재 158개의 전문대학에 952,649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의 취업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에서 일반대학에 앞서는 등 취업과 연계된 교육실시
 - 취업률(2000년) : 전문대 79.4%, 일반대 56.0%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2000년) : 전문대 21.4%, 일반대 10.6%
- 문제점
 -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미달사태 발생(2001년도 전문대학 4,617명)
 - 4년제 대학 선호 경향과 학벌에 의한 임금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로 전문대학 발전에 한계
 - 고졸자들의 전문대학 선호도 : 11.2% (KEDI, 1998)
 -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본 임금 비교 : 중졸 이하 89%, 전문대졸, 103%, 대졸 152%(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보고서 1999)
 - 계속교육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문대 졸업자의 계속교육기회 미흡

(다) 산업대학

- 현 황
 - 산업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실업고 및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고등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 2001년 현재 19개의 산업대학에 180,068명(전체 4년제 대학생수의 약 10%)이 재학 중
- 문제점
 - 교육대상의 이질성과 교수부족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애로 발생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주로 주간과정), 전문대학 졸업생(편입과정), 산업체 근로자(주로 야간과정)
 -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교육통계연보, 1999) : 산업대학 70.4, 일반대학 38.5
 - 일반대학에 비하여 차별적인 법·제도로 인하여 입학자를 효율적으로 유인하지 못함
 - ROTC, 교직과목 미설치, 기구 조직 및 지원예산의 차등 지원 등
 -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확보의 애로

(2) 개선방안

(가) 실업계 고등학교

- 학급당 기준인원 제한 완화 : 2001. 7. 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교육과정 변경규제 완화
 -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이 지역실정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
- 변경신청기간 단축
 - 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측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예고기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경신청기간 단축공란
- 특성화고 설립 · 시설 · 교구재 기준 등의 자율화
 -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설립에 있어서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특성화고 선발시기의 자율화
 - 시 · 도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직업교육 특성화고의 학생선발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선발은 자율화되어 있음
- 특성화고 교과용 도서 선정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화고는 초 · 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교재를 자유롭게 선정 사용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수업료 등의 자율화
 - 특성화고교 수업료 자율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 · 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특성화고교가 자율 징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될 사항임

(나) 전문대학

- 전문대학 모집단위 기준의 유연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별로도 모집할 수가 있음
 - 수업연한 다양화의 단계적 허용
-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화하도록 개정 중임
-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에 대한 제한, 학위수여 등의 문제는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복수전공(다학기제) 허용
 - 전문대학에 다학기제 도입, 전문대학에 복수전공제 도입은 장기검토
-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중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 폐지
 - 일정한 기간 산업체의 근무경력은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령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 이에 대한 추후 검토
- 학점인정 개선
 - 건의된 학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격 취득 등의 학점인정은 당해 전문대학이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임
 - 다만, 학점으로의 인정 등은 당해 전문대학에서 판단할 사안임

(다) 산업대학 관련

- 대학원 설치범위(연구기능) 제한 폐지
 - 2000. 11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과정의 운영이 가능함
- 교직과목 제한의 폐지
 - 교원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대학에도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제1항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를 개정 추진중에 있어, 동법 개정 후 교원자격검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임
- ROTC 과정 설치제한의 폐지
 -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산업대학 졸업생이 전공관련 직무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ROTC의 설치 범위에 산업대학을 추가
- 학력중심의 겸임교수 자격기준 완화

- 현행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겸임교수에 다양한 산업체근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음
- 국립산업대 총장의 지위 차등 폐지
 - 산업대학 총장 보수 및 여비의 상향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개정 추진 중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문광부)

가. 검토배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이후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스포츠무도를 기존의 유흥·사교무도와 구분·관리하여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발전 도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기존의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폐지하는 대신 댄스스포츠 국제경기 규정종목 중심의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 또는 스포츠무도와 유흥·사교 무도 업종을 구분함
 - 체육시설업 관련 경미한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등 사전예고 없이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시설기준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는 등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마련함
 - 체육시설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및 행정기관 혼동방지
 - 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방지를 위하여 공사착공 후 일정기간 공사를 중
-

단·방치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보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2002년)

4. 해양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수부)

가. 검토배경

- 공유수면관리법, 개항질서법 등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관련 규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오염자 부담원칙, 해양폐기물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오염물질 해양배출에 관한 규정이 다수법에 규정되어 있고, 장소 및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일원화
-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어선들의 조업시 수거되는 폐기물의 육상 인도시 연계처리 시설 및 처리체계 미비로 해양재투기 등이 우려되어 원활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수용능력의 한계로 해양오염이 가속화 되어있어 해역별 총량관리제 도입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유창청소업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

- 선박에서 불법투기시의 벌칙과 사람이 단순투기시 벌칙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등 불합리한 규제조항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 해양환경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곤란하므로 수질·대기 등 육상환경분야와 동일하게 사법경찰권 부여
- 폐기물의 해양투기 증가로 해양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제수단이 없어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에 충당

다. 향후 추진일정

- 2002년 하반기 중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5.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환경부)

가. 검토배경

- 경제 5단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환경 관련 중복 규제 일원화 요구(2000. 10)
- 이에 제73차 경제2분과위원회(2000. 11. 17) 개최하여 환경관련 중복규제의 통합 및 일원화를 위해 위원회의 발굴 및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환경 관련 중복규제를 발굴, 개선추진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환경부와 노동부가 동일업체로부터 각각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각각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업체의 불편 및 부담 초래함
-

- ⇒ 환경부는 모든 인체의 유해성(작업장 근로자 포함)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유해성 심사 신청 및 결과통보의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
- 화학물질의 제조금지 대상물질을 각 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 ⇒ 환경부와 중복되는 노동부의 금지물질 3종을 환경부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물질(5종)은 현행대로 존치
 - 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와 노동부가 중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업체의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함
 - ⇒ 환경부의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 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권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별도로 시·도지사에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 배출시설신고(등록)하도록 중복 규제됨
 -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도와 VOC 배출시설설치 신고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도록 규제개선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중복적으로 환경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환경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하여 중복규제 폐지
 -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 관련 지도·단속 업무(수질·대기·폐기물 등)의 일원화
 - 축산폐수시설허가시에 교부한 허가증 원본을 준공검사시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을 생략하도록 간소화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표시, 경고표시 등이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치토록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물질(37종)의 배출허용농도기준이 없어 물질별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석회 및 프라스터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또는 건조시설에 대한 먼지 배출허용기준의 표준산소농도가 규정(13%)과 실제 산소농도(16~17%)가 차이가 나고 화학비료, 인산제조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토

록 함

다. 향후계획

- 환경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2002년 상·하반기에 걸쳐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행

제3절 —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김영환 사무관(Tel. 3703-3946, hwan49@opc.go.kr)
정대우 사무관(Tel. 3703-2182, dw0327@opc.go.kr)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사회복지시설관련 규제개혁방안(복지부)

가. 검토배경

-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비효율성, 서비스 공급체계 등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나. 주요규제개혁내용

(1) 민간참여 확대

- 민간사회복지시설 참여확대를 위해 유료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정원을 폐지하고 10인 미만 소규모시설은 “가정위탁시설” 제도를 도입, 제도권 내 수용
-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완화
 -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각계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종사자가 자격소지시에는 시설장의 자격보유를 면제토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일정 시설규모 이상의 시설에게만 적용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설비기준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유료시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하여 시설유형별로 보유해야 할 기본적인 시설은 명시하도록 함

(2)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정부는 선택된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권(Voucher)을 지급
 - 이용권제도 정착을 위하여 복지시설 공급확충 및 이용자 선택을 위한 공급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한 보호내용이 예고된 보호내용과 차이를 보일 경우 시설 거주자가 시·도(시·군·구)에 불복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랑인시설 등의 퇴소를 자율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시설로 전원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를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감예산 지원
 - 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항내 목간 전용은 자율화하고 관내 항간 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함. 관간의 전용은 장기 검토
 - 서비스 구매제도를 도입하되 도입시기는 복지시설의 수준향상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 3년마다 시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4) 시설·운영의 투명성·개방성 확보

- 예산지원방식을 통한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를 유도
- 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를 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익이사제 도입 유도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운영 위원회를 내실화하도록 함
- 일정범위 내 후원금 관리비용을 집행가능토록 인정범위 설정. 이와 함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 벌금형 이상의 제재 조치를 재직기간 동안 3회 이상 받은 시설 운영자는 자동 퇴출토록하되 최소한의 기한을 설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재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도록 함

(5)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

- 종사자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기준을 법정종사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향후추진계획

- 2002년도 중 사회복지사업법령, 아동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령, 노인복지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

2. 소음·진동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가. 검토배경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소음·진동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최근 환경관련 분쟁중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수가 가장 많은 상태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음진동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나. 주요 규제개혁내용

- 층간 소음기준을 외국의 경우처럼 건축관련 법령 또는 관계전문가 단체 등의 권고기준으로 설정하고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 마련
-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공동주택건설시 우리나라 대도시 등의 여건과 소음규제기준의 정비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규제 소음도 및 타당한 소음측정방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정비
- 소음 진동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 정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대상 사업장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제 도입
- 방음판의 기본적인 성능수준의 제시 및 제품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
- 발파소음·진동은 건설소음과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허용기준을 설정

다. 향후 계획

- 2002년 중 관련 규정(건교부 :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환경부 : 소음·진동규제법)을 제·개정하여 시행
-

3.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 규제개선(농림부)

가. 검토배경

- 비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의 거래제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소규모 농지 거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고 농지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비농업인이 신규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1,000㎡ 이상 매입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온실 등은 330㎡ 이상)하던 농지의 거래제한 규모를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소규모 농지 거래가 가능한 농업생산시설(330㎡ 이상)의 대상을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곤충사육, 지렁이사육 등’ 첨단농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

다. 향후 추진 일정

- 농지법 개정(2002. 1. 19)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 시행(2002. 4)

4.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건교부)

가. 접도구역 범위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의 범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고속국도는 25m(경부·중부선은 30m), 일반국도 및 기타 도로는 5m로 지정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여건 등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범위의 이원화 및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접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개선방안

- 고속국도 접도구역 범위의 합리적 축소 조정방안 강구
 - 고속국도 접도구역의 도로구조 보호장치로서의 역할, 교통사고 피해와의 연관성, 도로 주변여건 및 도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범위설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 접도구역 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 접도구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잔여지 매수부지, 부체도로 등이 있는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취락지구를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구인 취락지구는 공공시설, 도로계획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므로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제61차 규개혁 의결)에서 제시된 준농림지역의 취락밀집지역 중 특별지구단위계획이 수립완료된 지역은 추후 관련법령 시행 후 제외대상에 포함

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증축 허용 규모를 15㎡ 이내로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거주민들의 반발심리 자극

(2) 개선방안

- 증축 허용규모 확대(현행 15→30㎡)로 기존 주거자의 생활환경개선 도모
- 소규모(20㎡) 농업용 시설로서 비영구 창고의 건축을 허용하여 영농활동상의 장애요인 해소
-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용 ‘표찰’ 부착의무를 폐지하여 접도구역 내 주민과의 마찰 불식

다. 접도구역 지정 · 관리기준의 객관화 · 구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1998~2000)을 분석한 결과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60% 이상으로 접도구역 관리 및 세부 기준의 불명확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행위 가능여부 문의 : 61.3%, - 적용기준 문의 : 18.0%
 - 절차 및 법규 적용 여부 : 5.3% - 구역해제 적용시기 문의 : 2.7%
 - 현행 제도개선 요구 : 2.6%

(2) 개선방안

- 접도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접도구역 관리의 효율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도로경계선”,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화
 -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의 명확화
- 접도구역 지정 예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매수청구권 부여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고속국도 1,269km, 일반국도 8,427km, 지방도 14,208km에 해당하는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일정규모(15㎡) 이상의 증축을 제한하고 있음
-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라 타법령에서의 매수청구권 부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2) 개선방안

- 매수청구권 부여방안 검토
 - 접도구역 중 대지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대상지역, 매수시기, 매수절차, 소요재원에 대하여는 용역시행 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
 - * 대상대지 중 안전상 문제가 있는 대지를 우선 매입하고,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매수계획 수립·추진

접도구역에 저축되는 토지면적 추정

지목구분	면적(k㎡)	구성비율(%)
전 체	592	100
도시용지	14.7	2

* 접도구역 면적은 약 300k㎡(1999년 말)

- *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은 접도구역 면적의 1.97배를 가정
- * 도시용지=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도로법시행령 개정 : 2002. 5
- 도로법시행규칙 개정 : 2002. 5월 중
-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 : 2001. 10. 17
- 고속국도 접도구역 축소조정 및 매수청구권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용역시행 후 그 결과를 2002. 6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2002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5.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방안(산자부)

가. 검토배경

-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진행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체·건물·수송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추진현황

(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 일정규모(5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증설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하여 산자부장관이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공정 등을 채택하도록 유도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 도입

-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산자부장관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선명령의 미이행시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및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다. 추진실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002. 3. 25)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2002. 3. 25)

6. 농업·농업인·가축 등 범위관련 규제개선(농림부)

가. 검토배경

- 쌀농사 위주의 전통 농업에서 농·축·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 곤충·지렁이 사육 등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 등에 부응한 농업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행 축산
-

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생도축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가축에 대한 위생도축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의 범위 중 “이들과 관련되는 산업”에 포함할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 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곤충류, 지렁이 등 사육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함
- 농지법시행령의 농업인의 범위에 “연간 농산물판매액 기준”을 추가하여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되는 산업의 생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위생도축 대상에 축산법상 가축의 소유자가 위생도축을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생도축 및 유통을 허용하여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개선함

다. 향후 추진일정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2002. 6월 말까지 개정·시행

7. 우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관련 규제개선방안 (환경부)

가. 검토배경

- 우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시설기준이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 다양해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시설기준의 누락 또는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규제개혁내용

- 도시와 농촌지역주택의 우수발생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규제한 현행 기준(200/인·일)을 시 이상의 지역(200/인·일)과 읍·면 지역(170/인·일)으로 구분하여 개선함
- 우수처리시설 대상 시설군을 건축법의 분류를 고려하여 세분화(11개 16개)하고, 우수발생량 산정기준이 없는 찜질방, 실내납시터, 무도장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함
-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의 취사허용 여부, 오염 부하량 여부, 사용특성 등을 감안하여 우수처리시설용량을 차등화함
- 우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 산정방법을 별도로 고시한 것을 통합고시토록 개선함

다. 향후 계획

- 환경부의 관련 고시를 정비(제·개정)하여 기시행
-

사회규제 강화에도 한계는 있다

이계민(행정사회분과 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



“경제규제는 풀고, 사회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심사를 할 때 사회 부처 실무자들이 들먹이는 항의성 주장이다. 보건의료, 노동, 교육, 소방, 치안, 교통안전, 문화관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분을 가진 사회적 규제를 심사하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늘상 부딪히는 문제다. 사실 규제개혁의 기본 과제이기도 한 그와 같은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닐 게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규제에 대해 규개위가 왜 왈가왈부하느냐고 불쾌해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증가 또한 공직자들이 아닌,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규제심사, 특히 사회부처 규제를 다루면서 평소에 느낀 점이라면 우선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

다는 과욕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 스스로의 자기보호본능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큰 사고만 생기면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편잔을 듣게 마련이다. 근본 원인을 따져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방만한 정부조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조직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일을 찾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규제를 만들면서도 수혜자들의 편익만 생각했지 부담하는 비용은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비용편익분석을 규제심사의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을 바탕으로 규제를 만들다 보니 대부분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 규제는 그 목적 자체가 선()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사회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는 일반론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계도만으로 충분한 것을 법적 규제로 금지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효율적인 규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들 스스로 규제만능의 유혹, 달리 표현하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장 국민의 정부 4년 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제4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절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제1절_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존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매 규제 한 건 한 건마다 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125건의 규제 중 5,430건(48.8%)을 폐지하고, 2,411건(21.7%)을 개선하였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 설립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선물거래업, 증권투신운용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시장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제한 31개 업종 개방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민간인들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단순의약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이 있다.

1999년에는 1998년도의 1단계 규제정비 이후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 “민간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저히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0개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잔존규제 총 6,811건(1998년도 신설규제 511건 포함)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집중 심사·조정하여 규제의 존치여부 및 품질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1999년도의 기존규제 정비결과 잔존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이 폐지되었으며, 570건(8.4%)이 개선

되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품질보증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권한의 민간이양,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대학원 정원 자율화,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 등록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도부터 정부는 지난 2년 간에 걸친 규제개혁으로 대부분의 개별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기존과 같은 규제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비방식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규제에 대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기존규제 정비방식을 전환, 분야별로 부처간 혹은 법령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6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점과제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참조)

제2절 —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개별규제의 정비 외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규제체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여 매년 중점규제개혁과제(1998년도 및 1999년도에는 핵심규제개혁과제, 2001년도에는 특정과제로 통칭)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중점규제개혁과제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우리 경제의 회생에 시급한 규제(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분야, 국민생활 불편 분야 등)와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복합규제로 일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 및 경제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거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개혁과제를 주로 선정하였으며, 과제 선정과정에서도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토록 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도에는 주택건설산업 관련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관련규제 개혁 등 37개의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전문자격사관련규제 개혁 방안 등 33개 과제의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등 5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 17개 중점과제(특정과제)를 추진하였다. 연도별 추진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1998년 (37개)	1. 주택건설산업관련규제 완화	건교부
	2.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	건교부
	3. 주차장관련규제개혁	건교부
	4. 건설기계·장비관련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 자동차관련 규제개혁(Ⅰ)	건교부
	6. 자동차관련 규제개혁(Ⅱ)	건교부
	7.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Ⅰ)(해운·항만분야)	해수부
	8.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Ⅱ)(철도·화물분야)	건교부
	9. 외국인 투자관련규제개혁방안	재경·산자부
	10. 수출입 통관관련규제개혁방안	관세청
	11. 주류분야규제개혁방안	국세청
	12. 벤처산업관련규제개혁	산자부등
	13. 관광산업분야규제개혁	문광부
	14. 풍속영업관련규제개혁	문광부
	15. 사업자단체의 기업활동규제개혁	공 통
	16.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개선	환경부
	17.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방안	공 통
	18. 수도권규제 합리화	건교부
	19. 금융산업 진입규제완화	재경부
	20. 금융산업 경영관련규제완화	재경부
	21. 해외건설분야규제개혁	건교부
	22. 감리제도규제개혁	건교부
	2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관련규제개혁	건교부
	24.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규제개혁	건교부
	25. 도·소매업관련규제개혁	산자부
	26. 농수산물유통규제개혁	농림부
	27. 정보통신관련규제개혁	정통부
	28. 문화재관련규제 합리화	문화재청
	29. 의료기기산업규제개혁	보건복지부
	30. 옥외광고제도규제개혁	행자부
	31.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규제완화	국방부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관리관련규제개선	공정위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33. 영화·영상·음반 등 규제개혁(일부반영) 34. 법정업무 고용제도개혁 35. 외국인 고용관련규제 합리화 36. 각종 법령의 투명성 제고방안 37.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제개혁(일부반영)	문광부 노동부 산자부 공 통 교육부
1999년 (33개)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2.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3. 전문자격사관련규제개혁방안 4.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5.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 구분 개선방안 6.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7.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합리화방안 8.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합리화방안 9.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10.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11.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12.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규제 개혁방안 13.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14.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관련규제 개혁방안 15.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16.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규제개선방안 17.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규제개선 18. 기업의 준조세정비개혁방안 19. 국가자격제도규제개혁방안 20.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21. 저작권관련규제개혁방안 22. 국내기업 역차별관련 규제개혁 23. 물류산업 규제개혁방안 24.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25.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규제개혁방안 26.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규제개혁 27. 학원운영·설립관련규제개혁 28.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산자부 공정위 공 통 건교부 건교부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공 통 공 통 건교부 보건복지부 공 통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재경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교육부 공 통

연도별	중점과제명	소관부처
	29.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 추진계획 30. 문화산업 관련규제개혁 31. 규제대안개발 연구 3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33.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행자부 문광부 공 통 공정위 재경부
2000년 (56개)	1.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규제개선방안 2. 도시계획지역·지구제도 개선방안 3. 외국인 국내활동관련규제개혁방안 4. 임산물 굴취·채취·매각관련규제개혁방안 5. 사립학교 교장자격관련규제개선 6.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규제개선방안 7.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관련규제개선방안 8. 의료보험관련규제 개혁방안 9.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10. 축산업관련 진입규제개선방안 11.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 규제개선방안 12. 보험영업관련규제개혁방안 1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방안 14.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15. 증명민원서류 감축방안 16. 해운분야규제 개혁방안 17. 자동차 운전학원관련규제 개혁방안 18. 폐기물 재활용관련규제개선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규제개혁방안 20. 학원설립·운영관련규제개혁방안 21. 정보통신산업관련규제합리화 22.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3. 품질인증관련규제개혁 24.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간소화 25. 공공공사 입찰관련규제개선방안 26. 토지이용관련규제개혁방안 27. 병역특례제도관련규제개선 28. 전력기술관리관련규제개선방안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림청 교육부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재경부 중기청 공정위 행자부 해수부 경찰청 환경부 건교부 교육부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 농림부 조달청 건교부 병무청 산자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29. 문화재보호관련규제의 합리화	문화재청
	30. 전자직업소개업관련규제개혁	노동부
	31. 고용보험제도관련규제개혁	노동부
	32. 외국인학교설립관련규제개혁	교육부
	3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관련규제개혁	교육부
	34. 농촌개발 및 지원관련규제개선	농림부
	35.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규제의 합리화	산림청
	36.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해수부
	37. 금융업 진입규제 등 검엄관련규제개혁방안	재경부
	38. 금융기관 영업관련규제개혁방안	금감위
	39. 동일인 신용공여관련규제의 합리화	재경부
	40. 인감증명제도개선	행자부
	4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개선방안	산자부
	4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관련규제개혁	산자부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관련규제개혁	문광부
	44. 광고물관련규제의 합리화	행자부
	45. 에너지이용관련규제합리화방안	산자부
	46.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공정위
	47. 위탁대행기관관련규제개선	과기부
	48. 항만분야 규제개혁방안	해수부
	49. 건축관련규제개선	건교부
	50. 토지이용관련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1. 의약품 및 검사관련규제개혁	복지부
	52.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개선방안	환경부
	53.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규제개선방안	공정위
	54. 각종보세구역 지정·운영관련규제개선방안	관세청
	5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규제개선	중기청
	56. 수도권 산업입지관련규제개선	건교부
2001년 (17개)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 2.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3.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엄제한제도개선 4. 사회복지사업 관련규제 개혁방안 5. 관광산업관련규제 합리화	재경부 공정위 정통부 보건복지부 문광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6. 소음진동 측정관련 규제개선방안 7. 직업교육·훈련관련규제개혁방안 8.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 9. 소규모 농지거래 제한규제개선방안 10. 접도구역규제 개선방안 11. 체육시설 설치·운영관련규제개혁 12. 에너지 이용관련규제 합리화방안 13. 해양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4. 환경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방안 15. 농업인·농용시설 및 가축 등의 개념정비 및 범위 확대개선방안 16. 오수처리 및 정화조설치관련규제개선 17.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규제개혁	환경부 노동부 공정위 농림부 건설교통부 문광부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환경부 정통부
계	143개 과제	

제3절 _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우리 사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투입요소 확대 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지식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문제, 다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문제,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가 21세기 선진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규제개혁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는 금융, 건설 등 10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10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대상과제를 1차 선정하고 동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1개 최종 과제를 확정하여 이를 대통령께 보고(2000. 9. 19)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2000.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도 추진대상 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추진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방안이 완료단계에 이른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그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에 착수하여 9개 분야 29개 과제로 이루어진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를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2001. 11. 4)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중에 제2단계 지식정보화관련 29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으로 지식정보화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제1단계 및 제2단계 계획의 세부내용 및 제1단계 계획의 주요 추진실적은 제4장 참조)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가.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행자부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규제정비	행자부
③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의 신분확인관련규제개선	행자부
④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조달청
⑤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	건교부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①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	산자부
② 단체표준의 활성화	산자부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산자부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특허청
⑤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청

구 분	추진부처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청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특허청
⑧ 생명공학관련 법령정비	복지부, 과기부
⑨ 외국인투자제도규제개혁	산자부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개선	재경부
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개선	재경부, 금감위
1-3.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① 인터넷은행 설립규제개혁	재경부, 금감위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	재경부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⑤ 금융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금감위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재경부, 금감위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금감위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재경부
⑨ 투자자문업 운용인력보유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문광부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문광부
③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복지부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개선	복지부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복지부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행자부, 금감위

나.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전 부처
② 원격의료제도 도입	복지부
③ 전자의무기록제도의 도입	복지부
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개선	복지부

구 분	추진부처
⑥ 출판산업진흥과 도서관정보화	문광부
⑦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합리화	문광부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자부
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재경부
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통부
② 지적전산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행자부
③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	건교부
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건교부, 행자부
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개선	건교부
⑥ 수치지도 갱신관련제도개선	건교부
⑦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보완	건교부
⑧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촉진	건교부
⑨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건교부
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건교부

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3-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	교육부
② 창의적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개편	교육부
③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방안	교육부
④ 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교육부
⑤ 학원설립·운영제도 개선	교육부
⑥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부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부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교육부

구 분	추진부처
3-2. 새로운 직업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① 직업교육·훈련제도개혁	노동부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노동부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교육부, 노동부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노동부
⑤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개선	노동부
⑥ 계약직 근로계약관련규제개혁	노동부
⑦ 여성보호제도개혁	노동부
⑧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규제개혁	노동부
⑨ 퇴직금 및 퇴직총당금제도개혁	노동부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노동부
⑪ 근로자공급사업 관련규제개혁	노동부

라.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제도정비

구 분	추진부처
①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인증제도개선	산자부, 정통부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공정위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
④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정통부
⑤ 민간부문 개인정보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정통부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정통부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정통부
⑧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	정통부, 청보위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체제 정비	정통부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정통부

※ 지식정보화 과제명은 실제 정비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제목이 변경되는 등 위 목록과 다르게 표현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요망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분 야	과 제 명	비 고
재정금융(4)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여신전문금융협회 정회원 및 가맹점 공동망가입 관련규제 완화 상호신용금고의 점포설치규제 완화 투산업관련 공시제도의 개선	재경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재경부, 금감위
산업건설(4)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지리정보 유통관련 제도정비 건설기능인력 DB 구축 산업단지 관리기관 범위 확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정통부, 건교부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교 육(4)	교육과정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학교운영관련 제도개선 사회교육체제 운영관련 규제개혁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보건의료(3)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의약품 등 구매·유통의 편의 및 효율화 의료서비스 취약분야 보완·발전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일반행정(2)	전자정부 구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	행자부 외 행자부 외
노 동(3)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농작업 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 국가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관련규제 개혁방안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정보통신(6)	요금규제제도 개선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주파수 경매제도의 시행 소출력 FM 방송제도 개선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농 립(2)	유통 농산물의 종량허용오차 개선 포장 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 정비	농림부 농림부
과학기술(1)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기부

제4절 _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정부는 지난 1998. 6.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신설 · 강화규제 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 · 강화의 타당성을 자체 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 · 강화규제 중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 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508차례에 걸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50개 법령, 3,621건의 신설 · 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2,381건(65.8%)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902건(24.9%)에 대해서는 개선을, 338건(8.5%)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고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1998~2001)

구 분	연도별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 수	심사 결과(%)		
				개선권고	철회권고	원안수용
경제1분과	1998		162	49(30.3)	13(8.0)	100(61.7)
	1999	148	245	51(20.8)	36(18.8)	158(60.4)
	2000	195	424	108(25.5)	35(8.3)	281(66.2)
	2001	119	475	179(37.7)	28(5.9)	268(56.4)
	계	462	1,306	387(29.6)	112(8.6)	807(61.8)
행정사회분과	1998		204	26(12.7)	27(13.2)	151(74.1)
	1999	113	245	52(21.2)	67(27.3)	126(51.4)
	2000	122	338	109(32.2)	37(11.0)	192(56.8)
	2001	75	361	67(18.3)	48(13.3)	246(68.4)
	계	310	1,148	254(22.0)	179(15.6)	715(62.4)
경제2분과	1998		207	37(17.9)	12(5.8)	158(76.3)
	1999	96	247	73(29.6)	-	174(70.4)
	2000	89	340	89(26.2)	22(6.5)	229(67.4)
	2001	93	373	62(16.6)	13(3.5)	298(79.9)
	계	278	1,167	261(22.4)	47(4.0)	859(73.6)
총 계		1,050	3,621	902(24.9)	338(9.3)	2,381(65.8)

※ 1999년도 법령수는 1998년도 법령수를 포함

제5절 _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2000년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내규,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정관, 내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 즉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국무총리 지시 1999-27호)에 포함,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0. 5월 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1차 집계한 결과 하위규제 419건(폐지 345건, 개선 74건), 유사행정규제 121건(폐지 41건, 개선 80건) 등 총 540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나, 상당수의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 등이 누락되어 2000. 5. 25일 정비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 부처별로 정비작업반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과 누락된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를 추가할 것을 재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0월 전 중앙행정기관의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재접수한 결과 하위규제는 798건이 추가된 1,217건(폐지 549건, 개선 668건), 유사행정규제는 1,087건이 추가된 1,208건(폐지 927건, 개선 28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우선 이를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에 부처중심으로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당초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혁체감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실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중에 건설, 산업자원, 문화관광, 환경, 해양수산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유사행정규제 시범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동 작업 결과 5개 분야에서 유사행정규제 122건을 발굴하여 이 중 69건을 폐지하고 53건은 개선키로 하였다. 세부내역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절_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 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 계획’을 수립(1998. 3. 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1999. 2. 22일 인터넷(<http://www.rrc.go.kr>)을 통하여 등록된 규제를 외부에 공개하였다. 2002. 4. 3일 현재 539,517명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사무명·내용에 대한 용어검색을 통해 관련 규제목록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며,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gcc.go.kr>)와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 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 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다. 이후 기존 규제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규제사무의 신설 등 증감변화를 거쳐 2002. 4 현재 최초 등록 대비 3,408건이 감소한 7,309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다. 규제사무의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신설된 규제사무수가 1,219건, 누락된 규제사무를 추가로 등락한 것이 576건이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기존 규제정비(폐지)로 인한 규제사무수 감소가 4,717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규제수 및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에 관한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단위 : 건, 2002. 4. 3 기준)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증감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총 계	10,717	1219	576	301	4717	787	-3408	7309
여 성 부	0	7	0	29	0	0	36	36
국무조정실	0	0	0	7	0	0	7	7
국가보훈처	85	4	0	0	42	0	-38	47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공정거래위	75	11	3	8	15	0	7	82	
청소년보호위	23	3	0	0	0	0	3	26	
금융감독위	548	130	125	20	270	20	-15	533	
부패방지위	0	3	0	0	0	0	3	3	
재정경제부	500	107	49	5	211	24	-74	426	
통 일 부	57	4	0	0	18	11	-25	32	
외교통상부	40	3	0	0	6	6	-9	31	
법 무 부	88	25	0	0	5	6	14	102	
국 방 부	37	0	0	0	15	9	-24	13	
행정자치부	484	31	4	8	182	6	-145	339	
교육인적자원부	269	25	2	2	133	26	-130	139	
과학기술부	426	16	19	0	223	31	-219	207	
문화관광부	401	28	0	0	145	96	-213	188	
농 립 부	682	113	27	28	322	41	-195	487	
산업자원부	667	71	9	13	364	10	-281	386	
정보통신부	370	69	16	18	190	31	-118	252	
보건복지부	1625	93	13	37	764	241	-862	763	
환 경 부	643	65	25	33	160	30	-67	576	
노 동 부	335	71	54	4	135	10	-16	319	
건설교통부	900	118	142	6	394	20	-148	752	
해양수산부	763	125	55	20	376	45	-221	542	
국 세 청	27	0	0	0	7	0	-7	20	
관 세 청	220	0	0	0	101	0	-101	119	
조 달 청	27	4	2	0	21	0	-15	12	
통 계 청	10	0	1	0	7	0	-6	4	
병 무 청	29	0	0	0	2	0	-2	27	
경 찰 청	382	13	2	30	140	46	-141	241	
기 상 청	28	0	0	0	14	0	-14	14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증감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농촌진흥청	14	1	0	0	7	0	-6	8
산림청	254	11	7	31	99	58	-108	146
중소기업청	84	5	12	0	47	2	-32	52
특허청	60	1	6	0	26	1	-20	40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4	0	2	128	1	-123	133
철도청	53	0	2	0	26	1	-25	28
해양경찰청	122	20	0	0	57	13	-50	72
문화재청	133	6	0	0	65	2	-61	72
방송위원회	0	32	1	0	0	0	33	33

주 : 본 규제등록 내용은 등록 전 규제 폐지, 규제정비계획의 변경 또는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정비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상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8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규제사무 10,717건 중 보건복지부가 1,625건, 건설교통부가 900건, 해양수산부가 763건 등의 순이었으며, 2001. 6월 기준으로 볼 때는 등록된 총규제사무 7,107건 중 보건복지부가 756건, 건설교통부가 744건, 해양수산부가 496건 등의 순이었다.

<표 2> 중앙행정기관별 · 연도별 등록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보건복지부	1,625	1,643	1,066	875	756
건설교통부	900	882	837	700	744
해양수산부	763	779	500	496	496
농림부	682	709	486	438	485
산업자원부	667	667	343	351	359
환경부	643	656	574	566	565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금융감독위	548	548	402	521	552
재정경제부	500	474	315	377	412
행정자치부	484	484	366	319	319
과학기술부	426	426	220	210	209
문화관광부	401	401	317	194	194
경 찰 청	382	382	311	240	240
정보통신부	370	348	226	228	229
노 동 부	335	337	245	253	267
교육인적자원부	269	269	183	167	167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198	165	138	131
산 림 청	254	260	176	137	137
관 세 청	220	220	119	119	119
문 화 재 청	133	133	70	70	70
해양경찰청	122	116	53	72	72
법 무 부	88	88	93	93	108
국가보훈처	85	82	46	48	46
중소기업청	84	84	44	46	46
공정거래위	75	75	78	82	82
특 허 청	60	48	37	43	43
통 일 부	57	57	39	32	32
철 도 청	53	51	29	29	28
외교통상부	40	40	38	31	31
국 방 부	37	37	22	13	13
병 무 청	29	29	27	27	27
기 상 청	28	28	14	14	14
국 세 청	27	24	20	20	20
조 달 청	27	27	11	11	11
청소년보호위	23	23	23	26	26
농촌진흥청	14	10	7	7	8
통 계 청	10	10	4	4	4
국무조정실	-	-	-	7	7
방송위원회	-	-	-	32	32
여 성 부	-	-	6	6	6

등록된 규제사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8. 8월 기준으로 인허가·면허 등이 2,562건, 확인·증명 등이 619건, 지도·단속 등이 1,723건, 의무·금지 등이 5,813 건이었으며, 규제개혁 4차년도인 2001. 6월 기준으로는 인허가·면허 등이 1,548건, 확인·증명 등이 439건, 지도·단속 등이 1,197건, 의무·금지 등이 3,924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시장진입규제와 관련이 깊은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등록의무·보고의무와 관련한 규제사무가 1998. 8월 기준으로 총 2,293건이었으나, 2001. 6월 기준으로 볼 때 62% 수준인 1,422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으로 시장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하겠으며, 이는 곧 시장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표 3〉 유형별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인 허 가 · 면 허 증	소 계	2,562	2,523	1,761	1,623	1,548
	허 가	669	657	524	459	420
	인 가	270	272	190	195	190
	면 허	74	72	66	64	56
	특 허	19	19	13	13	13
	승 인	642	627	368	336	301
	지 정	360	352	248	212	206
	추 천	26	24	18	18	18
	동 의	23	23	8	8	8
	기타1	479	477	326	318	336
확 인 · 증 명 등	소 계	619	599	460	433	439
	시 험	51	56	45	43	43
	검 사	276	254	223	205	204
	인 정	47	47	36	34	37
	확 인	93	92	66	61	62
	증 명	40	40	30	29	30
	기타2	112	110	60	61	63

연도별 유형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소 계	1,723	1,718	1,272	1,180
지 도 · 단 속 등	결 정	42	42	32	31	33
	명 령	555	55	372	338	332
	지 도	228	223	123	110	130
	단 속	76	78	66	59	58
	행정질서벌	648	648	553	526	526
	행정형벌	11	10	3	2	2
	기 타 3	163	162	123	114	116
의 무 · 금 지 등	소 계	5,813	5,805	4,019	3,807	3,294
	신고의무	1,040	1,031	593	542	593
	보고의무	464	457	233	202	209
	등록의무	204	205	160	161	192
	고용의무	55	56	44	42	44
	통지의무	60	62	41	38	41
	제출의무	280	277	166	156	158
	기준설정	1,495	1,498	1,155	1,139	1,154
	금 지	758	759	592	570	604
기 타 4	1,457	1,460	1,035	957	92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규제일몰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당해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1. 6월 현재 존속기한을 설정한 규제사무의 수는 32건에 이르고 있다.

〈표 4〉 존속기한 설정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존속기한 미설정	10,703	10,631	7,496	7,029	7,075
존속기한 설정	14	14	16	19	32

제7절 _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집필자 : 임규호 사무관(Tel. 3703-3936, kh6663@opc.go.kr)

1.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 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신고·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 아울러, 인터넷에 규제개혁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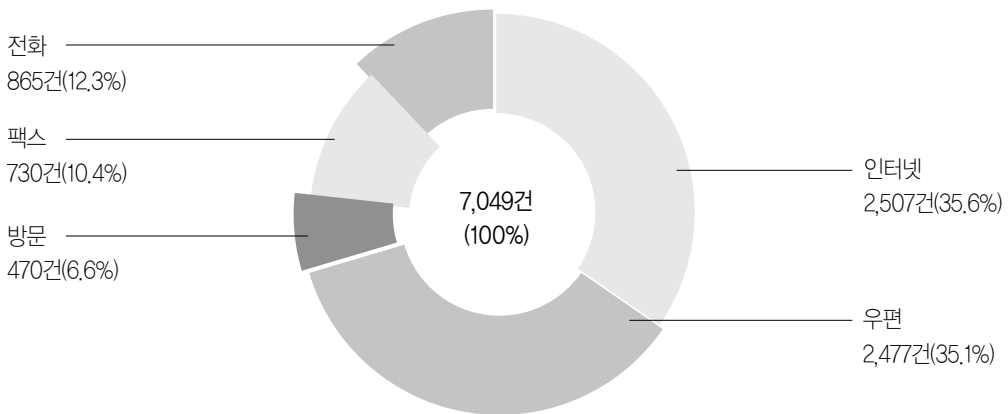
<규제개혁건의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206호실)
- 전 화 : 02-722-9797, 722-1017
- F A X : 02-720-2056, 인터넷 : <http://www.rrc.go.kr>

2. 국민제안 접수 · 처리실적

-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제안은 총 7,049건으로 연평균 1,750여 건 내외이며, 제안방법은 인터넷 접수가 2,507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35.1%), 전화(12.3%), 팩스(10.4%), 방문접수(6.6%)순이었으나, 2001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 건수의 67%(879건)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접수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제안 실태



- 제안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축분야 733건(10.4%), 운송·물류 관련 720건(10.2%), 경찰·교통분야 499건(7.1%), 보건·위생분야 475건(6.7%)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행정일반	210	재정경제	401	건 설	210
국적·출입국	36	전 매	60	수자원	16
법 무	96	금융·통화	110	보건·위생	475
민 사	22	농지·농정	193	의료·약사	163
형사·교정	4	축 산	28	사회복지	126
지방행정	275	산 림	69	환 경	281
경찰·교통	499	수 산	29	노 동	223
소방·민방위	95	무 역	7	관 광	13
군사·병무	103	상·공업	115	운송·물류	720
국가보훈	23	공업소유권	26	해운·항만	36
체육·청소년	76	에너지	217	정보통신	92
교육·학술	357	국토·도시개발	208	외무·여권	5
문화·공보	370	주택·건축	733	기 타	160
과학·기술	18	토지·지적	149	계	7,049

- 제안 소관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1,976건(28.0%), 보건복지부 722건(10.2%), 행정자치부 568건(8.1%), 경찰청 500건(7.1%), 문화관광부 386건(5.5%), 교육인적자원부 376건(5.3%)순으로 상위 6개 부처 소관 제안수가 총 4,528건(64%)에 이르러, 건설교통·복지·노동·지방행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제안이 많은 분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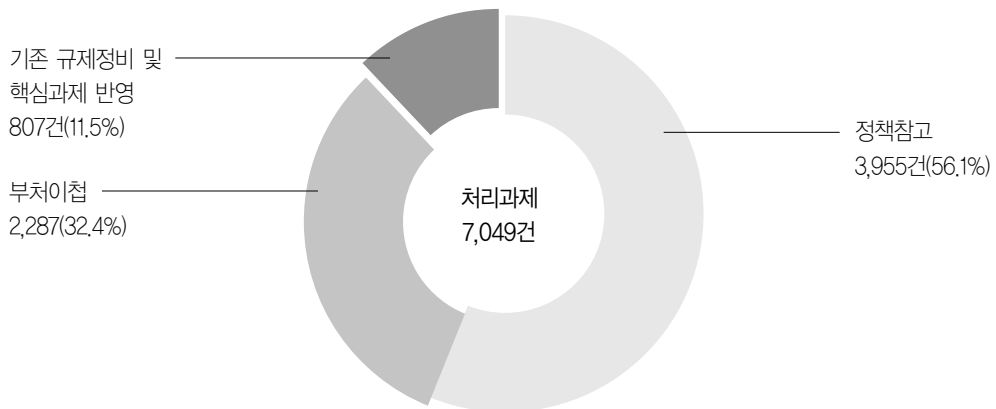
소관 부처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기획예산위	3	국방부	33	조달청	18
여성부	0	행정자치부	568	통계청	1
중소기업특별위	0	교육인적자원부	376	대검찰청	1
국무조정실	24	과학기술부	8	병무청	71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국무총리비서실	2	문화관광부	386	경찰청	500
국정홍보처	0	농림부	217	기상청	0
법제처	1	산업자원부	397	농촌진흥청	0
국가보훈처	24	정보통신부	93	산림청	67
공정거래위	27	보건복지부	722	중소기업청	29
비상기획위	0	환경부	289	특허청	18
청소년보호위	43	노동부	232	식약청	30
금융감독위	71	건설교통부	1,976	철도청	10
재정경제부	356	해양수산부	65	해양경찰청	3
통일부	1	예산청	0	문화재청	9
외교통상부	24	국세청	76	부처 공통	4
법무부	146	관세청	28	기타	101
				계	7,049

- 이러한 제안과제 7,049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반영 등 규제개혁과제 반영 807건(11.5%), 정책 참고 3,955건(56.1%), 부처이첩 2,287건(32.4%) 등으로 단순정책참고 및 개인민원성격 제안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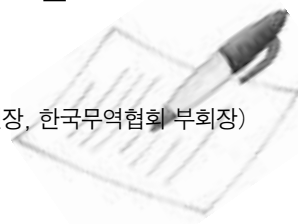


3. 평가 및 향후계획

- 지난 4년 간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7,000여 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제안의 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민원사항과 개인의 편의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이상과 현실

조건호(경제2분과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성장과정의 이면에는 이러한 압축적 발전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외국상품의 진입을 유무형의 장벽으로 가로막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막아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은 규제의 순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규제들이 기업 및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규제이든지 집행과 준수에 있어 국민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합하면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잡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제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며 투명

한 사회건설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규제가 철폐되는 한편으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규제도 수시로 신설되고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인증 등 국가표준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뱅킹의 확산, 전자화폐제도, 사이버교육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되,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안전·보전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는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규제 비용·효과 분석제도」를 내실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속여부를 재평가하는 「규제일몰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정권초기에 반짝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효과 역시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규제개혁은 양적인 정비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규제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에 수반되는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문 / 사회규제 강화에도 한계는 있다 · 117

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추진개요 · 121

제2절 추진실적 · 123

1. 제1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3
2. 제2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5
3. 제3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27
4. 제4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30
5. 제5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32

기고문 /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 140

제5장)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 145

1.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방안(건교부) · 145
 2.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산자부) · 148
-

3. 단체표준의 활성화(산자부) · 150
4.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산자부) · 153
5.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특허청) · 155
6.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통계청) · 157
7. 생명공학관련 법령정비(복지부 · 과기부) · 159
8.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재경부) · 162
9.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재경부) · 163
10.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재경부 · 금감위) · 164
11.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재경부) · 165
12.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 166
13.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금감위) · 167
14.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168
15.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복지부) · 169
16.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복지부) · 170
17.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복지부) · 171

제2절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173

1. 원격의료제도 도입(복지부) · 173
2. 전자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복지부) · 175
3.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복지부) · 176
4.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복지부) · 177
5.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공정위 · 행자부 · 산자부 · 법무부) · 178
6.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179
7. 전자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산자부) · 180

8.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정통부) · 182
9. 공간정보의 유통 · 활용범위 확대(건교부) · 183
10.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건교부) · 186
11.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개선(건교부) · 190
12. 공공부문 수집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방안(건교부) · 195
13.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지정제도 개선(건교부) · 199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202

1. Cyber교육체제의 구축 · 운영(교육부) · 202
2.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경쟁 제고방안(교육부) · 203
3. 교과서 발행 · 공급 규제개혁(교육부) · 204
4. 학원설립 · 운영제도 개선 · 205
5.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교육부) · 206
6.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법 · 제도정비(교육부) · 206
7. 직업교육 · 훈련제도 개혁(노동부) · 207
8.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노동부) · 210
9. 휴일 · 휴가제도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노동부) · 212
10.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15
11. 여성보호제도 개혁(노동부) · 216
12.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19
13.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제도 개혁(노동부) · 222
14. 근로자 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226

제4절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 228

1. 우수 쇼핑몰 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산자부·정통부) · 228
2.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 · 229
3. 민간의 암호이용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정통부) · 231
4.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정통부) · 232

기고문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 · 233

제6장)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분야 · 237

1. 재경경제부 · 237
2. 관세청 · 252
3. 공정거래위원회 · 253

제2절 금융분야 · 257

1. 금융감독위원회 · 257

제3절 산업자원분야 · 272

1. 산업자원부 · 272
2. 중소기업청 · 300
3. 특허청 · 306

제4절 건설교통분야 · 308

1. 건설교통부 · 308
 2. 철도청 · 377
-

제5절 보건복지분야 · 382

1. 보건복지부 · 382

제6절 일반행정 · 법무 · 경찰분야 · 396

1. 행정자치부 · 396
2. 법무부 · 403
3. 경찰청 · 408

제7절 교육분야 · 413

1. 교육부 · 413

제8절 문화관광분야 · 419

1. 문화관광부 · 419
2. 문화재청 · 422
3. 방송위원회 · 424
4. 여성부 · 427
5. 청소년보호위원회 · 429

제9절 노동분야 · 432

1. 노동부 · 432

제10절 외교 · 국방 및 보존분야 · 458

1. 외교통상부 · 458
2. 통일부 · 458
3. 국방부 · 460
4. 병무청 · 460
5. 국가보훈처 · 460

제11절 환경분야 · 463

1. 환경부 · 463

제12절 해양수산분야 · 476

1. 해양수산부 · 476

제13절 농림분야 · 495

1. 농림부 · 495

2. 산림청 · 513

제14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 519

1. 과학기술부 · 519

2. 정보통신부 · 525

기고문 / 새로운 규제개혁 전략이 필요하다 · 533

제7장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 537

기고문 / 이제는 시스템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 541

제8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제1절 이행실태 점검개요 · 547

1.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 547
2. 점검결과 · 549

제2절 7차이행실태 점검 · 551

1. 점검개요 · 551
2. 점검결과 · 552

제3절 8차이행실태 점검 · 557

1. 점검개요 · 557

기고문 / 금융규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 559

제9장)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규제개혁 4년에 대한 종합평가 · 563

제2절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74

제3절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84

기고문 / 건설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592

제10장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기본 방향 · 599

제2절 세부 추진계획 · 600

제안 /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 보고체계 개선 필요 · 608

너무 하는군요... · 609

주력관리사(보) 법정교육과 공인중개사 사전교육 폐지 요청 · 611

부록 제1장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615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638

부록 제2장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645

제2절 경제1분과위원회 일지·665

제3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일지·673

제4절 경제2분과위원회 일지·680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경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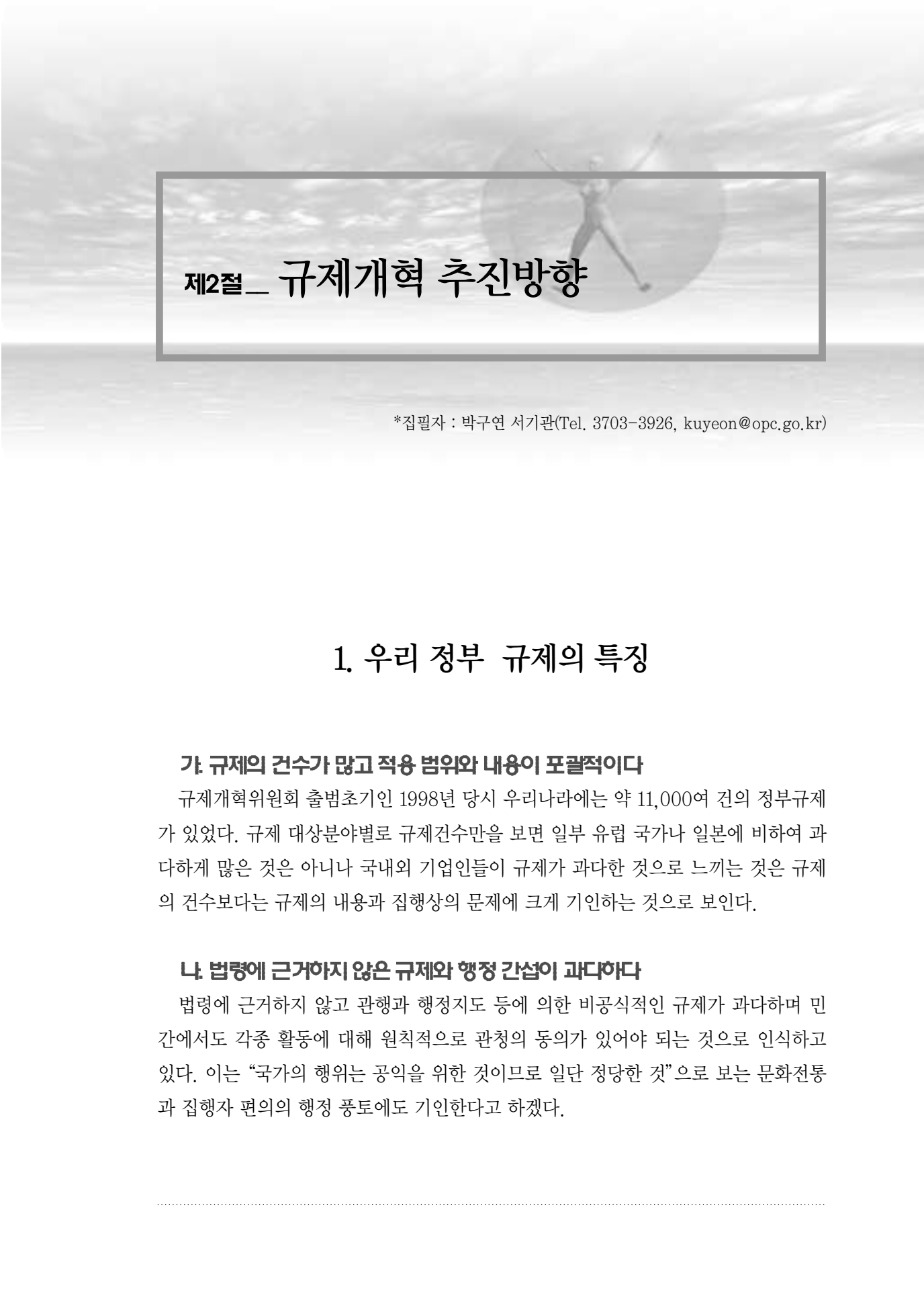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는 개방화·국제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보기술혁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물량적인 충격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경제 곳곳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치열한 자기혁신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관여나 통제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민간부문의 역량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IMF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메커니즘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시기에 형성된 각종 정부주도형 규범들을 국제화·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혁하고자 지난 1998년 이후 본격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1993년 문민정

부출범 이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간 약 6,0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된 바 있으며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이 추진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규제개혁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지엽적인 개선에 그침으로써 금융, 토지, 건축 등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근본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그 동안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억제 장치를 대신하는 항구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1998년 3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에 의거하여 1998년 4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전 중앙행정기관 기존규제를 절반수준 폐지하였으며, 법령 미근거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한편,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2절 _ 규제개혁 추진방향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1. 우리 정부 규제의 특징

가.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초기인 1998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 11,000여 건의 정부규제가 있었다. 규제 대상분야별로 규제건수만을 보면 일부 유럽 국가나 일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나 국내외 기업인들이 규제가 과다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규제의 건수보다는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이 과다하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과 행정지도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규제가 과다하며 민간에서도 각종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는 문화전통과 집행자 편의의 행정 풍토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다. 규제의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아 부정과 비리 발생의 소지가 크다

상당수의 정부규제가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피규제자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집행자가 과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미약하여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

라.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법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정서나 정치논리에 의해 규제하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많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낮은 준수율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마.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제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되어 있고, 규제수단도 획일적인 기준 부과 방식이어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규제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여러기관에 걸친 중복규제가 많다

여러 기관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복규제가 많고 또한 이들 중복규제의 집행이 분산된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과잉 집행되거나 범정부적인 일관성 결여가 심각한 문제이다.

2. 규제개혁의 필요성

가.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선결과제이다.

나.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받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통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라. 부정부패의 추방

규제가 심한 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왔으며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각종 부정과 비리가 유발돼 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부정부패가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제도의 국제화

국제화와 세계경제통합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선진 규제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3. 규제정비원칙

가. 사전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한 후 사후적 규제로 전환한다

사전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자에 대한 적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나.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을 초과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다.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고 필요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 주어진 규제 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한다.

라. 동일목적의 다른 규제 혹은 동일 내용을 다수의 기관에 중복 제출토록 하는 규제는 주된 규제에 통합 정비한다

중복규제 심사시 관련 기관 소관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통합하고 One-Stop-Service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 OECD 국가의 대다수가 갖고 있지 않은 규제는 우선적으로 폐지한다

해당 부처가 외국에서도 동일(유사)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제3절 _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규제개혁 추진체계

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다원화하여 추진하여 오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였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기구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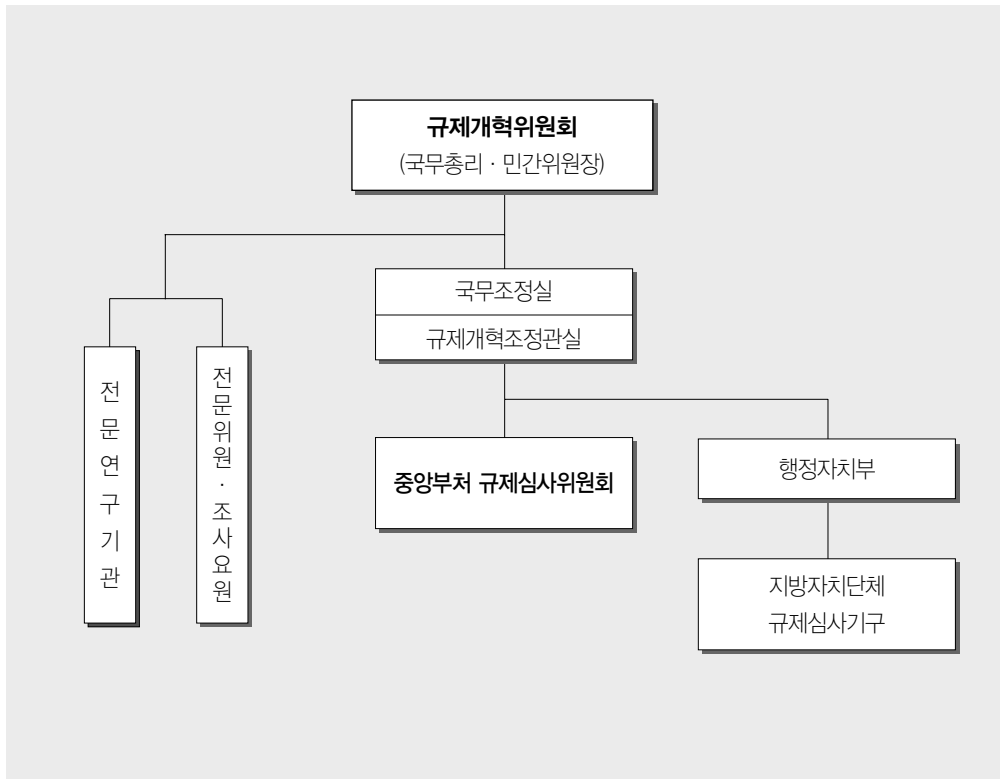
(2)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심사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

가.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1998. 4. 18)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02년 4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委員長	李漢東 安文錫	국무총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政府委員 (6)	田允喆 李根植 辛國煥 金昊植 李南基 朴燦柱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民間委員 (12)	金一燮 金在玉 金大煥 金周元 文貞淑 成樂五 申受娟 李啓民 李允鎬 鄭淳勳 趙健鎬 韓錠吉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영남일보 사장 (주)코리아스테파 사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무역협회 부회장 한남대학교 예우 교수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 구성

-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회의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격주 1회씩 개최하고 있다.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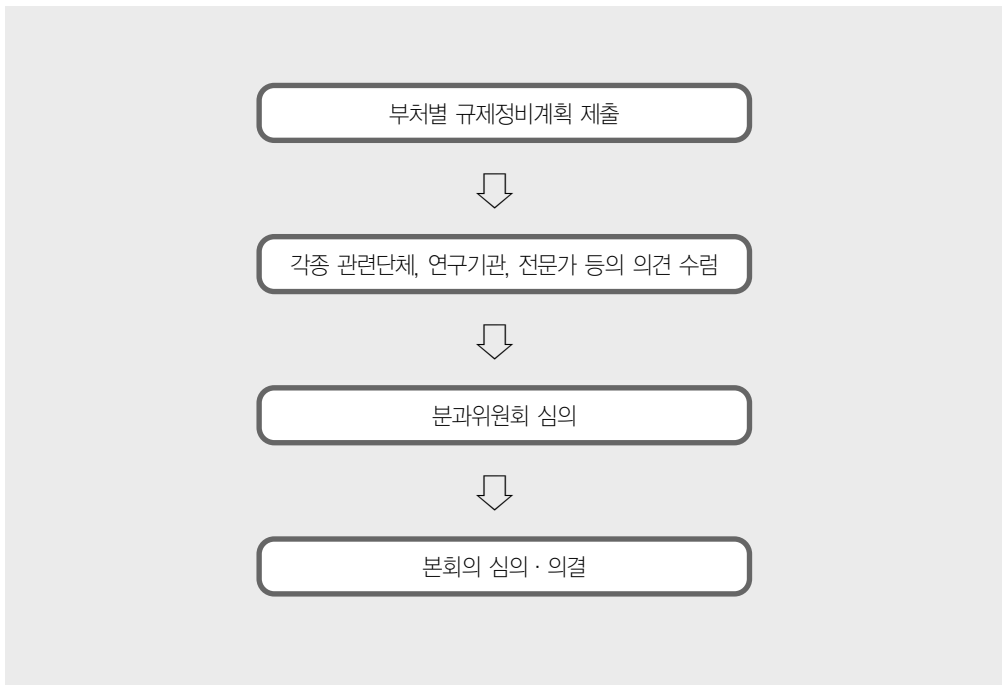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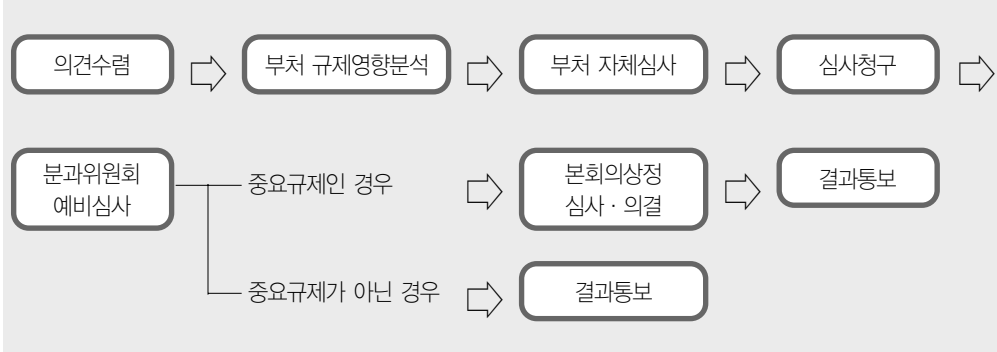
다. 심사절차

(1)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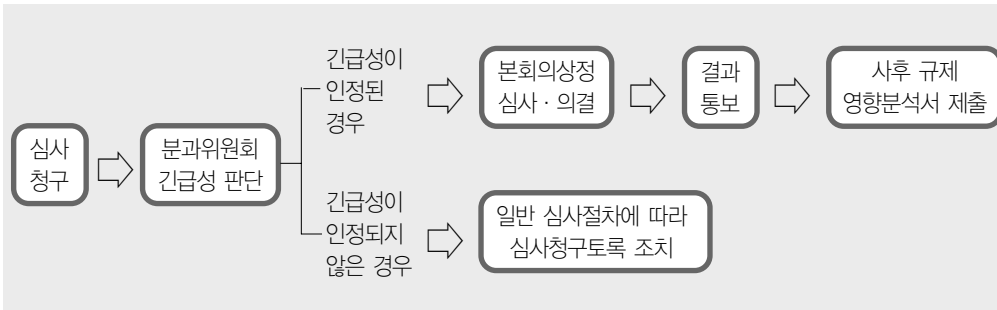


(2) 신설·강화규제 심사

• 일반적인 경우



- 긴급규제의 경우 :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60일 이내에 사후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3. 분과위원회

가.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

치하고 있다.(1998. 4.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2) 기능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 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인, 정부위원 3~4인 등 7~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02년 4월 현재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I	민간위원	金 一 燮(위원장) 李 允 鎬 金 在 玉 韓 錠 吉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13개 기관)
	정부위원	재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경제 II	민간위원	趙 建 鎬(위원장) 成 樂 五 金 大 煥 申 受 娟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9개 기관)
	정부위원	산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 정 사 회	민간위원	李 啓 民(위원장) 鄭 淳 勳 金 周 元 文 貞 淑	부패방지위원회,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 통일 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 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방송위 (18개 기관)
	정부위원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나.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위원회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규제등록의 요청 및 미등록 규제의 등록·정비계획 제출요구
 -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위원회 심사여부의 결정
 -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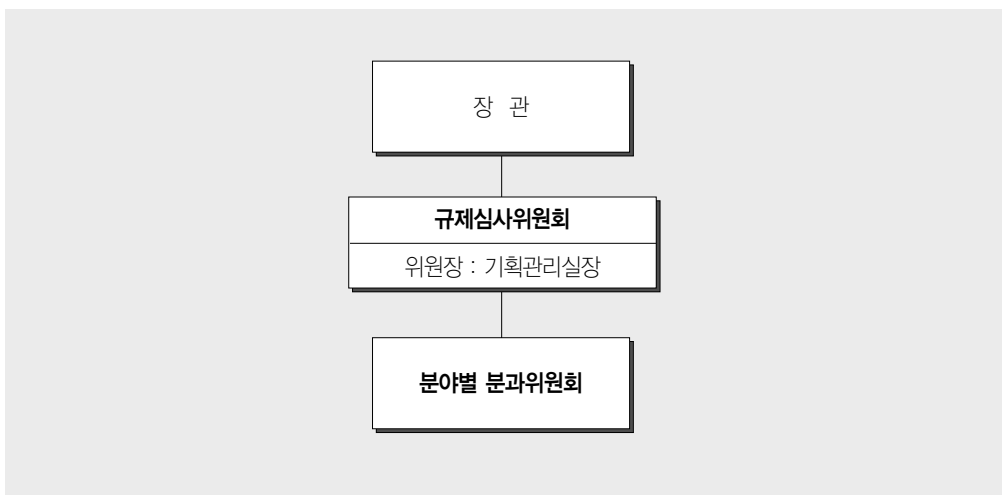
가) 기능

-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 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나) 구성

-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기구도



(2) 규제개혁 총괄부서

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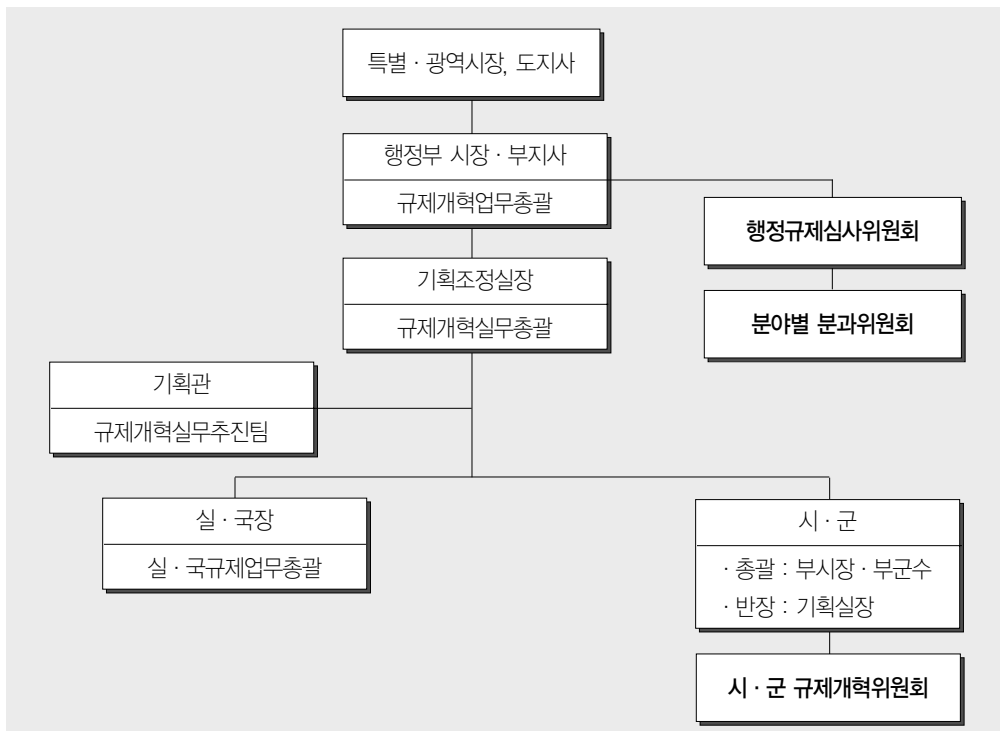
- 규제개혁업무 총괄 조정
- 각 실·국에 대한 규제개혁업무 지도
-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 정부내 규제개혁 관련 부서간 협조

나) 구성

-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행정관리(법무)담당관, 정책평가담당관 등이 담당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기능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2) 구성

- 시·도, 시군구별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하며

임인택(건설교통부 장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회생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지도 4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간 우리 사회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비효율성이 누적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양산된 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과거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탈바꿈시키고 공공부문의 권한과 간섭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리한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지식정보화 기반이 구축된 나라”를 만들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이 기울인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 결과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였고,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분야도 아직은 일부 남아 있고 추가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법규와 훈령·예규·고시 등 각종 하위 규정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여야겠습니다. 특히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토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글로벌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자유로운 연구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발굴·정비하여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미래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한 정성을 기울여 살펴보고 국민과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행정규제체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

조정제(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나는 규제개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2년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 기간은 나의 7개월 남짓의 장관 경력보다 더 사회에 기여한 것 같아 보였다.

사람이나 기업이 규제의 보호온실이나 칸막이 속에 살다보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칸막이 바깥과 경쟁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국제경쟁력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도 생기지 않는다. 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도 더 심한 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만 건이 넘는 규제를 초기 1년 만에 절반 이상을 폐지·완화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두르다 보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규제개혁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진작 당했고 이제야 그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규제개혁을 머뭇거리다가 구조적인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좋은 대조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왜 국제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규제외적인 문제도 없지 않는 것 같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생활

하기 편한 나라”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폐쇄적인 자세도 문제인 것 같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문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규제 외적인 큰 제약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규제의 철폐·완화의 내용과 집행과정도 아직 문제다. 규제완화를 실천·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규제 속에 익숙해진 집행자세를 고쳐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통 큰 개혁을 머뭇거린 것도 문제다. 수도권 규제, 동아매립지문제, 30대 재벌 규제, 외국기업에 비한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 등 큰 규제의 대담한 개혁을 머뭇거린 탓도 있으리라. 동아매립지는 서울-인천 사이에 자리잡은 황금의 땅이다. 이런 땅을 묶어놓고 어찌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늦게나마 경제특구를 지정한다니 천번만번 다행이다.

수도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세계시장의 경제전쟁은 월드컵 축구시합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단 1승이라고 거두려면 송종국, 최용수 등 최강의 국가 1진을 내보내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월드컵 같은 세계단일시장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을 제쳐 놓고 지방의 2진을 내보내서 이길 수 있을까? 수도권은 이제 경제 규제가 아닌 환경관리 및 규제로 대체해야 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은 국내문제로써 규제가 아닌 WTO체제가 허용하는 인프라시설, R&D 지원 등 시장경제 중심의 별도 유도조치로써 대처해야 한다. 독과점과 30대 재벌 문제도 이제 국내시장 차원이 아닌 세계시장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시대에서 살아 남고 번영하려면, 외국인의 눈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비춰져야 한다. 통 큰 중국식의 대담한 개혁을 기대해 본다.

제2장 국민의 정부 4년 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제4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절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제1절_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존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매 규제 한 건 한 건마다 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125건의 규제 중 5,430건(48.8%)을 폐지하고, 2,411건(21.7%)을 개선하였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 설립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선물거래업, 증권투신운용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시장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제한 31개 업종 개방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민간인들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단순의약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이 있다.

1999년에는 1998년도의 1단계 규제정비 이후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 “민간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저히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0개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잔존규제 총 6,811건(1998년도 신설규제 511건 포함)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집중 심사·조정하여 규제의 존치여부 및 품질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1999년도의 기존규제 정비결과 잔존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이 폐지되었으며, 570건(8.4%)이 개선

되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품질보증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권한의 민간이양,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대학원 정원 자율화,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 등록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도부터 정부는 지난 2년 간에 걸친 규제개혁으로 대부분의 개별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기존과 같은 규제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비방식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규제에 대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기존규제 정비방식을 전환, 분야별로 부처간 혹은 법령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6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점과제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참조)

제2절 —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개별규제의 정비 외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규제체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여 매년 중점규제개혁과제(1998년도 및 1999년도에는 핵심규제개혁과제, 2001년도에는 특정과제로 통칭)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중점규제개혁과제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우리 경제의 회생에 시급한 규제(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분야, 국민생활 불편 분야 등)와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복합규제로 일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 및 경제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거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개혁과제를 주로 선정하였으며, 과제 선정과정에서도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토록 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도에는 주택건설산업 관련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관련규제 개혁 등 37개의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전문자격사관련규제 개혁 방안 등 33개 과제의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등 5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 17개 중점과제(특정과제)를 추진하였다. 연도별 추진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1998년 (37개)	1. 주택건설산업관련규제 완화	건교부
	2.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	건교부
	3. 주차장관련규제개혁	건교부
	4. 건설기계·장비관련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 자동차관련 규제개혁(Ⅰ)	건교부
	6. 자동차관련 규제개혁(Ⅱ)	건교부
	7.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Ⅰ)(해운·항만분야)	해수부
	8.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Ⅱ)(철도·화물분야)	건교부
	9. 외국인 투자관련규제개혁방안	재경·산자부
	10. 수출입 통관관련규제개혁방안	관세청
	11. 주류분야규제개혁방안	국세청
	12. 벤처산업관련규제개혁	산자부등
	13. 관광산업분야규제개혁	문광부
	14. 풍속영업관련규제개혁	문광부
	15. 사업자단체의 기업활동규제개혁	공 통
	16.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개선	환경부
	17.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방안	공 통
	18. 수도권규제 합리화	건교부
	19. 금융산업 진입규제완화	재경부
	20. 금융산업 경영관련규제완화	재경부
	21. 해외건설분야규제개혁	건교부
	22. 감리제도규제개혁	건교부
	2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관련규제개혁	건교부
	24.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규제개혁	건교부
	25. 도·소매업관련규제개혁	산자부
	26. 농수산물유통규제개혁	농림부
	27. 정보통신관련규제개혁	정통부
	28. 문화재관련규제 합리화	문화재청
	29. 의료기기산업규제개혁	보건복지부
	30. 옥외광고제도규제개혁	행자부
	31.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규제완화	국방부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관리관련규제개선	공정위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33. 영화·영상·음반 등 규제개혁(일부반영)	문광부
	34. 법정업무 고용제도개혁	노동부
	35. 외국인 고용관련규제 합리화	산자부
	36. 각종 법령의 투명성 제고방안	공 통
	37.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제개혁(일부반영)	교육부
1999년 (33개)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산자부
	2.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공정위
	3. 전문자격사관련규제개혁방안	공 통
	4.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건교부
	5.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 구분 개선방안	건교부
	6.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정통부
	7.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합리화방안	노동부
	8.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합리화방안	건교부
	9.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해수부
	10.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농림부
	11.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산자부
	12.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규제 개혁방안	건교부
	13.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행자부
	14.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관련규제 개혁방안	공 통
	15.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공 통
	16.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규제개선방안	건교부
	17.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규제개선	보건복지부
	18. 기업의 준조세정비개혁방안	공 통
	19. 국가자격제도규제개혁방안	과기부
	20.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해수부
	21. 저작권관련규제개혁방안	특허청
	22. 국내기업 역차별관련 규제개혁	재경부
	23. 물류산업 규제개혁방안	산자부
	24.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5.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규제개혁방안	건교부
	26.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규제개혁	농림부
	27. 학원운영·설립관련규제개혁	교육부
	28.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공 통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29.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 추진계획 30. 문화산업 관련규제개혁 31. 규제대안개발 연구 3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33.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행자부 문광부 공 통 공정위 재경부
2000년 (56개)	1.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규제개선방안 2. 도시계획지역·지구제도 개선방안 3. 외국인 국내활동관련규제개혁방안 4. 임산물 굴취·채취·매각관련규제개혁방안 5. 사립학교 교장자격관련규제개선 6.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규제개선방안 7.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관련규제개선방안 8. 의료보험관련규제 개혁방안 9.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10. 축산업관련 진입규제개선방안 11.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 규제개선방안 12. 보험영업관련규제개혁방안 1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방안 14.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15. 증명민원서류 감축방안 16. 해운분야규제 개혁방안 17. 자동차 운전학원관련규제 개혁방안 18. 폐기물 재활용관련규제개선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규제개혁방안 20. 학원설립·운영관련규제개혁방안 21. 정보통신산업관련규제합리화 22.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3. 품질인증관련규제개혁 24.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간소화 25. 공공공사 입찰관련규제개선방안 26. 토지이용관련규제개혁방안 27. 병역특례제도관련규제개선 28. 전력기술관리관련규제개선방안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림청 교육부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재경부 중기청 공정위 행자부 해수부 경찰청 환경부 건교부 교육부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 농림부 조달청 건교부 병무청 산자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29. 문화재보호관련규제의 합리화	문화재청
	30. 전자직업소개업관련규제개혁	노동부
	31. 고용보험제도관련규제개혁	노동부
	32. 외국인학교설립관련규제개혁	교육부
	3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관련규제개혁	교육부
	34. 농촌개발 및 지원관련규제개선	농림부
	35.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규제의 합리화	산림청
	36.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해수부
	37. 금융업 진입규제 등 검엄관련규제개혁방안	재경부
	38. 금융기관 영업관련규제개혁방안	금감위
	39. 동일인 신용공여관련규제의 합리화	재경부
	40. 인감증명제도개선	행자부
	4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개선방안	산자부
	4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관련규제개혁	산자부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관련규제개혁	문광부
	44. 광고물관련규제의 합리화	행자부
	45. 에너지이용관련규제합리화방안	산자부
	46.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공정위
	47. 위탁대행기관관련규제개선	과기부
	48. 항만분야 규제개혁방안	해수부
	49. 건축관련규제개선	건교부
	50. 토지이용관련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1. 의약품 및 검사관련규제개혁	복지부
	52.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개선방안	환경부
	53.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규제개선방안	공정위
	54. 각종보세구역 지정·운영관련규제개선방안	관세청
	5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규제개선	중기청
	56. 수도권 산업입지관련규제개선	건교부
2001년 (17개)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 2.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3.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엄제한제도개선 4. 사회복지사업 관련규제 개혁방안 5. 관광산업관련규제 합리화	재경부 공정위 정통부 보건복지부 문광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6. 소음진동 측정관련 규제개선방안 7. 직업교육·훈련관련규제개혁방안 8.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 9. 소규모 농지거래 제한규제개선방안 10. 접도구역규제 개선방안 11. 체육시설 설치·운영관련규제개혁 12. 에너지 이용관련규제 합리화방안 13. 해양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4. 환경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방안 15. 농업인·농용시설 및 가축 등의 개념정비 및 범위 확대개선방안 16. 오수처리 및 정화조설치관련규제개선 17.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규제개혁	환경부 노동부 공정위 농림부 건설교통부 문광부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환경부 정통부
계	143개 과제	

제3절 _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우리 사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투입요소 확대 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지식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문제, 다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문제,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가 21세기 선진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규제개혁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는 금융, 건설 등 10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10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대상과제를 1차 선정하고 동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1개 최종 과제를 확정하여 이를 대통령께 보고(2000. 9. 19)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2000.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도 추진대상 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추진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방안이 완료단계에 이른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그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에 착수하여 9개 분야 29개 과제로 이루어진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를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2001. 11. 4)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중에 제2단계 지식정보화관련 29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으로 지식정보화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제1단계 및 제2단계 계획의 세부내용 및 제1단계 계획의 주요 추진실적은 제4장 참조)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가.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행자부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규제정비	행자부
③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의 신분확인관련규제개선	행자부
④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조달청
⑤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	건교부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①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	산자부
② 단체표준의 활성화	산자부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산자부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특허청
⑤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청

구 분	추진부처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청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특허청
⑧ 생명공학관련 법령정비	복지부, 과기부
⑨ 외국인투자제도규제개혁	산자부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개선	재경부
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개선	재경부, 금감위
1-3.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① 인터넷은행 설립규제개혁	재경부, 금감위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	재경부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⑤ 금융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금감위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재경부, 금감위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금감위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재경부
⑨ 투자자문업 운용인력보유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문광부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문광부
③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복지부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개선	복지부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복지부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행자부, 금감위

나.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전 부처
② 원격의료제도 도입	복지부
③ 전자의무기록제도의 도입	복지부
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개선	복지부

구 분	추진부처
⑥ 출판산업진흥과 도서관정보화	문광부
⑦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합리화	문광부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자부
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재경부
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통부
② 지적전산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행자부
③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	건교부
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건교부, 행자부
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개선	건교부
⑥ 수치지도 갱신관련제도개선	건교부
⑦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보완	건교부
⑧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촉진	건교부
⑨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건교부
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건교부

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3-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	교육부
② 창의적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개편	교육부
③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방안	교육부
④ 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교육부
⑤ 학원설립·운영제도 개선	교육부
⑥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부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부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교육부

구 분	추진부처
3-2. 새로운 직업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① 직업교육·훈련제도개혁	노동부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노동부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교육부, 노동부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노동부
⑤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개선	노동부
⑥ 계약직 근로계약관련규제개혁	노동부
⑦ 여성보호제도개혁	노동부
⑧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규제개혁	노동부
⑨ 퇴직금 및 퇴직총당금제도개혁	노동부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노동부
⑪ 근로자공급사업 관련규제개혁	노동부

라.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제도정비

구 분	추진부처
①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인증제도개선	산자부, 정통부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공정위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
④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정통부
⑤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정통부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정통부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정통부
⑧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	정통부, 청보위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체제 정비	정통부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정통부

※ 지식정보화 과제명은 실제 정비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제목이 변경되는 등 위 목록과 다르게 표현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요망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분 야	과 제 명	비 고
재정금융(4)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여신전문금융협회 정회원 및 가맹점 공동망가입 관련규제 완화 상호신용금고의 점포설치규제 완화 투산업관련 공시제도의 개선	재경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재경부, 금감위
산업건설(4)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지리정보 유통관련 제도정비 건설기능인력 DB 구축 산업단지 관리기관 범위 확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정통부, 건교부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교 육(4)	교육과정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학교운영관련 제도개선 사회교육체제 운영관련 규제개혁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보건의료(3)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의약품 등 구매·유통의 편의 및 효율화 의료서비스 취약분야 보완·발전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일반행정(2)	전자정부 구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	행자부 외 행자부 외
노 동(3)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농작업 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 국가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관련규제 개혁방안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정보통신(6)	요금규제제도 개선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주파수 경매제도의 시행 소출력 FM 방송제도 개선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농 립(2)	유통 농산물의 종량허용오차 개선 포장 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 정비	농림부 농림부
과학기술(1)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기부

제4절 _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정부는 지난 1998. 6.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신설 · 강화규제 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 · 강화의 타당성을 자체 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 · 강화규제 중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 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508차례에 걸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50개 법령, 3,621건의 신설 · 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2,381건(65.8%)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902건(24.9%)에 대해서는 개선을, 338건(8.5%)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고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1998~2001)

구 분	연도별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 수	심사 결과(%)		
				개선권고	철회권고	원안수용
경제1분과	1998		162	49(30.3)	13(8.0)	100(61.7)
	1999	148	245	51(20.8)	36(18.8)	158(60.4)
	2000	195	424	108(25.5)	35(8.3)	281(66.2)
	2001	119	475	179(37.7)	28(5.9)	268(56.4)
	계	462	1,306	387(29.6)	112(8.6)	807(61.8)
행정사회분과	1998		204	26(12.7)	27(13.2)	151(74.1)
	1999	113	245	52(21.2)	67(27.3)	126(51.4)
	2000	122	338	109(32.2)	37(11.0)	192(56.8)
	2001	75	361	67(18.3)	48(13.3)	246(68.4)
	계	310	1,148	254(22.0)	179(15.6)	715(62.4)
경제2분과	1998		207	37(17.9)	12(5.8)	158(76.3)
	1999	96	247	73(29.6)	-	174(70.4)
	2000	89	340	89(26.2)	22(6.5)	229(67.4)
	2001	93	373	62(16.6)	13(3.5)	298(79.9)
	계	278	1,167	261(22.4)	47(4.0)	859(73.6)
총 계		1,050	3,621	902(24.9)	338(9.3)	2,381(65.8)

※ 1999년도 법령수는 1998년도 법령수를 포함

제5절 _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2000년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내규,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정관, 내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 즉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국무총리 지시 1999-27호)에 포함,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0. 5월 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1차 집계한 결과 하위규제 419건(폐지 345건, 개선 74건), 유사행정규제 121건(폐지 41건, 개선 80건) 등 총 540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나, 상당수의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 등이 누락되어 2000. 5. 25일 정비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 부처별로 정비작업반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과 누락된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를 추가할 것을 재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0월 전 중앙행정기관의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재접수한 결과 하위규제는 798건이 추가된 1,217건(폐지 549건, 개선 668건), 유사행정규제는 1,087건이 추가된 1,208건(폐지 927건, 개선 28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우선 이를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에 부처중심으로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당초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혁체감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실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중에 건설, 산업자원, 문화관광, 환경, 해양수산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유사행정규제 시범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동 작업 결과 5개 분야에서 유사행정규제 122건을 발굴하여 이 중 69건을 폐지하고 53건은 개선키로 하였다. 세부내역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절_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 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 계획’을 수립(1998. 3. 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1999. 2. 22일 인터넷(<http://www.rrc.go.kr>)을 통하여 등록된 규제를 외부에 공개하였다. 2002. 4. 3일 현재 539,517명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사무명·내용에 대한 용어검색을 통해 관련 규제목록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며,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gcc.go.kr>)와 총리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 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 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다. 이후 기존 규제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규제사무의 신설 등 증감변화를 거쳐 2002. 4 현재 최초 등록 대비 3,408건이 감소한 7,309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다. 규제사무의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신설된 규제사무수가 1,219건, 누락된 규제사무를 추가로 등락한 것이 576건이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기존 규제정비(폐지)로 인한 규제사무수 감소가 4,717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규제수 및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에 관한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단위 : 건, 2002. 4. 3 기준)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증감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총 계	10,717	1219	576	301	4717	787	-3408	7309
여 성 부	0	7	0	29	0	0	36	36
국무조정실	0	0	0	7	0	0	7	7
국가보훈처	85	4	0	0	42	0	-38	47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공정거래위	75	11	3	8	15	0	7	82	
청소년보호위	23	3	0	0	0	0	3	26	
금융감독위	548	130	125	20	270	20	-15	533	
부패방지위	0	3	0	0	0	0	3	3	
재정경제부	500	107	49	5	211	24	-74	426	
통 일 부	57	4	0	0	18	11	-25	32	
외교통상부	40	3	0	0	6	6	-9	31	
법 무 부	88	25	0	0	5	6	14	102	
국 방 부	37	0	0	0	15	9	-24	13	
행정자치부	484	31	4	8	182	6	-145	339	
교육인적자원부	269	25	2	2	133	26	-130	139	
과학기술부	426	16	19	0	223	31	-219	207	
문화관광부	401	28	0	0	145	96	-213	188	
농 립 부	682	113	27	28	322	41	-195	487	
산업자원부	667	71	9	13	364	10	-281	386	
정보통신부	370	69	16	18	190	31	-118	252	
보건복지부	1625	93	13	37	764	241	-862	763	
환 경 부	643	65	25	33	160	30	-67	576	
노 동 부	335	71	54	4	135	10	-16	319	
건설교통부	900	118	142	6	394	20	-148	752	
해양수산부	763	125	55	20	376	45	-221	542	
국 세 청	27	0	0	0	7	0	-7	20	
관 세 청	220	0	0	0	101	0	-101	119	
조 달 청	27	4	2	0	21	0	-15	12	
통 계 청	10	0	1	0	7	0	-6	4	
병 무 청	29	0	0	0	2	0	-2	27	
경 찰 청	382	13	2	30	140	46	-141	241	
기 상 청	28	0	0	0	14	0	-14	14	

소관부처	최초(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가			감소		증감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농촌진흥청	14	1	0	0	7	0	-6	8
산림청	254	11	7	31	99	58	-108	146
중소기업청	84	5	12	0	47	2	-32	52
특허청	60	1	6	0	26	1	-20	40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4	0	2	128	1	-123	133
철도청	53	0	2	0	26	1	-25	28
해양경찰청	122	20	0	0	57	13	-50	72
문화재청	133	6	0	0	65	2	-61	72
방송위원회	0	32	1	0	0	0	33	33

주 : 본 규제등록 내용은 등록 전 규제 폐지, 규제정비계획의 변경 또는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정비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상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8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규제사무 10,717건 중 보건복지부가 1,625건, 건설교통부가 900건, 해양수산부가 763건 등의 순이었으며, 2001. 6월 기준으로 볼 때는 등록된 총규제사무 7,107건 중 보건복지부가 756건, 건설교통부가 744건, 해양수산부가 496건 등의 순이었다.

<표 2> 중앙행정기관별 · 연도별 등록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보건복지부	1,625	1,643	1,066	875	756
건설교통부	900	882	837	700	744
해양수산부	763	779	500	496	496
농림부	682	709	486	438	485
산업자원부	667	667	343	351	359
환경부	643	656	574	566	565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금융감독위	548	548	402	521	552
재정경제부	500	474	315	377	412
행정자치부	484	484	366	319	319
과학기술부	426	426	220	210	209
문화관광부	401	401	317	194	194
경 찰 청	382	382	311	240	240
정보통신부	370	348	226	228	229
노 동 부	335	337	245	253	267
교육인적자원부	269	269	183	167	167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198	165	138	131
산 림 청	254	260	176	137	137
관 세 청	220	220	119	119	119
문 화 재 청	133	133	70	70	70
해양경찰청	122	116	53	72	72
법 무 부	88	88	93	93	108
국가보훈처	85	82	46	48	46
중소기업청	84	84	44	46	46
공정거래위	75	75	78	82	82
특 허 청	60	48	37	43	43
통 일 부	57	57	39	32	32
철 도 청	53	51	29	29	28
외교통상부	40	40	38	31	31
국 방 부	37	37	22	13	13
병 무 청	29	29	27	27	27
기 상 청	28	28	14	14	14
국 세 청	27	24	20	20	20
조 달 청	27	27	11	11	11
청소년보호위	23	23	23	26	26
농촌진흥청	14	10	7	7	8
통 계 청	10	10	4	4	4
국무조정실	-	-	-	7	7
방송위원회	-	-	-	32	32
여 성 부	-	-	6	6	6

등록된 규제사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8. 8월 기준으로 인허가·면허 등이 2,562건, 확인·증명 등이 619건, 지도·단속 등이 1,723건, 의무·금지 등이 5,813 건이었으며, 규제개혁 4차년도인 2001. 6월 기준으로는 인허가·면허 등이 1,548건, 확인·증명 등이 439건, 지도·단속 등이 1,197건, 의무·금지 등이 3,924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시장진입규제와 관련이 깊은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등록의무·보고의무와 관련한 규제사무가 1998. 8월 기준으로 총 2,293건이었으나, 2001. 6월 기준으로 볼 때 62% 수준인 1,422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으로 시장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하겠으며, 이는 곧 시장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표 3〉 유형별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인 허 가 · 면 허 증	소 계	2,562	2,523	1,761	1,623	1,548
	허 가	669	657	524	459	420
	인 가	270	272	190	195	190
	면 허	74	72	66	64	56
	특 허	19	19	13	13	13
	승 인	642	627	368	336	301
	지 정	360	352	248	212	206
	추 천	26	24	18	18	18
	동 의	23	23	8	8	8
	기타1	479	477	326	318	336
확 인 · 증 명 등	소 계	619	599	460	433	439
	시 험	51	56	45	43	43
	검 사	276	254	223	205	204
	인 정	47	47	36	34	37
	확 인	93	92	66	61	62
	증 명	40	40	30	29	30
	기타2	112	110	60	61	63

연도별 유형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소 계	1,723	1,718	1,272	1,180
지 도 · 단 속 등	결 정	42	42	32	31	33
	명 령	555	55	372	338	332
	지 도	228	223	123	110	130
	단 속	76	78	66	59	58
	행정질서벌	648	648	553	526	526
	행정형벌	11	10	3	2	2
	기 타 3	163	162	123	114	116
의 무 · 금 지 등	소 계	5,813	5,805	4,019	3,807	3,294
	신고의무	1,040	1,031	593	542	593
	보고의무	464	457	233	202	209
	등록의무	204	205	160	161	192
	고용의무	55	56	44	42	44
	통지의무	60	62	41	38	41
	제출의무	280	277	166	156	158
	기준설정	1,495	1,498	1,155	1,139	1,154
	금 지	758	759	592	570	604
기 타 4	1,457	1,460	1,035	957	92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규제일몰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당해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1. 6월 현재 존속기한을 설정한 규제사무의 수는 32건에 이르고 있다.

〈표 4〉 존속기한 설정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6
총 계	10,717	10,645	7,512	7,042	7,107
존속기한 미설정	10,703	10,631	7,496	7,029	7,075
존속기한 설정	14	14	16	19	32

제7절 _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집필자 : 임규호 사무관(Tel. 3703-3936, kh6663@opc.go.kr)

1.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 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 전화신고 ·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 아울러, 인터넷에 규제개혁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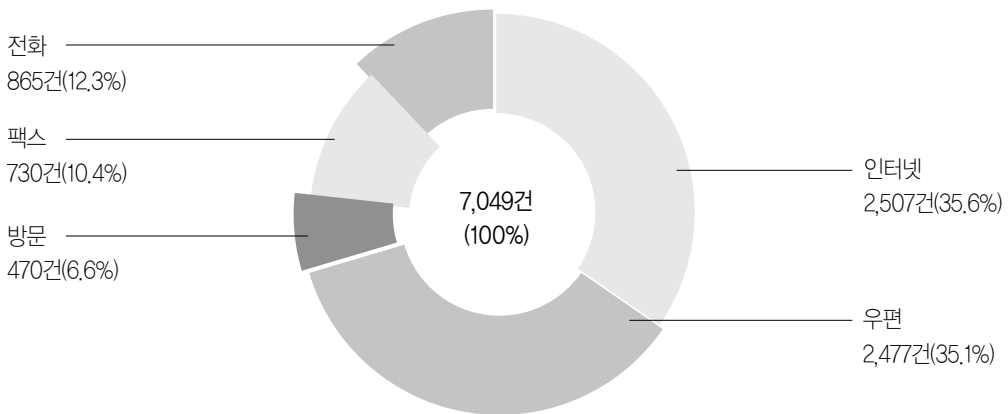
<규제개혁건의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206호실)
- 전 화 : 02-722-9797, 722-1017
- F A X : 02-720-2056, 인터넷 : <http://www.rrc.go.kr>

2. 국민제안 접수 · 처리실적

-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제안은 총 7,049건으로 연평균 1,750여 건 내외이며, 제안방법은 인터넷 접수가 2,507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35.1%), 전화(12.3%), 팩스(10.4%), 방문접수(6.6%)순이었으나, 2001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 건수의 67%(879건)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접수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제안 실태



- 제안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 · 건축분야 733건(10.4%), 운송 · 물류 관련 720건(10.2%), 경찰 · 교통분야 499건(7.1%), 보건 · 위생분야 475건(6.7%)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행정일반	210	재정경제	401	건 설	210
국적·출입국	36	전 매	60	수자원	16
법 무	96	금융·통화	110	보건·위생	475
민 사	22	농지·농정	193	의료·약사	163
형사·교정	4	축 산	28	사회복지	126
지방행정	275	산 림	69	환 경	281
경찰·교통	499	수 산	29	노 동	223
소방·민방위	95	무 역	7	관 광	13
군사·병무	103	상·공업	115	운송·물류	720
국가보훈	23	공업소유권	26	해운·항만	36
체육·청소년	76	에너지	217	정보통신	92
교육·학술	357	국토·도시개발	208	외무·여권	5
문화·공보	370	주택·건축	733	기 타	160
과학·기술	18	토지·지적	149	계	7,049

- 제안 소관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1,976건(28.0%), 보건복지부 722건(10.2%), 행정자치부 568건(8.1%), 경찰청 500건(7.1%), 문화관광부 386건(5.5%), 교육인적자원부 376건(5.3%)순으로 상위 6개 부처 소관 제안수가 총 4,528건(64%)에 이르러, 건설교통·복지·노동·지방행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제안이 많은 분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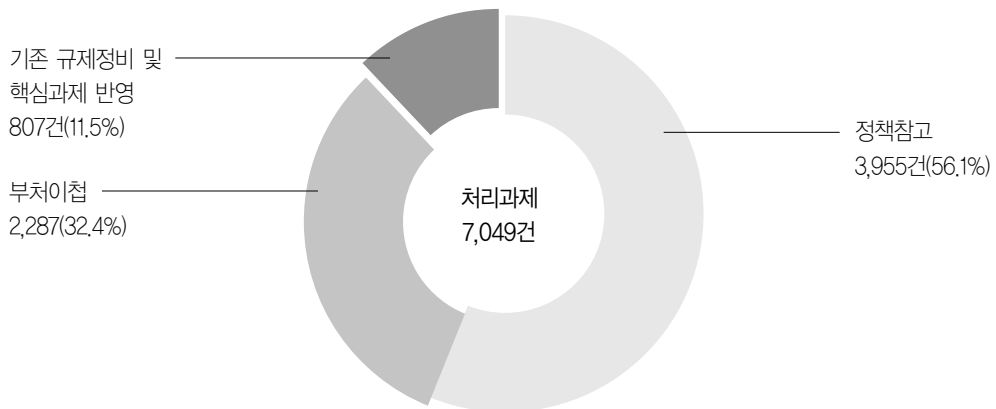
소관 부처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기획예산위	3	국방부	33	조달청	18
여성부	0	행정자치부	568	통계청	1
중소기업특별위	0	교육인적자원부	376	대검찰청	1
국무조정실	24	과학기술부	8	병무청	71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국무총리비서실	2	문화관광부	386	경찰청	500
국정홍보처	0	농림부	217	기상청	0
법제처	1	산업자원부	397	농촌진흥청	0
국가보훈처	24	정보통신부	93	산림청	67
공정거래위	27	보건복지부	722	중소기업청	29
비상기획위	0	환경부	289	특허청	18
청소년보호위	43	노동부	232	식약청	30
금융감독위	71	건설교통부	1,976	철도청	10
재정경제부	356	해양수산부	65	해양경찰청	3
통일부	1	예산청	0	문화재청	9
외교통상부	24	국세청	76	부처 공통	4
법무부	146	관세청	28	기타	101
				계	7,049

- 이러한 제안과제 7,049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반영 등 규제개혁과제 반영 807건(11.5%), 정책 참고 3,955건(56.1%), 부처이첩 2,287건(32.4%) 등으로 단순정책참고 및 개인민원성격 제안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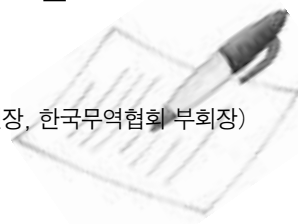


3. 평가 및 향후계획

- 지난 4년 간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7,000여 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제안의 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민원사항과 개인의 편의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이상과 현실

조건호(경제2분과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성장과정의 이면에는 이러한 압축적 발전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외국상품의 진입을 유무형의 장벽으로 가로막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막아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은 규제의 순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규제들이 기업 및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규제이든지 집행과 준수에 있어 국민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합하면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잡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제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며 투명

한 사회건설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규제가 철폐되는 한편으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규제도 수시로 신설되고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인증 등 국가표준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뱅킹의 확산, 전자화폐제도, 사이버교육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되,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안전·보전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는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규제 비용·효과 분석제도」를 내실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속여부를 재평가하는 「규제일몰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정권초기에 반짝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효과 역시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규제개혁은 양적인 정비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규제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에 수반되는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규제개혁 특정과제의 정비

제1절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개혁

제2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제3절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제1절_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 개혁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1.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가. 검토배경

- 현재 맥주의 생산량 기준을 연간 72,000k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소규모 맥주제조가 가능토록 시설기준 완화방안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제도의 도입
 - 주류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의 제조시설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맥주의 제조와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개선
-

- 소규모 맥주제조장의 생산시설 기준
 - 주질보호 및 소규모 제조장의 난립방지를 위해 적정생산 시설규모를 연간 60~300kl로 제한(일본, 미국, 독일의 경우 120~160kl)
- 제조자에 의한 판매허용
 -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자에 대해서는 직접판매도 허용하되, 맥주의 유통과정상 변질문제와 세원관리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판매범위를 영업장내로 한정
- 소규모 제조맥주의 과세표준 및 세원관리
 - 과세표준은 제조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통상가격으로 하되, 통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10%의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 원료구입·제출수량 등의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수량관리를 위한 유량계 설치의무를 부과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의 준비기간 부여 및 제조시설의 국산화 유도를 위해 2002. 7. 1일부터 시행

2.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공정위)

가. 검토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집되거나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진입 및 경쟁제한관련 규제를 연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공정위에서 3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입장권 통합전산망 독점운영제도 개선
 - 국세청에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고시로 모든 문화기관(극장 등)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통합전산망의 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하여 법형식상 문제가 있고 규제수준도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이므로 입장권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독점적지위를 보장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소
- 전자상거래관련 규제개선
 - 문화관광부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의 판매업 등록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시 영업소 등의 장소적 시설구비 요건을 삭제
- 심야전력기기관련 규제개선
 - 심야전력기기 판매·시공점의 등록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입장권통합전산망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입장권통합전산망 구축사업자 복수화가 이루어진 후에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
- 기타 전자상거래 및 심야전력기기관련 규제개선방안은 2001년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완료(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등)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제한 규제완화(정통부)

가. 검토배경

- 통신사업 관련 업종 육성 및 통신사업 수익 이전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업 겸업추진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기업 자율성 제고 및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전환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전기통신망 개선·통합사업, 통신단말장치 판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업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상에 명기하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없앴
- 겸업승인 대상사업으로 3개 사업 한정
 -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유도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의 균형 발전 및 통신사업자와 통신기기 제조업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기기제조업(단말장치 포함)을 겸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함
 - 또한,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 중소기업 육성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본연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용역업을 겸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함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 공포(2001. 6. 12)

4.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 규제개혁(정통부)

가. 검토배경

- 국민들이 전파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전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 관련 자격제도,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전파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업무범위 확대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의 업무종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격 명칭도 제한급무선통신사로 변경
 - 업무범위의 주파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업무도 무선전신·다중통신설비를 제외한 무선통신 관련 전 업무로 확대
- 무선국 변경허가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채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혼신가능성이 낮으므로 변경허가 대신에 변경신고로 완화
- 환경친화적 기지국의 합리적 구축
 - 공용화구역 내에서 단독 구축이 불가피한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

- 무선국 검사수수료 개선
 - 다중무선설비 무선국의 검사수수료는 25.7% 인하(대상 무선국 수 : 49,387국, 금액 : 21억)
 - 재검사 무선국의 재검사수수료는 최초 수수료의 1/3로 인하(불합격 무선국 수 : 4,564국, 금액 : 2억)
- 무선국 검사주기 연장
 - 정기검사에 합격한 무선국은 정기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 연장
 - 1단계로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및 실험국 등 약 14만국 대상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전파법(2002. 10)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2. 6)

5. 대기업집단정책(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공정위)

가.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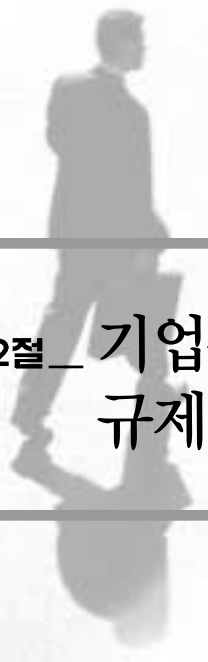
- 최근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집단에 대하여 개별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완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틀은 유지하되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대상축소)하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하되,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추가
 - 동종·관련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 등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출자는 제한
- 한도초과출자 해소부담 완화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일(2001. 4. 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시한(2002. 3월 말) 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 경영건전성관련 규제의 정비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 2001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 2002. 4. 1일부터 시행예정



제2절_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정은영 사무관(Tel. 3703-3938, eyjung@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55, yhomo@opc.go.kr)
김창환 서기관(Tel. 3703-3942, kch318@opc.go.kr)
김영환 사무관(Tel. 3703-3946, hwan49@opc.go.kr)

1.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문광부)

가. 검토배경

-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 구축 촉진, 관광사업자와 소비자간 균형있는 관계 설정으로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관련 규제를 정비함

나. 주요규제개혁 내용

-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부지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매입 완료시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 허용
 - 민간개발자도 공공법인과 같이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
-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근거 규정 마련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서 체결시 당해 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
- 관광포함 상호 사용 금지 삭제
-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승인시 타법의 인·허가 의제사항에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허가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변경시 변경승인신청대상을 명시
-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등 명시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관광진흥법 개정(2002. 1. 26)
- 2002년 상반기 중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 직업교육·훈련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가. 직업훈련제도 규제개혁방안

(1) 실업자훈련

(가) 현 황

- 실업자직업훈련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업률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 훈련비는 직종별로 정한 시간당훈련비에 훈련시간을 곱하여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훈련생이 부담
 - 훈련생의 개인조건을 고려하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훈련수당 지급
- * 교통비 3, 가족수당 10, 우선직종수당 10, 보육수당 5, 능력개발수당 7

(나) 문제점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훈련 중 적성부적합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
- 3D업종의 훈련실적 저하

(다) 개선방안

- 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상담의 강화
- 훈련비 자비부담수준의 확대
-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훈련수당 인상
- 훈련기관평가를 통한 훈련비 차등지원 수준의 확대

(2) 재직자훈련

(가) 현 황

- 재직자훈련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사업주의 훈련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훈련 참여기업과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
 - 사업주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

(나) 문제점

-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참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훈련기관에서 훈련부실문제가 발생
-

- 훈련기관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미흡하여 훈련기관 선정에 애로
- 중소기업(150인 미만)의 경우 여유인력의 부족, 임금부담 등으로 훈련참여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3.2%)

(다) 개선방안

- 재직자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
 - 현재에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상설점검반(4명)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배제 등 강력제재
- 재직자 훈련기관에 대한 적정 정보제공
 -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

(3) 인력양성훈련

(가) 현 황

- 제조업 등 국가기간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공공훈련기관과 직업훈련전문기관 등에서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실시
 - 기계장비, 금형,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의 훈련직종(117개)

(나) 문제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산업화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지식정보화사회라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한편,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은 훈련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데 애로가 큼

(다) 개선방안

- 공공훈련기관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양성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직종의 지식산업화 추진
-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 지원한도 및 이자율 인하

* 인력공단 조직개편방안마련 및 시설장비대부규정 개정(2002년 상반기)

나. 직업교육체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실업계 고등학교

- 현 황
 - 실업계 고교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 예술계, 실업, 종합고등학교가 포함
 - 2001년 현재 총 759개교(전체 고등학교의 38.5%)에 약 65만명(전 고등학생수의 34%) 재학
- 문제점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재학생수도 감소
 - 신입생 미달 : 1999년 22천명(7.8%), 2000년 20천명(8.3%), 2001년 17천명(7.5%)
 - 학생수 : 1995년 911천명, 2000년 747천명, 2001년 651천명
 -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조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음
 - 실업고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급증

(나) 전문대학

- 현 황
 - 전문대학의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기여

- 학교수 대비 45%, 학생수 대비 33%
- 2001년 현재 158개의 전문대학에 952,649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의 취업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에서 일반대학에 앞서는 등 취업과 연계된 교육실시
 - 취업률(2000년) : 전문대 79.4%, 일반대 56.0%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2000년) : 전문대 21.4%, 일반대 10.6%
- 문제점
 -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미달사태 발생(2001년도 전문대학 4,617명)
 - 4년제 대학 선호 경향과 학벌에 의한 임금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로 전문대학 발전에 한계
 - 고졸자들의 전문대학 선호도 : 11.2% (KEDI, 1998)
 -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본 임금 비교 : 중졸 이하 89%, 전문대졸, 103%, 대졸 152%(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보고서 1999)
 - 계속교육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문대 졸업자의 계속교육기회 미흡

(다) 산업대학

- 현 황
 - 산업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실업고 및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고등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 2001년 현재 19개의 산업대학에 180,068명(전체 4년제 대학생수의 약 10%)이 재학 중
- 문제점
 - 교육대상의 이질성과 교수부족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애로 발생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주로 주간과정), 전문대학 졸업생(편입과정), 산업체 근로자(주로 야간과정)
 -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교육통계연보, 1999) : 산업대학 70.4, 일반대학 38.5
 - 일반대학에 비하여 차별적인 법·제도로 인하여 입학자를 효율적으로 유인하지 못함
 - ROTC, 교직과목 미설치, 기구 조직 및 지원예산의 차등 지원 등
 -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확보의 애로

(2) 개선방안

(가) 실업계 고등학교

- 학급당 기준인원 제한 완화 : 2001. 7. 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수립 · 시행
- 교육과정 변경규제 완화
 -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이 지역실정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
- 변경신청기간 단축
 - 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측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예고기간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경신청기간 단축공란
- 특성화고 설립 · 시설 · 교구재 기준 등의 자율화
 -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설립에 있어서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특성화고 선발시기의 자율화
 - 시 · 도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직업교육 특성화고의 학생선발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선발은 자율화되어 있음
- 특성화고 교과용 도서 선정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화고는 초 · 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교재를 자유롭게 선정 사용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수업료 등의 자율화
 - 특성화고교 수업료 자율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 · 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특성화고교가 자율 징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될 사항임

(나) 전문대학

- 전문대학 모집단위 기준의 유연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별로도 모집할 수가 있음
- 수업연한 다양화의 단계적 허용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화하도록 개정 중임
-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에 대한 제한, 학위수여 등의 문제는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복수전공(다학기제) 허용
 - 전문대학에 다학기제 도입, 전문대학에 복수전공제 도입은 장기검토
-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중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 폐지
 - 일정한 기간 산업체의 근무경력은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령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 이에 대한 추후 검토
- 학점인정 개선
 - 건의된 학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격 취득 등의 학점인정은 당해 전문대학이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임
 - 다만, 학점으로의 인정 등은 당해 전문대학에서 판단할 사안임

(다) 산업대학 관련

- 대학원 설치범위(연구기능) 제한 폐지
 - 2000. 11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과정의 운영이 가능함
- 교직과목 제한의 폐지
 - 교원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대학에도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제1항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를 개정 추진중에 있어, 동법 개정 후 교원자격검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임
- ROTC 과정 설치제한의 폐지
 -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산업대학 졸업생이 전공관련 직무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ROTC의 설치 범위에 산업대학을 추가
- 학력중심의 겸임교수 자격기준 완화

- 현행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겸임교수에 다양한 산업체근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음
- 국립산업대 총장의 지위 차등 폐지
 - 산업대학 총장 보수 및 여비의 상향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개정 추진 중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문광부)

가. 검토배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이후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스포츠무도를 기존의 유흥·사교무도와 구분·관리하여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발전 도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기존의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폐지하는 대신 댄스스포츠 국제경기 규정종목 중심의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 또는 스포츠무도와 유흥·사교 무도 업종을 구분함
 - 체육시설업 관련 경미한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등 사전예고 없이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시설기준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는 등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마련함
 - 체육시설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및 행정기관 혼동방지
 - 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방지를 위하여 공사착공 후 일정기간 공사를 중
-

단·방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보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2002년)

4. 해양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수부)

가. 검토배경

- 공유수면관리법, 개항질서법 등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관련 규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오염자 부담원칙, 해양폐기물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오염물질 해양배출에 관한 규정이 다수법에 규정되어 있고, 장소 및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일원화
-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어선들의 조업시 수거되는 폐기물의 육상 인도시 연계처리 시설 및 처리체계 미비로 해양재투기 등이 우려되어 원활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수용능력의 한계로 해양오염이 가속화 되어있어 해역별 총량관리제 도입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유창청소업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

- 선박에서 불법투기시의 벌칙과 사람이 단순투기시 벌칙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등 불합리한 규제조항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 해양환경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곤란하므로 수질·대기 등 육상환경분야와 동일하게 사법경찰권 부여
- 폐기물의 해양투기 증가로 해양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제수단이 없어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에 충당

다. 향후 추진일정

- 2002년 하반기 중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5.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환경부)

가. 검토배경

- 경제 5단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환경 관련 중복 규제 일원화 요구(2000. 10)
- 이에 제73차 경제2분과위원회(2000. 11. 17) 개최하여 환경관련 중복규제의 통합 및 일원화를 위해 위원회의 발굴 및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기별로 환경 관련 중복규제를 발굴, 개선추진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환경부와 노동부가 동일업체로부터 각각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각각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업체의 불편 및 부담 초래함
-

- ⇒ 환경부는 모든 인체의 유해성(작업장 근로자 포함)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유해성 심사 신청 및 결과통보의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
- 화학물질의 제조금지 대상물질을 각 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 ⇒ 환경부와 중복되는 노동부의 금지물질 3종을 환경부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물질(5종)은 현행대로 존치
 - 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와 노동부가 중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업체의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함
 - ⇒ 환경부의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 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권고
 -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별도로 시·도지사에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 배출시설신고(등록)하도록 중복 규제됨
 -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도와 VOC 배출시설설치 신고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도록 규제개선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중복적으로 환경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환경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하여 중복규제 폐지
 -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 관련 지도·단속 업무(수질·대기·폐기물 등)의 일원화
 - 축산폐수시설허가시에 교부한 허가증 원본을 준공검사시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을 생략하도록 간소화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표시, 경고표시 등이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치토록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물질(37종)의 배출허용농도기준이 없어 물질별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석회 및 프라스터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또는 건조시설에 대한 먼지 배출허용기준의 표준산소농도가 규정(13%)과 실제 산소농도(16~17%)가 차이가 나고 화학비료, 인산제조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토

록 함

다. 향후계획

- 환경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2002년 상·하반기에 걸쳐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행

제3절 — 국민생활관련 규제개혁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김영환 사무관(Tel. 3703-3946, hwan49@opc.go.kr)
정대우 사무관(Tel. 3703-2182, dw0327@opc.go.kr)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사회복지시설관련 규제개혁방안(복지부)

가. 검토배경

-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비효율성, 서비스 공급체계 등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나. 주요규제개혁내용

(1) 민간참여 확대

- 민간사회복지시설 참여확대를 위해 유료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정원을 폐지하고 10인 미만 소규모시설은 “가정위탁시설” 제도를 도입, 제도권 내 수용
-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완화
 -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각계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종사자가 자격소지시에는 시설장의 자격보유를 면제토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일정 시설규모 이상의 시설에게만 적용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설비기준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유료시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하여 시설유형별로 보유해야 할 기본적인 시설은 명시하도록 함

(2)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정부는 선택된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권(Voucher)을 지급
 - 이용권제도 정착을 위하여 복지시설 공급확충 및 이용자 선택을 위한 공급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한 보호내용이 예고된 보호내용과 차이를 보일 경우 시설 거주자가 시·도(시·군·구)에 불복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랑인시설 등의 퇴소를 자율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시설로 전원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를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감예산 지원
 - 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항내 목간 전용은 자율화하고 관내 항간 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함. 관간의 전용은 장기 검토
 - 서비스 구매제도를 도입하되 도입시기는 복지시설의 수준향상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 3년마다 시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4) 시설·운영의 투명성·개방성 확보

- 예산지원방식을 통한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를 유도
- 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를 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익이사제 도입 유도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운영 위원회를 내실화하도록 함
- 일정범위 내 후원금 관리비용을 집행가능토록 인정범위 설정. 이와 함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소식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 벌금형 이상의 제재 조치를 재직기간 동안 3회 이상 받은 시설 운영자는 자동 퇴출토록하되 최소한의 기한을 설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재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도록 함

(5)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

- 종사자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기준을 법정종사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향후추진계획

- 2002년도 중 사회복지사업법령, 아동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령, 노인복지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

2. 소음·진동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가. 검토배경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소음·진동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최근 환경관련 분쟁중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수가 가장 많은 상태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음진동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나. 주요 규제개혁내용

- 층간 소음기준을 외국의 경우처럼 건축관련 법령 또는 관계전문가 단체 등의 권고기준으로 설정하고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 마련
-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공동주택건설시 우리나라 대도시 등의 여건과 소음규제기준의 정비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규제 소음도 및 타당한 소음측정방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정비
- 소음 진동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 정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대상 사업장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제 도입
- 방음판의 기본적인 성능수준의 제시 및 제품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
- 발파소음·진동은 건설소음과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허용기준을 설정

다. 향후 계획

- 2002년 중 관련 규정(건교부 :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환경부 : 소음·진동규제법)을 제·개정하여 시행
-

3. 소규모 농지 거래제한 규제개선(농림부)

가. 검토배경

- 비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의 거래제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소규모 농지 거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고 농지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비농업인이 신규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1,000㎡ 이상 매입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온실 등은 330㎡ 이상)하던 농지의 거래제한 규모를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소규모 농지 거래가 가능한 농업생산시설(330㎡ 이상)의 대상을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돌, 버섯재배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곤충사육, 지렁이사육 등’ 첨단농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

다. 향후 추진 일정

- 농지법 개정(2002. 1. 19)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 시행(2002. 4)

4.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건교부)

가. 접도구역 범위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의 범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고속국도는 25m(경부·중부선은 30m), 일반국도 및 기타 도로는 5m로 지정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여건 등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범위의 이원화 및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접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개선방안

- 고속국도 접도구역 범위의 합리적 축소 조정방안 강구
 - 고속국도 접도구역의 도로구조 보호장치로서의 역할, 교통사고 피해와의 연관성, 도로 주변여건 및 도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범위설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 접도구역 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 접도구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잔여지 매수부지, 부체도로 등이 있는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취락지구를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구인 취락지구는 공공시설, 도로계획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므로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제61차 규개위 의결)에서 제시된 준농림지역의 취락밀집지역 중 특별지구단위계획이 수립완료된 지역은 추후 관련법령 시행 후 제외대상에 포함

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증축 허용 규모를 15㎡ 이내로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거주민들의 반발심리 자극

(2) 개선방안

- 증축 허용규모 확대(현행 15→30㎡)로 기존 주거자의 생활환경개선 도모
- 소규모(20㎡) 농업용 시설로서 비영구 창고의 건축을 허용하여 영농활동상의 장애요인 해소
-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용 ‘표찰’ 부착의무를 폐지하여 접도구역 내 주민과의 마찰 불식

다. 접도구역 지정 · 관리기준의 객관화 · 구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접도구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1998~2000)을 분석한 결과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60% 이상으로 접도구역 관리 및 세부 기준의 불명확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행위 가능여부 문의 : 61.3%, - 적용기준 문의 : 18.0%
 - 절차 및 법규 적용 여부 : 5.3% - 구역해제 적용시기 문의 : 2.7%
 - 현행 제도개선 요구 : 2.6%

(2) 개선방안

- 접도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접도구역 관리의 효율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도로경계선”,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화
 -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의 명확화
- 접도구역 지정 예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매수청구권 부여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고속국도 1,269km, 일반국도 8,427km, 지방도 14,208km에 해당하는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고 일정규모(15㎡) 이상의 증축을 제한하고 있음
-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라 타법령에서의 매수청구권 부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2) 개선방안

- 매수청구권 부여방안 검토
 - 접도구역 중 대지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대상지역, 매수시기, 매수절차, 소요재원에 대하여는 용역시행 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
 - * 대상대지 중 안전상 문제가 있는 대지를 우선 매입하고,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매수계획 수립·추진

접도구역에 저축되는 토지면적 추정

지목구분	면적(k㎡)	구성비율(%)
전 체	592	100
도시용지	14.7	2

* 접도구역 면적은 약 300k㎡(1999년 말)

- *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은 접도구역 면적의 1.97배를 가정
- * 도시용지=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마.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도로법시행령 개정 : 2002. 5
- 도로법시행규칙 개정 : 2002. 5월 중
-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 : 2001. 10. 17
- 고속국도 접도구역 축소조정 및 매수청구권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용역시행 후 그 결과를 2002. 6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2002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5.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방안(산자부)

가. 검토배경

-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진행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체·건물·수송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추진현황

(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 일정규모(5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증설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하여 산자부장관이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공정 등을 채택하도록 유도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 도입

-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산자부장관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선명령의 미이행시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및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다. 추진실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002. 3. 25)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2002. 3. 25)

6. 농업·농업인·가축 등 범위관련 규제개선(농림부)

가. 검토배경

- 쌀농사 위주의 전통 농업에서 농·축·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 곤충·지렁이 사육 등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 등에 부응한 농업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행 축산
-

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생도축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가축에 대한 위생도축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나. 주요 규제개혁 내용

-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의 범위 중 “이들과 관련되는 산업”에 포함할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 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곤충류, 지렁이 등 사육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함
- 농지법시행령의 농업인의 범위에 “연간 농산물판매액 기준”을 추가하여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되는 산업의 생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위생도축 대상에 축산법상 가축의 소유자가 위생도축을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위생도축 및 유통을 허용하여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개선함

다. 향후 추진일정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2002. 6월 말까지 개정·시행

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관련 규제개선방안 (환경부)

가. 검토배경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시설기준이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 다양해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시설기준의 누락 또는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규제개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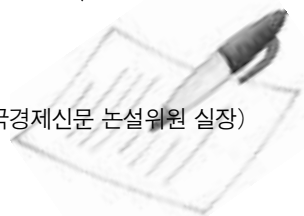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지역주택의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규제한 현행 기준(200/인·일)을 시 이상의 지역(200/인·일)과 읍·면 지역(170/인·일)으로 구분하여 개선함
- 오수처리시설 대상 시설군을 건축법의 분류를 고려하여 세분화(11개 16개)하고,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없는 찜질방, 실내낚시터, 무도장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함
-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의 취사허용 여부, 오염 부하량 여부, 사용특성 등을 감안하여 오수처리시설용량을 차등화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 산정방법을 별도로 고시한 것을 통합고시토록 개선함

다. 향후 계획

- 환경부의 관련 고시를 정비(제·개정)하여 기시행
-

사회규제 강화에도 한계는 있다

이계민(행정사회분과 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



“경제규제는 풀고, 사회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심사를 할 때 사회 부처 실무자들이 들먹이는 항의성 주장이다. 보건의료, 노동, 교육, 소방, 치안, 교통안전, 문화관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분을 가진 사회적 규제를 심사하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늘상 부딪히는 문제다. 사실 규제개혁의 기본 과제이기도 한 그와 같은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닐 게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규제에 대해 규개위가 왜 왈가왈부하느냐고 불쾌해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증가 또한 공직자들이 아닌,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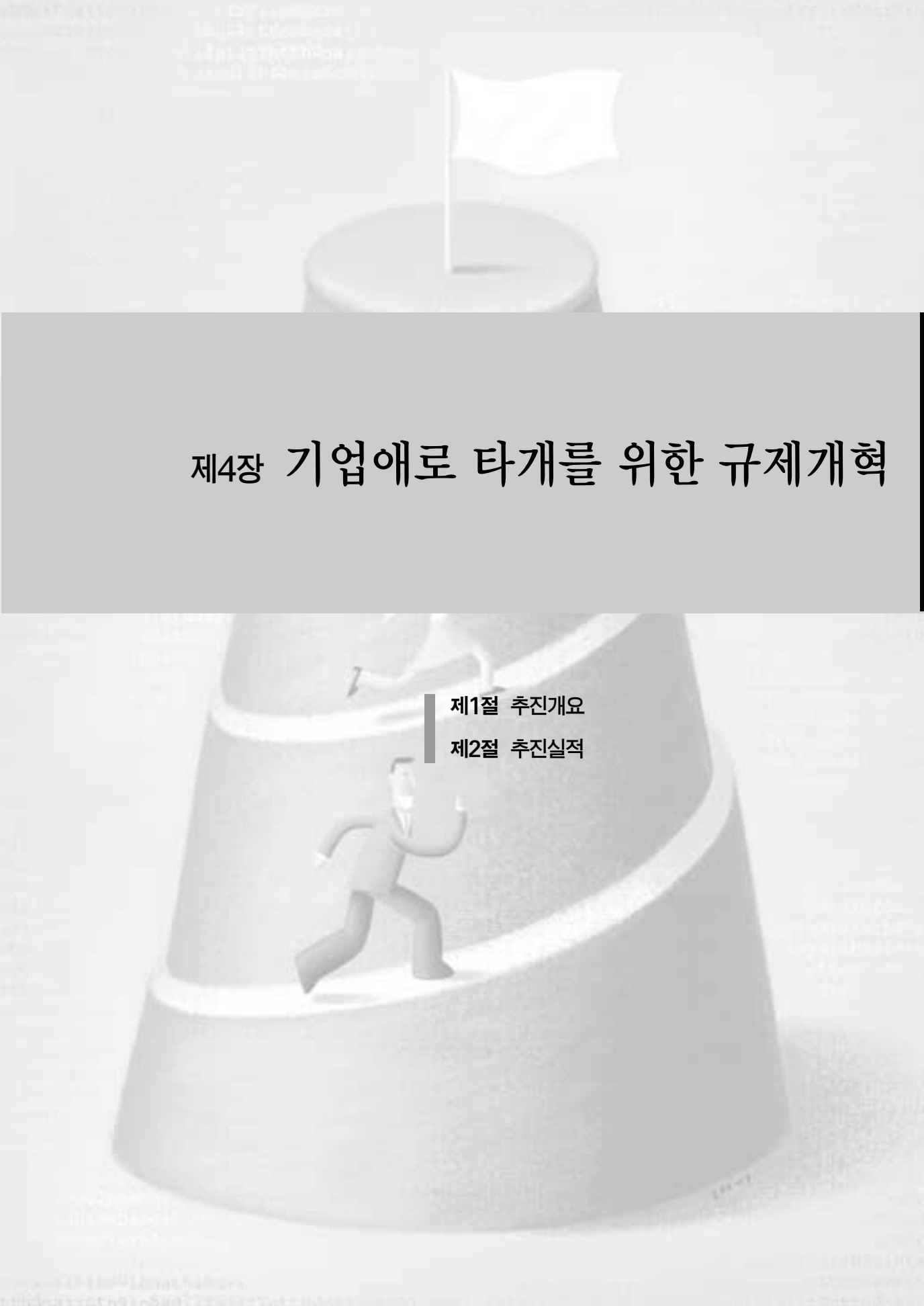
규제심사, 특히 사회부처 규제를 다루면서 평소에 느낀 점이라면 우선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

다는 과욕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 스스로의 자기보호본능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큰 사고만 생기면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편잔을 듣게 마련이다. 근본 원인을 따져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방만한 정부조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조직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일을 찾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규제를 만들면서도 수혜자들의 편익만 생각했지 부담하는 비용은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비용편익분석을 규제심사의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을 바탕으로 규제를 만들다 보니 대부분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 규제는 그 목적 자체가 선()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사회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는 일반론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계도만으로 충분한 것을 법적 규제로 금지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효율적인 규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들 스스로 규제만능의 유혹, 달리 표현하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추진개요

제2절 추진실적

제철_추진개요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1998년도에 11,000여 건의 행정규제 전수를 재검토하여 이 중 절반 이상을 철폐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성과를 APEC 국가에 확산토록 요청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재계에서 그 동안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책 등 핵심적인 규제의 정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도 여전히 많아 일선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도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노사문제와 더불어 기업규제를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기업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단체의 건의과제 수렴·개선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재계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소위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2001년 중에 집중적인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별로 경제5단체의 건의과

제를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2001년 8월에 경제5단체 등 재계와 합동으로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지난 1년 간 추진결과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363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접수하였으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70%인 252개 과제에 대해 수용키로 하였다.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실적〉

총계		1차 (2000. 10)		2차 (2001. 2)		3차 (2001. 5)		4차 (2001. 8)		5차 (2001. 10)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363	252 (70%)	22	18 (82%)	37	22 (60%)	48	35 (73%)	35	23 (66%)	221	154 (70%)



제2절 — 추진실적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이하 내용은 그 간 5차에 걸친 363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이며 과제별 세부내역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1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1차 건의과제 수는 총 22개이며 이에 대한 심의결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폐지 등 18개 과제는 수용(일부 및 조건부 수용 포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완화 등 4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는 지주회사를 설립시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1999. 4. 1일 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는 30% 이하), 다른 회사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등을 규제하면서,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에서는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 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경우 설립 시점에 관계없이 지분

율을 30%로 완화하고 회사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수용기로 하였다.

둘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 공장설립 전에는 산업용지를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일정한 가격기준 내에서 처분토록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5단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동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였는 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가격기준은 존속하되 처분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는 장애인을 5%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일정한 제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5단체에서는 조선업 등 기타 업종의 적용 제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적용 제외율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25%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도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경제5단체 1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해외현지금융제한폐지	수용
2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완료 후 추가세액 납부개선	수용
3	수입세금계산서 EDI서식 허용	수용
4	화물입출항로 폐지	일부수용
5	입항 전 수입신고 확대적용	수용
6	반출입 승인권의 민간이양	수용
7	북한물품 통관시 검사완화	수용
8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처분제한폐지	수용
9	유통점 출점관련 규제완화	일부수용
10	SOC민자사업 대출자산BIS자기자본율 적용 규제완화	비수용
11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 형질변경면적 제한완화	비수용
12	금융기관 자산운영관련 규제완화	일부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3	환경규제의 합리화	수용
14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	일부수용
15	지주회사 요건 완화	수용
16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의 제한완화	수용
17	근로계약기간 연장	수용
18	일정지역 내 동일기업 사업장의 의무고용완화	수용
19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현실화	비수용
20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문제 시정	수용
21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납부방식 전환	비수용
2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절차완화	수용

2. 제2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2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는 총 37개 과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22개 과제를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외국인과 공동 최대출자자로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측이 이사의 과반수·대표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 합작회사는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는 바, 앞으로는 외국인측과 동일인측이 동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외자유치를 지원토록 하였다.

둘째, 현재 회사정리절차(청산 등)가 진행 중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채무보증 해소 등 각종 제재를 하고 있으나, 금번에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화의 조건상의 보증채무 상환기한까지 채무보증 상환의 무 유예 또는 과징금 부과수준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기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100% 이하 유지, 자회사 주식 30~50% 이상 보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주가 등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에 자회사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화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 또는 각종 행위 제한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경제5단체 2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수용
2	주기업체가 회의 중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	수용
3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수용
4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 개선	수용
5	화물차량의 도심진입제한 완화	기수용
6	특수화물차량의 운행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노선 확대	수용
7	임시운행허가를 신고제 또는 자율관리로 전환	비수용
8	화물자동차의 길이기준 완화	비수용
9	주유소 이동판매소 용량제한 완화	수용(장기)
10	철도하역근로자 복지·후생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비수용
11	scoured wool의 검역절차 간소화	비수용
12	산업단지 지원시설 내 공용화물터미널 부대시설 영업행위 허용	비수용
13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비수용
14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	비수용
15	수입주류보관창고의 면허개설수의 제한 완화	비수용
16	수출선적기간의 연장 및 적용 예외	비수용
17	동일한 보세공장이나 격지간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수용
18	수입신고 심사절차의 개선	비수용
19	학술감면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	비수용
20	보세운송 승인품목 완화	수용
21	보세운송 신고 승인 신청시 운송수단 기록항목 폐지	일부수용
22	보세공장 반입 원자재의 일괄 사후신고 허용	비수용
23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허가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24	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 중복	수용
25	동시검사제도 개선	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26	항만시설 소방관리 중복	수용
27	고압가스설비의 정기검사주기	수용
28	열사용기자재 법정안전검사 주기	일부수용
29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시행자 자격 제한	수용
30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수수료	수용
31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주기	수용
32	방재설비 국내재 승인제도	수용
33	위험물옥외저장탱크의 물분무설비기술기준	비수용
34	냉동제조(건축물) 신고사항	수용
3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처벌조건	비수용
3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수용
37	재해자과실상계 적용	비수용

3. 제3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3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는 총 48개 과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35개 과제를 수용하고, 13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동 심의결과는 각 부처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시행되며, 일부 장기과제를 제외하고는 금년 중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30대 계열기업군의 경우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1998년 말의 보증잔액 범위 내에서 현지법인별로 관리하고 있어,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에 해외 현지금융 한도를 본사별로 관리토록 전환하여 현지 법인들간에 보증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체 해외 지급보증한도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공모(50인 이상)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거 2년 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금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

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공모 대상 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금액 산정 기준을 과거 2년에서 과거 1년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다.

셋째, 현재 환기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댐퍼 오작동으로 인하여 폐쇄될 경우 가스질식 및 제품하자 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다.

〈경제5단체 3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완화	일부수용
2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지정제도 개선	일부수용
3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비수용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폐지	수용
5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광고물부착 허용	장기검토
6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비수용
7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제한 완화	일부수용
8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수용
9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비수용
10	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	수용
11	유독물 수출입신고 절차간소화	일부수용
12	남북협력사업 승인시 중복승인제 폐지	일부수용
13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일부수용
14	운임 및 부대비 결정체계 개선	규제제외
15	석유화학제품 품목분류 정정	비수용
16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일부수용
17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 내 무상귀속 규정적용 개선	비수용
18	토지수용가격과 국유지매입가격의 일원적 적용	비수용
19	산업단지 내 허용되는 개발행위 명확화	비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20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상 개선	비수용
21	중소유통업 물류센터의 자연녹지입주 허용	비수용
22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수용
23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24	대기환경규제지역의 VOC 대상시설 재조정	일부수용
25	대기측정기기 중 적산전력계와 유사한 기기 인정	수용
26	대기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특례시설의 초과인정시간 연장	일부수용
27	0.3% 이하 중유사용규제 개선	수용
28	청량음료 및 주류 제조관련 적용규정의 일원화	기수용
29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의 축소	일부수용
30	반폐기물의 간이인계서 폐지 또는 간소화	수용
31	직선거리 100km(시·군·구 경계밖) 이상 이동하는 일반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사용 허용	수용
3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기간 완화	수용
33	폐수처리장 오니의 재활용	수용
34	폐기물감량화 실적 및 계획보고제도 간소화	기수용
35	폐기물부담금(폐수지처리부담금) 개선	일부수용
36	폐기물소각로의 국고지원	일부수용
37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명시	수용
38	다이옥신 의무측정대상에서 시멘트 소성로 제외	비수용
39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장비 등 기준 명시	수용
40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일부수용
41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규정 개선	수용
42	스프링클러의 하향식 배관설치 개선	일부수용
43	제조소(시설물)의 안전거리 확보 개선	기수용
44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개선	기수용
45	분말소화기 비치의무 완화	비수용
46	소방시설 인허가시 부분승인제 도입	수용
47	Fab, Filter 상부의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완화	수용
48	방화담퍼 설치의무 완화	수용

4. 제4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4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는 총 35개 과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23개 과제를 수용하고, 12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 설립 후 잔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투기 방지, 산업단지 내 타시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매각만 허용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잔여 용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SOC 민자사업자의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출자 지분율대로 배분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SOC민자사업을 수주하여 공구별로 시공(책임분할시공)하는 경우,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불개항장 출입 허가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출입 허가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출입항을 바꾸더라도 이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수수료(하루당 선박 : 100원/톤, 항공기 : 1200원/톤)를 환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불개항장에 출입 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허가받은 정박기간 전에 세관에 출입 허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 당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5단체 4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과오납·위약물품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수용
2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수용
3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비수용
4	보세공장 설립인 명의 이외의 수입원자재 보세공장 반입허용	비수용
5	타소장지 허가절차 간소화	비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6	보세공장 수용능력증감 승인 개선	일부수용
7	해외직접투자업체 산업연수생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선	비수용
8	수출입관련 우편물에 대한 결정체계 개선	수용
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비수용
10	개별공장 입지선정기준 명확화	수용
11	개발계획변경 대상의 제한사항 완화	비수용
12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 개선	비수용
13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허용범위 확대	비수용
14	국유 기부채납 재산의 제3자 전대 허용대상 확대	비수용
15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자 변경	비수용
16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수용
17	산림 형질변경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수용
18	문화재 발굴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	일부수용
19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일부수용
20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수용
2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선정기준 개선	수용
22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수용
23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비수용
24	위험물 지정수량의 적용범위 개선	수용
25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 기준 완화	수용
26	도급사업의 사업주 점검의무 개선	일부수용
27	작업환경측정횟수 완화	수용
28	소방법에 의한 황산(H ₂ SO ₄)의 위험물 분류 제외	수용
2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수용
30	천장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정기검사주기 조정	비수용
31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수용
32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 완화	일부수용
33	휴지차량에 대한 검사의 자동 연기	수용
34	점보컨테이너차량의 도로통행 허가절차 개선	일부수용
35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금결제방식 개선	수용

5. 제5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5차 건의과제는 지난 2001년 8월 중에 정부에서 산자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5단체 등 재계와 공동으로 기업 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된 511개 애로사항 중 규제관련 221개 과제를 경제5단체의 2002년도 4/4분기 건의과제로 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290개 과제는 재정부에서 정부합동 작업단을 구성하여 처리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자산기준 1,000억원 이상인 자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대상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합 대상 회사의 규모가 자산기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완화하여 기업의 기업결합 관련 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 변동 신고 대상 완화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시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을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되어 있어, 단순한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신고된 투자금액과 실제금액이 일정비율 이내로 변동될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생략토록 개선키로 하였다.

셋째,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자양강제 등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용법이 잘 알려진 품목은 약국 외 판매(슈퍼 등)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 편익을 도모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일정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타인 차량에도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하였다.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타인 소유차량에는 옥외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허용키로 하였다.

〈경제5단체 5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5톤 카고차량의 적재함 규격 변경	비수용
2	개발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비수용
3	개발제한구역 내 집배송센터의 설치규제 완화	비수용
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	비수용
5	건축허가시 진출입구(차량)폭 제한 및 출입개수 기준 명확화	수용
6	공동주택 지하층에 변전소건설 허용	비수용
7	국도이용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8	국도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에 대한 공장입지규제 완화	일부수용
9	녹지지역 내 건폐율 규제의 완화(2건)	비수용
10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복심의 폐지	비수용
11	대형점의 준주거지역 출점시 지자체의 사후적 출점제한 방지	비수용
12	도시계획구역 내 첨단공장 등 입지규제 완화	장기검토
13	도시공원 내 도시가스정압시설점용 허용	수용
14	미관지구 내 층수제한을 높이제한으로 변경	수용
15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제도 개선	일부수용
16	수입 대형트럭 적재함(트레일러)의 형식승인제도 개선	수용
17	여름철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관련 도로굴착 금지기간 완화	비수용
18	일반주거지역 내 1,000㎡ 이상의 판매시설 입주 허용	비수용
19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구시설 건축시 건폐율 완화	기수용
20	차고지 보유의무 완화	비수용
21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발주와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	수용
22	하도급통지 및 승인의 개선	일부수용
23	하수급자 부도시 체불노임 채권의 최우선 변제 명시	기수용
24	환경소요비용에 대한 원가산정방안, 처리비용 등의 산정방법 현실화 요망	비수용
25	환경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방법 개선	비수용
26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차차 허용	비수용
27	기업결합신고 범위의 완화	수용
28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판촉사원 파견요청 등에 관한 요건 완화	비수용
29	병행수입제도의 품목에 대한 재검토	수용
30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료 자율화에 따른 과다인상 억제	비수용
31	인사·노무 아웃소싱 담당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32	법정(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현실화	비수용
33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잔액산출기준 명확화	일부수용
34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	기수용
35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 변경	일부수용
3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완화	비수용
37	보건, 환경관리자 지정의무 완화	기수용
38	보건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측정회수 축소	수용
39	산업재해 보장보험제도의 개선	일부수용
40	시설안전점검의 중복 해소	수용
41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수용
42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완화	비수용
43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기수용
44	유해물질의 상품표시 규정 정비	수용
45	장애인 의무고용규제 완화	수용
46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의 조정	수용
47	재해자 과실상계 적용 현실화	비수용
48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일부수용
49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비수용
50	해고시 중복신고제도의 일원화	비수용
51	500㎡ 미만 공장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허용	기수용
52	농산물 스티로폼 포장상사 표준출하규격 제정	비수용
53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용도변경승인제도 개선	일부수용
54	농지전용 의제처리시 과다면적의 공장건축 요구	수용
55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	수용
56	목재방역체계 개선	기수용
57	유통업체 농약잔량검사사업 실효성 확보	비수용
58	유해물질 비산방지단속 일원화	기수용
59	제약 부산물의 비료활용 허용	기수용
60	제약업종의 부산물 퇴비화 허용	기수용
61	준농림지역의 공장건립기간 1년 단축	기수용
62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	일부수용
63	해외투자업체 연수생 사증발급기준 완화	비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64	국민건강보험(민원업무 처리 및 제도 개선)	수용
65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검사로 합리화	비수용
66	식품검역업무의 개선(복잡한 검역체계 개선)	수용
67	식품관련 제품의 수출관련 서류의 신속한 발급 및 절차 간소화	비수용
68	식품매장의 인·허가사항 절차 간소화	비수용
69	업무 Manual 책자화(환경, 안전, 보건, 노동관련)	수용
70	의약외품 약사고용의무의 폐지	수용
71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및 판매품목 확대	수용
7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수용
73	직장피부양자의 건강검진 행정절차 간소화	수용
74	고압가스 사용시설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밸브 자체검사 허용	비수용
75	공장설립승인제도의 개선	수용
76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 시험결과 인정	수용
77	냉동제조시설(프레온) 정기 및 자율검사 완화	수용
78	도시가스 공급시설 점검 일원화	수용
79	산업안전 중복규제 개선	수용
80	산업용지의 분할매각시 일반매각 허용	수용
81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건축유예기간 연장	수용
82	수도권 내 기존공장 신·증설허용확대	비수용
83	외국인투자 변동신고절차 간소화	수용
84	재활용을 위한 고지(폐지)의 수분 및 협잡물 측정방법 개선	수용
85	향온항습실의 온·습도 조건의 조정	수용
86	LPG자동차충전시설의 저장탱크능력 증설 허용	수용
87	건강식품 및 기능성식품에 대한 허가기준·절차 개선	수용
88	공동 생산시설에 의한 제품생산 허용	수정수용
89	기능성식품 관계법 및 관련표기기준 마련	수용
90	식품관련 단속 및 점검기관 단일화	수용
91	식품첨가물 등록절차 간소화	수용
92	연구개발용 수입임상시험시약의 제출서류 간소화	수용
93	의료기기제조업 허가기간 단축	수용
94	의료용구 소분업 허용	비수용
95	체외진단의약품의 의약품 분류·관리제 완화	일부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96	공동도급내용의 변경문화의 개선	비수용
97	국내법인 설립 前 창업비 등의 송금 보장	기수용
98	금융기관고객센터 정보 제공(금융)	수용
99	담배소매인 사업자 변경시 허가승계의 제한적 인정	비수용
100	상호계산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금융)	기수용
101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선수금 사용제한 개선	비수용
102	인터넷을 통한 금융계좌개설 근거 마련(금융)	비수용
103	환경설비 구매계약서류 간소화	수용
104	환경설비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일부수용
105	물류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일부수용
106	지식 서비스분야 벤처기업 지정	기수용
107	표준산업분류상 아웃소싱코드 신설	일부수용
108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재정비	수용
109	산적액체위험물선박 시설기준 개선	비수용
110	선박 내의 일상생활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완화	기수용
111	수출상품의 위험물검사시 적시 검사와 검사의 신속성 제고	일부수용
112	유조선의 해양시설이용 현황보고 간소화	기수용
113	해양시설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금지 규제 완화	기수용
114	해양시설 안의 기름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비수용
115	Oil Fence에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예외 인정	수용
116	소방기술기준에 의한 필수 누유검사관 설치 완화	비수용
117	옥외광고물의 색상규제 완화	장기검토
118	원전 소방시설공사의 자체감리 대상 포함	수용
119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소방검정공사의 검사배제기준 마련	일부수용
120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완화	비수용
121	위험물탱크 정기점검 검사기관에 민간기관 포함	일부수용
122	인·허가 관련 해지 및 신규등록절차 간소화	비수용
123	타인소유 차량에 대한 옥외광고 허용	수용
124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철회	기수용
125	고상 폐유독물의 폐기물 처리방법 완화	비수용
126	공공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부분 분리 발주	비수용
127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정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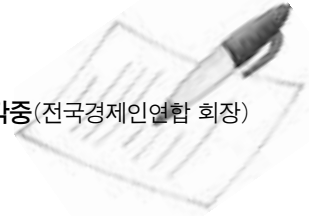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28	관련 법령별로 동일물질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수용
129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수처리용 정수시설 행위제한 규제의 개선	수정수용
130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시기 연기	비수용
131	기본 배출부과금 관련 행정서류 작성 면제기간 설정	수용
132	기조성된 부지 내 유류저장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	일부수용
133	대기 배출시설 및 VOC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 제외	비수용
134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완화 및 대상시설 확대 적용	기수용
135	대기배출시설 2중 규제의 조정	비수용
136	대기오염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완화	비수용
137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관리인 채용의무 완화	수용
138	도장작업장 발생오염 물질 중 악취 측정기준 개선	수정수용
139	발전용 내연기관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허용기준의 개선	수정수용
140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방법의 개선	기수용
141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조정	수정수용
142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지도점검시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개선	수정수용
143	방카-C유의 유황함량규제 개선	비수용
144	벤토나이트제조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	수용
145	부산물 비료 및 토지개량제 사용 가능 원료의 업종별 규제 해소	수정수용
146	분진 배출 부과금 제도개선	비수용
147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유도	기수용
148	샘플용 소량화학물질의 수입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발급 개선	비수용
149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의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개발제한 해소	수정수용
150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관련 부담 완화	수정수용
151	소성로 굴뚝 배출가스 측정기기 부착 설치시기 연장	비수용
152	소성시설 설비 가동개시 시점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개선	기수용
153	수도권 발전소 LNG 사용 의무화 조치 완화	비수용
154	수입 유해화학물질 통관제의 개선	기수용
155	수질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개선	비수용
156	수질자동연속측정기(TMS) 부착 유인제도 도입	기수용
157	시멘트 생산시설로 자체 발생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인허가 면제	비수용
158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검사지원	수용
159	신규화학물질 활용규제 개선	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6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중복해소	기수용
16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중 유전독성시험 자료제출 간소화	기수용
162	실내 VOC 규제일정 및 기준 명확화	수용
163	악취 공기희석관능법 삭제 또는 완화	수정수용
164	악취배출허용기준중 공업지역 500배 공기희석관능법 개선	비수용
165	악취측정 방법 중 「직접관능법」 항목 삭제	기수용
166	오폐수 병합처리 특례 확대(허가 병합처리)	수정수용
167	위탁 재활용업체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탁기업 재반입 처리	비수용
168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대한 연간보고 폐지	수용
169	유독물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설비설치 의무규정 개선	비수용
170	유분분석과 관련한 폐기물의 공정시험방법 개선	비수용
171	유해물질 비산 방지관련 단속기준 구체화	수용
172	유해화학물질 심사신청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수용
173	인·허가 협의시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완요구 금지	수용
174	일산화탄소(CO)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합리화	수용
175	입자의 크기가 1mm 이상인 계량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	수정수용
176	저유황유 사용시기 연기	비수용
177	정부규격 통일화 (상위기간에서의 통합)	기수용
178	제지슬러지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수용
179	준공업지역 내 소음규제 완화	비수용
180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또는 예외 인정	일부수용
181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산정시 NO ₂ 에서 NO로 변경	비수용
182	철강 슬래그 재활용 용도 확대	기수용
183	총인, 총질소 규제시기 연기 및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	수정수용
184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특례상의 초과인정시간 적용방법 개선	기수용
185	토양오염 검사규정 완화	기수용
186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 검사항목 중복의 개선	기수용
187	폐기물 관련 관할기관의 일원화	수정수용
188	폐기물 배출의 원단위 산정근거 명문화	수용
189	폐기물 예치금 부과면제업체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	수용
190	폐기물 처리용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다이옥신 측정 면제	비수용
191	폐기물 처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일부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92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간소화	기수용
193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변경신고 완화	수용
194	폐기물의 보관기간 현실화	수용
195	폐기물의 재활용 적용기준의 설정 현실화	수용
196	폐기물의 재활용시 일지작성 및 실적보고 개선	수용
197	폐기물처리단가 고시제도 개선	수용
198	폐수 배출시설 분류기준 축소	기수용
199	폐수 위탁처리업무 개선	수용
200	폐수 재이용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수시설(역삼투시설 등)에 대한 규제완화	기수용
201	폐전선 재활용가능업체의 확대	기수용
202	폐주물사 처리방법 구체화	수용
203	포장공간비율의 합리적 조정	수정수용
204	품질관리·환경관리의 합리성 제고	수정수용
205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자체처리 후 방류수 허용기준 완화	비수용
20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대상면적 조정	비수용
207	환경관련 기술자문기관 확대지정	일부수용
208	환경관련 중요한 법이나 제도의 변경시 사전 공지	기수용
209	환경관련법에 대한 지자체 해석상의 혼선 개선	수용
210	환경영향조사 기간 단축(법적기준과 협의내용 기준의 상이)	비수용
211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행위주체 범위 확대	수정수용
212	환경(수질)오염방지관련법 시행기간 유예	비수용
213	환경측정장비(TMS) 정도 검사주기 완화	기수용
214	환경특별대책지역 내 굴뚝배출 가스자동측정기의 부착의무 유예	수정수용
215	ISO 140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의 통합	수정수용
216	NOx 배출에 대한 부과금 면제점 설정(면제점 미 확정)	수정수용
217	TMS 부착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연장	기수용
218	VOC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신고제도 통합	기수용
219	VOC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 완화	기수용
220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기수용
221	VOC 저장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폐지	기수용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김각중(전국경제인연합 회장)



국민의 정부는 기존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등 많은 규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등 핵심 규제가 개혁되어, 기업의 준조세를 줄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내의 외국경제단체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쟁력은 부존 자원이나 생산요소보다는 법률과 제도, 규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규제 위주의 기업정책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유치도 기대할 수 없다.

규제개혁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손쉽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규제 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스탠다

드가 아닌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나 자금 조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최근에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규제가 적지 않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회사조직이나 영위업종, 자금조달방식 등 기업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중복규제는 부처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조사나 점검이 부처별로 중복되고 심지어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다. 그 간 크게 달라진 환경에 부합되도록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부처간의 기능도 조정해야 한다.

셋째,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져, 지금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개별 법조항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통폐합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을 정부혁신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도 정책이므로 정책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성과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제2절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제4절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제1절_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1.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방안(건교부)

가. 추진배경

- 자동차 1천만대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관리관련 업무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면서 신규 및 이전 등록을 비롯한 자동차 관리업무 전반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 증가
 - 이에 따라 기존 전산시스템의 용량확대 등 보완·개편과 함께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관련민원행정종합정보망의 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2001년에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전산망 상호 연계 사업이 마무리됨
 - 그 동안 자동차 등록시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전산망을 통
-

한 전자정보 확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업무개선을 추진

나. 현황

- 자동차 등록(신규, 변경, 이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구 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해당 관청 또는 업체를 방문·발급받아 직접 제출

자동차 등록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 사본)
-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번호판
- 이전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증여증서 등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

다. 문제점

- 자동차의 제작(수입)·관리와 관련된 기관간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각 기관을 방문·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초래
 - 등록관청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력 소모
 - 구비서류 확인으로 인한 등록절차의 복잡화 및 이에 따른 비효율적 민원처리
 - 증명 발급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라. 개선방안

-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련기관간의 전산망 상호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

구 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 고
신규등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제작사	개발완료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류	관세청	개발완료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자치부(읍·면·동)	개발완료
	책임보험영수증	보험회사	개발중
변경등록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행정자치부(읍·면·동)	개발완료
이전등록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행정자치부(읍·면·동)	개발완료
	책임보험영수증	보험회사	개발중

마. 추진실적

-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시험운영 및 보완 : 2001. 7~12

- 시스템 안정화 및 신·구 체계 병행 운영 : 2001. 8 ~ 12
- 책임보험망 연계 : 2001. 10 ~ 2002. 2
- 시행 : 2002. 3
-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 2002. 3

2.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산자부)

가. 과제내용

- 정부 내 각 부처간의 표준제도간 연계가 거의 없고, 동일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의 기본이 되는 용어, 단위 및 표준의 서식체계가 달라 국제표준 과도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 ISO, IEC, ITU 등 각종 국제표준기구에 카운터파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공식기구뿐만 아니라 특정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비공식 표준화 기구 및 컨소시엄 등에도 대응되는 기관을 지정하여 공식기구의 하부조직으로 편입

나. 주요 추진현황

- 국제 표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2000. 11)
 - 〈주요골자〉
 - ⇒ 국가표준제도 기반 구축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국무총리)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표준 종합조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표준환경에 신속대응하는 기초를 구축
 - 민간주도형 표준제도를 확립하고, 상이한 국가표준의 통일화 추진 등 국가

표준 체계를 혁신하며, 『국가표준 종합정보센터』의 구축, 표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예산 확대를 통해 국가표준활동 기반을 강화

⇒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 생명, 물류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대폭 확충하고, 국제표준과 부합되도록 국가표준을 정비하여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 측정표준 확립분야 및 정밀도 수준을 선진화함으로써 미래산업 선도기능을 확충하고, 생명공학 등 전략분야의 참조표준 개발을 강화
-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대응 및 선점을 추진하고,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활동을 강화

⇒ 기술적 무역장벽의 해소 노력 강화

- 국내 적합성평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정비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도모
-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간·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적 무역장벽을 타개하고, 수출을 지원

● IT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국가표준화기구의 역할을 명확화 (2001. 7)

- 정보분야는 ISO/IEC 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이 KS로 제정하도록 일원화
- 통신분야는 ITU 대표기관인 정통부가 표준을 제정하도록 조정

● 각 기관별로 분산된 국가표준을 종합 연계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 내에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설치를 착수, 추진중

- 사업기간 : 2001. 8. 1 ~ 2006. 7. 31(5년)

* 2001(1차년도) 사업비 : 총 10억원(정부출연 750백만원, 민간부담 250백만원)

- 국가표준 DB구축, 국가표준정보망(국내외 규격정보, 표준정책 정보, 적합성평가 정보, 참조표준 정보 등) 구축, 각 기관별 표준정보망의 연계사업 등

● 국제표준화기구에 상응하는 표준심의체계의 정비

- 산업표준심의회에 산업체 의견을 위해 업종별 단체, 업체 전문가 위촉 확대 : 2000년 말 15% → 2001년 9월 말 기준 50%

- 국제표준의 동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를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에 상응하도록 개편

- 2000년 말 210개 분과 → 2001년 9월 말 기준 594개 분과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 가입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전개
 - 2000년 말 기술위원회 920개 중 351개 가입(38%)
 - 2001. 8월 말 기준 440개(47.8%)

다. 향후 추진계획

- 민간부문의 표준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로 표준제도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보급·확산
- 지속적인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확대 및 국제기구의 간사 또는 의장 수임을 적극 지원

3. 단체표준의 활성화(산자부)

가. 과제내용

-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에 의한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보다는 기업중심의 기술별 표준화그룹 및 단체들이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단체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 특정기술별 자발적인 표준화관련 단체결성을 자유롭게 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표준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정부와 업계, 표준화기구간의 역할 체계를 정립하여
 - 소비자 보호, 보건, 환경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정부가,
 - 「사실상 표준화」와 같은 상업적, 전략적 특성이 강한 분야는 민간부문이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비

나. 주요 추진현황

- 「전자산업 JTC1 및 사실상표준화 대응강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 재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 총 사업기간(총 사업비) : 2001 ~ 2005년(6,750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백만원)
총사업비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정 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민 자	350	350	350	350	350	1,750

- 사업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 주요 참여기업(대학, 연구소)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영상 연구조합, 인터넷TV협의회, IC카드연구조합, 전지연구조합, 디스플레이연구 조합,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등
- 사업내용
 -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에 공동대처가 시급한 분야부터 연차적으로 국내 「사실상표준화단체」(포럼, 컨소시엄, 워킹그룹, 협의회 등)를 구성
 - 공동으로 국제표준회의 참가, 공동대표파견,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확산, 표준정보문헌 발간 등 업무수행

구성 및 운영중인 포럼

- ①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포럼
 - PLC 기술은 우리 산업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내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국제표준화 선점을 목표로 추진
 - 디지털 가전, 사이버 홈, 통신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정의 표준화가 진행 중
- ② 멀티미디어 저작권보호(SDM, Secure Digital Multimedia) 포럼

- 우리 고유의 시장이 존재하는 국내 가요시장을 거점으로 국제표준화 작업에 진출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및 Watermark 기술에 대한 공개시험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콘텐츠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 * Watermark : 지폐의 위조방지 마크 등과 같이 복제품과 진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③ 전자지불 포럼 / 전자화폐 분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시급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전자화폐의 표준화를 지원
- 국제적으로 유력한 표준화 실세인 ISO, EMV, CEPS에 대한 공동 대처작업 등으로 업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 중

④ 음성정보기술(SIT, Sound Information Technology) 포럼

- 음성정보기술은 우리 고유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바, 국내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술을 축적한 후 국제 경쟁에 참여
- 음성처리기술, 음성응용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시장활성화 초기에 표준화 추진
- * 향후 5개년에 걸쳐 '디지털 Video Disk Recorder' 등 11개의 새로운 포럼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임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와 민간간 표준화 역할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는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표준정책의 수립, 공공성을 지닌 국가표준의 제정·관리에 주력하고, 민간은 단체표준 제정 등 전문기술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주력
 - 민간부문의 표준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정부·민간 합동의 표준정책 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사실상의 표준화 분야에 대한 민간주도적 역할을 확대

4.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산자부)

가. 과제내용

- 현재의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은 제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나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적인 표준체계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 ⇒ 서비스 부문의 표준화 업무가 범정부적 표준화 작업에 추가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정 측면의 표준화를 포함시키되 발전된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각 부문별(의료, 금융, 유통, 건설, 문화관광, 교육 등)로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서비스 표준화의 국제동향

- WTO/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표준이 서비스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표준과 부합할 것을 요구
- 국제표준화기구 및 EU에서는 서비스규격 제정을 본격 착수
 - 국제표준화기구(ISO) : 관광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 중
 - 유럽표준화기구(CEN) 및 프랑스 표준협회(AFNOR) :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규격 제정 중
 -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EU영향력을 감안할 때, EU의 서비스 규격정비 후 본격적인 국제표준 제정활동이 예상됨

(2000년 현재)

구분	규격수	제정분야
ISO (국제표준화기구)	20종 - 개발 중 : 11종 - 완료 : 9종	○관광서비스
CEN (유럽표준화위원회)	33종 - 개발 중 : 11종 - 완료 : 22종	○유지보수 서비스 ○청소서비스 ○건설서비스 ○교통서비스 ○관광서비스 ○우편서비스
AFNOR (프랑스표준협회)	93종 - 개발 중 : 48종 - 완료 : 45종	○관광서비스 ○교통서비스 ○이사서비스 ○수선서비스 ○장례서비스 ○우편서비스 ○A/S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등

나. 주요 추진현황

- 서비스 표준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제동향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산업표준화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 추진
- 서비스 표준을 위한 부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2001. 1)하고, 30개의 픽토그램(공공안내그림)의 KS표준을 제정(2001. 9)

다. 향후 추진계획

- 국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서비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용어, 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서비스 제공자 및 소비자에게 보급

5.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특허청)

가. 과제내용

- 민원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ON-LINE, ONE-STOP 방식으로 처리하고, 특허넷 시스템의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출원인 코드 즉시 부여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외국관련기관과의 특허망 구축이 완성된 시점에는 각종 증명서류의 요구를 폐지
 - 온라인 심판 청구제도 도입, 지난망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심판청구 허용
 - 산업재산권 등록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정보의 확인이 가능 할 경우 첨부서류 감축

나. 주요 추진현황

- 「특허넷」시스템의 온라인망을 이용한 출원인코드 즉시 부여
 - 출원인코드 즉시 부여 과제는 전체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대리인 출원에 대해서 서비스 개통(2000. 11)
 - 개인 출원인에 대해서는 「사이버통합민원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02. 3월 부터 서비스 실시
 -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출원인코드 신청 이외에 전자문서 이용신청 및 인증서(전자서명키) 발급을 온라인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국정원)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한 구비서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 중임
- 「온라인 심판청구제도」 추진
 - 2001년 상반기에 사정계 심판온라인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래밍 완료(2001. 6)

- 2001년 하반기에 사용자교육 및 테스트를 거쳐 2002. 3월부터 개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첨부서류 감축」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4C(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
 - G4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국가주요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청내 수요조사 실시 및 기획예산처 협조요청(2001. 3)
 - ※ G4C(Government For Citizen) :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
 - 5대 분야 국가주요정보(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에 대하여 기관간에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등 참여
 - 2002년까지 시스템 구축 예정
- 「외국관련기관과의 특허망 구축」
 - 한·일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실시 추진 및 한·일 전용망 구축을 통한 3극망간 전용망 가입추진
 -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을 위한 특허법 개정(2001. 2)
 - 제2차 한·일 전산전문가회의(2001. 4)
 - * 2001. 7. 1일부터 양청간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합의 및 실시
 - 3극기술회의에서 우리청과 캐나다 특허청의 3극망 연결합의(2001. 5)
 - 특허청의 3극망 활용분야 및 연결방법 3극에 통보(2001. 6)
 - 한·일 구간 네트워크 구축 및 3극망 연결 예정(2002. 4)
 - ※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제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의하여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선권 증명서류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 우리나라의 현황
 - 특허분야에서는 각 특허청간 교환되어야 할 데이터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종이문서 형태로 교환되고 있고

- 특히, 건당 100페이지 이상에 이르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발급신청·복사·우송(출원인)과 보관·관리, 전자화 등(특허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우선권주장출원(외국→한국)은 연간 약 25,000건, 우선권증명서 발행건수(한국→미국)는 연간 약 3,500건에 이름

※ 3극망

- 미국(USPTO), 일본(JPO), 유럽특허청(EPO)을 연결한 네트워크
- 1998. 11월 3극간 보안 전용망 연결(사업자 : 네덜란드 텔레콤 KPN)
- 기술사양 : 가상사설망(VPN), 64Kbps회선대역폭, FrameRelay방식
- 활용현황
 - 우선권증명서류, 회의자료, 일반행정문서 등 교환이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
 - 삼국 특허청간 내부검색시스템 공동활용

6.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청)

가. 과제내용

- 통계자료 제공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자료 제공 요구시 청구자와의 논란의 소지를 제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통계법 개정)

나. 주요추진 내용

- 통계자료제공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
 - 「통계자료제공규정」개정 (통계청 훈령 : 2001. 4. 11)
- 〈주요 개정내용〉
- (1) 통계조사별 자료제공 범위 확대 · 조정
 - ⇒ 인구동태(사망원인)통계
 - 지역별 사망자수 : 시 · 도(종전) → 시 · 군 · 구(개정)
 - 성별 사망자수, 연령별 사망자수, 월별 사망자수 : 전국(종전) → 시 · 도(개정)
 - ⇒ 인구이동 통계
 - 행정구역, 성별 전출(입)자, 연령별 전출(입)자, 월별 전출(입)자 : 시 · 군 · 구(종전) → 읍 · 면 · 동(개정)
 - 각 세별 전출(입)자 : 5세(종전) → 각세(개정)
 - ⇒ 사회통계조사
 -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가구의 소득규모, 생활보호항목 : 제공 불가(종전) → 제공(개정)
 -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 납부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매출액, 전세보증금, 임대료수입 : 신규조사 항목자료 제공
 - ⇒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조사자료 : 미제공(종전) → 제공(개정)
 - ⇒ 기타사항
 - 늘어나는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별 사업체의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
 - 통계자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조사별로 자료의 특성, 이용상의 유의사항 등에 설명자료를 자료 제공시 함께 제공
 - (2) 자료제공 기준의 합리적 조정
 - ⇒ 전산지도자료의 제공기준 변경
 - 별도로 정하는 지리정보보안규정(국정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름
-

⇒ 현실성 없는 규제 완화

- 종전 : 자료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
- 개정 : 자료사용 후 즉시 폐기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 개정 내용을 게재, 홍보

-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통계법 개정 추진은 국세청과 업무협의 결과 국세기본법 제 81조의8(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과세자료의 제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통계법 개정작업 추진의 실익이 없게 되어 종결처리하고 장기과제로 검토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선진국들의 관계법령, 행정자료 이용실태 등 폭넓은 기초자료의 수집을 통해 제반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입법화를 재추진

7. 생명공학관련 법령정비(복지부·과기부)

가. 검토배경

- 생명과학은 암·AIDS 등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고 미래의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인간복제 가능성과 배아연구로 인한 인체의 존엄성 훼손, 유전정보의 유출·남용·상업화로 인한 인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등 윤리적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
- 인간의 존엄성 및 안전 확보와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서로 경합하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로 선정(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

나. 개선방안

- 생명의 존엄성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기초위에 생명(인간)복제 및 배아 관리, 유전자치료, 유전자재조합실험 등을 관리할 법령을 제정하여 안전·윤리기준 제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체유해성 관리에 중점을 둔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 기본법’ 제정 추진
 - 과기부는 인간복제 등의 윤리성에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연구개발관련법령 제정을 검토
- ⇒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생명공학관련법령을 조속 제정·시행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 연구 용역(2000. 3)
 - 연구팀 주관 공청회 개최(2000. 12)
 -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등 분야를 보완하는 2차년도 연구 완료(2001. 11)

다. 추진일정

(1) 추진실적

(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 연구용역(2000. 3) 추진 및 연구팀 주관 공청회 개최(2000. 12)
-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정보보호 등 분야를 보완하는 2차년도 연구(2001. 11 완료)

(나) 과학기술부

- 생명과학자, 의학자, 인문사회학자, 시민·종교단체 대표 등으로 「생명윤리자문 위원회」 구성(2000. 11) 및 18차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

검토작업 후 중간보고서 작성(9월 중 과기부에 중간보고서 제출)

(다) 재경부, 감사원 등

- 부처별 입법추진을 지양하고 관계부처와 입법의 내용·형식·주무부처 등을 협의 결정 후 법제화 추진토록 하고 2002년 5월 부처협의토록 함

(2) 법률 제정시 주요 검토사항

- 생명복제 및 배아이용분야
 - 인간 개체 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 융합을 금지하고 배아 생산 및 이용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난치병치료 연구를 허용토록 함
-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 검사에 대한 피검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유전자 검사 정도 관리 및 개인 유전정보의 누설 및 차별 등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 유전자 치료
 - 생식세포·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 금지
- 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용
 - 유전자원의 국외 유출 및 국민건강 향상 이외 목적 사용의 방지 등

(3) 향후 추진계획

- 국민건강 증진 및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현실적 필요와 인간의 존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입법 추진
 - 개인 유전정보의 누출·오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관리체계 구축
 - 특히 연구목적의 배아 이용 범위에 대하여는 각계 전문가 의견, 여론, 해외 입법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
- 2001. 11월 이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의 시안을 토대로 입법내용, 형식, 주무부처 등에 대한 부처간협의 및 정책조정을 거쳐 2002년부터 입법추진
 - 관련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안을 보완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일점 도출

8.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 (재경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영상 애로가 노정됨에 따라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지원제도의 강화가 요구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2001년 상반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전년도보다 각각 5조원, 2조원씩의 보증자금을 확대하여 총 37조원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며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기술집약형 금융에 집중지원토록 함(‘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년도 업무계획’ 마련)
 - 어음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도입된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현금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기업구매전용카드 보증지침’ 마련)
 -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전용 Primary CBO에 대해서도 보증지원토록 함(‘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유동화증권 특별보증지침’ 마련)
 -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용 Primary CBO에 대해서도 보증지원토록 함(‘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유동화증권 특별보증지침’ 마련)

9.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재정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와 관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제·개정, 협회등록(취소)의 승인, 코스닥시장의 주가감시, 매매심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협회회원에 대한 감리업무 등 제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업협회의 내부조직이라는 점에서 협회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 협회의 회원이 증권거래소 회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에 따라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와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업무권한의 확대
 -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등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코스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예산 및 인사상의 독립성 확대
 - 코스닥위원회의 예산을 증권업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고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할 경우 코스닥위원회위원장과 협의토록 의 무화함
- * 증권거래법 개정(2001. 3. 28)

10.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재정부·금감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 은행법규를 준용하고 있음
 - 현행 은행법규는 off-line 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고객관리, 내부조직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뱅킹 영업에 적합치 않은 요소가 많음
 - 인터넷은행은 고객이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결제, 투자상담, 대출 등 은행업무를 처리하므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능력과 정보기술력이 영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 무점포로 운영되며 인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진입기준 및 은행의 자회사 설립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기존은행의 인터넷은행 주식소유 허용
 - 기존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은행법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하여 기존은행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
 -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 관련법령 및 금융이용자보호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

11.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재경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등이 증권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권회사는 동 상품의 취급이 불가능함
 - 증권사, 감독기관 등이 장외파생상품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
 - 그동안 장외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외환”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외국환은행이 주로 참여
-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인 만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장외파생상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건전성 규제, 증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증권회사의 겸업업무로 허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로 한정
 - 종합증권회사로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300% 이상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파생금융상품전문인력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그 중개를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
 - 외국거래소 등 외국시장에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방법에 의하고 거래상대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일 것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 알아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와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시 이에 관한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미리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할 것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는 동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총위험등을 서면으로 충분히 고지할 것
- 월별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2. 2. 9)

12.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재정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선물거래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일임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되고 있는 증권회사와 형평에 어긋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어긋남
 - 선진국에서도 일임매매조건에 대해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
- 특히 국내 선물업계에는 선진국 선물시장에서와 같은 선물거래자문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일임매매수요를 충족시킬 기회가 없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위탁자와 선물업자가 사전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 수량·가격 및 집행시기는 선물업자에 일임을 허용
 - 종목과 매수·매도 구분은 위탁자가 건별로 주문
 - 원금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선물거래의 위험을 감안하여 일임거래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
-

*2002년 선물거래법 개정시 반영(일임매매 허용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발의 중이므로 동 심의결과에 따름)

13.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금감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사의 경우 단위형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성과급 보수가 허용되고 있으나 추가형 투자신탁과 채권형에 대해서는 성과급 보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성과급 보수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불허
- 자산운용자에 대한 성과급 보수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투자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없음
- 또한 운용조직의 인사관리상 비효율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우수 운용인력의 고액 연봉 스카우트 경쟁을 유발하여 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성과급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확대시행(2002년 1/4분기)
 - 사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제를 확대시행
 - 가입대상이 기관투자자, 일정규모 이상 투자자 등으로 제한된 단위형펀드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제를 시행하되 과도한 성과보수 취득을 위한 투기적 자산운용 방지를 위해 운용실적 부진시의 Penalty 등 보완방안을 강구

14.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재경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근임원 중 1인 이상 및 상근직원 중 2인 이상,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근임원 중 1인 이상 및 직원 중 4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투자자문업이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투자상담이나 조언을 하고 있는 영업점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임
- 투자자문사는 금융업 중 금융전문가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회사로서 유일한데 운용전문인력 보유요건이 과중하여 회사운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다한 투자자문사 운영경비는 투자자부담으로 귀결하고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를 유발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운용전문인력 인원수 축소
 - 투자자문업의 경우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 중 2인 이상 보유하도록 완화하고 투자일임업의 경우 상근 임·직원 중 4인 이상 보유하도록 완화
 - 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범위 확대
 - 증권관계기관에서 신탁재산 운용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는 조건을 금융기관에서 재산운용업무(신탁재산 및 고유재산 포함)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한 경우까지 확대
 - 연수기관의 확대
 - 연수기관을 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 뿐만 아니라 “증권연구원이 인정하는
-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

- * 증권거래법시행령(2002. 2. 9)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2001. 4. 24) 개정

15.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EDI는 1997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여 2000년 현재 전체 청구물량의 50%가 EDI로 청구되고 있음
- 진료비 EDI 청구에 대하여 조기지급, 실사유예 등의 정부지원이 있었으나 효과는 미비
 - * 미국은 EDI에 의한 보험청구시 13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서면청구시는 27일 이후에 환급해주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EDI의 경우 지급 소요기간이 2일 이내, 서면인 경우 일주일로 차별화하여 지급함
 - * 싱가포르의 경우 EDI청구를 의무규정(Medi-net)으로 두고 있음
- 진료비 청구·심사기간의 단축 및 건강보험 관리비용 절감, 그리고 의료부문 정보화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EDI 청구와 서면 등 타 청구와의 지급기간 차별화를 규정
 - 의료기관과 약국의 EDI 청구·심사 유도
 - 진료비 청구·심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요양기관 자금회전을 호전 및 건강보험

관리비용 절감, 의료부문 정보화 촉진 등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2001. 6. 30)

- EDI 청구는 15일 이내, 타 청구방법은 40일 이내 심사기간을 명시
- EDI청구와 타청구방법을 차별화하여 제도적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

16.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거 가족당 1개의 보험증만 제공함으로써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요양기관 방문기록을 모두 하나의 보험증에 기록함으로써 잦은 보험증 교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 요양기관과 공단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 미제출시 가입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불편 초래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별 건강보험증 발급
 - ⇒ 2000. 7월부터 시행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하여 건강보험증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도 가입자의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web-system 구축 추진
 - ⇒ 현재 건강보험증 미지참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77% 정도는 요양기관에서 자격확인 후 진료가 가능하며, 향후 관련 예산과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전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

17.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명한 납세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국세청은 1999년 3월 병원을 신용카드 가맹대상으로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 후 가맹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 대다수 신용카드 수납병원이 특정과목과 사용 카드종류 등을 제한하여 취급 금액을 최소화하고 있고, 심지어 응급의료 지정병원조차 신용카드를 전혀 받지 않는 병원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여전함.
- * 1999. 6. 21~7. 10일 서울소재 30병상 이상의 병원 160개를 대상으로 시민중계실(YMCA) 모니터가 전화 및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병원의 신용카드 수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6%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

	신용카드 받는 병원	신용카드 안받는 병원	계
100병상 이상 병원	54 (72.0)	21(28.0)	75
30~100병상 미만 병원	51 (60.0)	34(40.0)	85
계	105(65.6)	55(34.4)	160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의료기관과 약국병원 및 의원에서의 신용카드 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발굴
 -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교육부, 노동

부 등 관련 부처에 협조 요청(1차 : 1997. 12. 8, 2차 : 2000. 12. 15)

⇒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 1999년도 : 2.0~5.0% → 1.5~3.0%,

- 2000년도 : 1.5~3.0% → 1.5~2.7%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협조 공식 요청(2002. 3. 29)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한방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자발적 수수료율 인하 추진 통고

⇒ 향후 관계기관·단체 및 카드사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통해 병·의원·약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1.5~2.0% 이하로 인하 추진

*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용역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

제2절 _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원격의료제도 도입(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제18조제1항)은 의료행위를 의사의 직접 진료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화상진료 및 전화상담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관련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원격의료 실시 후 그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이나 귀책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 의료법 제18조제1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 미국은 60년대부터, 캐나다는 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1997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수행 중이며,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법에서 전화 또는 텔레비전 화상 등을 통한 재진에서는 기본진료 즉, 재진료를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진방문을
-

줄여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원격의료는 ‘영상을 포함하는 환자정보의 전송에 기초를 두어 원격지에서 진단, 지시 등의 의료행위 및 의료에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오·벽지 진료 등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원격의료에는 ①의료기관간 또는 의사상호간 의견교환 ②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의 원격의료 ③의료기관과 가정간 원격의료 ④의사 외의 보건의료인과 가정간 원격의료 ⑤원격의료에 관련한 화상회의가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원격의료 허용을 위하여 의료법령 정비
 - 원격의료 행위의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과 처벌사항 등 부당한 의료행위의 처벌규정 마련
 -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2002. 3. 30 의료법 개정)
- 원격의료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우선 의료기관간 또는 의사상호간 의견교환 및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 관련 기관간의 원격진료 등 Telemedicine을 인정
 - 그 다음 의료기관과 가정간 원격진료 및 의사 외의 보건의료인과 가정간에 발생하는 행위인 Tele-care를 의료행위로 인정
-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으로 지정
 -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의료인과 환자의 금전적·비금전적 비용부담을 경감

2. 전자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 (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종이 진료기록부와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외의 전자진료기록은 임의수정, 변조 가능성 때문에 의무기록으로서 법적 효력이 제한
 - * 의료법 제21조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 * 일본후생성은 1999. 4. 11일부터 진료기록카드가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 기간 내에 복원 가능한 형태로 보존할 것 등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인정
 - * 미국 보건부도 2001년 10월 전자서명법이 발효에 맞추어 연말까지 전자 의무 기록의 개인 비밀보호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예정
- 현행 종이 의무기록은 효율성과 안전성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
 - 노령화, 만성병환자 증가, 새로운 검사·진단법 등의 증가에 따른 의무기록의 폭증으로 인한 작성, 보관, 전달 및 관리비용이 증가
 - 비체계적인 의무기록 작성으로 인한 기록검색, 파악 및 분석비용 증가로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이를 진료에 환류시키는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제약
 - 의무기록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거나 종이 의무기록을 위·변조하는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민 형사소송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의료법령을 정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 의무기록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 및 전자 의무기록을 인정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 의무기록 도입(2002. 3. 30 의료법 개정)
- 전자 의무기록의 위·변조 방지 등 관리대책 마련
 - 전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여 전자기록의 수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 이미 저장된 전자 진료기록에 대한 삭제 첨가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고, 변경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제시
 - 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전자 의무기록 관리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공인하여 의료기관이 전자 의무기록 관리를 위탁하도록 허용

3.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시 전자처방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복지부는 인터넷 처방전은 위조나 해킹의 가능성과 의료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종이처방전 2매 발행)
-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종이처방전을 2매를 발행하면 환자는 이를 소지하고 약국을 전전하여야 하며,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후 EDI청구를 위해 전산입력하여 약제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 의사는 진료기록 입력과 동시에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미리 조제하여 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불편을 경감할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된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령 등 보완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개정하여 전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서명된 전자처방전 교부시 종이처방전은 1부만 교부할 것을 명시(전자처방전 표준서식 등 필요 내역을 고시)
 -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처방전의 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인정하도록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2002. 3. 30 의료법 개정)

4.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복지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법령들은 인터넷시대의 인터넷 상담·전자처방전·전자정보저장·원격진료나 재택진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욕구대응에 미흡
- 현재 보건·의료정보화의 부진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적인 관리비용 부담이 발생
 - * 미국은 의원급 클리닉의 경우 EDI를 비롯 임상진료(원격진료 포함)를 웹방식의 의료전산화시 의·약사 1인당 연간 1만달러 절약
- 또한, 병원마다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코드 및 서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교환도 어려운 상태

나.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의료정보 전송표준, 용어 및 코드화 등 표준화
 - 전자의무기록 인증체계 구축
 - 의료기관 정보화 촉진
 - 진료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개발 등⇒ 단계적 추진중
- 필요시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 제정 검토

5.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공정위·행정부·산자부·법무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허위·과장광고 등에 관한 규제의 혼선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업과 관련하여 인터넷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도 규제대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초래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간의 업무의 혼선 가능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 발생
-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 제도의 도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의 경우 10일 이내, 다단계 판매의 경우

20일 이내의 무조건적 청약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에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청약의 철회만을 인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허위·과장광고의 중복규제 개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정비하여 중복규제조항 등을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간의 업무조정(2001년 상반기 : 공정위)
 - 현재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소관 사항을 분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분야를 조정
 - 통신판매에 있어 무조건적 청약철회 제도 도입
 - 다만 농산물 등 짧은 기간 동안 부패 내지 손상되기 쉬운 물건에 한해서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단기화 또는 적용을 제외토록 함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반영(2002. 2. 28)

6.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재정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IC카드형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종의 전자상품권적 성격을 가진 30여종 이상의 결제수단이 통용중에 있음
- 전자금융의 특성상 사고발생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이 우려되나 현재 이를 규제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음

- 특히 비금융기관 발행 전자상품권의 경우 사업자승인규정이나 소비자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고의로 시스템을 철거할 경우 고객의 피해가 우려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 배분 문제, 고객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위·변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은행의 사고 책임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하여 공정위 심사를 거쳐 시행
- 다만,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전자화폐의 경우 영업의 형태나 운용시스템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보다는 현행의 개별약관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추후 제정예정인 전자금융거래기본법(가칭)에서 검토키로 함

7. 전자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자부)

가. 과제내용

- 전자거래관련자(소비자, 사이버몰 운영자, 사이버몰 입점업체, 배송회사, 카드회사, 배송업자 등)의 책임범위 명확화
 - 전자상거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의 재판관할권 근거 마련
-

나. 주요 추진현황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2002. 1. 19)
 -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거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전자문서의 효력발생 기준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
 -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민간 인증을 장려
 - 소비자 보호 확대
 -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확대 규정을 신설
 - 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민간자율의 존중
 -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민간에 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를 지원
 - 사이버몰 운영자의 시설 구비 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운영의무 등을 폐지
 -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강화
 - 공공부문 전자조달,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규정을 신설하고, 기술개발·표준화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 민법상 효력(당사자간 합의)을 인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조정절차·조정 성립 등을 규정

8.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정보화 촉진 시책으로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보 이용 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고, 특히 도·농간에는 수요 및 구매력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보화시대에서의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나. 개선방안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이용 능력 지원 및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책 마련
 -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기술개발 및 콘텐츠 육성에 지원 강화
-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 완료(2001. 1. 공포)
-

9.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건교부)

가. 공간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간정보의 공개 현황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초자료인 1/1,000 수치 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각종 주제도,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이,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 * 기타 공간영상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음
- 그러나 공간정보의 유통및활용을위한관련법률 및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정보로 정확히 분류·관리하고, 공개정보는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함

(2) 공간정보 공개를 위한 관련법령 현황

- 측량법(2000. 1. 28 법률 제6238호) 제22조(측량성과 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201호) 제3조(지리정보의 공개)
-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2000. 7. 1 국가정보원)
-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2001. 1. 30 건설교통부 훈령)
- 국립지리원보안업무관리지침(2001. 4. 17 국립지리원 내규)

(3) 미공개 공간정보의 보유 현황

(2000년 현재)

구 분	1/1,000 수치지도	토지특성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비 고
		1/1,000	1/5,000			
보유량	12,428	9,601	6,788	189,455	8	

* 위성영상은 2001년도 시행 중에 있음

(4) 관련법령에 의한 공급 및 유통제한문제점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군사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를,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촬영·묘사·녹취·측량을 금지하고 있고,
- 측량법 제23조제1항(측량성과의 간행)에서는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 등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지리정보의 공개)에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 하위규정인 국가지리정보보안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0조 및 국립지리원보안업무관리지침(국립지리원 내규) 제46조의2에서 지리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토록 되어 있어,
 - 이는 폭넓게 공개를 허용한 상위법령에 비하여 하위규정에서 공개를 구체적으로 제한시키고 있어, 법령체계상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 각종 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사실상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체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중복투자 및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가안보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의 보안시설을 공간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주변지역과 유사하게 위장 처리하여,
 - 일반인이 공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개기준을 마련

(2) 공개기준 마련

- 공간정보의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 마련
 -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정보의 분류 및 관리방안
 - 공간정보의 공개방법
 - 공간정보의 교부·대출·열람 범위 및 절차
 - 공간정보의 제공 매체
 - 공간정보의 교부 수수료
 - 공간정보의 공개에 따른 홍보방안
- 1/1,000 수치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각종 주제도의 공개
 -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보안목표시설은 주기명 및 기호를 삭제 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정보의 공개
 -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보안목표시설은 삭제 또는 주변지역과 유사하게 위장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공간정보 중 보안목표시설이 없어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는 일반인에게 즉시 공개

다. 추진실적

-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 : 2001. 9월 말
-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 2001. 11월 초
- 일반인에게 공간정보 공개 : 2001. 11월 말

10.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건교부)

가.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의 현황

(1) 공공측량의 목적

- 공공측량의 측량기준을 통일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중복측량 방지, 측량성과의 이용 및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함(측량법 제30조)

(2) 공공측량의 대상기관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측량으로서 측량법령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기관(측량법 제2조)

(3) 공공측량의 작업기준 등

-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측량법 제29조)

공공측량작업규정승인 현황

년도별	기관별					
	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비고
계	855	263	481	108	3	
'98	234	80	100	54	-	
'99	254	91	140	22	1	
'00	367	92	241	32	2	

(4) 공공측량성과심사

-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법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확도 확보 등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있음

(측량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5) 공공측량과 관련된 법령 현황

- 법 령 :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 훈 령 :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건설교통부훈령)
- 고 시 :
 -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건설교통부고시)
 -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고시)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의 문제점

(1)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상의 문제점(건설교통부령)

-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보기술(IT), 지리정보체계(GIS), 위성측위시스템(GPS), 토탈스테이션(TS) 등의 최신측량기술 활용 등을 위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공공측량의 경제성 및 정확성 향상을 기할 수 없음
 - * 평면 및 수평위치 결정을 위한 기준점 측량시 최신측량장비의 표준화된 관측 방법과 허용오차 등의 기준이 미비
- 측량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일반적 기준과 기술적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조문내용 및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측량관련 전문가가 아닌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기준 이용에 부적합함
 - * 영상지도제작 및 지하시설물도제작, 수치지도수정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연안측량 등의 표준화된 작업방법 미비

(2)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상의 문제점(건설교통부 고시)

- 공공측량성과 심사시 공종별 중간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종 측량성과를 심사함으로써 심사량 과다로 인한 심사기간의 장기화와 측량성과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음
 - * 1:1,000 수치지도제작은 기준점 측량→항공사진측량→세부도화→도면제작, 지하시설물도는 조사·탐사→도면제작의 공종으로 측량이 실시되고 있으나

측량공종별 중간심사제도가 없음

- * 1:1,000 이상의 대축척 지형도제작과 지하시설물도제작의 정확도는 현지측량성과가 중요함에도 공공측량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심사는 공공측량계획기관과 공공측량심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현지심사 기피로 정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지하시설물도는 현지에서 조사·탐사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도면제작을 하고 있으며, 1:1,000 수치지도는 수평·수직위치 결정을 위한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을 제작하고 있음
-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심사비 징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심사비 징수시 공공측량계획기관과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 * 지자체에서 1998~19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지하시설물도에 재심사시 재심사비 산정기준 불명확으로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과 공공측량계획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된 바 있음

연도별 재심사 건수

구 분	1998	1999	2000	2001. 6월 현재
건 수	24	27	36	2

다.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의 개선방안

(1)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기준에 관한규칙」 전면 개정

- 최신측량기술의 도입
 - 최근 정보기술(IT) 및 수치지도, 지리정보체계(GIS), 토달스테이션(TS), 위성측위시스템(GPS) 측량관련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정보화·국제화에 대응하고 유연성·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신 측량기술에 대한 기술적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최신측량기술을 도입
 - 새로운 측량기술을 채용하여 정보화를 촉진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작업방법,

관측기기를 삭제하여 최신측량기술 적용에 적합한 규정을 도입

* 공공측량의 정확도와 경제성 향상

• 공공측량의 일반적 기준과 기술적 규격 표준화 등

- 측량기술의 발달 및 측량업무영역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공공측량은 측량실시 지역, 측량규모 및 측량의 목적과 종류 등이 매우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측량에 대한 일반적 및 기술적 기준과 규격 등을 표준화하여 측량의 중복을 배제하고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함

- 조문 내용 및 체계를 측량업무의 영역확대 및 최신측량기술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여 공공측량의 기준 및 적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총 109개 조의 병렬식으로 통일된 현행규정을 총 343개조의 각 측량종류별로 tree식으로 구성

* 지도수정측량, 영상지도, 지하시설물도, 토지구획정리측량, 연안측량, 용지측량 등을 신설

* 지도수정측량 방법의 다양화 등(항공사진측량·평판측량·TS측량)

(2)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 처리규정 부분개정

• 중간심사제도 도입

-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측량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동 공공측량성과를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공공측량 공종별 중간심사제도 도입

* 공공측량성과심사는 최종성과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공공측량 중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공측량 공종별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공공측량성과의 현지심사 의무제도 도입

- 공공측량성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측량실시지역이 일정규모 이상인 1:1,000 이상의 대축척 지형도제작을 위한 기준점측량과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한 조사·탐사에 대한 현지심사는 상호 협의 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 도입

*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은 공공측량계획기관과 협의 없이 5km² 이상의 1:2,500~1:500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기준점측량은 성과의 5%,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조사·탐사는 성과의 2%를 현지심사할 수 있는 의무제도 도입

- 재심사비 징수기준 구체적 명문화
 - 공공측량계획기관과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과의 의견 상충해소를 위하여 재심사비 징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 현행 재심사비는 당초 심사비와 같은 요율을 적용 ⇒ 직접인건비는 당초 심사비에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접측량비중 여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

라. 추진실적

(1)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 전면 개정

- 최종 개정(안)마련 : 2001. 9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2001. 10
- *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 전면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현재 검토중임

(2)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 부분 개정

- 최종 개정(안)마련 : 2001. 9
- 장관 방침결정 : 2001. 10
- *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

11.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개선(건교부)

가. 수치지도 제작의 목적

-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수자원, 환경, 교통, 통신, 건설 등 여러 분야의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기본지리
-

정보 제공으로 재해 예방

나. 수치지도 제작현황

(1) 수치지형도 일반현황

-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치지도를 신규 제작하여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급하고 있으며,
- 1/5,000 및 1/25,000 수치지도는 전액 국비로 제작하고, 1/1,000 수치지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을 부담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 수치지도의 제작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추진계획에 의거 국립지리원장이 기본측량으로 제작하고, 2001년부터 지형·지물이 변화된 지역에 대하여 수정 갱신하고 있음

(2) 수치지형도 제작현황

구 분	1/1,000	1/5,000	1/25,000
도엽수	12,428	16,194	750

(3) 수치지도 제작 관련 법령 현황

- 측량법 제26조(측량성과의 수정) : 국립지리원장은 지형·지물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 측량법시행령 제16조(측량성과의 수정) : 국립지리원장은 도시 2년, 농촌 5년, 산악 7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지리정보의 구축) : 교통, 수자원, 지적 등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1995. 5. 29)
 - 코드 및 도식의 표준화
-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원 내규)
 - 제반세부사항 규정, 작업방법, 범위 등

다. 수치지도 갱신 제도의 문제점

(1) 수치지도 예산확보의 문제점(외부적 요인)

- 산업의 발달로 도로, 철도, 주택 등 지형·지물이 날로 변화되고 있으나, 다양한 축척의 많은 양의 수치지도는 이에 신속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곤란함
- 측량법령에서 도시지역 2년, 농촌지역 5년, 산악지역은 7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시에 신속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1/1,000 수치지도	10억	10억	35억
1/5,000 수치지도	35억	33억	55억

* 2002 예산 확보를 위하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의 시급성을 인식시켜 전년대비 109% 증액으로 국회 심의 예정

- 현재 예산배정으로 갱신 소요년수는 1/1,000은 43년, 1/5,000은 25년이 소요됨
- * 갱신 제작 단가 : 1/1,000이 350만원, 1/5,000이 5백만원

(2) 수정 갱신의 기술적인 문제점(내부적 요인)

- 현행 수치지도 갱신은 항공사진 촬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항공사진 촬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신속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국토의 지형변화는 고속도로와 같은 선형의 인공구조물이 신설되는 경향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도로 등과 같은 지형정보 취득에 효과적이며, 신속히 갱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신측량기술 도입이 필요

라. 수치지도 갱신 제도의 개선 방안

(1) 「수치지도갱신우선순위결정기준」 제정

- 전 국토를 전면 수정하기에는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불가능하므로 산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진 고속도로, 철도, 항만, 택지 개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속 정확한 지형정보 취득을 위한 기준을 제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
- 우선 순위 고려할 사항
 - 1순위 : 도시지역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고속도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항, 항만, 철도 등)
 - 2순위 :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서 지형변화가 심한 지역
(일반도로, 하천, 공단조성, 해안매립, 문화재, 유원지 등)
 - 3순위 : 소규모로서 기타지역

(2) 「최신측량기술」 도입

- 수치지도 갱신의 선행과제인 항공사진촬영의 전제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공 사진촬영을 대체 할 수 있는 최신 측량 기술인 GPS를 도입하여 고속도로 등의 선형 지형·지물의 신속한 갱신 체제 확립
- GPS의 개요
 - 개념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프로그램상에서 거리와 위치를 계산하는 정밀측량시스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용
 - 활용분야 : 정밀측지측량, 지도제작, 차량항법, 항해, 항공, 군사 등
 - 측량방식
 - 후처리 방식 : 고정밀 위치결정
 - 실시간 처리방식 : 이동측량으로 지형정보 취득 용이
- GPS의 활용방법
 - GPS 수신기를 차량에 탑재하거나, 사용자가 수신기를 휴대하고 이동하면 실시간으로 즉시 지형정보 취득

- 정확도는 기존 항공사진측량 방법 보다 우수
 - GPS : $\pm(5\text{mm} + 1\text{ppm} \times D)$, 여기서 D=거리(km)
 - 항공사진도화
 - 1/1,000 : 평면 20cm, 표고 15cm
 - 1/5,000 : 평면 1m, 표고 0.5m

(3) 용역사업 발주 일원화

- 수치지형도 제작의 공종별 사업발주를 일괄 발주하여, 연속적인 시스템으로 갱신 체계를 전환하여 갱신 주기 단축
 - 공종별 발주 : 갱신 2~3년
 - 일괄발주 : 1년(2001년 시행 중)
 - * 수치지형도 제작방법 : 기준점측량→항공사진측량→항공사진도화→지리조사→정위치편집→도면제작편집→지형도

마. 추진실적

- 「수치지도갱신우선순위결정기준」 제정
 - 기준(안) 마련 : 2001. 10
 - 기준 제정 : 2001. 11
- 「최신측량기술」 도입
 - 도입 방안 마련 : 2001. 11
 - 방침결정 : 2001. 12

12. 공공부문 수집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방안(건교부)

가. 교통정보수집·제공 현황

(1) 수집현황

(가) 공공부문

- 고속도로 외에는 정보수집 지역이 매우 협소하고 정확하지 않아 널리 이용하거나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임
 -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정밀한 교통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여, 특정도로 이용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또는 우회도로 이용시 소요시간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수집 네트워크가 필요함

(나) 민간부문

- (주)ROTIS 등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및 인근 7개 도시(21개축 470구간) 등 도심지에 단기간 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 사업자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고(ROTIS 외의 2개 사업자가 소규모 시범사업 중이며 경쟁적으로 사업확대 희망, 정부 국도사업과도 중복 소지),
 - 가변교통정보판에 표출 등 교통관리용으로 정밀하게 사용하기에는 정확성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해당지역 교통정보의 공동화 소지가 있음

(2) 활용현황

- 공공부문 정보는 교통상황에 따른 교통관리에 이용되거나, 인터넷·ARS·가변정보판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무료 제공되고 있음
- 민간수집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일반에게 무료로, 핸드폰·CNS를 통해서는 특정서비스 가입자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음
- 공공과 민간간에는 정보공유방법 및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활용이 제한적이고 정보의 활용가치가 낮음

- 민간 수익사업 목적으로 매우 유용한 공공정보인 고속도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원칙이 없어 민간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공공은 민간정보를 구매할 근거가 없어 무상 또는 실비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다소 결여되어 적극적 활용도 곤란함

나. 교통정보 수집 · 제공 활성화방안

- 교통정보 수집 · 유통사업자를 「민간투자법」에 따라 선정
 - 공공과 협력해서 수도권 전지역 주요간선도로에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정보를 포함한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 · 유통할 수집 · 유통사업자(Hub 사업자)를 선정
 - ⇒ 수집된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 또는 실비 제공
 - ⇒ 정보사업자(IP사업자)가 판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교통정보수집장치 설치비용을 보전하고 재투자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감

정보유통체계



- Hub사업자는 정부재정지원없이 전액 민간투자하되,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완전 보장(정보독점방지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지도 · 감독)
 - *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개인 이용자가 확대될 것이므로, IP사업자의 수익도 커지고 Hub사업자의 정보 판매가격도 높아질 것임(따라서, 정보의 정확성

과 직결되는 정보수집기술 선택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결정)

다. 추진현황

- 그간 위 추진방안 도출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1999. 6월부터 관계기관 공식 5차 협의 및 10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관련 연구 2회 실시)

주요 쟁점사항

- 사업의 성격 : 사업의 공공성 및 수익성간 상충
 - ⇒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정보사업(ITS사업)을 공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제정(1999. 2) 이전 사업에 착수한 민간사업의 법적 안정성 결여로 사업 확대도 곤란하고 공공사업과의 중복소지
- 사업추진방식 :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의 상충
 - ⇒ 경찰청은 교통정보사업이 경찰청 소관으로서 민간을 배제하고 경찰청 직접투자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정보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자본 및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정보수집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술방식 확정 곤란
 - ⇒ 다양한 정보수집기술에 따라 정확성 및 투자비용의 편차가 심하나, 국내에 시스템 구축경험이 적어 정확성 평가가 어렵고 정확성 기준도 제시하기도 곤란
- 비용분담 방안 확정 곤란
 - ⇒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주체가 많아 국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 또는 지자체간 비용분담 등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

- 2001. 7월 관계기관 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경찰청 등의 이견이 상존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5차 협의를 2001. 9월 중 완료
- 관계기관 4차 회의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은 같은 것으로 평가함

- 기본정보는 교통관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부가정보는 IP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겠다는 것
- 민간사업자의 정보와 연계 추진(단, 건교부는 사업초기에 민간 참여, 경찰청은 경찰청 사업착수 수년 후에 민간정보와의 연계 추진을 주장)
- 다만, 교통정보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선례 부재(민간투자타당성 불확실), 교통정보사업 경험 미흡, 기추진 사업주체에 대한 관계정립 곤란(경찰청, 국도사업 등) 때문에 완전한 합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1999년 수립 사업계획에 대한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결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성평가를 재실시한 후 그결과에 의해 추진
- 특히, 경찰청과의 핵심쟁점사항인 민간정보와의 연계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2가지 대안을 동시 검토함
 - 1안 : 당초 계획대로 추진(모든 기관사업을 단일화하고 초기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통해 추진)
 - 2안 : 단기적으로 건교부 민간투자사업 및 경찰청 사업을 동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양 사업이 명백히 실체화되는 시점에서 연계·통합 추진(통합 이전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복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

구 분	1999년 사업계획	변 경 사 항
사업비	1,140억	변경 필요
재원조달	중앙정부 : 98.9억 지방정부 : 171.8억 민간 : 862억(75.6%)	전액 민간투자
사업방식	BOT(정부소유 및 운영)	BOO(민간소유 및 운영)
기술방식	비콘방식(도심지) 루프방식(도시외곽)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에 맡김
운영주체	민관합동법인	민 간
중앙센터의 기능	정보통합관리, 상황센터	정보통합관리·제공

라. 향후 조치계획

- 사업성 평가실시 : 2001. 12~2002. 4(4개월 간)
 -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동시 마련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2002. 5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민간투자센터 검토 : 2002. 6~7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고시 및 사업계획 접수 : 2002. 8~10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2. 11~12

13.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지정제도 개선 (건교부)

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사업의 목적

-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한 수출입 및 국내화물유통과 관련된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의 흐름을 자동화·전산화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임

나. 사업 추진현황

(1) 추진현황

- 정부에서는 1994. 7월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에 종합물류정보전산망사업을 반영하여 1995. 5월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국가기간전산망으로 확정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전담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1996. 4월 전담사업자로 한국통신과 한국물류정보통신(주)를 지정
- 1996. 7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제1단계(1996 - 1997) :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단계
 - 제2단계(1998 - 2000) : 서비스 확산단계
 - 제3단계(2001 - 2015) : 초고속화, 첨단화단계

(2) 추진방식

- 정부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관련 유관망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전담사업자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
-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하고,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비용, 표준화, 영세업체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서 지원

(3) 종합물류정보서비스 현황

- 화물차량운행정보시스템 서비스(1998. 12 한국통신)
 -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화물위치정보, 차량 운행관리, 수배송 알선 등을 이용자(화물운송업체, 운송주선업체, 화주 등)에게 서비스 제공
 - 전자문서교환서비스(1999. 3 한국물류정보통신)
 - 물류관련 신고, 허가 등 민원업무 및 선적예약, 운송의뢰 등 기업의 물류관련 각종서류를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통하여 처리
 - 수출입물류정보서비스(2000. 4 한국통신)
 -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개별화물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이용자(포워터, 화주, 일반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화물정보와 통계정보 제공
 - 건교부(공항운영정보), 해양수산부(항만운영정보), 철도청(철도운송정보), 관세청(통관정보), 한국통신(차량운행정보), 한국물류정보통신(항만터미널정보), 한국무역정보통신(적하목록정보) 등과 연계
 - 인천공항화물터미널 물류정보서비스(2001. 7 한국통신)
-

제3절_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55, yhomo@opc.go.kr)

1. 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교육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원격(사이버)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사설학원의 경우 원격(사이버)수업에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이버교육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사설학원에서도 원격(사이버)수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002년 중)
 -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대상에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원격수업도 학점인정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근거 마련
-

2.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경쟁 제고방안(교육부)

가.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단체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법적근거 마련 및 설립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필요

(2)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외국인학교 설립·인가요건 완화, 내국인 학력인정 기준 완화
⇒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추진(2002년 중)

나. 특성화학교 등 관련 규제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개발·지원할 필요

(2)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시설기준면적을 완화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다. 자립형 사립학교 관련 규제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교육기회의 다양화·특성화 확대필요

(2)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수를 확대해 나가고 법인전입금, 학생납입금, 장학금, 학교현장 등 자립형 사립고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

3. 교과서 발행 · 공급 규제개혁(교육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교과용 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 마련 필요
- 국정도서 발행을 특정출판사가 독점 발행함으로써 여타 출판사의 참여가 배제됨
- 공급대행자가 독점적으로 교과서 공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행자가 자사 발행 교과서를 주문자인 학교에 직접 공급하지 못함
-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으로 되어 있는 등 교과서가 획일화됨
-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한 가격결정 방법의 합리화가 필요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과정에서 검정제도의 미비점 개선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교과용도서 용어 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 마련
 - 국정도서의 독점발행권을 다원화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현재 독점발행중인 중학교 1학년 이하 국정도서는 발행권이 종료(2004년)되거나 교과내용 개편시 발행권 다원화
 -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별 자율책임 공급체도로 전환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위하여 국정도서를 검·인정 도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일부 교과서는 자유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 교과서 가격 결정시 일정범위내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 현실화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제고
 - 검정기준 사전 공표기간 연장(현행 6개월 전 → 1년 6개월 전), 검정 신청자의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 2002년 상반기 중 시행

4. 학원설립 · 운영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원을 설립 · 운영함에 있어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 시설기준의 지역별 격차 및 기준 과다, 강사자격 및 교습과정의 법정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성인대상 교습과정 학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원과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시설수준으로 기준완화
 -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조례로 위임토록 한 근거를 폐지하고 학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기준만 대통령령에 규정
 - 강사 자격기준 완화
 - 성인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강사자격 기준 폐지
 - 미성년자 대상 학원은 대학졸업 이상의 강사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중 교습과목이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로 자격기준 완화
 - 성인대상 학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설립절차 완화
 - 학원의 교습과정을 79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금지 교습과정만 규정
-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 개정 추진(2002년 하반기)

5.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교육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정책의 일관성과 대학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통한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 및 우수한 인재 육성이 중요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이 제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과간, 학문계열간 협력이 가능토록 관련규제를 정비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대학운영시 적용되는 개교 후 교수확보를 매년 학생정원에 맞게 확보하여 편제완성년도 전까지 갖추도록 하고, 초빙교원도 법정정원의 범주에 포함 인정
- 2001학년도부터 대학정원조정지침을 폐지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의료인력, 사범계, 국립대학,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조정계획을 적용
- “대학의 행·재정조치개선방안”(2001. 7)에 의거 자율화 확대 조치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현실정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6.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정비(교육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정보화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정보소양 증진 및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교원연수비 지불보증제 실시, 교원 양성과정과 임용시험에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과목 개설, 교과용임용시험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또는 가산점부여 등 교사들의 정보소양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원격교원연수를 위한 원격교육연수원 설립근거 마련 및 연수대상 범위 설정, 원격연수에 따른 통신료 지원
-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제도 정비 및 고등교육기관의 CIO(정보화 책임관) 제도의 도입
- 특수교육에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확대

7.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노동부)

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평가 개요

추진경과

- 1999년부터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
- 그 간 2회의 평가를 통해 우수훈련기관에는 훈련비의 10%를 추가지원하는 등 훈련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 훈련수요자에게 훈련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적 훈련시장의 토대를 마련

평가방법

- 평가 대상 : 당해 연도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 평가 항목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 훈련성과(취업률·자격증취득률 등), 훈련지원(장비확보율·교사확보율 등), 훈련방법(출석률·실습비율 등) 등 20여 개 항목

- 평가 기관 : 전문연구기관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훈련과정 지원
 - 월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간 훈련비의 10% 추가지원
 - 정부지원 위탁훈련에 대한 우선권 부여, 정기점검 면제 등

2000년도 평가현황

- 평가용역 기관 : 공공기관, 민간기관 - 한국직업훈련개발원, 대학기관 - 경영정보연구원, 학원 - 한얼경제연구원
- 평가결과

구 분	1999	2000
대상기관	1,113개	880개
과 정	3,000 과정	2,621 과정
선 정	15개 기관 20개 과정	34개 기관 50개 과정

나. 규제합리화 방안

(1) 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직업훈련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직업훈련의 모법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 법령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에 근거
- 이에 따라 직업훈련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업훈련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근로자 직업훈련 체계하에 평가사업의 일관된 수행이 곤란

(나) 개선방안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직업훈련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평가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기반영(2001. 3. 28)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등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

(2) 평가정보 체계의 구축**(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수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책자 발간
 -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1,232개소에는 자체진단 평가프로그램 CD를 배포하여 자체 평가 유도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훈련수요자의 접근 가능성이 제한

(나) 개선방안

-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3)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간 훈련비 10% 추가 지원, 위탁훈련 우선권 부여,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연도별 지원 현황 : 1999년도, 15개 기관 20개 과정 → 2000년도, 34개 기관 50개 과정
- 우수훈련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어 동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평가제도의 장기적 활성화에 제약

(나) 개선방안

- 평가 결과 우수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재정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마련

8.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노동부)

가.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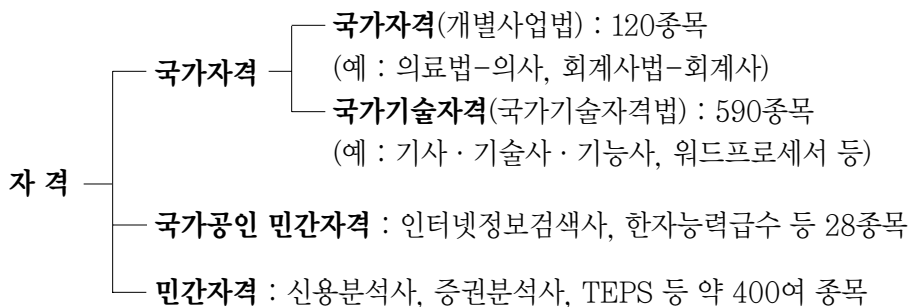
(1) 채택배경

-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에는 취득코자 하는 자격의 직무내용과 상관없이 학력과 기존 취득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질 관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타응시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음

(2) 개선방향

- 취득코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학력(교육훈련과정)을 실무 경력으로 환산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 기존 취득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로 조정

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다. 규제개선 방안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합리화

⇒ 학력 및 기존 취득자격의 인정범위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별표4)에서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각 등급별 응시자격 규정
- 시험방식에 의한 검정기준 내지 평가방법이 완벽할 수 없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으로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응시요건 필요함
 - 응시요건 없이 검정을 수행할 경우 검정비용·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이로 인해 수검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상위등급(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등을 부여함에 따라,
 - 고졸 이하의 경력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질 관리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자격취득자에게 기존 취득 자격 종목과 연관되지 않은 동일등급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상위등급자격에도 실무 경력기간을 단축하여 응시자격 부여함에 따라,
 - 예) - 정보처리기사에게 용접기사 응시자격 부여(기존 취득자격이 없을 경우 4년의 실무경력을 요함)
 - 의류기사에게 4년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부여(기존취득 자격이 없을 경우 11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의 질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타응시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의 상하위 등급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어려움

(2) 개선방안

-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력(교육훈련과정)을 실무 경력으로 환산하여 응시자격 인정
 - 예) 해당 자격분야 관련 대졸 : 실무경력 4년 인정
 - 해당 자격분야 관련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인정
- 기존 취득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로 조정
- 추진방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 5 개정

라. 향후 조치계획

- 응시요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능력중심 사회정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개선방안 연구)을 실시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2, 상반기 예정)

9.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노동부)

가. 관련제도 개요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가능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동법 제54조, 57조)
-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동법 제 59조)
 - *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

급휴가 가산

나.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 근로자(전 산업)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999년 현재 2,497시간으로서,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연간 약 900시간, 미국·일본 보다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시간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은 47.9시간(1999년 기준)으로서, 선진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보다 약 10시간 정도 더 긴 시간임
-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국가별 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폴
2,497시간 (1999)	1,957시간 (1998)	1,868시간 (1998)	1,737시간 (1998)	1,580시간 (1998)	1,634시간 (1997)	2,285시간 (1999)	2,445시간 (1999)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전체 취업자 기준)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휴가 발생일은 22일이나 이 중 8.8일 사용하는데 그치는 등 실제 사용하기 보다 수당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음
 -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상정하여 규정된 월차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이며, 거의 수당으로 대체되고 있어 현재는 임금보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연차휴가제도역시 휴가로 사용되기 보다는 수당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아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확보하는’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음

다. 검토방향

-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근로자 삶의 질 개선’ 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의 가격 경쟁적전략을 탈피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중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용’ 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전반에 관한 새로운 틀’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의 적정화,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단축될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라. 쟁점별 노사입장

근로시간제도 개선 쟁점별 노사 입장

쟁점	노동계	경영계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제 시행	7개 요구사항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초과근로 할증률(현행 50%)	인상	인하(50→2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임금보전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
유급주휴조정(현행 주 1일 유급)	현행 유지	주휴 무급화
생리휴가	현행 유지	폐지
연월차휴가조정	현행 유지	월차 폐지, 연차 상한선 20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일·주·월 단위 상한선이 엄격히 규정되고, 산별교섭체제 도입시 검토 가능	1년 단위 도입
근로시간 단축 일정	업종·규모 관계없이 즉시 시행	상당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 현재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논의사항을 연장하여 세부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중에 있음

마. 검토의견

- 노동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 이를 기초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동 방안 상정시 구체적인 사안 논의

10.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노동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간에 걸친 근로계약으로 강제노동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다양한 계약직(기간제) 고용이 증가하면서 강제노동방지 등의 필요성은 퇴색되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매년 재계약시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대법원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체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1996. 8)함에 따라 본 조항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해고제한 법리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대책 추진상황

(1)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000. 10.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 (i)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최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 (ii)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상정

(2)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경제5단체장 건의사항(근로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0. 12. 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도출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할 것을 결정

11. 여성보호제도 개혁(노동부)

가. 규제합리화 방안

(1) 모성보호제도의 합리화

- (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조정
-

- 현행 출산전후 60일(유급)인 보호휴가를 90일(최초 60일 : 유급, 30일 : 무급)로 확대

(나) 출산 휴가기간 연장 비용 지원

- 현행 출산전후 60일(유급)인 보호휴가를 90일(최초 60일 : 유급, 30일 : 무급)로 확대되는 30일분 임금은 기업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근로자에게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
- 수혜인원 : 연간 10만명 내외, 연간 746억원 내외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72조,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다) 모성보호 수준의 조정

- 유·사산휴가 법제화
 - 현재 행정지침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 유·사산휴가를 법제화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 신설
- 태아검진휴가 신설
 - 모성보호 차원에서 산모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도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시 월 1회 유급 태아검진휴가 부여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신설
- 임신부에 대한 사용금지직종 명기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량물 취급업무, 유해한 물질 취급업무, 기타 유해가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의 업무 등의 경우 임신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모성보호 강화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2) 여성특별보호의 합리적 조정

(가) 생리휴가의 무급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생리휴가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 기업은 생리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으로 이용하고
 - 근로자는 사실상의 생리와 무관하게 개인용무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운용, 여성근로자 저임금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작용

- 따라서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생리현상의 개인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 필요

• 개선 방안

- 여성근로자가 필요시 청구하여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

· 생리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월 1회의 무급휴가 부여

- 추진방법 : 근로기준법 제71조 개정

(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다) 갱내 근로금지

•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직무는 갱내 근로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단서규정 신설로 완화(단, 임신부는 현재대로 금지)

(3) 육아휴직제도의 합리화

(가) 육아휴직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규정하여 남성이 신청할 경우에는

·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남성근로자에게 차별을 두는 문제

· 법문구상 표현도 여성을 우선적인 주된 육아담당자로 규정하여 성별 역할분담 요소 잔존

• 개선 방안

-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나) 휴직기간 중 소득보장

- 고용보험법에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고용보험에서 휴직전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활성화

(다) 복직보장

-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나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의 의무규정 명문화

(라)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년 3개월 이내의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족간호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금지 및 휴직종료 후 복직을 보장

나. 향후 조치계획

-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합리화 방안은 관련법률 개정
 - 출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 출산휴가기간 연장비용 지원,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보장 의무규정 등
- 여성특별보호제도 합리화 방안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관계법령 개정 추진

12.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가. 검토배경

(1) 채택배경

- 직업정보시스템 근거법령 불명
- 복지지원시스템과 노동시장 정보시스템간 연계미흡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연계미흡

(2) 개선방향

- 생산적 복지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강화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정보망,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 등과 연결하여
 -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관련 민간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노동시장정보, 복지정보 및 여타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업무 연계를 도모
 - 우선적으로 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공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
- 국가적 인적자원개발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형성
 - 교육, 재경,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업무협력 및 상호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

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에 따라 추진
 - 별도의 직업정보시스템 근거법령 설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2) 생산적 복지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직업훈련, 구직활동(취업알선), 자영업 창업, 자활공공근로, 자활인턴 등 자활지원 업무간 연계망을 형성하고 노동-복지행정시스템간 연계체계 구축 완료(2000. 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기본인적사항, 구인·구직정보, 직업훈련정보, 실업급여정보 등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체제 구축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대상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자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3) 관련 민간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 Work-Net 기능강화 사업 및 직업훈련정보망 보강사업을 통하여 민간기관에 필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완료(2001. 4)
 - 관련 민간기관들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직무분석과 같은 직업연구결과의 제공,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의 우수/실패 사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 향후 조치계획

국가적 HRD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형성

-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 인적자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부처 내부에서의 상호 연계 및 통합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예정인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의 「인적자원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관련 분야 정보 연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적 HRD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형성

- 인적자원개발 종합시스템 구축
 - 단위 DB구축 : 2002년도
 - 각 단위 연계 체계 구축 : 2003년 이후

13.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제도 개혁(노동부)

가. 제도개선 논의의 구체적 배경

(1). 퇴직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가) 그 간의 역할의 감소

-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전에는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과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
- 그러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간의 잠재적 사회보장 기능이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어 그 역할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나)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관련된 문제

- 퇴직금제도는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근속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기초하여 구성
 - 퇴직금을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7년에 불과하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

(다)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강제해 놓았으나 그 완전한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

(라) 퇴직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

- 기업당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1996년)은 평균 54억8천만원으로 경영상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규모는 임금의 상승,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
- 이에 따라 퇴직금의 임의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주로 경영계)

(2) 외부환경의 요인

(가)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다층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 선진국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최대(40년 근속기준) 생애평균소득의 60%선을 보장하나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가 증대
-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부수준을 낮추고,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기

-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퇴직금의 기업연금화(특히 확정각출형) 방안이 제기
- 실제 최근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을 도입하기로 한 일본도 제도도입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염두
- 그러나 기업연금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다기 보다는 기업연금의 도입결과 자본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보다 유력
 - 이는 기업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노사 또는 기금관리자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

나. 기업연금제도의 검토

(1) 기업연금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

(가)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각출형의 문제

- 기업연금의 기금 및 자산운용위험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요소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확정급부제도를,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들이 확정각출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확정각출형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 노사간의 위험부담외에 확정각출형이 근로자의 전직시 기업간 연금이동이 용이한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나) 임의제도 또는 법정강제제도의 문제

- 도입여부를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지 또는 법으로 강제하는지에 따라 임의제도와 법정강제제도로 구분
- 임의제도는 노사간의 선택만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할 수 있어 제도도입이 비교적 용이
- 법정강제제도는 기업규모별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연금 자산조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그 결과가 근로자에게 다시 배분)

(다) 적용대상의 문제

- 기업규모, 근로자 세대 등을 고려하여 기업연금을 전면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부터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연금을 전면 도입할 경우 근로자간의 형평성은 제고
 - 반면, 기업의 퇴직충당금 사외적립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채무의 해소 문제가 대두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우선 도입하거나, 일정 시점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적용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제도 도입이 가능
 - 반면,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노령 근로세대가 적용제외될 가능성

(라) 세제지원

-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유도하는 데는 다소간 문제
-

- 기업이 퇴직충당금을 사내유보하는 경우에도 40%까지 손비인정, 사외적립 유도에 한계로 작용
-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퇴직연금보험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
-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금 각출시에는 비과세하는 대신, 연금 급부시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나(2000. 12 소득세법 개정)
 - 향후 기업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 세계각국은 기업연금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저축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됨을 감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연금의 도입과 운영활성화를 도모

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및 향후계획

(1) 노동부 의견

-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향후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필요
- 다만,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조세체계, 자본시장의 상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청됨
- 또한 그 도입형태에 따라 노사는 물론 일반국민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소간의 갈등도 예상
-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여부, 도입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 등을 통해 도출할 필요

(2) 향후계획

- 퇴직금제도개선방안(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및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지속
-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관련법 개정조치

14. 근로자 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노동부)

가. 규제개혁 추진개요

(1) 해양수산부

(가)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 1999. 6. 4)

(나)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 계획 보고(제42차 규제개혁위원회, 1999. 11. 12)

(2) 노동부

- 해양수산부의 「항만분야노사정협의회」에 참여
- 「근로자공급사업제도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실시
 - 연구기간 : 2001. 3~2001. 9(7개월)

나. 항만근로자 상용화 추진상 문제점

(1) 현 황

- 전국 200여 개의 하역업자들이 하역·운송·보관사업 수행
 - 항만 하역업 수행은 하역업자가 직접 고용한 상용근로자와 항운노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일용직(노조원)으로 이루어짐
 - 항운노동조합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을 공급하고 있음
 - 항운노조원만을 사용토록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항운노조의 요구 및 관행으로 항운노조원을 사용
-

나. 추진상의 문제점

- 현행 항만노무 공급체계는 「근로자공급사업」이라는 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임
- 항만근로자의 상용화 등 항만근로자 공급사업의 개선을 위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만에 근로자파견의 허용 등 항만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항운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 예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동법의 개정이 없이는 근로자파견이 불가능
 - 동법은 노사정 합의로 제정된 법인 만큼 개정에도 노사정 합의필요

다.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해양수산부의 「항만분야 노동생산성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른 항만근로자 상용화가 실현되는 등 여건 변화시
 - 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제도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제4절_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1. 우수 쇼핑몰 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 (산자부·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와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도”의 성격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혼란과 정책 혼선 방지
 - ⇒ 산업자원부 : 소비자보호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등을 중점 심사
 - ⇒ 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분야와 시스템 안전·신뢰성 등에 대한 심사
 - 미국·일본·EU 등과의 쇼핑몰 상호인증제도 협약체결을 전제로 수익모델이 있는 실질적인 인증제도로의 변환 모색
-

나. 개선방안

- e-비즈니스 대상을 반기별로 연 2회 시상하던 것을 금년부터 연 1회 시상으로 개선하면서 시상품격을 격상(산자부장관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 e-비즈니스 대상 시상범위를 전통기업, 닷컴기업, 지원기업 등 3개 분야로 확대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자부장관상을 시상(2001. 11)하여 위축된 전자거래 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
- 유사인증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증제 운용의 효율성 제고
 - e-Trust 마크 :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 요건을 심사하여 마크 부여
 - i-safe 마크 :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보안·안정성 등 물리적 요건을 중점 심사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도
- 외국 인증마크와 상호 인정 추진
 -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 채택(2000. 9) 이후 상호 인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 2001. 4월 양국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양국의 소비자보호 인증마크 상호 소개
 - * 2001. 10월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서 상호 인정 추진방안 논의

2.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규정 미비
 - 전자상거래 이용과정에서 노출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장치 미흡
 - 전자상거래 업자의 표시광고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의무 고지 등 보호 장치 미흡

- 전자상거래 감시체계 소비자 보호장치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 미흡
- 가상공간 및 국제간 거래를 동반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한계
 -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법상의 “주된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 곤란하고, 외국 서버에 개설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적용 및 제재 곤란하고, “판매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회원제 사이트의 상품판매, mall-in-mall 출현 등으로 적용에 한계(관련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전자상거래관련 규정 정비 및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 통신판매업자의 각종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상에서의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의 판매를 매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장치 마련
 - 전자상거래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보호 기준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법률상 근거 마련)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반영(2002. 2. 28)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 마련
 - 새로운 지불수단 및 거래형태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및 사용확산(전자화폐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등)
- ⇒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마련은 2001. 10월에 완료하였으나 전자화폐 표준약관은 관련부처에서 기본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미추진

3. 민간의 암호이용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암호제품의 제작·생산·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민간부문의 암호이용이 저조
 - 불법적인 암호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향상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암호이용 활성화 필요

나. 개선방안

- 민간에서의 암호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암호이용촉진법」 제정
 - 민간의 암호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이용자의 준수사항 명시
 - 암호키 분실·훼손 등에 대비한 암호문 해독 지원체계 구축
 - ⇒ 정통부 가칭 「암호이용촉진법」 제정 추진 보류(분과위 보고완료)

4.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요건도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 이어서 보호요건이 모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본질과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핵심은 소재의 수집, 가공, 표현을 위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

나. 개선방안

- DB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DB제작자에게 재산권적 권리부여와 함께 DB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DB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한계를 명확화
⇒ 저작권법(문화부) 개정 추진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

박용성(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간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 규제개혁체제를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규제 중 절반수준을 폐지하는 양적인 성과와 더불어 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효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핵심규제의 완화와 유사·중복규제의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지, 건축, 환경, 공정거래 등에서의 규제로 인한 경영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 규제개혁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볼 때, 지엽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

다 할 것입니다.

둘째, 규제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주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경영환경에 부응하는 법령 및 규제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함께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선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규제가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지식과 대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선하기로 결정이 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와 기술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곧 우리경제를 성장과 발전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6장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분야

제2절 금융분야

제3절 산업자원분야

제4절 건설교통분야

제5절 보건복지분야

제6절 일반행정 · 법무 · 경찰분야

제7절 교육분야

제8절 문화관광분야

제9절 노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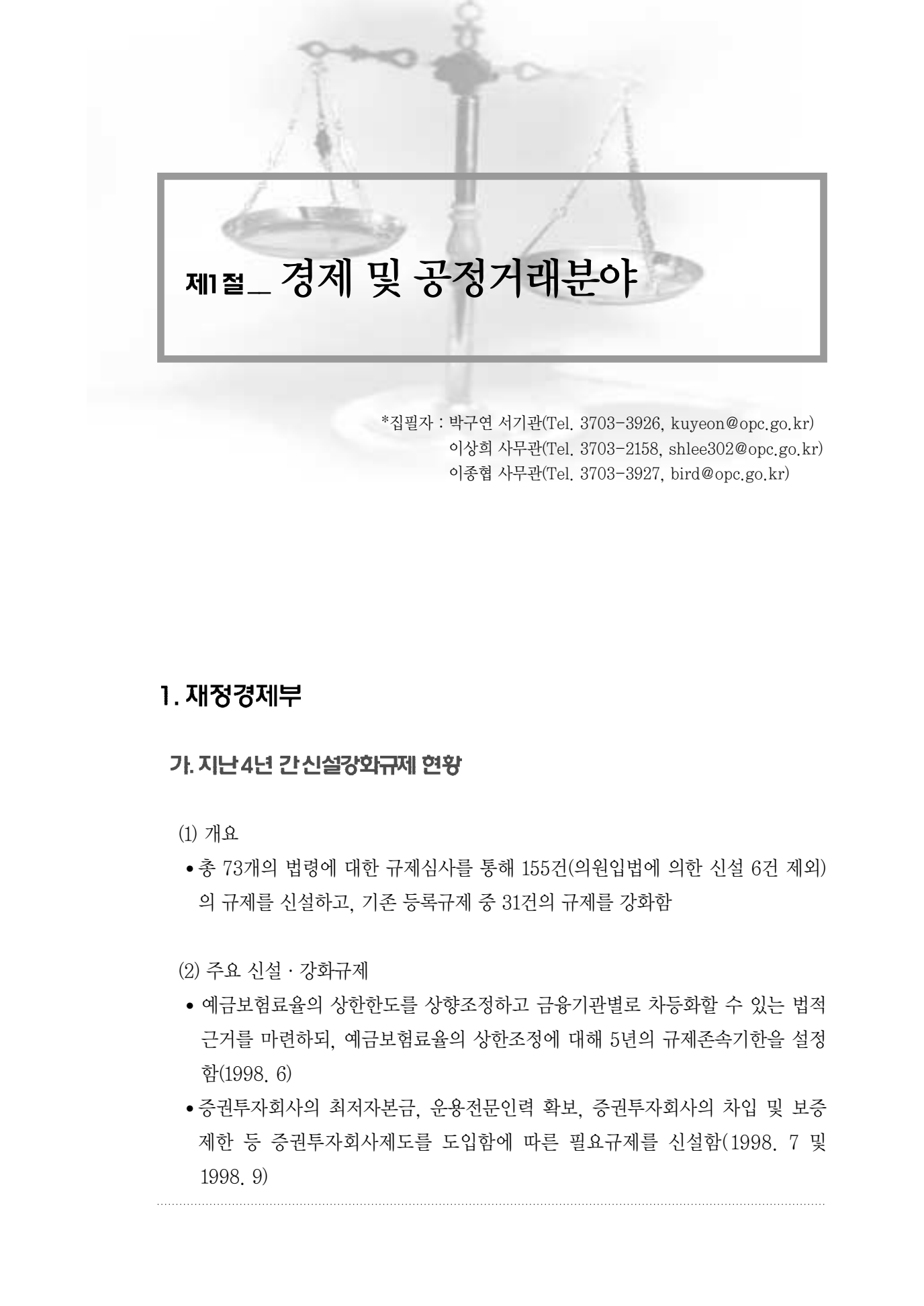
제10절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제11절 환경분야

제12절 해양수산분야

제13절 농림분야

제14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제1절 _ 경제 및 공정거래분야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재정경제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73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55건(의원입법에 의한 신설 6건 제외)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31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예금보험료율의 상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조정에 대해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함(1998. 6)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운용전문인력 확보, 증권투자회사의 차입 및 보증 제한 등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필요규제를 신설함(1998. 7 및 1998. 9)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인가요건, 업무범위 기타 감독관련 규제들을 마련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함(1998. 11)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기타 광고금지, 금융업오인 명칭사용을 금지시킴(1999. 1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일정 금융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운용토록 함(1999. 11)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비교광고를 금지토록 하되, 5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함(1999. 11)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업무범위, 행위제한 등 관련사항을 정함(2000. 6)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자산운용제한 등 관련사항을 정함(2000. 6)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2000. 10)
- 상호신용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부과함(2000. 11)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1년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비자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2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7건, 내용심사 23건, 재심사 5건, 누락규제 4건 등 총 6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
- 심사대상 61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36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재정경제부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22개*임
- * 의원입법으로 신설된 규제 6건 제외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하고 당해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1. 1. 10)

- 화의·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신청에서 화의조건·정리계획안 등에 대한 법원의 인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중 어느 시점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권고

(2)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3개월 내에 이를 매도하지 못하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10%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2001. 3. 21)

- 원안의결하되, 기업인수사모증권투자회사의 주식매각 금지기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추후 보고토록 의결

- 추후 4. 11일자 보고서 주식매각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3)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1, 누락 1, 내용심사 2)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9년에 의결한 바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경부에서는 2004년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는 1000명의 인원을 올해 선발하는 대신 절대평가제 전환은 2~3년 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하도록 재심사를 요청
-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요건을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0.0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3천만원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또는 증명 등의 직무를 행하는 대가로써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의 유가증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로 강화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함

심사결과(2001. 4. 25)

- 공인회계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재경부안대로 시행하되 다른 자격사제도와 함께 추후 재심사를 받도록 의결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를 전면금지토록 수정하되 다만 2002. 1. 1일까지 기존 주식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하도록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 1, 내용심사 1)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할 감사의 수를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함

-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연간적립금 :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
 - 적립총액한도 : 직전 2개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 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 일정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분의 3 범위 내”
 - 배상 후 추가적립 : 당해 회계법인의 공동기금사용분 전액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심사결과(2001.4.25)

- 원안의결

(5) 증권거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4)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증가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대리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으로 정함
-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제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 다른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직중인 자,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당해 회사와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협회등록법인은 이사총수의 1/2 이상(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시 단일의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총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와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총자산 또는 총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보고를 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4. 25)

-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150억원으로 수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당해회사와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를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원안의결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대상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6) 소비자보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3)

- 본격적인 리콜명령 전에 물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권고를 도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 신설
- 법상 중대한 제품결함정보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사업자의 범위, 중대한 결함정보의 범위, 보고시한, 결함정보의 인지여부 및 시기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 그간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내용을 대폭 정비하여 별표 1로 구분하여 정비(내용심사)
- 리콜명령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 등 세부적인 이행절차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5. 16)

- 리콜권고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표에 대해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선(삭제) 권고
- 중대한 결함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14조의 2 제1항 나목의 “신체적 부상”과 라목의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은 중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결함정보의 인지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1. 9월까지 보고토록 권고
-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 그간 행정규제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권고(이

경우 행정규제로 분류)

- 리콜명령 이행절차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제4항(매분기별로 이행상황 보고)은 일반적인 감독권에 의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토록 권고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신용평가의 세부허가요건을 i) 공인회계사 5인 및 1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상시고용인력 50명 이상이 포함될 것, ii) 평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등으로 정함
- 신용평가업자는 i)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법인,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용평가업자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iii) 상술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심사결과(2001. 6. 4)

- 신용평가업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5인 및 1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상시고용인력 50인 이상”을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상시고용평가인력 30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신용평가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지범위를 여타 금융법령의 예를 고려하여 강화하되 사무국과 협의후 심의받을 것을 권고
 - 금지대상범위를 5% 출자관계로 하고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

(8)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신용금고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금고로 정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다음의 자산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수를 달리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

심사결과(2001. 6. 4)

- 원안의결

(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여야 하는 사유를 i)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ii) 법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위반사실에 대해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iii) 기타 상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정함
-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로 정함

심사결과(2001. 6. 4)

- 원안의결

(10) 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재심사 1, 내용심사 3)

-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시 연포장담배는 봉합지에, 경포장담배는 우측측면 상단에 가로 1cm, 세로 3cm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구분·표시토록 규제 신설
-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담배 20개비당 10원의 출연금을 납부토록 강화
- 지난 1998.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말까지 폐지토록 의결했던 담배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제에 대해 흡연증가 예방을 위해 계속 존속토록 재심사 요청
- 법에서 규정한 담배제조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요건(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 생산시설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절차를 마련(내용심사)
- 담배제조업 및 판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금지의무와 관련하여 금지대상 금품의 내용과 수준을 규정(내용심사)
-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등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의뢰대상

을 담배인삼공사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로 변경하고, 판매인회에 대해 소매인 지정관련 장부를 비치토록 의무화(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6. 4)

- 특수용담배 표시의무 및 출연금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
- 담배소매인의 거리제한규제 폐지에 대한 재심사건은 거리제한은 청소년 흡연 등의 증가방지를 위해 존속기로 하되, 소매인 승계관련 규정은 삭제토록 권고
- 소매인 지정관련 담배판매인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동 규정을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담배판매인회의 관련 장부 비치의무는 삭제토록 권고
- 담배제조업의 허가요건, 금품제공 금지관련 대상물품 및 내용은 원안대로 동의

(11)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로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 대부업자의 사망·해산·합병·영업양도·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영업을 폐지하게 된 경우 그 상속인, 청산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중개한 경우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을 금융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서면계약서의 표준양식을 정할 수 있음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소기업과 3천만원 이하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이자율(대부기간이 100일 이하의 단기대부일 경우 일 1000분의 3)을 받을 수 없으며 동 이자제한이 적용되는 금액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에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 대부업자는 영업소마다 대부이율 및 이자계산의 방법, 변제방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 이를 금융이용자에게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자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위탁 받은 자(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업자는 제외)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심사결과(2001. 6. 8)

- 대부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은 추후 시행규칙이나 재정부 고시등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자율 등의 제한과 보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3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기업이 갖추어야 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i)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ii)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iii)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시 선임되는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은행법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i)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ii) 신용공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iii)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iv)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취득한 동종의 자격을 포함)로서 여신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및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함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체결하는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i) 기업의 중요한 재산의 양수도 및 정관변경 등 경영활동에 관련된 사항 ii)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iii) 약정내용을 불이

행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iv)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등 협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 v) 기타 채권 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으로 정함

심사결과(2001. 8. 22)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 의해 동법상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의 제재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서 3년 이상 자금관리를 한 자도 포함하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자격으로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
- 약정체결의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3)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약자산을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하고 일임계약재산 중 100분의 30 이상을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에 투자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8. 22)

- 금감위의 약관심사시 고위험상품이라는 사실이 표현되도록 하고 투자적격등급 미만채권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완화하거나 상품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1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금융기관 등이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외국환거래의 경우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하고 혐의거래 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1. 10. 31)

- 보고기준금액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3년 이내에 동기준금액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15) 은행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2년 이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심사결과(2001. 11. 7)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2년 이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를 “2년 이내”로 수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증가액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6) 금융지주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2년 이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은행지주회사 등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지주회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금융지주회사 내 금융기관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원급인 개인정보관리인을 두고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7)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과 관련하여 “2년 이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를 “2년 이내에”로 수정하고,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 등 또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증가액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
- 금융지주회사 내 금융기관의 정보공유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영업점에 게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7) 증권투자신탁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및 금액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또는 불행사한 경우 이를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함
-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도록 설계되는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제도(ETF : Exchange Traded Fund)를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위탁회사는 공고일 전일의 상장지수증권투자 신탁재산인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성내역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18) 증권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누락 1)

-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및 금액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또는 불행사한 경우 이를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함
-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도록 설계되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공고일 전일의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내역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 1, 강화 1)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함
- 현재 30대 계열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교차여신하거나 교차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20) 증권거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
-

대상항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원에 대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감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권회사 또는 회원에게 그 이상매매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증권회사 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함

심사결과(2001. 11. 7)

- 안 제76조의6제3항 및 제162조의3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권고

(2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 등의 고지 및 공시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자금유통업무와 관련한 이자율, 할인률, 연체요금 등 각종 요율을 기간별로 연율로 환산하여 분기마다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회원에 통보
 - 당해 신용카드 회원에 적용된 신용등급과 연율로 환산된 이자율, 할인률, 연체요금 등 각종 요율을 카드발급시와 이용대금이 발생한 분기마다 해당 회원에 통보
 - 자금유통 업무별로 연율로 환산된 수수료 등 수입비율을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
 - 여전협회가 정하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

심사결과(2001. 12. 19)

- 원안의결

(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내용(재심사3)

- 부대입찰제의 폐지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일로 3년 간 유예하고, 동 유예 이후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존치함

*A31-008-004-00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금액축소 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일로 3년 간 유예함

*A31-008-001-01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금액축소(78억미만→50억미만) 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로 3일년 간 유예함

*A31-008-002-01

심사 결과 (2001. 12. 19)

- 부대입찰제 폐지의 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일로 3년 간 유예하는 규정은 2004. 1. 1일로 2년 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유예 이후 최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부대입찰제를 계속 존치시키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금액 축소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일로 3년 간 유예하는 규정은 2004. 1. 1일로 2년 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금액축소(78억 미만→50억 미만) 시행을 2002. 1. 1일에서 2005. 1. 1일로 3년 간 유예하는 규정은 2004. 1. 1일로 2년 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 관세청

(1)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심사요청 내용 (신설 1)

- 외국에서 1년(가족동반의 경우 6월) 이상 거주한 자가 입국시 전거주지에서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시에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함 (신설)

심사 결과 (2001. 8. 29)

- “외국산 자동차”를 “자동차”로 수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아울러 환경부에도 이사물품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면제해주는 현행제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동차 또는 일정차령이나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정기간(3개

월 정도) 이내에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3. 공정거래위원회

가. 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4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1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 표시·광고 관련 10개 규제를 신설(1999. 7월부터 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하여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용자료 요구권 신설(1999. 2월부터 시행)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등 4개 법령에 대해 강화 3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01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

는 대상기업집단을 규모를 상위 10대 기업집단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강화)

- 지금까지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정부투자기관, 공공적 법인은 제외하였으나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정대상에 포함(내용심사)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기준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당초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상향규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2. 28)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되, 통신부문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의견과 관련,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적용배제는 곤란하며, 집행시 수평적 2중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능을 조정토록 권고
-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동의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도 추가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협조토록 규정(강화)

심사결과(2001. 7. 18)

- 원사업자의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권고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되, 공사금액, 원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동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바, 금번에 동 고시를 폐지(강화)

심사결과(2001. 7.4)

- 면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강화이므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해 일정등급(예시 : 투자적격등) 이상을 받은 건설사는 보증의무를 면제토록 권고

(4)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신문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적용유형과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2001. 4. 13)

- 신문고시 제정자체는 인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관 련 조 항	개선 또는 철회 권고사항
<p>안 제1조(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포함토록 권고 *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범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기로 함의
<p>안 제2조(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유료구독부수의 정의(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신문부수와 관련하여 ABC협회의 기준을 반영토록 권고
<p>안 제4조(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구입처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품류 구입의 대행행위를 하는 경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처 알선행위 및 대행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제외토록 권고
<p>안 제5조(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사가 지국에게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문사가 지국에게 신문공급부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부분 앞에 “그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토록 권고 ● 밑줄 친 부분 앞에 “사전협의 없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토록 권고

관 련 조 항	개선 또는 철회 권고사항
<p>안 제6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국이 구독계약기간이 <u>종료되어</u> 구독 중지 의사를 표시 한자에게 3일 이상 강제투입하는 행위(제1호) ● 지국에게 무가치를 10% 이상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되어”를 “종료된 후,”로 수정하고, 강제투입 금지기간을 7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권고 ● 무가치의 허용비율을 경품과 합하여 20%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신문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권고 ※ 안 제3조 및 안 제6조와 연계검토 필요
<p>안 제8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내지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에 대해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 제4호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기로 합의
<p>안 제11조(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해 특별히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부칙에 시행령상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권고
<p>안 제12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신문발행업자가”(이하 생략) (안 제1호 내지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이라는 용어가 고시용어로서 부적합함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로 수정토록 권고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단체가 이 고시의 내용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율규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고시본문에 명기토록 권고
<p>안 부칙 제1조(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에 준비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01년 7월 1일로 수정토록 권고



제2절 _ 금융분야

*집필자 :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1. 금융감독위원회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96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7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44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시 모집에 의한 주식발행의 신고,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신청 및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 포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1998. 10)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관련 사항,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1998. 11 및 1999. 7)
 - 잔존만기 90일 이내 단기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
-

지토록 의무화함(1998. 12)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및 전자문서의 작성과 그 제출절차를 명시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감위·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보고 및 기타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1999. 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일정 금융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의무를 부과함(1999. 1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1999. 6 및 1999. 12))
- 전화에 의한 보험모집(TM)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보험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2000. 2)
-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발생시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보고토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기함(2000. 10)
-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전자금융업무 영위와 관련한 안전대책기준 마련, 거래내역·조건의 공시 등 안전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항을 정함(2000. 12)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1년도에는 증권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증권업감독규정 등 1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20건, 내용심사 22건 등 총 6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
- 심사대상 63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철회, 1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50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20개임

(1)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투자신탁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을 순자산비율(순자산액/기준자본)로 정하고 동 순자산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하일 때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단계적으로 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 10)

- 원안의결. 다만, 순자산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심사를 받도록 권고

(2) 신탁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에 의한 자금운용이 신탁회사에 허용됨에 따라 동사항을 기존의 주식, 주시지수선물·옵션거래 한도에 포함시킴
- 부동산신탁회사의 정기공시 시한을 종전의 “결산일로부터 4월 이내”에서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자기자본의 1% 초과 손실발생 등의 일정사유 발생시 수시공시를 의무화함(기타 신탁점영은행의 경우 경영상황의 공시는 은행업감독규정을 따르도록 함)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자본금적 성격이 있는 자금)이어야 하며 국내 보유자산이 영업기금 상당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 10)

- 신탁자금 운용기준에 대해서는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영공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 초과 손실발생(5억원 이하 제외)”을 “자기자본의 5% 초과 손실발생(10억원 이하 제외)”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영업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 보험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변액보험의 모집인 자격을 보험모집인의 경우 판매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로, 보

- 험증개인 및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 증개인 및 대리점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한 자로, 신규 증개인 및 대리점의 경우에는 시험(연수)을 통과한 자로 제한함
- 변액보험 도입에 따라 기존의 보험상품공시에 변액보험관련 변액보험관련 사항을 함께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액보험의 각 특별계정별 매일의 기준가격 및 전월 말 기준의 자산구성내역 등 변액보험의 특성상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 특별계정의 경우 변액보험의 초기운용자금의 필요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편입·편출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3. 14)

- 변액보험판매인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
- 변액보험 상품공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변동내역 통지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수정하도록 하고, 특별계정자산 편입·편출의 경우 편입·편출의 한도, 기간, 상환방법등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권고

(4) 증권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1, 강화 2, 내용심사 12)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을 만기요건의 경우 종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인정한도의 경우 종전 “100분의 150 이내”에서 “100분의 100 이내”로 하고, 원금상환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25%씩 차감하도록 함
-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증권회사가 최선의 고객보호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적절한 인적·물적자원 확보 및 적절한 업무수행절차 마련의무, 고객에의 적절한 투자권유 및 정보제공의무 등으로 정하고 증권회사가 상기 원칙에 위반하여 고객이익 또는 공정거래질서가 현저히 침해된 경우 금감위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회사의 우월적 지위 등에 기인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함

- 선행매매등의 금지 : 고객의 매매주문이 초래할 가격변동을 기대하며 행하는 매매거래(Front Running)와 제3자에게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고객주문정보의 시장공개 전 제3자 제공 금지, 지정가호가 수탁시 이의 체결 전에 고객의 호가보다 유리한 호가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체결행위 금지
- 자기매매를 위한 투자권유 금지 :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 수탁금지 : 내부자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거래인 지시 수탁 금지, 명백한 허수주문의 수탁거절의무, 명백한 결제불이행 예상시의 수탁거절의무, 불건전 자금거래의 지원·알선 금지
- 증권회사는 자체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를 일반에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날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조사대상 유가증권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우선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의 일반공표시에 우선제공한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공시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회사와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 및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증권회사에 대해 매매호가, 매매가격 및 수수료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간접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증권회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투자상담사 등)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고객의 자산운용에 관한 상담을 맡겨서는 아니되며 투자상담사 등의 업무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 고객의 이익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함
 - 부당한 손실보전 금지 : 금전제공·수수료 할인·비정상적 조건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손실에 대한 보전 금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전시 준법감시인への 보고의무
 - 과당매매거래 권유등의 금지 :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주식매매(Churning) 권유금지,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해 문서화된 내부통제기준 운용 의무

- 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 :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이나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해 허위표시 및 과장 등의 표시행위 금지, 일반고객에 대한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트레이딩에 수반되는 위험고지의무, 증권회사의 일중매매거래 부적합자에 대한 일중매매거래기법교육등의 권유행위 금지,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시스템트레이딩 이용권유 금지
- 고객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권유의무 :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권유내용의 합리적인 근거유지의무,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적합한 권유의무, 일반고객의 기본정보에 대한 인지의무, 기본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 감리·관리대상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권유 금지, 회사의존고객에 대한 집중관리의무, 투자권유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운영의무
-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 제한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주식을 일반고객에게 매도하거나 매수권유하는 행위 금지
- 증권회사는 당해 증권회사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일반고객에게 권유할 경우 그 내용을 일반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고객의 매매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당해 매매거래에서의 증권회사의 역할,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 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점포별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대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거래개시 전에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자산관리자에 대해 서비스의 경비부담·선물·접대·여행주선 등의 편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전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증권회사는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다른 공동투자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고객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투자물의 판매시 예상수익율의 보장,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

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을 할 수 없음

- 증권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탁·중개·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게 최선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천재지변·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매매거래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주전산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백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고객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가로 제동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고지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정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준수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대리하거나 중개한 증권회사,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의 자 이외의 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배분·환급하거나 고객매매거래규모에 연동된 직·간접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 됨
- 증권회사는 영업직원이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하게 빈번한 거래를 유인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이의이행을 위한 보상체계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회사는 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언론기관 제공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주장 또는 예측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증권회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설정·운영기준을 정함
- 증권회사는 영업활동·재무활동·내부통제활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전산자료·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의 요구에 관련자료를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자료제공 요구에 6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3. 21)

-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와 관련하여 원안의결하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자기매매금지과 관련하여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사실상 확정된 날’ 및 ‘대상 유가증권’)을 규정에 예시하여 구체화하도록 권고
- 경쟁제한행위의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면책요건 중 법령,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관의 명령·기준·지침에 따라 매매조건 및 방법이 정해지는 경우를 규정한 안 제4-12조제1항제1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2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배한 경품제공 금지의무를 규정한 안 제4-12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 부적격자에 의한 투자상담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투자상담자격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중 백업체제구축의 무조항을 삭제토록 권고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추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금감위 규정에 명시하도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상장예정법인 이외에 협회등록 예정법인의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거래은행은 일정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4. 25)

- 원안의결

(6) 증권거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그동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던 일부 간주특수채(종금채, 여전채 등)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장법인 및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2001. 4. 25)

- 원안의결

(7)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MMF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의 경우에도 기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잔존만기 1년 이하인 것만 편입가능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시가가 장부가의 0.5%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비상장채권등의 평가시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2 이상의 가격정보이용을 의무화함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비상장채권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지정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중 2 이상의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기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변동금리부채권, 주식관련사채 등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지정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중 2 이상의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

심사결과(2001. 5. 16)

- 비상장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3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증권업협회의 가격정보 제공기능을 2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MMF의 운용제한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8)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되는 요건에 i) 최근 2년 간 취급한 출자자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ii) 출자자대출의 사유로 당해 금고 또는 임직원이 최근 3년 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문책기판 경고·해임권고·면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명의뢰를 할 수 있는 사유에 i)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ii)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변경된 경우 iii) 당해 상

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
심사결과(2001. 6. 4)

- 원안의결

(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내용심사 1)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7 이상,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하로 판정되는 등 부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신용카드발급기준인 소득이 있는 자를 i)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ii)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iii) 연금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iv)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v) 일정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 확인을 받은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i)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무질서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ii)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또는 여·수신 기타 거래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iii) 업무제휴 등을 통해 업무제휴 상대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iv)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서면확인 없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킴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한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을 회원의 신용도 및 기간별로 연율환산하여 이용대금청구서,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7. 4)

- 경영지도비율과 관련하여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개념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무질서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삭제하되 갱신 및 대체발급시 서면확인 이외의 방법(전화녹취, 인터넷 등)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을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0)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간을 과거 2년 간에서 1년 간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으로 하고 동신고서의 제출대상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유가증권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대상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2001. 8. 22)

- 원안의결

(11)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의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을 허용하고 전환기간의 제한을 다음과 설정함
 - 전환가액 조정기준 : 조정일은 전환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 2회 이내,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60% 이상, 조정 후 전환가액은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발행당시의 조정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
 - 전환금지기간 적용기준 : 해외전환사채 등의 청약을 다수인에게 권유하고 발행이로부터 1년 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3월로 적용
- 전환사채 등을 중도매입·상환한 경우, 해외증권의 발행을 완료한 때 해당내용을 공시하도록 강화함

심사결과(2001. 10. 17)

- 전환사채 발행제한과 관련하여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다수인”의 용어를 “불특정다수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시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2)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통보한 검사서를 열람하고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동 검사서에 지적된 중요한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0. 24)

- 이사회의 열람의무만 부과하고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는 조문은 삭제토록 하였으며 동규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며 3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

(13) 은행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은행주식을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까지 보유할 경우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적 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자은행은 모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은행을 자은행으로 보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14) 금융지주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출자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금지업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까지 보유할 경우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로 부적격하게 편입된 신고대상 자회사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 등의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15) 증권투자신탁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투신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차투자 금지대상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에서 모든 투신사로 확대함

심사결과(2001. 11. 7)

- 원안의결

(16) 증권거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증권선물위원회는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감위 소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범칙혐의자를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행한 때에는 그 위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주총 소집공고의무, 감사선임시 별도의안 상정,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7)

- 증권선물위원회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안 제205조의3제6항에 증권선물위원

회가 범칙혐의자를 심문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토록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7)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사모사채 발행시 건별로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토록 하던 제도를 당해 사업연도의 발행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등 기존 공시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새로 마련함

심사결과(2001. 11. 21)

- 원안의결

(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발급의사 및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2001. 12. 5)

- 안 제24조에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본조 후단의 증빙의무를 삭제토록 권고

(19) 보험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사정인의 업무수행 및 보험금지급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절차 및 손해사정서 접수·처리절차를 규정에 명시함

심사결과(2001. 12. 5)

- 원안의결. 다만, 손해사정인의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강화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02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20) 증권업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주식옵션시장의 개설에 따라 외국인투자한도가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옵션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를 허용하되 옵션의 행사로 인한 일시적 한도 초과시 처분을 의무화함

심사결과(2001. 12. 26)

- 원안의결

제3절 _ 산업자원분야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 3703-3927, bird@opc.go.kr)

1. 산업자원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 요

- 총 2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1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중 85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100분의 6.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송전사업의 통합운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송전사업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 요금을 구분하여 명시(전기사업법)
-

-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검사하여 불량품인 경우 기존에 회수 명령만을 할 수 있던 것을 불량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은 허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의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명령 사항에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에너지 수급상황의 변화 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너지 공급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토록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일몰제(5년) 도입 권고
- 산업자원부장관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하여 동기자재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을 인정하되,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여 공공부문에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수출자유(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역외수리 가공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던 물품 처분시 신고 의무, 물품관리 상황의 기록보존 의무를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물품의 폐기, 양도, 임대 등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 권고(자유무역지역지정 등에관한법률)
- 입주허가의 취소요건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가 장기간 휴·폐업하는 경우에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 저장탱크에 대해 저장성 탱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설비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검사를 받도록 개선 권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최근 3년 간 이월결손금이 연속 발생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3년 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으로 경우로 개선할 것을 권고(산업발전법시행령)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

하여야 하며, 2년 이후에도 동 비율 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도록 기준을 제시(산업발전법)

-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경사형·수직형)를 포함시켜 법정검사(기관검사·자체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충전사업자·집단공급업자·판매업자·저장자 등이 사업 또는 사용을 휴지·폐지 또는 재가동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재개시의 신고의무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동일 주유소 내에서 공급자(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복수상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권고(석유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별로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를 강화(전기공사업법)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후가스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권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1년도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광업법 등 33개 법령에 대해 신설 40건, 강화 39건, 내용심사 32건, 재심사 1건, 누락규제 11건 등 총 1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3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철회, 48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7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36건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고압가스의 지하배관은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지상배관은 1,00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개 이상 고압가스 배관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동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강화)
- 고압가스 용기 수리자는 잔가스 회수설비(4가지)를 갖추거나 동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보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용기 수리는 가스안전공사의 용기수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가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함(강화)
- 매물 저장탱크의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저장탱크의 굴착외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강화)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대형승합자동차(대형버스)의 경우 사용가스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연료주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유리창외에 연료주입구 개폐문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티커의 크기 부착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심사 결과(2001. 1. 10)

- 잔가스 회수작업시 잔가스 회수설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만 존치하고, 사용 강제를 위한 동 설비의 보유 및 사용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설비확보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은 삭제토록하고, 잔가스 회수작업의 안전관리자가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실제 잔가스 회수작업을 가스안전공사의 특별교육 이수자만이 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권고(개선권고)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구체적으로 표시의 크기·부착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사항은 삭제하도록 함(개선권고)
- 기타 규제 2건(강화)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 1, 강화 1)

-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대상에 차관제공자·차관금액·차관조건과 주식 양도자에 대한 변경내용을 추가함(강화)
-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을 외국인투자자 1인당 5천만원으로 하고, 증액투자인 경우

금액요건을 배제하도록 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0. 1. 17)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 전기사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8)

-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시기를 시행일 이후 8년 간 제한하고,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기타 공익적 필요'에 대한 기준과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를 규정함
- 전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의 세부유형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산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방식 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징계 조치함
- 제주도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중 생산량의 50% 미만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를 허용함
- 전력산업기반사업 수행을 위한 부담금의 액수는 기금의 수요 및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는 매년 9월 말까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수료 수입중 kWh당 0.2원의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로 사용하며 거래소 설비구축 등 자본비용은 회원 출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산자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기검사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심사 결과(2001. 2. 7)

- 전기판매사업 허가제한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개

선권고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 인가에 관한 규정은 규제일몰제(존속기한 3년)를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세부유형과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는 것을 삭제하고, 시정조치의 유형중 영업방식·영업행위의 제한 등 포괄적인 규정은 위반행위 자체를 시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에 대해 3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권고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생산량의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축소하도록 개선권고
- 수수료의 범위는 상한선을 규정하는 대신에 산정방식을 규정토록 하고, 운영경비 신고조항과 설비구축 등 자본비용 사용방식의 제한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시행령에 부담금의 부과비율을 65/1000으로 규정하고, 매년 부담금의 비율을 감축하여 나가도록 하되 감축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매년 결산내역과 부담금 감축계획을 규개위에 보고하도록 권고
- 기타 규제 2건(내용심사)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6)

- 전기사업허가의 심사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고, 기술능력 중에 사업운영지식의 획득여부를 추가함(내용심사)
*A41-042-001-01
-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A41-042-010-01
- 전기사업자가 유지해야 할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규정하고,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매년 1회 이상 이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내용심사)
*A41-042-053-00

- 전력거래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내용심사)
*A41-042-047-00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비는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기분야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소속직원만으로 선임하도록 하던 규정을 건물소유자가 자기 소속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내용심사)
*A41-042-056-00
 - 전기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인 자본금 규정 중 자본금(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전력기술인협회의 출자증권으로 확보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 심사 결과(2001. 2. 20)
- 전기사업허가 심사기준에서 기술능력의 세부기준 중 “특허권 등 사업운영지식 획득여부”는 여타조건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기타 거래관행상 전기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공급중지를 당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회수를 2년 1회에서 3년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되 교육에 대한 실적 보고 및 산자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규정은 존치토록하며,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에 있어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할 것과 향후 법률개정시 건물관리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2건(내용심사)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5) 완구(작동완구 제외)안전기준고시 및 유해화학물질함유학용품안전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안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기준은 탄환을 가진 장난감총을 발사체를 가진 완구(14세 미만)와 비비탄총(14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용연령 및 안전표시사항을 강화하며, 14세 이상이

사용하여야 하는 비비탄총의 판매장소를 제한함

- 유아용 완구 및 풍선 등에 내분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함
- 초·중등학생용 공책을 내지와 표지로 구분하고, 표지에 대해서는 합성수지의 접합 또는 도포를 금지함

심사 결과(2001. 2. 20)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의결. 다만, 추후 법령에 완구의 사용연령을 구분하는 규정 등 시장친화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6) 승강기검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승강기의 완성검사시 권상기 등 주요 안전부품(10종)에 대하여 설치·제조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스킵드가드 등 주요안전장치 및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면적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함(강화)

심사 결과(2001. 2. 20)

- 승강기의 완성검사에 있어 검사면제 규정중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의해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검사대상 품목중 기존에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품을 사용중인 경우”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 에스컬레이터의 검사기준 중 “스킵드가드의 마찰계수에 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상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아울러 장애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권고

(7)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내용심사 3)

- 신뢰성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인증심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증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인증서를 반환하도록 하며, 신뢰성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신뢰성 인증표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표시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신뢰성 인증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내용심사)

*A41-054-003-00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은행·증권회사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함(신설)
-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신고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신설)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정관 제정 또는 변경시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3. 7)

- 신뢰성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공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통중인 부품·소재에 대한 검사결과가 평가당시와 달리 제작·유통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공공안전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며, “신뢰성 보장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분쟁조정 신청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인증취소 또는 폐업시 인증서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신뢰성 인증기관이 표시제거 명령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그 요청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선권고
- 신뢰성 인증기관·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전문조직 및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신뢰성인증신청 기본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3건(신설)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경사형·수직형)을 포함시

켜 법정검사(기관검사·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기준을 정함(강화)

심사 결과(2001. 3. 21)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2, 내용심사 3, 누락규제 1, 재심사 1)

- 특정사용자의 시설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A41-040-014-01

- LP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승인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내용심사)

*A41-040-006-01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와 사업자 등,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내용심사)

*A41-040-024-02

- 충전·판매·저장시설 등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시 공정별 중간검사를 폐지하고, 지하매몰공사 등을 포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성확인제도를 신설함(재심사)

*A41-040-017-00

- 충전사업자·집단공급업자·판매업자·저장자 등이 사업 또는 사용을 휴지·폐지 또는 재가동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신설)

- 안전유지 의무대상을 현행 사업자 및 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추가함(강화)

*A41-040-012-01

- LP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하고, 충전된 LP가스를 감량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LP가스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LP가스를 판매·인도·저장·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허가관청은 유통중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신설)

- LP가스차량 소유자는 허가받은 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하도록 제한하고, LP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LP가스차량을 소유하지도 못하도록 함 (강화)

*A41-040-042-00

- 보고·검사 사유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정기보고 수리업무를 사업자단체·석유공사에 위탁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1. 4. 13)

- 안전성 확인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검사신청은 완성검사로 일원화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휴지 등의 신고에서 사업재개시의 신고의무는 삭제토록 하고, 위반시의 벌금은 과태료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 충전량 등의 표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충전사업자의 허위표시행위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의무 및 검사에서 허가관청이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특정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정된 검사기관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인 경쟁도입을 위해 검사수수료 체계의 개편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제품별로 세분화하도록 개선권고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등에서 충전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보고·검사 등에서 정기보고에 관한 권한 위탁규정은 법률에 근거없는 권한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5건(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0)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산자부장관은 품질경영 종합시책수립을 위해 품질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업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신설)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

고, 명령이행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위해사실 공표명령 및 교환·환불·수리 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서의 제출과 조치 완료 후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함(내용심사)

*A41-052-025-00

심사 결과(2001. 5. 23)

-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업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규제등록에서 제외토록 함)
- 위해사실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결과만을 보고토록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1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2, 내용심사5)

- 품질경영체제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기준을 ISO가이드 61, 62를 적용함(내용심사)

*A41-052-028-00

- 안전검사 대상품목을 4개분야 29개품목으로 하고, 수수료는 검사기관장이 기술 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항목별로 정하도록 하되 안전검사는 제품출고 전에 모델별로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A41-052-029-00

- 검사기관 지정요건은 검사인력 3인 이상과 시험설비를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검사기관 범위는 제품별로 지정함(내용심사)

*A41-018-012-01

- 안전검사 표시에는 합격증서번호, 검사기관명, 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모든 공산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제품마다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표시토록 함(내용심사)

*A41-018-027-00

-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을 규정하고, 자기적합선언을 한 제품중 안전검정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도록 함(신설)

- 안전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품

별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지정함(신설)

-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등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내용심사)

*A41-018-022-01

심사 결과(2001. 6. 14)

-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 중 다음 사항을 개선권고
 - 정기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제조업체는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
 - 검사유효기간(2년)과 검사수수료 지급규정 중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
 - 안전검사 면제대상을 산자부장관의 고시로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규정은 삭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정
 - 동일국가에서 제조한 동일제품으로서 이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동일제품임을 입증하면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수정
- 안전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정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완하고, 추후 법령개정시 안전검정기관의 지정취소근거를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검사 결과 등의 보고가 정기보고사항이 아니라 필요시 보고받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4건(신설 1, 내용심사 3)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고압가스배관의 시공감리대상을 고압가스제조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는 20m 이상의 배관공사로 규정하고, 시공감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내용심사)

*A41-039-016-00

- 사업소 경계밖 지하매설 배관중 15년 이상된 노후배관에 대한 검사방법을 기밀시험으로 강화(강화)

*A41-039-017-01

- 안전교육 대상자에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운전자를 추가하여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강화)

*A41-039-023-01

심사 결과(2001. 6. 4)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에 “정압기·압력조정기의 변경공사”를 포함(강화)

*A41-041-023-01

심사 결과(2001. 6. 14)

- 사고예방을 위하여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재심사 1)

- 시험검사기관을 ISO17025 또는 국내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KOLAS)를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강화)

*A41-020-030-00

- 개인용 컴퓨터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와 안전성 시험을 받은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재심사)

*A41-020-029-00

심사 결과(2001. 6. 20)

- 시험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제9호와 제10호 중 2000. 7. 1일 개정된 이후에 전기안전인증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품목은 삭제한 상태에서 동 사안을 보류하고, 전기안전인증제도의 개편방안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15)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방호벽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기초설치를 의무화(강화)

*A41-040-003-01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제조기준을 차단방식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전자제어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 매물용 접형볼밸브의 제조기준을 퍼지관의 유무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밸브의 구조·용접방법 등의 기준을 규정(강화)

*A41-040-019-01

심사 결과(2001. 6. 20)

- 에너지 효율제고를 방호벽의 설치기준 중 “높이는 35cm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할 것” 규정은 용기보관실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사항 : 로딩암의 내압시험 및 비파괴시험은 “제조물량을 1일 제조물량당 1개”에서 “1일 제조물량의 최소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16) 안전검사대상공산품안전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지정된 3개 품목(젓병 및 젓꼭지, 키보드, 비비탄 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완구 등 26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안전기준의 체계를 국제기준에 일치시킴(강화)

*A41-018-004-01

심사 결과(2001. 6. 27)

- 저독성 페인트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실내용페인트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소모성 부품인 패킹의 적정 교환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17)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동일 주유소 내에서 공급자(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복수상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하고,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을 최초 판매 또는 변경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강화)

*A41-036-012-03

- 상표의 표시위반을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에 추가하고, 석유판매업자가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병행판매할 경우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구분 표시하며 서로 다른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병행판매할 경우에는 각 석유제품별로 구분 표시하도록 함(강화)

*A41-036-027-01

-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시 신규사업자의 기준을 “내수판매계획량”에서 “실제판매량”으로 개선함(내용심사)

*A41-036-020-00

- 용제의 수급상황기록 등에 대한 보고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강화)

*A41-007-009-00

심사 결과(2001. 7. 25)

- 동일 주유소 내에서 복수상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권고
- 상표표시기준 중 “서로 다른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병행판매할 경우에는 각 석유제품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제재 및 처벌의 기준이 공정위 관련고시와 다른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석유사업법 개정시 이를 해소할 것을 권고
- 용제의 수급상황기록 등에 대한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를 권고

(18) 석탄산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석탄 등의 수급조정사유에 “탄광지역 및 석탄산업유지”를 추가하고,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사항에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석탄공급량의 사용권고 및 조정”,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 또는 최저판매가격의 결정”을 추가함(강화)

*A41-030-020-01

심사 결과 (2001. 8. 17)

-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사항중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석탄공급량의 사용권고 및 조정”은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부칙에 존속기한을 5년(2006. 12. 31 까지)으로 설정하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 또는 최저판매가격의 결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9) 전기공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별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A41-043-001-01

- 공사업을 상속 또는 양도·양수(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하거나 법인합병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A41-043-003-00

- 전기공사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전기공사관계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8. 22)

- 현행 전기공사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다만,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시의 조사실명제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권고

(20)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재충전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사 실시 항목(8개)과 실시방법을 정함(강화)

*A41-039-012-01

심사 결과(2001. 8. 29)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는 매년 사업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방법, 처분방법 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심사 결과(2001. 8. 29)

- “매년 사업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를 “이익잉여금의 처분시”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2) 광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1)

- 석유광물에 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등록하도록 함(신설)
-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 받도록 함(신설)
- 조광권자가 6월 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 일정품위 이상의 광석은 광업권자가 용도제한없이 사용·가공·판매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광 또는 선광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에 대해 토석의 매각허가 받음없이 토목용·쇄골재용 등으로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채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자부장

관은 채석행위 및 계획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행위를 지도·점검과 필요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채석행위를 벌칙에 추가함(신설)

심사 결과(2001. 9. 12)

- 동일광산 부존광물 채굴신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규정(제17조 광업권의 출원 등)을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일정품위 이상의 광석은 광업권자가 용도제한없이 사용·가공·판매처리 할 수 있도록 하되, 채광 또는 선광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에 대해 토석의 매각허가 받음없이 토목용·쇄골재용 등으로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아울러 산림청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산지관리법제정안”에 ‘채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광업권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권고
- 광업권자의 채석행위 금지규정에서 “채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채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고, 지도·점검규정 중 “정기적으로”를 삭제하며 추후 시행령 개정시에 지도·점검공무원의 증표제시의무와 점검목적·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점검실명제를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석유광업권의 출원을 정부로 제한하는 규정과 조광권자의 사업휴지 인가 및 사업재개신고 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후가스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하고,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신설)

심사 결과(2001. 10. 17)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하고, 부령 등 하위법령개정시 정밀안전진단을 고압가스제조업자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진단비용을 정기정밀진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정기정밀진단일 산정기준을 요청에 의해 진단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강화)

*A41-040-025-01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자는 공급설비를 소유·관리하도록 하고, 단골거래 촉진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규칙개정 후 9개월 간으로 한정함(강화)

*A41-040-041-01

심사 결과(2001. 10. 17)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5) 상공회의소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누락규제 5)

- 상공회의소의 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공회의소법 및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의원총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상공업자 실태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회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특허·기술·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누락규제)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의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가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자격 제한사유를 정함(누락규제)
-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신설)
- 상공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나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의원총회 재적의원 2/3 이상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누락규제)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경우 산자부장관은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의원총회의 의결의 취소, 의원총회의 해산, 사업의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누락규제)

- 동일명칭사용금지 위반, 회원 및 준회원의 정당한 이유없는 실태대장 자료제출 거부, 실태대장과 관련한 상공업자의 비밀 누설 및 도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1. 10. 24)

- 의원 등의 해임관련 규정은 기존 관련조문에 반영하고 이를 철회권고
- 행정처분 규정 중 “정관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삭제하고, 산자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실태대장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4건(신설 2, 누락 2)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6) 전력기술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누락규제 1)

- 신기술개발시 신기술로 지정·고시 및 보호 할 수 있으며, 신기술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누락규제)
- 정부 등 공공기관 발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설계·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함(신설)
- 설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더라도 현저하게 부실시공이 된 때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강화)

*A41-044-008-00

- 설계업·감리업의 양도·합병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 함(신설)

심사 결과(2001. 10. 24)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 기타사항 : 규개위 권고사항의 반영(공사감리의특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
 - 건축법 의한 전기공사감리에 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2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되

-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에 “전기공사감리에 적용할 감리원 배치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입안에 앞서 전기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해서 산원자원부와 협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2002년 1/4분기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함

(27) 전기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1)

-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의무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설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설개선·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함(강화)

*A41-042-020-01

- 공무원이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전기설비 설치 후 건축행위 등으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원인을 유발한 자(토지소유자)가 당해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신설)
-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시의 과태료기준을 정함(신설)
- 전기사업자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공사에게 그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10. 31)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실태 지도·감독 규제는 전기설비에 대한 현

행 검사 및 적합명령 등의 규정으로도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고 또한 전기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규제신설이므로 철회권고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하는 규정 중 “의견에 따라야 한다”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반시의 처벌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설비이설관련 비용부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①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물건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가 상호 지장을 주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지장을 제거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②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사업자의 전선로가 그 토지 또는 기타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전선로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선로의 이설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④ 제3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가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음
- 기타 규제 2건(신설 1, 강화 1)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2)

-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에 대하여도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토록 함. 다만, 공공사업은 협의결과 이행을 현행대로 의무화 하되 민간부문은 사업주가 에너지절약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함(신설)
- 기후변화협약대응, 고연비차량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준효율연비제도 도입함. 다만, 미국과 같이 부과금제도 시행은 업체부담이 크므로, 일본과 같이 개선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시행(강화)

*A41-033-030-02

- 등록후 3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없는 경우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법 위반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강화)

*A41-033-006-01

- “에너지관리요령공고” 제도로 변경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완화되 다만, 에너지절약이 부진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지도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A41-033-024-00

- 에너지관리대상자(2,000toe/년 이상 사용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자지정현황을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내용심사)

*A41-033-008-01

-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대하여만 회수·이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산업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회수·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자부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10. 31)

- 에너지절약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9)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대체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수행시 우선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허위로 홍보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대체에너지발전 전기에 대한 가격보전을 위해 대체에너지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신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미

리 공고함으로써 의무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 또는 혼선을 최소화함(신설)

심사 결과(2001. 10. 31)

-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삭제하고, 법시행 후 신축하는 건물에만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신설 2)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0)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한국가스공사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분할을 한 때에는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신설)
- 신설되는 도입도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11. 17)

-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촉진을 위해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1) 도시가스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7)

-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의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사업허가시 산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강화)

*A41-041-001-00

- 도시가스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신설)

-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심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강화)

*A41-041-024-00

- 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자 등은 기존도입물량을 가스도입판매사업자로부터 인수하도록 하고, 설비사업자는 기존도입물량에 대해 가스공급시설을 우선 이용토록 함(신설)

- 판매사업자는 공급규정 시행전에 이를 비치하여 수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야하고, 판매 사업자는 공급규정 또는 판매약관에 따라 가스를 판매하여야 함
(강화)

*A41-041-013-01

- 설비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설비공동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 설비운영규칙에 대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신설)
- 가스거래소는 가스계통운영규칙을 정하여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설비사업자는 가스계통운영세칙을 정하여 가스거래소장에게 제출토록 함(신설)
- 판매사업자와 대량수요자는 가스시장에서 가스를 거래토록 하고 가스거래소 회원이 아닌자는 가스시장에서 가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스거래 수수료는 산자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스거래소는 가스시장 운영규칙을 제정·변경·폐지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산자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가스거래가격의 부당한 인상목적 허위자료의 제출 등 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자부장관은 금지행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재는 가스공급시설만 개선명령 대상이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명령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에 부합하여 위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함(강화)

*A41-041-026-01

- 산자부장관은 가스수급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재해 등 가스수급불안 사태 발생시 가스수급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직도입자, 대량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 소비 및 인수 등 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A41-041-043-01

-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비부문과 판매부문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강화)

*A41-041-018-00

- 현재 도시가스사업자와 일정 이상의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가스보일러 시공자에게도 사고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강화)

*A41-041-037-01

심사 결과(2001. 11. 17)

- 도시가스사업의 허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투자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역독점을 인정하는 일반도시가스 설비사업
 - ⇒ 시·도지사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및 허가취소
 -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역독점이 무의미해지는 일반도시가스 판매사업
 - ⇒ 산업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및 허가취소
 - 사업의 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규정 중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허가권자의 인가”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가스거래소의 설립·운영관련 규정 중 수수료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10건(신설 4, 강화 6)은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기타사항 : 등록규제 A41-041-001-00(도시가스사업허가)와 A41-041-041-00(도시가스사업의 취소 등)을 1개의 규제로 통합관리하고, 금번 개정으로 규제 내용이 없어지는 등록규제 A41-041-004-01(사업의 승계 등)은 폐지하도록 권고

(32) 유통산업발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1, 누락규제 3)

- 대규모 점포개설시 시·도(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시, 1년 이내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경우 6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A41-012-001-01, A41-012-012-01

- 유통효율화 및 소비자편익 기능이 우수한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 인증을 실시(신설)
-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시범체인사업자로 지정·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범체인사업자가 지점설치, 상호변경 등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하며, 6

월이상 장기간 휴업 등의 경우 지정 취소함(강화)

*A41-012-005-00

- 가맹점포 경영개선 지원실적 등이 우수한 체인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실시(신설)
-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시범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은 지정취소 또는 보정명령을 부과함(누락규제)
-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해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격을 제한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 부정확한 방법 등으로 지정받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함(누락규제)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영업활동변경을 권고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A41-012-012-00

- 필요시 공무원이 사업장·사무소·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1. 11. 28)

- 우수 온라인판매점포 인증은 민간에 의한 자율 인증이 되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는 민간인증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규제신설에 대해 철회권고
- 시범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고, 중기청장이 시범체인사업 지위승계자의 지정요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동 개정안의 제60조(보고·조사)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우수체인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우수체인사업자를 선정·공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규제신설에 대해 철회권고
- 시범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도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영업활동의 분쟁조정 사유에 “대규모점포와 인근주민간의 생활환경(교통·소음·환경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시정명령 규정중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2건(내용심사 1, 누락규제 1)은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기타사항 : 등록규제 A41-012-001-01(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A41-012-012-01(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1건의 규제로 통합관리하도록 권고

(33) 전기사업회계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누락규제 1)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시행규칙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동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즉시 산자부장관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누락규제)
- 전기사업자는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산자부장관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심사 결과(2001. 12. 19)

-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시행규칙시행세칙의 제출기한을 “즉시”에서 “7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출처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전기사업자의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처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 중소기업청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 요

-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9건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8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연구개발기업과 특허 및 신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총액 매출액
-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 2분기 이상인 경우는 4,800만원 이상으로 규정

- 창업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제한하도록 수정 권고
-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토록 권고
- 벤처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창업투자회사·조합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가 또는 벤처기업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과 기업구조조정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 계리토록 규제를 신설(중소기업창업지원법)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내역

- 2001년도에는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5개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5건, 내용심사 2건, 누락규제 14건 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철회, 7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3건임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벤처기업 인정요건 중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업종에 관계없이 100분의 5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강화)

*A62-008-001-01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출자액 총액을 5억원으로 규정(내용심사)

*A62-008-002-00

심사 결과(2002. 3. 28)

-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단, 벤처기업 인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비율기준(고시) 변경시 확인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존 벤처기업의 지위보장에 대해 명문화할 것

(2)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규제 8)

- 송출기관의 지정은 중앙회장의 의뢰에 따라 송출국가가 지정토록 하고, 연수생의 이탈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송출기관 지정취소 요구 및 기본계약을 해지함
- 송출기관과 연수생 송출계약시 연수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중앙회 예치를 의무화함
- 산업연수생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연수기간 중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국명령과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송출기관은 선발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입국전 연수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0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내용·방법 등을 중앙회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연수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연수생을 타업체에 재배정하며 계약해지업체의 경우 3년 간 추천을 제한함
-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업종 및 산업체의 요건, 연수업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함
- 연수업체는 연수생 배정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1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연수업체는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지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함
심사 결과(2002. 5. 23)
- 연수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행위를 한 경우의 계약해지 및 연수생 타업체 재배정, 계약업체의 3년 간 추천제한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5건(누락)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기타사항
 -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에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예치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송출기관이 아닌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지침개정시 반영여부를 보고토록 권고
 - 연수업체의 선정기준중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선정기준에 관계없이 우선배정하는 규정”은 특혜시비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장기간 연수생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연수생 배정제한 근거 규정”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충분한 검토 후 차기 개정시 반영여부를 보고토록 권고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3, 누락규제 1)

- 대표이사의 결격사유 중 “다른 창투사의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로 변경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강화)
*A62-007-011-01
- 다른 창투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투자제한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확대하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자금행위 지원 등의 제한규정을 정하고, 창투사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금액·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강화)
*A62-007-014-02
- 창업투자회사·조합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가 또는 벤처기업투자에

사용토록 의무화(강화)

*A62-007-015-01

- 중기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조합외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을 금지(신설)
- 산자부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과 기업구조조정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 계리토록 함(신설)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제재수단을 등록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은 물론 조합을 결성한 창투사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할 수 있도록 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1. 10. 10)

- 영업양수시의 등록신청 규정을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기청장에게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행위제한규정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수정하고, 해외투자는 “투자의 무비율”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 등록 취소 등의 규정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합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삭제하고 등록취소사유만을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규제 3건(신설 2, 강화 1)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누락규제 4)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누락규제)
- 조합원으로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조합임원의 자격제한에 법정관리인 및 대리인, 신용불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을 추가하며, 조합은 임원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누락규제)

- 조합의 최저발기인수를 상향조정함(누락규제)
 - 전국조합 15→30인(도·소매 : 50→70인), 지방조합 10→15인(도·소매 : 30→50인), 사업조합 5→7인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제한함(신설)
- 조합의 이사장은 다른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누락규제)
- 조합원수가 최저조합원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해산함(강화)

*A62-006-010-01

심사 결과(2001. 10. 10)

-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중 “조합은 임원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조합설립의 최저발기인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이므로 철회 권고
 - 기타 규제 4건(신설 1, 강화 1, 누락규제 2)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 기타사항 : 기존 등록규제 중 “행정형벌사항”으로서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1개 규제(A62-006-015-00, 조합의 정치관여금지에 대한 벌칙부과)는 규제 등록을 삭제할 것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누락규제 1)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내용(변경집적시설명, 대표자성명, 건축물 중 지정면적, 입주기업의 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시설운영기준은 중기청고시로 정함(내용심사)
- *A62-008-003-00
- 시·도지사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자에게 벤처기업 입주현황 및 시설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누락규제)

심사 결과(2001. 10. 24)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운영기준을 중소기업청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현황 및 시설운영상황 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현황 및 시설운영상황 등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3. 특이청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 요

- 총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2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벌칙을 강화

- 2001년도에는 발명진흥법시행령, 변리사법 등 2개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2건, 누락규제 1건 등 총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사항은 없음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내역

(1) 발명진흥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규제 1, 내용심사 1)

-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체화(내용심사)

*A63-001-013-00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시 참작할 사항 및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체화(누락 규제)

심사 결과(2001. 6. 4)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기타사항 : 등록규제 중 A63-001-015-00(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와 A63-001-001-01(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1개의 규제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권고

(2) 변리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2001. 1. 1일 전에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채용자에 대한 2차 시험과목의 추가면제조항은 부칙안 제3항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함(내용심사)
*A63-002-009-00

심사 결과(2001. 12. 7)

-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가 신뢰이익의 보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단, 절대평가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최소합격규모를 매년 200명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권고

제4절_ 건설교통분야

*집필자 : 민용식 사무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건설교통부

가.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가)개요

- 총 309개(1998년 61개, 1999년 110개, 2000년 99개, 2001년 36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379건(신설 131건, 강화 187건, 내용심사 61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9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173건의 규제를 강화

	합계				신설				강화				내용심사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1998	1999	2000	2001		
심사대상	47	34	106	192	25	11	60	35	22	18	40	107	-	5	6	50		
심사 결과	철회		3	7	16	21	3	6	13	10		1	3	10	-	-	1	
	개선권고		8	8	26	81	4	-	15	15	4	4	10	41	-	4	1	25

나) 주요 신설·강화규제

- 공동주택 단지내 폭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8미터 이상의 도로에도 보도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용량을 3kW를 기본으로 하고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3kW씩을 추가하도록 하던 것을 0.5kW씩을 추가하도록 하여 전기설비 기준을 높임
-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총 정원수·총량규제 대상에 야간계 학과의 입학정원을 포함시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 가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 자동차의 창유리를 원뿔치 전동식으로 한 경우 어린이 등의 오조작으로 인해 유리틈에 손가락이나 목 등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를 원뿔치 전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함
- 가스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시설 미비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교육과 홍보 등으로는 취급자의 순간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스폭발 사고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인 주거·상업지역 안에서 가스충전소 등의 건축을 제한함
- 기존의 주택단지 주변에 추가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등 하나의 진입도로를 둘 이상의 단지가 이용할 경우, 적정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단지 내·외 주민들의 불편 및 분쟁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둘 이상으로서 당해 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설계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그 준수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재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구두로 중개를 의뢰함에 따라 중개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가 사후에 수수료를 과다 요구하거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와 중개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및 거래예정가격 등 중개의뢰 내용과 중개수수료, 중개업자 및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함

- 개발용도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위계상 모순되며 난개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시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로써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사항과 내용을 보강하고 교통안전공단·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를 중고자동차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3년 일몰제로 시행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시행 후 6월 내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사무실 기준 : 일반건설업(토목, 건축, 조경공사업(33㎡ 이상), 토목건축, 산업설비공사업(50㎡ 이상),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12㎡ 이상), 기타(20㎡ 이상))
 - 자본금 요건 : 건설공사에 관한 보증거래를 하고자 하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이 발행하는 업종별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보증능력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매 1년마다 보증능력확인서 제출
- 사업주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계약방법·절차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 폐지로 개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가) 개요

- 2001년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규칙, 건축법시행령·규칙,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하수법시행령·규칙,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항공법·령·규칙 등 3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5건, 강화 107건, 내용심사 50건 등 총 19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2건 중 2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8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9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는 25건임

나)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자동차 형식승인 기준에 “동일한 차체 또는 차대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가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시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로써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사항과 내용을 보강하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를 중고자동차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자동차를 폐차업소에 5일을 초과하여 방치한 경우 이를 보

관한 폐차업자는 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관리비용(보관료)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관리비용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심사결과(2001. 1. 31)

- 차체 또는 차대 사용 제한은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승용차와 승합차에 부과하는 세제상 불균형, 사용연료의 제한 등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자동차 제작상의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그동안 폐차업자가 대가 없이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해 왔으므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타 자동차관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 자동차를 확인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또는 찾아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처리 의사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일이 경과한 때”로 단축

심사결과(2001. 1. 31)

- 무단방치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국민생활 불편사항’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3) 항공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공항의 범위를 “국제공항(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김해공항 제외)을 제외한 공항으로서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변경

심사결과(2001.2.14)

- 항공기 소음대책은 일반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공항 주변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6)

- 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차량 총 중량 12톤 이상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로 확대함
- 차량의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 강화
 - 설치대상 : 차량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 3.5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 설치위치 : 차체 후단에서 60cm 이내 → 40cm 이내
 - 안전판 너비 : 차폭보다 좌·우 각각 20cm 이상 적지 않은 크기 → 10cm 이상
 - 모서리 라운딩 : 없음 → 곡률반경 2.5mm 이내
- 승차인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
 - 총면적 기준 : 없음 → 20,000cm²
 - 비상구 대응 창유리의 파손용 장구 : 2개 이상 → 4개
 - 자동식 승강구의 수동작동장치 설치 및 조작방법 표기 의무화 추가
- 벤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 기준 강화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 설치 → 제작공정상 불

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 창문설치 금지 단, 보호봉을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
→ 화물적재장치의 모든 벽면에 창문설치 금지 및 벽면의 재질이 동일하여야 함

-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어야 함

● 자동차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하여야 함 → 자동차 전조등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운행 중 주변의 밝기가 일몰시의 조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함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함

● 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기준 강화

-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 또는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후부 반사지(판) 부착 대상 확대

- 차량 총 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차량 총 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자동차 연료 누설 방지 시험 강화

- 연료장치의 충돌시험 기준을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 → 연료장치의 충돌시험 기준을 종전의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상향하여 일원화함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차량 총 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한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 을 마련

● 싼형 및 경형 승용자동차는 범퍼충격시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경형 승용자동차는 범퍼 충격시험 대상에 포함

● 승용자동차의 충돌시험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을 적용하고 경형 승용자동차는 제외하였으나, 충돌시험시 적용기준에 '측면충돌시험시 승객보호기준' 을 신설하고 경형 승용자동차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승합자동차의 차체구조시험 기준 강화

- 승합자동차의 충돌시험시 총 중량 4.5톤 이하는 정면 충돌속도 40km/h, 후면

추돌속도 35km/h로 함 →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48.3km/h로 강화

- 총 중량 4.5톤 이상인 경우 기준 미설정 → 총 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의 전복시험 및 차체강도기준 신설

-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함
- 이동벽 옆면 충돌시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옆문 강도시험을 제외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옆문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원동기 출력 오차기준 강화
 - 설계출력과 실제출력 사이의 오차 범위(최고 출력의 경우 $\pm 5\%$, 기타 주행시 $\pm 6\%$) → 형식승인 단계(최고출력의 경우 $\pm 2\%$, 기타 주행시 $\pm 4\%$, 회전수 오차 $\pm 1.5\%$), 형식승인 후 양산 자동차 샘플링 확인시($\pm 5\%$)
- 급제동시험 기준 보강
 - 자동차의 차종·중량·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에서 정지거리만 확인 → 자동차의 차종·중량·속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국제기준으로 강화
- 좌석안전띠 강도 강화
 - 안전띠에 대한 조절기준, 강도기준이 있으나 시험결과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음 → 강도시험 결과 좌석부착장치 및 부착장치 주위의 파열 또는 영구 변형이 발생한 후에도 설치기준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심사결과(2001. 3. 17)

- ABS 의무설치 대상 확대는 차량의 안전도 제고 및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후부안전판 설치기준 강화는 차량의 후면 추돌 사고시 인명사고 감소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벤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 개선 권고
 -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이외에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 20% 범위 내 창문 설치 허용(이 경우 보호봉 설치)
 - 화물적재장치의 모든 벽면에 창문 설치를 금지하고 벽면의 재질을 동일하게 사용 → 옆벽면은 개정안 내용에 동의, 차량 후면의 유리창 설치는 허용, 이 경우 보호봉 설치

-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을 것 → 원안대로 의결

-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와 관련하여 등광색은 백색으로 일원화하되 전조 등의 자동 점등 의무화는 삭제토록 개선 권고
- 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기준 보완은 교행시 운전자의 눈부심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후부반사지(판) 부착대상 확대는 후방 추돌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동차 연료누설 방지시험 강화는 다인승 승합자동차 및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퍼 충격시험과 관련하여 경형 승용자동차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범퍼 충격시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되, 시험기준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
- 승용자동차의 충돌시험기준 강화는 탑승자의 인명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승합자동차의 차체구조시험 기준 강화는 차량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충돌시험 속도 강화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구조시험 방법에 Body Section Pendulum 시험과 강도계산법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에어백 경고 문구 부착 의무화는 탑승자의 에어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옆문강도시험 면제규정 폐지는 자동차의 안전도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원동기 출력 오차기준 강화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급제동 시험 기준 보강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좌석 안전띠 강도 강화와 관련하여 강도시험결과 이후 변형된 내용까지도 시험 전 설치기준 범위내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심사결과(2001. 3. 2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골프장의 입지 기준 범위를 벗어난 항목(산지에 있어서 경사도 30°를 넘는 곳은 절토 및 성토하는 부위에서 제외할 것,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50% 이상을 당해 사업부지안에 이식할 것,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을 입지기준으로 수정하거나 상위 법·령에 시설기준의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6) 건설산업기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 강화 4)

-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함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는 공사의 수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수행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수행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산업관리의 대가기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도급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주된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 계약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그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 비율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하지 않은 부분의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완공시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고용하는 건설기능인력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하여 반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능인력의 명의 대여 또는 건설기능경력증 대여 등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능관련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기능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1. 3. 28)

-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한 예방수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시기와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건설공사 수행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발주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설공사의 수행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현재의 수직적·중층적 원도급-하도급 구조에서 건설사업관리(CM)에 의한 종합적 사업관리와 공종별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으로 생산체계의 개편을 도모하고 건설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건설사업관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업체를 신고하게 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건설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는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보완규정으로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CM의 계약형태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발주자가 다양한 CM을 적용하는데 제약을 가져오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의무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에 따른 원도급자의 자율적인 공사수행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발주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을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한 경우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개선 권고
- 공사 내용, 공사진행상황, 민원제기처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 인근 주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 참여 주체의 안전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경영실태 건실성은 건설업 등록기준이나 건설공사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하여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 곤란하고, 경영실태 부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 및 경영실태 적합 여부 자체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고 대상 중 '경영실태'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규제준수율과 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공제 가입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비규제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건설기능인력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반기별로 기능인력 보유 현황 신고를 의무화

할 경우 건설인력시장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인력관리업무 등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현황과 개별 인력에 대한 관리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며 건설기능인력의 빈번한 고용·퇴직에 비추어 볼 때 현황자료의 활용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건설기능인력의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를 고용하는 건설업체에 있고 고용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의적인 부실시공 사례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에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5)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을 5개 대도시권 중에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으로 함
-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하고,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함(부담금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 - \text{공제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함
- 택지조성사업은 50/100, 주택건설사업은 1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택지조성사업(수도권 30%, 기타 대도시권 15%), 주택건설사업(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으로 구분하여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담금 산식의 산정기준을 정함
 - 개발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 임대주택용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용지, 공용청사 및 학교용지를 공제한 면적으로 함
 - 용적율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지역 또는 사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 용적률'로 함
 -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장, 공용청사, 각급 학교,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을 공제한 면적으로 하고 주상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만 계산

-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2001. 4. 4)

- 광역교통계획이 기 수립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동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며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대형화·고급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며, 부과대상 면적 기준을 주택부문으로 한정하는 것도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감안할 때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규정은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2006. 4. 30일까지만 적용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도록 개선 권고
- 공동주택단지내의 주거용 이외의 시설에 대한 연면적을 건축연면적의 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
 - 제외대상시설 :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원, 노인정, 관리사무소,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활동·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입주자 집회소

(8) 삭도·궤도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삭도시설 운전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 기계·전기·전자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삭도시설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심사결과(2001. 4. 11)

- 장기적으로 운전인력이 점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대체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도시설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고용되어 근무 중에 있는 자에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사무실 기준 신설
 - 일반건설업 : 토목, 건축, 조경공사업(33㎡ 이상), 토목건축, 산업설비공사업(50㎡ 이상)
 - 전문건설업 : 가스시설시공업(12㎡ 이상), 기타(20㎡ 이상)
 - 자본금 요건 강화 : 건설공사에 관한 보증거래를 하고자 하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이 발행하는 업종별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보증능력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매 1년마다 보증능력확인서 제출
 - 기술능력 요건 강화 : 토목공사업(4인 이상 → 5인 이상), 건축공사업(3인 이상 → 4인 이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확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5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50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결과(2001. 4. 28)

-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건설시장의 교란 등 문제상황 타개를 위하여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사전적인 선별수단으로서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입찰제도·건설산업 정보화 미비 등 건설시장 교란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므로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보증능력확인서는 발급기관에서 신청업체의 보증능력을 평가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 강화된 등록요건 보완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4월 → 6월)

- 건설업은 특성상 종사자의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실업시 생계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운송범위 명확화
 -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정부기관·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 회수권 기타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것을 제외함)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경우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로 함
- 운전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추가
-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수단에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 공사 등으로 노선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개시를 못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함

심사결과(2001. 6. 8)

- 전세버스운송사업 단서 규정 중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정부기관·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을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정부기관(출연연구기관 포함), 회사,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

고

- 전세버스 운전자격 증명제도 도입 이유로 들고 있는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은 운전자격 증명제도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타당하며, 별도의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커서 불합리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 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 점포에서 인근 지하철 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사업개시를 못한 때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나서 면세 차량을 취득한 후 사업개시 없이 매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11) 하천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댐 설치자는 댐 본체 및 부속 구조물의 붕괴위험, 대홍수의 유입에 의한 홍수피해 등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유입량 등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홍수시에 도 원활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신속·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그 중요구간에 무선통신 등 전용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한 자가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를 포함

심사결과(2001. 6. 14)

- 홍수 경보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등 전용통신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관측시설의 경우에도 집수지역의 면적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전용통신시설의 설치 대상 댐의 현황을 고려함이 합리적이므로, “신속·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그 중요 구간에 무선통신 등 전용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를 “신속·정확한 통지를 위한 통신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의 운영을 포함한 수상레저사업 영위를 허용한 이후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행정규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1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내용심사 6)

- 건설관련 기술자격 또는 학력 없이 건설관련 소정의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경력자를 건설기술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경력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부실방지 등의 목적으로 종전의 신규 교육 이외에 소정의 기술능력의 누적에 따라 상위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추가 이수하도록 함
 - 교육시기 : 건설기술자(초급→중급, 중급→고급, 고급→특급), 감리원(감리사보→감리사, 감리사→수석감리사)
 - 교육기간 : 건설기술자(1주), 감리원(2주)
-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한 현장,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현장, 시공업체 또는 감리원이 부실방지를 위해 점검을 요청하는 현장,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재난·재해 취약시기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으로 정함
- 건설사업관리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시행기준을 정함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시기 : 당해 용역계약 체결시 발주청에 제출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금액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강화

- 정기안전점검의 시기와 횟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와 동일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협의체의 직무 등을 규정함
- 안전교육은 매일 공사 착수전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하되, 안전교육에는 당일 작업공법, 세부시공순서, 시공기술상의 주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함
- 품질관리가 필요한 건설자재·부재를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돌, 건축설비 등으로 하고, 승강기 등 건축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자는 건축설비의 반입·보관 등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감리원의 자격을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에 대해 특급·고급·중급·초급 및 검측감리원의 5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수석감리사·감리사 및 감리사보 3단계로 개편함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 시공감리 :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기술지도 업무
 - 검측감리 : 시공의 적정성 확인 업무
-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함
 - 5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 300~500억원 :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 100~300억원 :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 부실감리 등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사유 확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3월
 - 감리보고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월
 -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월

- 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 강화
 - 부실측정대상 추가 : 건축사법의 규정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건축사 및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보완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시 일부 누락 또는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점)
 - 감리기록 유지 및 보고 소홀에 대한 부실측정기준 추가 : 감리보고서 제출지연 (1점), 감리보고서 작성 내용 누락 또는 허위 작성(1점)
- 발주청,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건설현장의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6. 20)
- 건설공사 부실 방지 목적을 위한 기술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력기술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등급별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되고, 경력기술자의 존치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객관적·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동 기준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불합리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국제적으로 APEC 엔지니어의 기본 요건으로써 교육학점 이수(150학점/매 3년)를 요구하고 있고, 기술등급이 상향시에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의 급격한 축소에 따르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자의적인 현장 점검으로 인한 현장 종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사업관리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시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발주청이 입을 손해에 미리 대비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의 손해배상체제와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 산정기준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이 없이 비용의 산출기준을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재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불합리하므로 동 시행령에서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가 필요하나, 승강기 등 건축설비의 경우 법에서 품질관리 대상으로 위임한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조·설치·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감리원의 경우 현재 특급감리원이 전체 감리원의 63%를 차지하는 등 자격구조가 기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리원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자질시비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감리원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기술자격자를 우대하고 경력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기술력 위주의 등급인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 건설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감리방식을 다양화하고, 감리방식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대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구분을 추가하고 유사규모 공사의 감리 유경험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실감리의 경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감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에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비(경비)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이 미비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자가 이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하여 적정한 환경관리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13)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6)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변경)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및 임원,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10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주식의 공모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 후에 가능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시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수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방식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교방식 및 원가방식 가능
-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함),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현물출자자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자는 출자 후 2년 내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개발사업의 인가 요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아래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관련 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기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교육기관 : 부동산·금융관련 전문교육·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교육내용 : 자산의 투자·운용, 부동산 관련 법률·조세·회계제도, 증권발

행·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수탁 범위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 제공,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으로 하고 업무위탁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 후 2년 내 처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동산 취득·처분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현황, 가격, 거래비용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을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 한도는 비현금 수입항목을 공제하고 비현금 지출항목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제한의 예외로서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차입,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를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등 공공목적의 기금으로부터 수용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있어 일시적인 환매청구 발생 등으로 대금지급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예외로서 경쟁입찰등 공정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이하로 취득하거나 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보유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증여·담보권의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체 사용목적의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관으로 정한 경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제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취득·처분행위, 보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은용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이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등을 해서는 안되는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회사의 자산으로 특정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도·매수하고자 하는 사실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의 위탁방법을 구체화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 유가증권 및 현금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신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주공, 토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관을 위탁하여야 함
 - 자산보관기관은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 중 증권거래법상 예탁 대상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함
 - 투자회사와 자산보관기관간 자산보관계약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 책임, 권한에 관한 사항
 -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 자산보관기관의 자산보관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자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투자보고서 기재사항 : 회사개황, 자산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총수입금액·수입구조·수익률,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주요 임차인 현황, 유가증권의 소유현황,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 차입에 관한 사항, 주가변동상황,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사항,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 매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분

- 기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공시·열람하여야 함
- 매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결산기 투자보고서를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공시하는 경우는 제외)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조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보고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고사항 : 설립등기완료, 당해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파산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때, 해외에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
 - 보고절차 :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비율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부동산투자회사간 합병시 요건·절차 등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을 준용
 -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전문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필요
- 자산관리회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유재산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해서는 안 됨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설립당시의 발기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후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발행주식수의 10/100 이내에서 인수하는 경우
 -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시설관리회사, 중개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요건은 아래와 같음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할 것
 - 추정재무제표 및 수치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자산관리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

- 고유자산과 수탁자산의 구분관리가 분명하고 구분관리가 이익상충을 방지하기에 적절할 것
- 경영진이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출 것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매수청구에 의한 주식 매수시의 매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매수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매수일 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명한 주식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기 전에 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심사결과(2001. 6. 20)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기재사항 중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며, “기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및 임원의 자격기준은 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주식 공모를 예비인가 후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현물출자시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수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방식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교방식 또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한도의 적용 예외로써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자는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가요건 중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으로서 ‘부동산 관계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사전 교육기관을 부동산·금융관련 전문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대학 중 자산의 투자·운용, 부동산 관련 법률·조세, 회계제도, 증권발행 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도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신청서 기재내용 중 ‘그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사업계획서’로 수정하며,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수탁 범위를 자산보관기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 부동산 처분제한의 예외로서 부동산을 ‘증·개축, 용도변경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연면적의 20% 이상 증·개축, 50% 이상 용도변경, 개·보수(리모델링)하여’ 처분하는 경우로 수정, 나대지의 처분제한의 예외사유 중 ‘특정한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에 처분하는 경우’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삭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실사보고서의 내용 중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산정기준(부동산) 중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삭제, 동일인 발행 유가증권 투자제한 예외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동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으로 수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약

정을 체결한 금융기관등 채권자, 원리금지급 대행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한도는 비현금수입항목을 공제하고 비현금지출항목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제한 예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를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임대차 보증금을 말한다)를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이하로 취득하거나 평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체 사용목적의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제한행위와 관련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임직원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강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이용을 제한하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는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위탁시 자산보관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중 “그밖에 공익 또는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자산보관기관의 자산보관업무 수행 기준은 자산보관기관의 자산보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시 기재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투자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보고사항 중 ‘해외에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비율의 평가기관 중 “감정평가법인”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자산관리회사가 고유재산으로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삭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 중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과 “경영진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투자·운용·관리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출 것”을 구체화,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중 “그밖에 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과

- 첨부서류 중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매수청구에 의한 주식 매수시의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때 매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예외적인 환매 청구 사유는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운전면허 취소·정지 중인 택시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전면허 취소·정지 중인 자가 운전시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외부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셔틀버스의 운행허가 구간을 주민의 생활권 및 허가관청 단위에 맞추어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 밖의 구간까지로 함
 - 운행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안전과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종합보험 가입, 안전관리의무 등 조건을 부과함
- 렌트카의 제도 취지에 맞는 단기 렌트는 활성화하되, 자가용 위장등록 및 장기리스 등 대여사업체의 탈법적인 운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강화하고(15~18㎡ 소형승합자동차 → 승용차(7인승 이상) 및 소형승합자동차),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하여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며, 장기 임대 자동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축소 적용하는 차고 면적을 강화함(70% → 50%)

심사결과(2001. 6. 20)

- 개인택시 자격취소 및 양도제한은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정한 표기의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임의적인 표기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
- 자동차대여사업이 원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적으로 진입장벽의 유지·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1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5, 내용심사 5)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함
-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제외 대상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독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로 함
-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건축물의 개·보수로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추가함
- 연면적 5,000㎡ 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 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해당공사 기간 동안 각각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해당 분

야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함

-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하던 것을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으로 함
-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허가·승인 취소, 공사중지명령, 사용금지·제한,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함
- 대지면적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공원·하천·녹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
-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5,000㎡ 이상·16층 이상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두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신청시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써 기본설계도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추가하여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의 경우 제외)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6. 27)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은 기

능상 제반 환경 피해와 자연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과정을 통해 수질 및 자연환경 저해를 억제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나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은 임의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법령내 상충의 문제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내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축사에 의한 설계·감리의 의무화는 건축기준 완화 적용 유무보다는 개·보수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건축법령의 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의 개·보수시 주요 구조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 차원에서 건축사에 의한 설계·감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권고
- 전체 공사에 대한 건축분야 상주감리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특히, 토목·전기 등 부대설비에 대한 현장감리자의 전문성 제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현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에 의하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도로등 공지를 사이에 두고 건축될 경우 인접대지의 공동주택간 간격이 좁아져 일조권의 피해문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일조기준을 강화하여 주민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해서도 건축법령 위반시에 공사중지명령, 철거, 개축, 수선, 사용금지·제한 등의 필요한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 불법 운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무분별한 공작물의 설치와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해 방지 및 도시환경,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그동안 건축법령의 해석·집행 과정에서 운영하여 오던 대지면적 산정기준을 객관화·투명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 향후 도시계획시설이 개

설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건축기준의 위반사례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관계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후적인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신고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별도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별도로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전기판매업자 또는 안전공사에 확인하는 절차로 같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16)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통행료 감면 차량의 범위와 감면율, 감면시 증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감면차량 : 전액전제(군작전용, 구급·구호, 소방활동 종사자, 교통단속, 당해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 1~5급), 50% 감경(국가유공자 6~7급,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증명방법 : 군작전차량(소속 부대장이 발급하는 군작전명령서), 국가유공자·장애인·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발급하는 면제 또는 감면 증명서)
- 무단통행, 통행증표의 위·변조, 통행료 감면 증표의 위·변조,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증표 행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할인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가통행료를 현행 2배에서 1회 위반시 할인·면탈 금액의 5배, 2회 위반시 10배를 징수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6. 27)

- 그 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감면해 주던 사회정책적 차원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율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감면대상자에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신속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 부정 통행의 회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정 통행 사실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무적 어려움과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부정 통행 회수에 대한 시비 등이 제기되어 불필요하게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통행 회수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향후 2년간은 제도와 함께 5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3년차부터는 1회 위반시 5배, 2회 위반시 10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기준을 강화함**
 - 물품 적하구는 뒤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이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 면적의 20%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품적재장치의 옆벽면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개정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밴형화물자동차를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6. 27)

- 물품적재장치 기준은 2001. 4. 29 개정·공포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강화된 화물자동차의 제작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하고 있는 바 향후 동 규칙이 발효되면 보완이 가능하므로, 동 내용 중 단서부분을 삭제하고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정부가 뱅형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하여 생산·유통하도록 하였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비용부담까지 지우면서 구조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18) 항공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전자 및 항공종사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항공기 정비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정비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업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객실 승무원도 이에 포함하도록 함
- 정기항공운송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 하여서는 안 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 등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통보함

심사결과(2001. 7. 14)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정하는 국제적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2조의3제1항제5호)”을 “그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국제민간항공조약(제37조) 부속서에서는 항공기 정비조직에 대하여 작업절차, 품질보증체계, 시설, 인력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법개정안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자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국제민간항공조약(제37조) 부속서에서는 “사업자의 국가에서는 객실 승무원에 대한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법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른 비행근무시간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운항조건과 제한사항 등이 명시된 운영기준(안 제115조제3항)”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심사결과(2001. 7. 18)

- 국내 부동산 투자 관련 상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사를 사칭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상법(제23조)에서는 정당한 상호의 사용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그 사용의 폐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안적인 규제수단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므로 철회 권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매·관리업무 수탁은 공사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본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이며, 사적 주체로서의 업무 영역이므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업무내규 등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철회 권고

(20)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철도노선 관리·운영업무의 수탁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탁자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해산 등의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지역별·노선별·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등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위원회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철도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함

심사결과(2001. 8. 22)

- 국가로부터 철도노선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열차, 열차운행제어설비 등 기본재산을 갖추어 철도수송, 노선유지관리 등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수탁법인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회사의 합병·해산 등 법인형태의 변경을 가져올 경우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서비스의 계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다수 이용자의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천재·지변·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철도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 발생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설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수익자부담과 관련한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건설비용 부담 자체는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제도 운영의 임의성을 막기 위해 부담금 부과시 부과대상, 부과율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개선 권고

(2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휴업신고를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신고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재개업신고를 아니한 때,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부실진단으로 평가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 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을 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소속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등을 추가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그 실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1. 8. 29)

-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업자와 관련된 유지관리업체가 있고 대부분 전문성이 낮아 정밀점검을 실시해도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바, 정밀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마지막 정밀점검을 제3자인 외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등록 후 등록내용 중 상호·대표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동에 한하여 관할 기관의 등록관리 및 업체의 편의 측면에서 변경신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중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부실진단으로 판정될 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때”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동 자료를 기초로 평가를 실시해 안전진단의 품질 제고, 부실·허위진단 예방 및 부실·허위진단에 대한 처벌 체계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22) 항공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8)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는 항공기 사고 발생시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장착하는 무선설비로써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경우 2대의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를 장착하되, 2002. 1. 1일 이후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표지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고, 2005. 1. 1일 이후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는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수색구조가 어려운 지역의 상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1대의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설비표지를 장착하되, 2002. 1. 1일 이후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와 2005. 1. 1일 이후 모든 항공기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를 장착하여야 함
-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과도한 강하율, 불안정한 지상접근 등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상태를 사전에 경고해 주기 위한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항공기의 운항 중 공중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접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II), 항공기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을 장착하도록 함
- 승무원의 비행 피로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에 대한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경험·지식·기량 및 노선심사 요건과 기장의 부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에 대한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경험·지식·기량 및 노선심사 요건과 기장의 부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에 합격한 조종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쌍발 항공기의 1개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순항속도로 착륙가능한 공항으로부터 60분 이상의 비행거리를 벗어나서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비행하도록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도록 함
- 운항증명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나누고 운항증명과 관련된 정비조직의 승인, 정비조직 승인을 위한 검사범위를 규정함
- 항공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한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항공운송사업 종사자는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심사결과(2001. 9. 18)

- 무선포지설비 장착 기준 강화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사고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장착의무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임 다만,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장착 의무화 시기는 2003. 1. 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선 권고
- 승무원 근무시간 기준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운항자격 심사 대상을 기장외에 조종사까지 확대하고 항공사도 정기항공 운송사업자 외에 비정기 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 규정된 내용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조종사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대상은 국제기준에 의거 기장외에 조종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쌍발 항공기의 장거리 비행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는 필요하나 비행계획 확인시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현행 운항증명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예비신청·본신청으로 이원화하고,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 및 증명 교부 절차, 운항검사와 관련된 정비조직 승인, 정비조직 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규정은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운항기술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 또는 업무수행시의 행정처분 기준의 내용은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23) 항공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 또는 정비하거나 운항기술기준 및 운영기준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

심사결과(2001. 10. 5)

- 대상별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항공법시행령에서 기준에 정하고 있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24)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9, 내용심사 2)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 까지”로 하고 신청서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함
-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근 지역 수원의 고갈,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 통보하도록 함
- 유출지하수의 용도를 지정하고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 및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
 - 유출지하수 이용 용도 :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공사용, 소방용, 청소용, 인근지역 지류의 하천 유지용, 인근지역의 조경 및 관상용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의무 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21층 이상이거

나 연면적 합계가 100,000㎡ 이상)

- 유출지하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대상 유출량의 규모 : 지하철 역사 1개소에서 지하수 배출량이 300톤/1일 이상인 경우, 기타 터널에서 1개 터널당 지하수 배출량이 300톤/1일 이상인 경우, 1개 건축물에서 지하수 배출량이 30톤/1일 이상인 경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 및 영향범위를 지정함
 - 굴착행위의 종류 : 광업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을 위한 토지 굴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따른 굴착 지름 100mm 이상의 토지 굴착, 지반 또는 지질 조사를 위한 지름 75mm 이상의 토지 굴착
 -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개선명령 등을 취할 수 있는 범위 : 당해 토지 굴착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1일 취수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지하수 보전지구 및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 지하수 보전지구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m 이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나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 지하수 개발제한구역 : 주변구조물, 시설 및 지반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해안·도서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다 채수함으로 인하여 염수가 대수층 내로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급수정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공공급수정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장래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제한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 지하수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개발·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연장의 허가일로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다만, 개발·이용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지

하수 개발·이용이 종료될 때까지 매 5년 단위로 예치하도록 함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시 시장·군수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관리자가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유량계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에 오염 진척 상황 평가, 지하수 오염 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오염지하수의 정화 등을 추가함
- 지하수 보전구역, 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지역의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관리자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오염관 측정의 설치 수질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 오염예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하류 구배구간에 기존의 관측정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지하수 오염관측정을 지하수의 주유방향을 따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수질 측정 일시·항목·결과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해범위,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원인자에게 지하수 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지하수 오염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원인자가 작성한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은 정화작업 개시일 30일 이전 또는 정화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얻도록 함
-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수질검사 기록을 매분기 익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기준 부적합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정수처리를 하거나 당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고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하수 이용 중지,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정화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정하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등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함

- 지하수정화업 등록기관의 자격 :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심사결과(2001. 10. 10)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5년) 경과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근 토지의 용도 변경 등으로 지하수의 수질·수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쳐 연장 허가함이 적정하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업무처리시 당초 허가 내용은 행정기관 자료에 의하면 되므로 종전에 교부받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 권고
-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시정명령, 이용중지 등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동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결과 통보도 지하수 관리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유출지하수의 용도구분은 이용확인 등 관리를 위해 적정하나 구분 내용이 환경관련법상 구분과 상이하고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하므로 생활용, 조경용, 농업용, 기타용으로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는 지반·지질 조사용 시추공을 포함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굴착행위에 대해 지하수 개발공에 준하는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지하 굴착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 보전지구 및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범위는 대체로 적정하나 지하수 개발제한구역 중 “장래 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포함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설정은 현행법에서 제외된 착공 후 미준공 개발에 대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복구 의무는 준공기간과 무

관하게 개발·이용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유량계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는 지하수 이용량의 조작등으로 인한 과다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추가는 지하수의 오염유발시설관리, 오염지하수의 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적정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 지하수의 정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 기관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기준 부적합시 관계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적정한 지하수 관리를 지향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정화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으로 적정한 내용임 다만, 경미한 변경시 신고대상 중 자산평가액은 등록기준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2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공공철도 건설·개량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예정지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각종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의 행위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철도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투자계획, 사업기간,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철

도 건설·개량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작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1. 10. 26)

- 공공철도 건설·개량 예정지역 지정시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외에 일반인에 대한 열람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토지 매수 예정시기 이내인 영농용 또는 기타 임시 공작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철도건설을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적정하나 다만,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는 그 범위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감독권은 필요함 다만,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도록 개선 권고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은 경우, 공사중지·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으로 지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중지·변경 명령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 사업승인권자의 원활한 감독을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자료제출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한 것은 위반사유 및 타법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므로 보고·자료제출 미이행시의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에서 자료제출 대상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시 검사일시·검사목적·검사결과·검사자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시행령에서 검사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개선 권고

(26) 주택건설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9)

-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함
-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주택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시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신고를 않거나 변경신고를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주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

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계약방법·절차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령 등 취득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입주자가 요구시에는 다른 법에서 공개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함

심사결과(2001. 11. 9)

- 사업계획 승인 후 장기 미착공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사업승인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착수의무가 필요하고 장기간 미착공시 등의 경우 취소근거 마련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향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리모델링의 경우 가구당 부담이 고액인 점과 다수 가구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미인가 조합의 추진을 원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하고, 리모델링 조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 경우 미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사업주체의 광고에 대한 사전 신고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한 사업을 광고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사고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광고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통보토록 수정하여 사고예방 및 사업주체의 부담완화를 기하도록 개선 권고
- 리모델링의 사업내용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으로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선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한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리모델링 규모·내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완공 후에는 허가 내용과 적합여부, 사용자의 불편사항이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사용검사는 필요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현행 규제사항인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내용을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신고사항의 변경내용까지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때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필요시 자료 제출·보고 요구,

출입조사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자치관리기구 구성의무는 존치하
 되 신고 내용 변경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
 도록 개선 권고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인계의무는 주택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 수명을 장기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행할 사항임을 고
 려할 때 주택관리사 배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
 당하나, 주택관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주택관리사가 근무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업무 개시 후 최초 1회만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후는 관련제도의 대폭변경 등 필
 요성이 있을 때 임의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최근 주상복합건축물이 증가하고 선착순 분양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비수요자의
 선매집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절한 분양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획득한 주택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히 보
 유·관리하고 주민 등의 요구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임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하여 규정함이 적절하므로 개정법안에서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 폐지로 개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
 제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차량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업체, 환경보호 모범차량을 운영하는 업체 등을 우
 수업체로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인증 업체
 의 우수업체 표시를 금지함

-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여객운송시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개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운송업자의 등록취소 사유에 ‘화주외의 여객을 운송한 때’를 추가함
- 화물공제사업자의 임직원이 공제규정·공제약관 위반 또는 관련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 징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운송사업자외에 운수종사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정보화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심사결과(2001. 11. 9)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일반화물) 진입제한 폐지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적재화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나 다만, 차종·사업 종류별로 사업형태가 다양하므로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시행령에서 세분화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무가입 대상을 최소화하고 보험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개선 권고
- 우수업체 인증제도는 화물운송의 안정성 제고, 우수업체의 육성에 유용한 제도로 인정되나 이는 화주 또는 소비자 단체 등 민간주도로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을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면적보다 넓도록 했으며, 기존 등록차량은 개정된 등록기준과 맞지 않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어 종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조개선명령은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은 구조개선 명령 및 구조개선 미이행시 현행법에 의해서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므로 중복규제인 측면이 있고 법규위반 범위도 불명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공제사업은 운송사업자 외에 소비자의 권익에 관련되는 등 공공성을 띠어 법률

에 업무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시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운송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 감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과태료의 최고한도를 운수사업자보다 하향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0, 강화 14)

-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를 불허함
- 제2종 및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공사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함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음
 -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조합은 시공자를 최소한 3 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공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시장·군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자격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재건축사업)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도록 하고 조합은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정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면서 정관내용을 보완함
 -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공사비 등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절차, 정관의 변경절차
-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목·기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종 정비사업(재개발)과 동일하게 제3종 정비사업(재건축사업)에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차입의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사업시행비용 및 경비의 수지예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분양신청시 조합원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청산 및 조합해산시 회계 보고 등을 규정하고, 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 역할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 주민대표기

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1종 및 제2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절거되는 자 및 세입자를 위하여 당해 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 제외)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계약상의 종료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고시가 있는 날을 주택임대차 계약상의 종료시점으로 봄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구역 안의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전에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공사비 등 비용부담액 및 부담시기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별 비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 및 임대주택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당해 구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에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가 아닌 자가 시공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에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정비사업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거나 컨설팅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정비사업관리자를 선정해야 하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경우 정비사업관리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공사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 시행 인가일부터 20일 이내,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정비구역의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게,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3백원 이하의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에 따라 주택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에 매월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안전진단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조합 또는 20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자료를 조합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요 회의 자료는 청산시까지 보관하고 시장·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1.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3종 주거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주민의 신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정비구역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사업시행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주민과 조합간의 마찰이 적지 않았고 모든 조합원이 조합운영의 매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할 필요는 있으나, 경쟁입찰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지연을 이유로 시장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제3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이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에도 시정조치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써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부실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권고
-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요구, 추진위원회의 불신임 등 추진위원회 활동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용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을 삭제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건

축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조합원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에 포함될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사와의 계약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권고
- 조합원 임원에 대한 교육의무화는 이를 삭제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소기의 교육을 받도록 정관에 임원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조합원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시장·군수 또는 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의사반영을 위해 주민대표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의 의사가 사업추진에 반영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주민이 대표기구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 시행시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철거민 또는 세입자의 주거생활권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지수용은 공공의 목적,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재건축)에 대한 토지수용권은 삭제하고, 단독 주택지의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도입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임대인이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예상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한 비용의 발생이 지대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임대차계약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의하여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투기 억제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2 이상의 주택에 대하

여 2주택까지 공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규모 구성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계약시 시공보증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나,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은 분양보증을 받고 있으므로 조합이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조합공급분에 한하여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개선 권고
-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나 등록기준 등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삭제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비사업전문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정비사업관리자 선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삭제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등록말소 요건 중 “사업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는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보고·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의 거부”는 과태료로 변경하고 등록말소 요건에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감독상 필요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과 사업장 방문조사 등은 필요하나, 과도한 자료제출의 예방을 위해 자료의 제출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검사를 억제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내용(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결과, 검사자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검사실명제)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법에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조합원에 대한 열람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해관계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선 권고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임원의 선임 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임원의 개선명령은 개선권고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향후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비한 적립금의 범위와 이의 처분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협회 구성 필요시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는 필요하며, 중요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 등을 제작하고 보관하는 것도 적절한 내용임 다만,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29) 자동차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7)

-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수입시 실시하던 형식승인을 폐지하고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함을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전환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의 판매금지, 제작 결함 시정(리콜) 제도의 보완·강화, 제작자 등의 자료 제공 및 기록보존 의무화를 규정함
-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 명령 규정을 신설함
- 택시미터기 검정용 주행시험기의 정밀도 검사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형식신고제를 폐지하고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함
 - 차대번호 등의 표기 및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 이륜차의 형식인증, 판매금지, 형식인증 면제 등, 제작결함의 시정 및 이륜차의 자료제공 등, 안전시험 대행자 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주행거리계를 무단으로 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함
-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제작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 부과, 결함조사 방해, 결함관련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소비자에게 자료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규정을 강화함

심사결과(2001. 11. 14)

- 정부에서 자동차 제작시 형식을 인증하던 제도로부터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자

동차 제작의 형식을 인증하던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자율적인 제작에 따른 제작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구조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후 정비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은 자동차 구조안전을 확인·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타당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택시미터기는 요금을 산정하는 기기이므로 이의 정확도 유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택시미터기 검정기기의 정밀도 검사는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동차 제작·수입시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형식인증)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형식인증 제도의 범주에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상의 구조안전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무단 변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요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동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의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되, 자동차 구조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벤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함 단,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현금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 호송용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심사결과(2001. 11. 14)

- 6인승 취소 등의 수단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나, 특정 차종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업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 문제의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 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으로 승차정원 제한을 두

려는 것으로 동 규제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31)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고, 재건축조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11. 23)

-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의하여야 하나, 현재 소형주택의 공급부족, 과도한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건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규모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하고 의무공급비율을 20%로 하되, 재건축의 경우 기존 평형규모까지는 건축을 허용하고 시·도지사가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미분양 누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데 동의

나. 누락규제 등록

1)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심사대상 법령 중 등록에서 누락된 행정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부처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고 등록하도록 조치

등록누락규제 정비 및 등록계획 심사결과

(단위 : 건)

구 분	심사대상 누락규제	정비계획			등록규제 수
		폐지	개선	존치	
규개위 심사결과	37(2)	6	8(1)	23(1)	35

* 괄호 안은 기존에 등록된 규제에 통합하여 등록하여야 할 숫자를 말함(등록누락규제 등록시 규제 수 증가는 35개임)

2) 등록누락규제 정비계획 상세 내역

건설산업기본법(122차 경제1분과위, 2001. 3. 28)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대하여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음 	● 존치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85차 본회의, 2001. 10. 26)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철도사업 실시계획의 시행 및 열람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의 승인은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도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함 ● 철도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존치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85차 본회의, 2001. 10. 26)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4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의 준비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토지 출입 또는 일시사용시 소유주와 합의하고, 이용 또는 장애물 제거시는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하도록 개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개량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의 특정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철도사업의 준공보고(법 제7조, 시행령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업완료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도시재개발법(제86차 본회의, 2001. 11. 9)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조합명칭 사용의무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 개선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도시재개발법(제86차 본회의, 2001. 11. 9)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총회 및 결의사항 (법 제18조, 시행령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경비의 수지예산,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공동시행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임시수용시설 설치의무 (법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사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음 -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의 토지·건축물 기타 권리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법 제34조, 제35조,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주택건설촉진법(제86차 본회의, 2001. 11. 9)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금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등록말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중 내란죄, 외환죄, 보안법 위반자 제외 *A46-007-001-01에 통합 등록
등록업자의 영업실적등 제출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업자는 매년 영업실적, 영업계획, 인력보유 현황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업자는 월별 주택분양계획, 분양실적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국민주택기금 예탁 의무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자금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체비지 우선 매각의무 (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체비지 총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제적인 수단으로 매각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부진 용지의 타인사용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받은 사업계획 기간 내에 대지조성 미완료시, 대지조성 완료 후 2년 이내 주택 미건축시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 (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주택상환사채 발행시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타인토지에 출입·사용 (법 제3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사업주체의 토지 수용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등록업자 제외)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토지수용 대상은 국민주택건설에 한정하되, 3년일몰로 운영
간선시설 설치 (법 제36조 및 제37조,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간선시설을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함 -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1/2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음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기한 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황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설치자에 대한 비용부담의무는 삭제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제한 (법 제38조제4항, 제6항 내지 제1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케 해야 함 -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 기준 설정 및 관리비 납부 지체시 손해배상 의무 (법 제38조제12항 및 제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산정방법, 납부방법을 정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관리비의 내역만 존치하고 그 외는 삭제
주택사업 공동사업의무 (법 제44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조합 단독 또는 시공사와 공동추진 허용
국민주택조합 설립 신고 (법 제44조제4항, 시행령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32조제5항 및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A46-007-064-00에 통합등록
조사 및 회계감사 (법 제44조제9항, 시행령 제4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토록 의무화
직장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의무 (법 제44조의2, 시행령 4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p>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의무 (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시행령 제42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불량 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함 - 시장 등은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p>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수행 (법 제44조의3 제4항, 시행령 제42조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불량 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p>공업화 주택 인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교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 인정 후 1년 이내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p>주택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자,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신규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함
<p>대한 주택 보증회사 설립 인가 등 (법 제47조의6, 제47조의7, 제47조의8, 제47조의9, 시행령 제43조의5,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및 정관 변경시에는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회사의 업무내용, 자본금 및 출자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 보증대상 규정시 대상 최소화
<p>감독 (법 제4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보고 및 검사 (법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 자료의 제출범위 구체화 - 검사실명제 도입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령(제86차 본회의, 2001. 11. 9)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관리규약 제정의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 ·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회계감사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제87차 본회의, 2001.11. 23)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제한 (법 제31조, 시행령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 ● 건설 비율 - 직장·지역조합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치

자동차관리법(제151차 경제1분과위, 2001. 11. 14)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 부정한 행위 -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존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23차 경제1분과위, 2001. 4. 4)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심사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담금 산정은 표준건축(개발)비, 부과율 건축(개발)면적 등으로 산출 	● 존치

2. 철도청

가.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 총 13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3건의 규제를 강화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1) 개요

- 2001년도에는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강화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중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건은 개선 권고하였으며, 철도청의 2001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2) 심사결과

(1) 철도소운송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철도청장의 소운송업자에 대한 운임·요금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대상으로 철도소운송업 운임·요금 기타 취급조건 적용의 적정 여부, 영업약관의 비치 및 화주의 요구에 의한 열람 여부, 화물의 파손·도난·분실·지체 등 민원·진정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 취소를 명하기 위하여 철도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
- 심사결과(2001. 3. 7)
- 철도소운송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화물의 파손·도난·분실·지체 등 민원·진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철도소운송업법에서 철도청장은 운임·요금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운송업자의 사무실·사업장에 출입하여 소운송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에서는 시정조치 위반에 대해서 60일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3. 7)

-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철도소운송업자의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다. 규제정비계획 재심사

1)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규제정비계획에 대하여 재심사

규제정비계획 재심사 결과

(단위 : 건)

심사대상	당초 정비계획		재심사 결과		
	폐지	개선	폐지	개선	존치
13	9	4	2(▽7)	9(△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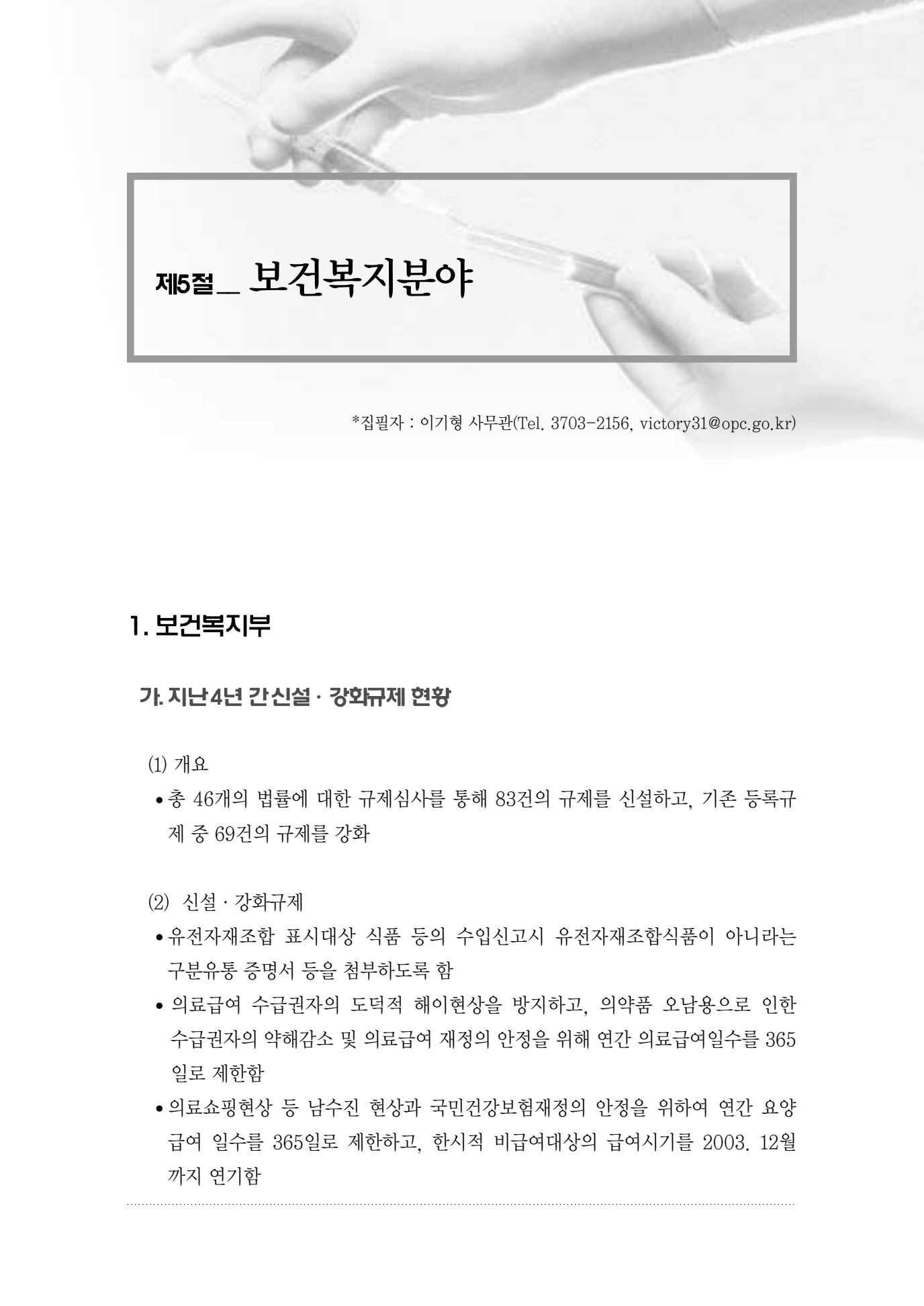
* 괄호 안은 재심사결과 정비계획상의 규제수 변동 내역임

2) 재심사 결과 세부 내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차 본회의, 2001. 11. 23)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재심사 요청내용	재심사 결과
1	운송사업 운 임·요금 신고 (법 제6조)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 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 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 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 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폐지〉 (1998. 12)	〈개선〉 - 견인차 운임은 성수 기·오지 등의 바가 지요금 징수, 사고 등 특수상황에서 소 비자에게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고 제 유지	〈개선〉 -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임·요금을 게시하 도록 하며, 5년 일몰 제로 개선
2	운송(주선)사 업자의 운송약 관 신고(변경 신고) (법 제7조, 제 24조) *2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 선)약관을 정하여 신고(변 경신고)하여야 함	〈폐지〉 (1998. 12)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 업자단체에서 표준 운송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준약관 사용시 약 관신고절차 간소화	〈개선〉 -재심사 요청내용 동의
3	화물자동차 운 전자의 자격요 건 (법 제9조)	화물자동차운전자는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폐지〉 (1998. 12)	〈존치〉 - 운전자에 대한 최 소한의 기준이며, 교통사고 사전예 방 등의 기능 수행	〈존치〉 - 존치, 2002년 상반기 중 교통사고 감소방안 을 규제위에 보고
4	운송(주선)사 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 제 24조) *2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종사자는 안전운행의 확보 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 화물의 중도하차, 운송거 부, 부당운임 수수 금지 · 화물의 덮개포장, 차량청 결, 차량의 일상점검 등	〈폐지〉 (1998. 12)	〈존치〉 -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 송업의 현실 등을 감안하고, 운송(주 선)사업 종사자에 대한 책임확보 차 원에서 존치 필요	〈폐지〉 -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 이나, 이를 (표준)약관 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재심사 요청내용	재심사 결과
5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개선 명령 (법 제12조, 제24조) *2건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운송약관의 변경 등 개선명령	<폐지> (1998. 12)	<개선> -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미약한 개선명령 사유는 삭제	<개선> - 개선명령 대상을 운송(주선)약관 변경, 화물자동차의 개조,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한 조치, 손해배상 공제 및 보험 가입으로 한정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취소등 (법 제17조, 제24조) *2건	운송(주선)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법령위반, 행정처분위반, 경영상태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할 수 있음	<개선> (1998. 12) - 등록 취소 대상 축소	<개선> -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범위 조정	<개선> - 운송사업 미경영 및 경영실적이 없는 때,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 불량을 등록취소 사유에서 삭제 - 약관신고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의무 (법 제18조제1항)	운송사업자는 등록취소, 휴지·폐지, 사업정지, 감차조치 등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폐지> (1998. 12)	<존치> - 번호판 미반납 운행시 소득탈루, 보험미가입·중도실효 등에 따른 문제발생 예상	<존치> - 등록취소 등의 경우 탈법행위방지 수단이므로 존치함이 타당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협회 설립인가 (법 제33조)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도모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수사업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개선> (1998. 12) - 복수 협회 설립 허용 - 협회 가입 임의화	<개선> - 설립시 회원자격자의 2/1~1/3 동의로 전환	<개선> - 당초 예시안인 1/10로 완화



제5절_ 보건복지분야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1. 보건복지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46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8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69건의 규제를 강화

(2) 신설·강화규제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니라는 구분유통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약해감소 및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함
 - 의료쇼핑현상 등 남수진 현상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연간 요양급여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시기를 2003. 12월 까지 연기함
-

- 요양급여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등이 개설한 의료급여기관 등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시킴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총부담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수입혈장관리기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의약품·의약외품의 원료로써 동물유래 성분을 사용한 경우 그 기원을 외부포장 등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사전 약속에 의해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의약품 공급자가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약사법시행령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8건, 강화 27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49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10건은 철회권고, 2건은 보류, 17건은 개선권고, 20건은 원안동의하여 보건복지부의 2001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8건임

(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2)

- 시체를 매장·화장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사태를 매장·화장할 경우 사산증명서를, 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사설묘지·화장장 등을 설치할 경우 지적(임야)도와 평면도, 묘지위치도 및 사진, 교통 등 영향평가서류 및 기반시설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당초 신고(또는 허가)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기간 부패방지 목적의 한정된 경우에 만 행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장례식장 안에서 시체를 보관할 경우의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함

심사결과(2001. 2. 23)

- 시체·사태 매장 후 신고시 신고서외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산증명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등 첨부서류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와 중복되고 행정력 낭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제출의무에서 삭제하고, 사태화장의 경우도 매장 후 사후신고이므로 사산확인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사산증명서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는 재검토
- 개인묘지 설치신고 첨부서류 중 “사진” 과 변경신고시 “당초신고내용” 제출,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류 중 “사용할 가족의 범위”, “종·문종의 범위” 및 “사진” 과 변경신청시 “당초허가내용” 제출,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시 개인 납골묘(탑), 가족납골시설 및 종·문종납골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진” 의 첨부와 변경신고시 “당초설치신고내용” 제출은 과도한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기관내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것. 또한, 종중·문종묘지의 설치신고시 종·문종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종·문종묘를 설치하는 것이 “종·문종의 의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개선
- 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약품처리의 정의)과 동 시행규칙 별표1의 3호(약품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법 제9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상위법 일탈여부 등은 법제처가 판단하여 관계기관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의 5호 관련 약품처리 자격자는 새로운 자격제도 신설에 해당되므로 금번 개정에서는 삭제하고 향후 연구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

- 장래영업자의 시체의 위생적 처리기준에 동의

(2) 편의시설이행강제금산정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편의시설의 범위 및 편의시설 종류별 이행 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함

심사결과(2001. 5. 18)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동의

(3) 피부양자인정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소득없는 자로 간주되어 직장 피부양자로 당연 적용되었던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고 간주한 대상에서 삭제함

심사결과(2001. 6. 17)

-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동의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자는 실제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소득자의 소득에는 미성년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장보험료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규칙 개정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와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업무정지 기간을 90일에서 365일로, 진료기록부 등 서류제출명령을 위반시 업무정지 기간을 45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 업무정지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업무정지기간에 관계없이 총부당금액의 5배로 상향조정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업무정지처분기간중(절차진행중 포함)에 있는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개설하거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소를 이전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도 미치도록 함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행한 후 진료에 관한 기록을 5년 간 보관하여야 함 (현행 3년)

심사결과(2001. 6. 17)

-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의 연장에 동의
- 업무정지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총 부당금액의 5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 제85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되, 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의 종별이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한 단계적인 과징금 부과 되도록 개선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변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악의자와 선의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장소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요양기관 제외부분”은 삭제권고
- 요양기관 보험급여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연장에 동의

(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 등의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 아니라는 구분유통증명서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함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의무화함
- 조제분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식 등에 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금지함

심사결과(2001. 7. 13)

- 수입식품의 신고시 구분유통증명서 첨부에는 동의함(5년 존속기한 설정). 다만,

국산농가들에게 사실상 구분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세한 제조·가공·판매자의 구분유통증명서 발급·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조·가공·판매업자의 구분유통증명서 보관의무(3년)는 보류

- 전기안전점검은 허가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토록 하고, 확인서 첨부는 철회
-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식 등의 광고 금지에 동의

(6)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함
- 의료급여관계서류의 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의 거부·방해·기피시 90일에서 365일로, 진료기록부 등 핵심서류를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 위반시 45일에서 180일로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함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이상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함
- 진료비계산서, 개인별 투약기록,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근거서류 등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심사결과(2001. 8. 30)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규정에 동의
- 업무정지처분기준 강화에 동의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동의
- 서류보존기간의 연장에 동의

(7)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지급하기 위해 평가대상 및 기준을 정함

-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개선정도를 확인하고자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시정 촉구 또는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9. 13)

- 피평가대상 요양기관이 예측가능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장치를 고시에 명문화하도록 개선
- “평가결과 시정권고, 재시정 촉구조항의 신설”은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고, 상위 법령에서도 평가결과는 가감지급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권고

(8) 식품위생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국민의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전자 재조합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고,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현행 1억원 이하)

심사결과(2001. 9. 13)

- GMO 안전성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유전자 재조합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의무화사유를 규정하면서 “식약청장이 국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하는 것은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또한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실제로 안전성평가가 필요한 「GMO 품종 최초 생산·수입·개발시」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시행시기도 규정하도록 개선

- 자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 신설안은 기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할 것(철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제도에 동의
- 과징금 상한의 상향조정안에 동의

(9)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4원으로 인상함

심사결과(2001. 10. 11)

- 담배부담금의 인상에 동의

(1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로 추정되는 자 중 장기 등의 기증을 희망하는 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1. 11. 1)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도에 동의

(11)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청,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지원시설 등으로 제한함
- 오송단지의 교육·연구시설용지와 생산시설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입주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토지를 분양할 수 있음

-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하고, 입주승인이 취소된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입주기관이 시설용지 내의 부지 또는 건축물 등을 양도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때에도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중지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과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기관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심사결과(2001. 11. 1)

- 신설 6건 모두 부동의
 - 심사대상규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지관리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관련 규제들임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목적에 적합한 산업시설 등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공장설립및공업배치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중으로 규제를 신설할 필요는 없으며,
 - 또한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기존의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새로이 조성될 수 있는 특화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필요성 제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의함

(12) 암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중앙암등록본부와 각 시·도별로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지역암등록본부장의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받은 의료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암등록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

심사결과(2001. 11. 15)

- 중앙·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제도에 동의
- 비밀누설금지 규정에 동의

(13)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장에게 인정신청을 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한 경우 실시기관을 경고, 해지 또는 금전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인정기준(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강화함

심사결과(2001. 11. 22)

-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 요양기관으로 인정되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법률근거도 없이 사전인증제를 도입하여 법률에 보장된 요양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법정주의에 배치되므로 인증제도 도입안은 철회를 권고함. 또한 복지부에서 인증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강화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상의 요양기관현황통보제도의 개선 내지 보완, 행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기준 강화, 또는 인증제 도입에 대한 법률근거 마련 검토 등 다각적 대체수단을 통하여 추진할 것(부동의)
- 인력·장비·시설기준 관련 규정정비 및 강화 규정에 동의

(14)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9)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사전약속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 등 약사법에서 금지한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함

- 법적근거 미비로 폐지되었던 「수입혈장관리요령」을 의약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함
- BSE(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원료로서 동물유래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성분명, 기원동물명 및 사용부위)을 외부포장 등에 명확히 기재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료의약품 신고필증에 대하여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 개별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등 허가시에만 일괄심사토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 의약품공급업자가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내역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용구 제조(수입)업소의 품질관리 체계유지 및 적정성 여부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약국개설자는 진단적 판단에 의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시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함
- 대한약사회는 연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연수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담합행위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의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위탁함

심사결과(2001. 12. 6)

- 담합행위의 구체적 유형안 중 제6호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약국의 개설자가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유도하는 행위와 제7호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동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행위자체만으로는 담합행위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담합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 감시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의약품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 강화에 동의
- 동물유래 원료사용시 표시·기재사항 관리 강화에 동의
- 매년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3년마다 신고필증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함
- 민원인이 일괄신청시 식약청에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동의할 수 있으나 개별신청 및 심사제도 자체의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는 개별심사제도·운영의 문제점과 폐지시 규제영향에 관한 자료보완 등을 보완하여 심의 요청하도록 함(보류)
-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내역 보고” 규정에 동의
- 의료용구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조사에 동의
- 의약품 판매시 금지사항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나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약국명칭 사용금지는 규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재의 약국명칭 사용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의 집행·준수가능성이 적으므로 삭제함
- 교육실시에 따른 약사회의 경비징수권 관련 법령규정을 삭제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자체를 약사회에 위임·위탁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15)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이내로 제한하고, 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할 사유발생시 질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2001. 12. 13)

-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에 동의

(16) 요양급여비용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요양기관 전산청구 업무의 안정화와 청구소프트웨어에 따른 요양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권장함

심사결과(2001. 12. 20)

- 검사신청(제2조) 중 제3호 사용자매뉴얼 및 제5호 청구소프트웨어 설치프로그램외 1,2,4,6호 삭제, 검사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사용권고” 용어 삭제, 소프트웨어 관련자료 보관의무 규정 삭제,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기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 및 검사신청시 제출된 내역변경신고 및 현지조사 규정 삭제할 것

(17) 공중위생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영업 종사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위생교육에 대하여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위탁함

심사결과(2001. 12. 20)

-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동의함. 다만,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한 특별위생교육임을 감안할 때 교육은 9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기한을 2002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

(1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제한함. 다만, 고혈압 등 9개 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30일을 추가하여 요양급여가 가능토록 함
-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초음파영상(MRI) 등 62개 항목의 행위·약제의 급여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를 하기로 결정·고시하기 전까지 비급여로 함

심사결과(2001. 12. 20)

- 연간 상시투약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추가적 급여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등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급여제한일수는 365일로 하되, 새로운 상병 발생시는 별도로 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권고

- 불가피하게 급여제외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막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로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점인 2003. 12. 31일X까지(2년) 연장. 다만, 그 이전이라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급여가 가능한 항목은 일부항목이라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

(19)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시에 대한 인력기준과 시설·장비의 정도관리 및 실시 범위 등을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12. 27)

-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규제의 수준과 방법면에서 신중한 검토와 관련단체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 해명자료가 필요(보류)

제6절 — 일반행정 · 법무 · 경찰분야

*집필자 : 조광호 사무관(Tel. 3703-3935, cho117@opc.go.kr)
임규호 사무관(Tel. 3703-3936, kh6663@opc.go.kr)

1. 행정자치부

가. 지난4년 간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온천법, 소방법, 점경지역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하천정비법, 새마을금고법, 주민등록법시행령 등 11개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하여 25건의 규제를 신설(누락 6건)하고, 45건을 강화

(2) 주요 신설 · 강화규제

-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관련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999. 7. 15일 차관 회의에서 규제를 강화토록 결정됨에 따라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노유자 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 중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를 신설하여 강화
- 소하천정비법에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지위승계와

승계한 자의 관리청에 신고의무규정 신설

-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10만건 이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규정 신설
- 「제연설비기술기준고시」에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과압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신설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시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이나 특례적용을 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기업은 지역거주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규정 신설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소하천정비법,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7개 법령에 대하여 신설 15건(누락 6건), 강화 43건 등 총 66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15건은 철회권고, 12건은 개선권고, 3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부 2001년도 총 신설규제건수는 15건임

(1) 소하천정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지위승계와 승계한자의 관리청에 신고의무 규정

심사결과(2001. 9. 13)

- 원안의결

(2)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강화 1건)

- 10만건 이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규정(신설)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자가 전입사실 입증자료 제시 또는 전입사실 확인

의무 추가(강화)

심사결과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자 지도·감독 : 원안의결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실확인 절차 보완 : 철회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내부 검토과정에 있거나 의사결정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등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토록 함

심사결과(2001. 9. 28)

- 원안의결(단 존속기간 5년 설정)

(4)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6)

-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지역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설)
- 온천이용허가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제출 및 허가기간을 5년으로 명시(강화)
- 온천관련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강화)
- 온천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등의 보유자 (강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행위위반시 행정처분기준(강화)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설정(신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천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신고시 반려요건(강화)
- 지하수개발 금지기간 명시(강화)

심사결과(2001. 5. 4)

-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의 지역기준에서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발견 신고 수리된 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토록 수정의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개별 기준 7호(등록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중 2차 행정처분기준에서 등록취소규정 삭제
-

- 그 외의 조항은 원안의결

(5) 제연설비기술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함(강화)
- 급기·배출뎀퍼의 재질강화, 자동차압·과압 조절형 뎀퍼의 기능 및 성능 검정 기관 개선(강화)
- 제연구역 내 차압 측정공설치 의무화(신설)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의결

(6)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재해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산정기준을 정함

심의결과(2001. 2. 9)

- 원안의결

(7)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배제 법률정비(5개 법률 ⇒ 2개 법률)
- 모집자가 모집 만료 및 중단시 그 결과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의무화
- 모집상황 및 결과 공고시 회계감사의견 포함 공고
- 기부금품모집결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심사결과(2001. 6. 7)

- 모집중단 또는 모집 후 사업종료한 때에는 모집 및 사업집행결과 보고로 수정동의
- 모집상황 및 결과공고시 회계감사의견 추가조항 중 모집실적이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수정 동의
- 그 외는 원안의결

(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 제출 의무
- 정부 세제·금융지원이나 특례 적용을 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기업은 지역거주 주민 우선 고용

심사결과(2001. 5. 24)

- 원안의결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4)

- 허가대상광고물 중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을 허가대상에 추가
- 타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표시는 그 인·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및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첨부가능토록 규정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확대
- 광고물의 표시제한 대상지구에 아파트지구 추가
- 업소별 광고물 등의 총수량 감축(3개 이내 → 2개 이내)
- 가로형 간판 표시기준 중 세로길이는 10m(상업지역은 20m) 이내로 제한
- 전기이용광고물의 네온을 사용할 수 없는 지구 추가지정, 광고물표시면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조향 삭제, 시간당 표출률은 25% 이상으로 정함
-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확대
-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대한 세부 절차규정 마련
- 옥외광고업의 영업장 면적 등 개설요건 및 휴·폐업, 재개업 등 신고기준 강화
-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 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등

심사결과(2001. 9. 27)

- 타법령에서 인·허가 구비서류 첨부 대신 신청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및 옥외광고업 신고기준 중 영업장 면적 등 강화요건조향 삭제 권고
- 광고물 등 표시제한 지구에 아파트 추가, 업소별 광고물 등 총수량 감축, 가로형

간판 표시기준 강화, 돌출간판 표시기준 제한은 철회 권고,

- 전기 이용광고물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30% 이내로 수정하고 그 외 제한사항은 철회권고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규정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원안동의 그 외 규정은 철회 권고
- 상기조항 이외는 원안 의결

(10) 새마을금고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누락 6)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공직선거관여 이용금지(누락)
- 금고의 경영평가 및 감독기관의 금고 검사결과 이사회에 보고(신설)
-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누락)
- 금고 이사장의 연임횟수 제한(신설)
- 금고의 법정 적립금 확대 및 임여배당률 범위 설정(신설)
- 안전기금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전환·확대(누락)
- 주무장관의 명령·조치권 강화(누락)
-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근거 마련(신설)
-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추가(신설)
-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제도 (신설)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누락)

심사결과(2001. 2. 2)

- 금고운영결과 이사회보고는 이사회 또는 감사기능으로 대체 및 상근임원이 타인에게 과실로 끼친 손해배상책임은 법제심사과정에서 검토하여 규정(조건부 동의)
- 경영공시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잉여금 배당률 범위는 금고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연합회장이 권고,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는 연합회장이 정하도록 함(개선권고)
-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범위 중 “기타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의
- 임원의 선거운동제한 중 선거인을 선거인 또는 후보자로 수정권고
- 기금조성방안으로 출자금 포함하는 방안(철회권고)

- 그 외는 원안의결

(11) 새마을금고법(추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9)

- 금고에 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직원 임면사항
- 금고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 등기 의무
- 연합회 직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연합회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 등기의무
- 금고의 설립인가제한 사유
- 금고의 적립금·손익금 처리
- 금고 및 연합회의 정치관여 금지
- 주무장관의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명령
- 연합회장의 부실금고에 대한 장관의 경영지도

심사결과(2001. 5. 24)

- 금고의 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범위, 직원임면사항, 연합회 직원의 자격, 금고의 설립인가 제안사유 등은 부동의
- 그 외는 원안 의결

(12)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5)

- 공제분쟁조정심의회위원회 구성(신설)
- 경영공시대상과 구체적인 공시항목·공시방법기준
- 외부감사의뢰 대상금고의 범가지정
- 경영지도방법 등
- 채무의 지급 정지
- 금고의 인가제한 사유

심사결과(2001. 12. 3)

- 경영공시 대상과 공시방법 기준 중 “기타 회원 및 …… 사항”을 삭제하고 “법 제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및 조치결과”로 개선권고
 - 경영지도방법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기타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
-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철회 권고

- 그 외는 원안의결

(1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강제강화플라스틱제(Steel-FRP제) 이중벽 탱크의 구조, 누설감지설비 및 성능 시험, 표시사항 등 기준보완

심사결과(2001. 11. 1)

- 고시개정안의 기술적인 조문용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정비요망(원안의결)

2. 법무부

가. 지난4년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 요

-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민영교도소설치·운영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총 14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2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거소이전 신고 및 반납의무
 -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한하여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데,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시 신고증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소이전 신고를 의무화
 - 소지할 수 없는 자격이 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
- 국내거소신고의 첨부서류 규정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영주권 사본, 호적 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 외국국적 동포 체류기간연장 불허
 - 외국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불허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규정
 - 재외동포의 국내활동 제한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업종 등의 국내활동을 제한
 - 출국금지실무위원회 신설
 - 출국금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며, 출국금지 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출국금지실무위원회를 신설
 -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개설학교에서 법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학위취득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
 - 외국변호사의 등록신청 절차
 -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변호사 명부에 등록 후 신청인에게 통지
 - 비위전력자에 대한 법률사무소 직원채용 제한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정범죄에 관한 범죄전력으로 규정
 - 민영교도소의 상근직원 정수 승인
 - 교정법인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영교도소 등의 상근직원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국인 허위초청 등의 금지
 - 국내에 불법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요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6건, 내용심사 14건 등 총 2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21건 중 원안의결 17,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신설규제 1건)

(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9)

- 보강서류 제출 및 실지조사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강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내용심사)
- 정관변경 인가 등에 관한 신고 및 신청시 제출서류
 - 정관변경 인가, 임원취임 승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신청과 신고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심사)
- 시설 등 검사절차
 - 교정법인이 시설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 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상근직원 정수 승인
 - 교정법인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영교도소 등의 상근직원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강화)
- 사업계획·예산제출 및 사업실적·결산보고
 - 교정법인이 사업계획 및 예산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내용심사)
- 합병인가·분할합병인가, 분할인가 및 해산인가신청
 - 교정법인이 합병인가, 분할합병인가, 분할인가 및 해산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합병·분할·해산인가시에 붙일 조건
 - 교정법인이 합병·분할·해산인가시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직원 임명승인시 제출서류
 -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명승인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내용심사)
- 임용의 신체조건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의 임용자격 중 신체조건을 규정(내용심사)
- 장부와 비치서류
 -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소속 직원 및 수용자 관리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장부와 비치서류를 정함(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3. 23) :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 보강서류 제출 및 실지조사, 시설 등 검사절차, 상근직원 정수승인, 직권임명승인시 제출서류 등 9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합병·분할·해산인가시에 붙일 조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 해산인가시 붙일 수 있는 조건 중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교도소 시설·장비를 청산에서 제외토록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민영교도소 운영 설치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2)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5, 내용심사 5)

- 출국의 금지 대상
 - 현행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내용심사)
 - 출국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자의 여권 등의 보관
 -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여권 등에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수첩” 외에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포함하도록 함(강화)
 - 허위초청 등의 금지
-

- 국내에 불법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신설)
- 선박 등의 제공금지
 -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서 현행 선박, 선원수첩 외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대통령령에서 이를 “사증 또는 탑승권”으로 정할 예정임)(강화)
- 외국인고용 등의 제한
 -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골프장 보조원 등과 같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의 근무장소만 제공하는 행위도 외국인불법고용행위에 추가함(강화)
- 산업연수생의 근무처 변경허가 등
 - 연수업체의 파산·휴·폐업 등에 따른 산업연수생의 근무처변경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의무자를 산업연수생을 인수하는 산업체의 장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외국인출국의 정지 대상
 - 현행 법무부령인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정지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내용심사)
- 재입국허가 대상
 - 재입국허가 대상을 현행 “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자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자”로 명확히 하여 국제관계 및 현재의 실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함(내용심사)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사항 중 “근무처의 명칭과 직위”를 삭제하고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강제퇴거의 대상자
 - 강제퇴거대상자에 개정안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및 제12조의 2(선박 등의 제공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가함(강화)
- 사실조사 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19조(외국인을 고용

한 자의 신고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사항이 입법흠결로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강화)

심사결과(2001. 4. 6 / 4. 12)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 출국의 금지대상, 출국금지 및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 등의 보관, 산업연수생의 근무처변경 허가, 외국인출국의 정지 대상, 재입국허가 대상,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강제퇴거의 대상자, 사실조사 대상 등 8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외국인 허위초청 등의 금지, 선박 등의 제공금지(2건) : 개선권고
 - 형법에 의거 동 위반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출입국관리법에 동규정을 신설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인고용 등의 제한 : 철회권고
 - 외국인에 대한 윤락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부동의

3. 경찰청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경찰청에서는 총 18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5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1999. 7. 14)
- 경비업 허가업종에 특수경비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를 5년으로 신설하며,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오·경보 방지 및 대응체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1999. 11. 19)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의 신고대상 휴업을 15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 규정된 휴업신고시 법정구비서류 중 완성검사합격증은 제출서류에서 삭제(2000. 7. 20)
- ‘화약류의 적용범위’ 중 장난감꽃불류의 취급 및 저장 등에 대해, 장난감꽃불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장소설치 허가자에 대하여는 취급의 금지·폐기·저장·운반 등을 적용하도록 강화(2000. 8. 11)
-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 중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2000. 8. 11)
-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추가(2000. 8. 11)
-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2000. 8. 11)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2000. 8. 25)
- 경비업자 등의 의무에 국가 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근무배치 전 사전교육의무를 부과(2000. 8. 25)
-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차로를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하고 최고 속도를 80km/h(고속도로)로 제한(2001. 5. 4)
-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곳에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강사의 자격을 취소·정지하도록 함(2001. 8. 31)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3건, 내용심사 20건 등 총 3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35건 중 원안의결 18건, 개선권고 14건, 철회권고 2건, 심사보류 1건(신설규제 2건)

(1) 도로교통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3)

-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자동차는 운전을 금지
-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인 차는 운전을 금지
- 면허시험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그 교육기관의 지정·폐지 등을 정함
-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곳에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강사의 자격을 취소·정지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입장료를 받고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도록 함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23개 개별법령에 의한 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에 의거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함

심사결과(2001. 8. 31) : 원안동의 3,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심사보류 1

- 자동차학원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운전교육 및 양질의 운전자 배출을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습행위를 한 강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규정 및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연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동의
- 대국민 규제라고 할 수 없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도 원안대로 동의
- 다만, 규제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인 자동차 운전금지 및 운전면허위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보류하고 추후 재검토
- 운행기록계 및 운전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 관련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수정동의

(2)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7, 내용심사 9)

-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차로를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하고 최고 속도를

80km/h(고속도로)로 제한

- 안전띠 미착用に 대한 범칙금 및 운전면허 벌점 상향조정
- 위험성이 큰 어린이 놀이기구 및 인명보호장구를 정하고,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함
- 위험물의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위험물적재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정함
- 면허증 미갱신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정함
-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필증 회수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자동차에 대한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학원의 목적·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학원에 교육생의 권리를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를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설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 자동차운전학원이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시간 등 운영기준을 정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학과·기능강사의 확보 및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학원 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및 지정절차를 정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2001. 5. 4) : 원안동의 10, 개선권고 6

- 교통상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통행차로 및 속도 제한, 위험한 어린이놀이기구 사용시 안전장구(안전모) 착용 의무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다수 국민의 편익 및 보호차원에서 개정되는 운전면허 신체검사의료기관 신고필증 회수근거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10건은 원안대로 동의
- 국민편익차원에서 규제함이 마땅하나 당연하거나 사소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 면적 및 화장실 설치 규정, 학원의 기능교육보조

원 확보기준 등은 삭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띠 미착용 처벌강화, 학원의 교육생 기본권리선언표지판 및 기본권리보장표지판 게시의무, 학원강사 등의 복장규정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개선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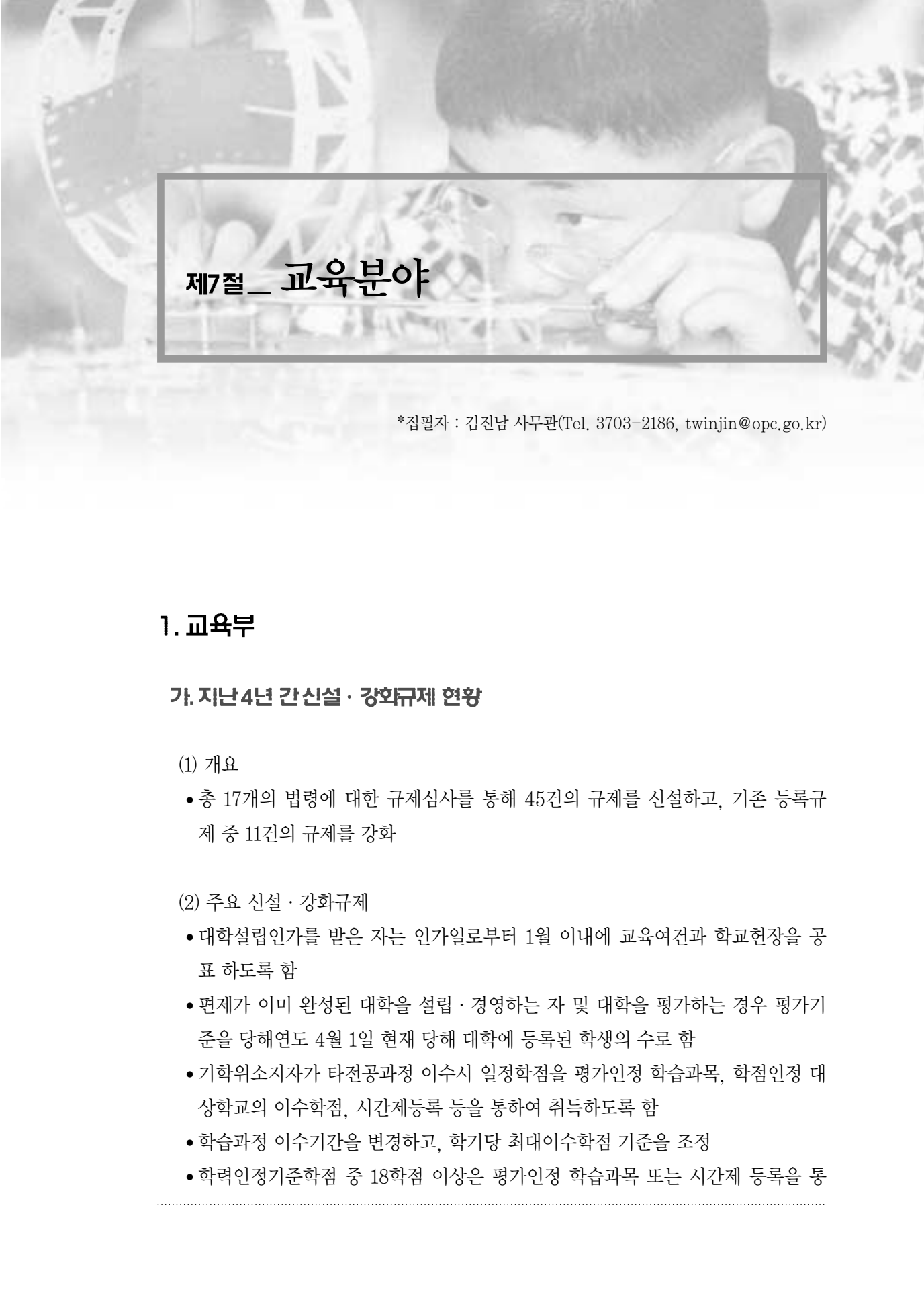
(3) 경비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내용심사 8)

-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의 자본금·매출액 등 허가기준을 일반경비업보다 강화
- 기계경비업자 현장출동, 사실확인 등 대응조치 및 오경보 방지의무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
- 국가 중요시설주의 무기관리수칙, 비치하여야 할 부책, 무기지급시 경찰관사장의 사전승인 의무를 규정
- 경비업 갱신허가시 첨부서류,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2001. 6. 7) : 원안동의 5, 개선권고 6, 철회권고 1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계경비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차원에서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강화규제는 원안의결
-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에 배치될 특수경비원의 경우 일반경비원과 달리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함에 따른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 규제 강화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등 일부규정은 개선권고
- 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경찰청장의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에 반하고 기존의 감독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철회권고



제7절 _ 교육분야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교육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7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여건과 학교현장을 공표 하도록 함
 - 편제가 이미 완성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로 함
 - 기학위소지자가 타전공과정 이수시 일정학점을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이수학점, 시간제등록 등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함
 - 학습과정 이수기간을 변경하고,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기준을 조정
 - 학력인정기준학점 중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
-

하여 취득하도록 함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비용공제 우선순위를 정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8개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누락 1건, 강화 5건, 내용 심사 12건 등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 중 원안동의 17, 철회권고 2, 개선권고 4건으로 의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비평준화지역 일부 사립고교 입학의 특별전형 허용
 - 비평준화 지역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 출연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정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 26) : 원안동의

(2) 대학설립운영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2, 누락 1)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강화)
 - 대학설립시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각각 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는 재산으로 규정
- 교육여건 및 학교현장 공표(강화)
 -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확보된 교육여건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교육·연구용시설·설비확보계획 등을 정한 ‘학교현장’을 공표하도록 함

- 교원확보 기준(내용심사)
 - 학교설립인가 조건 중 전임교원의 경우 인가시 1/2(겸임교원 제외)을 확보하고 개교 후 1년 이내에 나머지를 모두 갖추도록 한 것을 개교 후 매년 학생정원에 맞게 확보하여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도록 함
- 정원책정 기준(내용심사)
 - 대학의 학과나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 및 교사 등 법정기준을 준용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정원책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대학법인 및 대학평가기준(누락)
 - 편제가 이미 완성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 교사 및 교원의 산정 기준을 편제정원 대신에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로 함

심사결과(2001. 3. 15) : 원안동의 3, 조건부 동의 1, 철회권고 1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 철회
- 교육여건 및 학교현장 공표외 2건 : 원안의결
- 대학법인 및 대학평가기준 : 조건부 동의
 - * 「대학평가제도 합리화방안」에 대학설립인가조건 및 대학운영지도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토록 함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 기학위수여자의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신설)
 - 기학위소지자가 타전공 이수시 일정학점(35학점)을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이수학점, 시간제등록 등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함
- 학점인정기준 조정(신설)
 - 종전 학습과정 이수기간 2주 이상을 4주 이상으로 변경하고,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기준을 24학점으로 조정하는 내용 신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마련

• 학력인정기준 조정(강화)

- 학력인정기준 학점 중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준 강화

심사결과(2001. 6. 7) :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동 제도의 학습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안 동의

* 평생학습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함

(4)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개인의 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신고 및 변경신고서 서식 규정

- 신고내용 : 성명·주소·주민등록증번호·학력·전공·직업·자격증 및 경력·교급과목·교습료

•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심사결과(2001. 6. 7) :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안 동의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2001. 8. 10) : 개선권고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대신에 규제대안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인가관청에게 설립

인가를 하기 전에 인가대상시설의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전기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6)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및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조사·지도(신설)
 - 시·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비용공제 순위(강화)
 - 비용공제 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순서로 하되, 다만 시·도교육감이 당해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의 시설기준 완화(내용심사)
 - 시·도교육감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구역 내 설립되는 학교 설립요건 완화(내용심사)
 -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내 각급학교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8. 30) : 원안동의 3, 철회권고 1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조사·지도 : 철회권고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비용공제 순위외 2건 : 원안동의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및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2, 내용심사2)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준용(신설)
- 병원장 해임사유(신설)
- 감사 및 이사의 임기와 직무에 대한 규정(내용심사)

-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과 유사명칭 사용제한 및 벌칙부과(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9. 27) : 원안동의 1, 개선권고 3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준용 : 원안동의
- 병원장 해임사유 : 개선권고
 - 개정안 제9조제7항2호의 “현저한 부당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수정
- 감사 및 이사의 임기와 직무에 대한 규정 : 개선권고
 - 감사의 임기는 “3년 연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
 - 감사의 직무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을 맞춤
-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과 유사명칭 사용제한 및 벌칙부과 : 개선권고
 - 유사명칭 사용제한 및 벌칙조항은 규제개혁 원칙에 따라 폐지 검토, 법개정추진

(8) 초·중등교육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를 정함
-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동의



제8절 _ 문화관광분야

*집필자 : 정은영 사무관(Tel. 3703-3938, eyjung@opc.go.kr)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문화관광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총 32개의 법령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3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6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인적, 재정능력, 시설 등의 구비여부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1999. 2)
 -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연구소, 대학,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1999. 5)
 -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1999. 5)
 -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시설업과 시내순환 관광업
-

을 추가하고,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관광호텔 등록기준을 강화함(1999. 6)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공연장은 설계검토와 정기검사 등 정기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1999. 7)
- 축구 및 농구경기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권의 종류, 발행대상, 위탁 승인 및 자격요건 등을 정함(2001. 4)
- 청소년지도자 자격 부여후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연수를 자격검정 합격후 연수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 연수를 의무화함(2001. 12)
-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 사행행위 방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2002. 1)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청소년기본법, 공연법,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고시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3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총 10건 중 동의 4건, 부동의 5건, 개선권고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에 신설된 규제수는 총 1건임

(1) 청소년기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3)

- 청소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정요건에 맞는 청소년지도사 전문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 후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연수를 자격검정 합격 후 연수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환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청소년상담사 배치 노력의무를 배치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수련시설의 안전성·적법성

확보를 위해 감독대상에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 현행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구체적 명칭을 법정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임의적인 보험가입 규정을 의무적인 보험가입으로 강화

심사결과(2001. 6. 18)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기관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연수경력 인정·예산지원 등이 가능하며, 청소년지도사는 사회 각계에서 다양하게 양성·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동의
 - 청소년지도사 연수 의무화는 원안의결
 - 청소년상담사 배치 의무화는 규제개혁의 법정 의무고용제 폐지원칙에 위배됨으로 부동의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감독은 현행규정으로도 허가취소 등의 지도감독근거가 있고, 규제강화 사유가 불충분하므로 부동의
 - “수련시설협회” 명칭법정화는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에 위배됨으로 부동의
 - 청소년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는 원안의결
- * 관계부처의 이견제시 등으로 철회함(의원입법으로 개정, 2001. 12. 31 법률 제 6569호)

(2) 공연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공연장 경영자 또는 공연자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원의 관람자를 입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연소자를 현행대로 18세 미만의 자로 하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함
- 외국인 국내공연 취소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키거나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설치·부착·배포·광고한 때
 - 공연 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심사결과(2001. 8. 17)

- 공연장 정원 외 입석관객 허가제는 경영자가 공연장의 규모, 관객수준, 공연내용 등에 맞게 자율로 입장객을 관리하고, 입장여부는 관객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선진 공연질서 형성에 바람직함으로 부동의
- 연소자의 범위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상이할 경우 동 규제의 준수시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일치되도록 수정 권고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취소 사유는 원안의결

(3)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고시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신설 1)

-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 31)
- 원안의결

2. 문화재청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6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 규제 중 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30,000㎡ 이상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분포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를 의무화 하고 150,000㎡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지표조사결과 사업지역 내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사전협의토록 함(1999. 7)
-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계승발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수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수증발급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자·보유단체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중 기·예능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

- 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1999. 7)
-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2000. 7)
-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의 구조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가 치료토록 함(2000. 9)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평가를 받도록 함(2001. 9)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신설 1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 신설규제수는 1건임

(1) 문화재보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6)

-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토록 함
- 경력직공무원 필기시험 면제를 일부과목면제로 축소토록 함
-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준하여 정함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정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추가
- 시·도지사는 수리업자에게 등록요건의 준수여부 및 성실시공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 수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공사를 시행 중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고지토록 정함

심사결과(2001. 9. 13)

- 문화재수리공사 하자담보는 원안의결
- 경력직공무원의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면제범위 축소는 원안의결
-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업무처리 기준 설정은 원안의결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량 감안시 보유자 인정 해제의 요건을 “별금 이상의 형”으로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금고 이상”으로 수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업자)등록취소 등은 원안의결
-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는 규제의 목적이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과도한 업계불편이 우려되므로 부동의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고지의무는 등록취소를 결정한 행정기관의 의무이며 이를 수리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부동의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2)

- 문화재수리용역 및 공사평가의 세부사항을 정함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을 정함

심사결과(2001. 6. 15)

- 문화재수리용역 및 공사의 평가의 세부적 사항에서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 민간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토록 함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설정은 원안의결

3. 방송위원회

가. 규제 및 근거법령 현황

1) 개요

(1) 규제근거법령

- 방송위원회는 2000. 3. 13일 방송분야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받아 소관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송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규제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

(2) 규제성질별 분류

- 방송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를 그 특성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음
 - 방송사업자 허가추천·승인·등록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등 방송관련 규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감독 등 방송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관련 규제

2) 방송위원회 소관 규제현황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1999이후 변경		2000이후 변경		현등록 규제수
	정비결과	정비결과	신설	기타	신설	기타	
방송위원회	-	-	-	-	33	-	33

나.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등 3개의 규칙·고시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4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방송위원회에서는 당초 8건(내용심사 4건, 강화 4건)에 대하여 심사요청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없고 규제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심사 1건에 대해서는 철회토록 하고, 7건에 대해서는 부처 원안대로 동의하였음

구분	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심사대상	8		4	4
원안통과	7		4	3
철회	1			1
개선권고				

2) 심사 결과

(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강화 4건)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을 지역민방의 SBS 지국화 배제를 위해 경영·수급여건, 준비기간 등을 감안 점진적 축소방침에 따라 1차 지역민방을 8% (80→72% 이내), 2차 지역민방은 5%(80→75% 이내) 축소함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KBS, MBC는 5%(40→45% 이상),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7%(35→42% 이상) 상향조정하고,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5%(55→60% 이상) 상향조정하며 특정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신설을 신설하여 분야별 매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각 60% 이내로 편성토록 함
-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4%(22→24→26% 이상),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있는 경우 4%(27→29→31% 이상) 등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KBS, MBC, SBS의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2%(6→8% 이상) 상향 조정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매주전체방송시간의 0.15% 이상에서 0.16% 이상으로 0.01% 상향 조정함

심사결과(2001. 3. 9) : 원안동의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에 대하여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위임 범위내에서 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킴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편성비율의 단계적 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현재 수급여건상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한 사항이므로 방송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킴
-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편성비율을 정한 것으로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조치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킴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은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킴

(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개정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내용심사 2건)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억원의 적정요건을 판단

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최소 300만원 최대 2,000만원으로 방송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새로이 정하고자 함

심사결과(2001. 3. 15) : 원안동의 1, 철회권고 1

-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은 방송법시행령 제8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자본금 5억원의 판단자료로 기업진단서를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동의
- 과태료의 부과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닌 새로운 부과기준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법적 위임근거는 없으며,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철회권고

(3)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심사요청 규제의 내용(내용심사 2건)

-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으나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장소 등의 협찬에 대하여서 예외적으로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협찬고지시 기업표어와 협찬주명을 함께 고지할 수 있으나 기업표어 대신에 위치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9. 7) : 원안동의 2

- 방송현실상 특수한 장소 등의 경우에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대한 협찬주명의 고지 필요성 및 라디오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유치 등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현실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4. 여성부

가.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2001. 1. 29일자 여성부 출범에 따라 6개 법령에 대한 36건의 규제를 여성부 소관규제로 등록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건 신설, 1건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성희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직장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그 직장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남녀차별 성희롱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불응시 시정명령권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1건은 원안동의, 1건은 조건부 동의하였으나, 조건부 동의된 신설규제는 관계 부처간 합의 불성립으로 최종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되었음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신설 1)

-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직장내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금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직장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강화함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남녀차별 성희롱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불응시 시정명령권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0. 11 및 2001. 10. 18)

-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사항은 원안의회결

-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시정명령권 신설)에 있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로 시정명령제도 도입은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련조항이 보완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문 정리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5.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지난4년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13건의 규제를 강화하였음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의 결정기준
-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청소년유해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배포시 연령확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방법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청소년통행금지 등의 설정(신설)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과징금부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매체물의 범위(신설)
-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구체화
-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의 친권자 등 관계확인
- 청소년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방법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대하여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심사대상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2001년도 신설 규제수는 1건)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1, 강화 2, 내용심사 1)

- 청소년유해업소 범위중 복합유통·제공업의 범위 구체화(강화)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중 복합유통·제공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하며, 그 대상으로는 음반 등 배급업,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말함
 - 이 중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이 포함되어야만 복합유통·제공업으로 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친권자 등 여부확인(강화)
 -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기타법령에 근거한 청소년의 출입허용은 구체적 위임없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이에 따라 법령적용에 다른 혼선을 해소하고 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법률이 위임한 입법취지대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의 출입은 현행법대로 적용하면서 동법시행령에서는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추가규정하여 관련법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불필요한 다툼을 소송 전에 불식시키고자 함

-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은 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 등에게 통보(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 과징금을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납부기한을 1년 초과 금지, 분할회는 3개월을 초과 못함
 - 납부기한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음(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8. 10) : 원안의결 4건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되, 가능하다면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간격은 3월, 분할회는 4회로 조정요망하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음

제9절_ 노동분야

*집필자 :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55, yhomo@opc.go.kr)

1. 노동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2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1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4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2001년도 이전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 금지대상 업무, 허가기준,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파견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의무, 변경허가, 사용사업자의 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신설
 -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신고의무,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등 신설강화
 - 근로자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교사의 자격취득기준, 훈련비
-

용지원신청서 제출의무,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수강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설

- 최저임금 혜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확대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부과 및 성희롱 판단기준 설정
- 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의 최고한도 설정, 일정연령 이상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유족연금 수급 의무화 및 장의비의 최고·최저 보상금액 설정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전산회계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6개 자격 신설 및 검정방법 등 규정
- 위험기계류에 부착되는 방호장치가 성능미달 등 불량상태로 제조·유통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정합격 당시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을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 경우 6월에 1회 이상에서 냉동창고·호텔건설공사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으로 확인주기 확대

2001년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제한 및 반환 기준·절차를 규정함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요건, 절차, 금액등을 규정하고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주외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이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하였을 경우에도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리프트, 크레인,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고시)에 설계시 지진하중 반영, 재료, 운반구, 브레이크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 규제강화
- 부정, 허위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일시장려금 반환규정 규제신설
- 취직인허 신청의 최저연령을 13세로 규정,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생략 규제신설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징수법에서 정한 중복 사항을 단일화 하고 징수특례제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 보험변경관계의 변경신고 등 보완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 성능검정 불합격 방호장치, 설계·완성·성능·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정에 불합격한 보호구 등에 대하여 합격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토록 규제신설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16개의 법령제·개정안과 5개의 고시 등에 대하여 126건의 규제심사
 - 심사요청(126건) : 신설 14, 강화 68, 내용심사 44
 - 심사결과(126건) : 원안의결 108, 철회 4, 개선권고 11, 부동의 3
(신설규제 : 9건)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기금해산시 미처리 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인도하도록 귀속 절차 마련(강화)
- 그동안 노동부 예규로 운영하여 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법령화(내용심사)
 - 위반행위별로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정함

심사결과(2001. 03. 15) : 원안의결 2

(2)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 1, 내용심사 1)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은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제한 및 반환 기준·절차를 규정함(누락)

- 현재까지는 노동부 예규로 운영하던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5. 11) : 원안의결 2

- 동법 시행령에서 반환기준·절차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
- 노동부 예규(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부과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면서 50~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3)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4)

-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된 사업주의 범위를 변경 :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등을 행한 후 3월 이내에 있는 사업주로 사업주의 판단기준을 변경(강화)
-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요건을 1주 이상에서 실제훈련일수인 5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실효성확보 요망 :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5일 이상 실시 (수정의견 제시 : 내용심사)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월별 임금지급대장, 출퇴근 증빙서류,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외에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요망(강화)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본을 폐지하는 대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토록 함(내용심사)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여성가장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직장보육시설 요건, 보육교사 임금의 지급방식, 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 중복지원금지 등 현행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요건을 하위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상향규정(내용심사)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훈련종류, 훈련대상자, 훈련방법,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함(내용심사)
- 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한도액을 상향규정하고,

수강장려금의 지급제한 등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훈련실시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재조치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훈련대상자 및 그 우선순위, 훈련제외 대상자 등을 규정(내용심사)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감액 및 미지급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상향규정(신설)
- 현행 산업인력공단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시설의 범위, 대부한도액, 대부결정의 취소 및 대부금의 반환 등 대부절차 등 비용대부요건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내용심사)
- 정부위탁훈련의 대상자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훈련 직종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훈련실시기관은 노동부 장관이 선정(내용심사)
-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을 하위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상향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내용심사)
-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업인정특례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특례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출석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내용심사)
- 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의 인정기준을 하위규정에서 상향규정(내용심사)

1차 심사결과(2001. 4. 20) : 원안의결 9, 재심의 7

-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한도액 설정(원안의결)
-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시기관 등 규정(원안의결)
- 실업자 재취직훈련 대상자 규정(원안의결)
-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규정(원안의결)
-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요건 등 규정(원안의결)
- 정부위탁훈련의 대상자 등 규정(원안의결)
-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원안의결)

- 도서거주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실업인정특례 신고규정(원안의결)
 - 취업 및 구직급여 감액대상 소득인정기준 규정(원안의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재심의)
 - 생산라인의 폐지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있는 사업주에게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타당성과 그 이유를 다시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재심의)
 - 연속하여 5일 이상이라는 개념정의 및 중간에 추석연휴가 2일 있는 경우에도 1주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교육기간 운영부작용 방지방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재심의)
 - 임금대장, 훈련출석부 제출 등 서류제출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 방안강구
 - 고용유지계획의 신고시 첨부서류 변경(재심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됨으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별도의 양식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가족부양의 책임있는 자의 범위(재심의)
 - 배우자가 교도소 복역중인 세대주 등의 경우 등 사례 재검토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요건(재심의)
 - 고용안정사업중 잠재인력 고용촉진 분야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용자사업의 타당성의 재검토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기준(재심의)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음
- 2차 심사결과(2001. 5. 4) : 수정안의결 5, 철회 2**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철회)
 -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수정안 의결)
 - 연속하여라는 문구 대신에 실훈련 일수 5일 이상으로 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와 총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것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향상훈련 요건과 일

치시키기 위하여 총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철회)
- 고용유지계획의 신고시 첨부서류 변경(수정안 의결)
 - 고용유지계획의 신고시 첨부서류 변경은 고용조정을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예시하여 다양화방안 강구
- 가족부양의 책임있는 자의 범위(수정안 의결)
 - 가족부양의 책임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삭제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요건(수정안 의결)
 - 직장보육 시설의 지원요건은 신청서류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증빙서류는 삭제하고 수탁보육시설에 한하여 구비서류 첨부토록 수정의견 제시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기준(수정안 의결)
 - 훈련비 등의 지원상한액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정하여져 있어 동법 시행규칙에 추가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은 없음
 - 다만, 훈련비의 지원시 산정근거가 되는 표준훈련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반영하여야 할 주요항목에 대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 하위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제37조의2제2항에 규정한 것임

(4) 고용보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 등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요건, 절차, 금액등을 규정하고,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제한 : 수강장려금지원대상 훈련을 근축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현장훈련, 통신훈련, 집체훈련에서 집체훈련으로 제한(강화)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확대 : 사업주 외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이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하였을 경우에도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강화)

- 조기재취직수당의 차등지원 : 실업급여 구인신청후 1월 경과 후에도 구직자를 찾지 못한 업체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재취직한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전부를 지급(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5. 25) : 원안의결

(5) 직업안정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고려사항 : 당해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 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 현행 예규로 운용중인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규정(내용심사)
- 직업정보 제공사업의 인정범위 위임근거 : 현행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정보 제공사업 인정범위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6. 1) : 원안의결 3

(6)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6)

- 직업안정기관등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정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 직업소개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능력을 갖춘자
 - 민간직업상담원의 선발절차, 채용 기타 인사·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내용심사)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심사)
- 국외 연예인 공급사업자의 범위(내용심사)
- 국외공급 관리자의 관리 등 : 공급계약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급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못함, 임금은 국외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을 매월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함(내용심사)
- 국외근로자 공급계약 및 취업조건 고지 등 : 공급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명시, 계약내용 근로자 주지, 취업관련 경비 근로자 부담 불가(내용심사)
- 실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회 개최일시 등(내용심사)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위반시 제재기준이 있었으나,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자가 규정위반시 제재기준 미흡으로 규정(강화)

심사결과(2001. 6. 1) : 원안의결 7

-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 노동부 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원안의결)
-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의 위치 변경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 하여 등록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후 소재지의 등록관서에 등록변경 신청 (원안의결)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원안의결)
- 국외공급자 관리 : 노동부 예규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원안의결)
- 국외근로자 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 근로자와 사업체는 서면으로 근로 계약 체결 : 노동부 예규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 사업체명, 업종, 소재지, 직종별 공급인원수, 공급기간, 공급대가, 수령일자 등 (원안의결)
- 실연심사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내 구성, 매 실연심사시마다 3인 이상 위원 신규위촉, 심사대상자는 20세 이상이고,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 : 노동부 예규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 국외 연예공급사업자는 공동으로 위원의 위촉절차, 실연심사 기준 및 심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연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노동부 장관 승인(원안의결)
-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자에게도 위반 횟수,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정지 1월에서 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원안의결)

(7) 기능장려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자격기준 및 기능장학생 선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부정,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일시장려금 반환규정 마련(신설)
 - 기능을 전수 받은 자의 선정기준 마련(내용심사)
-

심사결과(2001. 6. 29) : 원안의결 3

- 우수기능인과 기능장학생 선정기준 마련(원안의결)
 -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정 : 노동부 지침인 중소기업 현장 산업기술인 육성 및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
 - 기능장학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훈련생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학생중에서 기능장학생 선정 : 노동부 훈령인 기능장학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 기능 전수받은자 선정기준 : 기능전승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원안의결)
- 현재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명장에게 지급되는 기능장려금에 대해서만 반환규정이 있었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 및 우수지도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급받은 일시 장려금에 대해서도 반환토록 규정(원안의결)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7)**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지정범위 변경 :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인정되는 법령상 당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변경하고, 훈련시설을 지정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법령상 당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시설로 한정(강화)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요건 및 지정취소후 3년내 재지정 금지 :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강화)
- 훈련기준의 설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정함 :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내용심사)
- 훈련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훈련기관에게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상응하는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 :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내용심사)

-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 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1년 이내로 제한, 여성가장실업자·국가유공자등및 지원에관한법률상 취업보호대상자를 추가(내용심사)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업무처리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출연재산이 3억원 이상, 기존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등(내용심사)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강화)
- 훈련과정의 지정요건, 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명기: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강화)

1차 심사결과(2001. 6. 15) : 원안의결 6(강화 2, 내용심사 4), 재검토 1, 심사전철회 2

-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의 지정범위 변경 등 6건(원안의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설립허가요건(재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 법인격 취득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 법인격을 취득한자와 개인간에 차이, 허가기준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철회)
 - 학원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훈련기관, 과정 평가결과 부적하다고 인정된 경우, 훈련과정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동규정이 없어도 기존의 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보나, 여기에 새로 규정하는 취지는 맞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요건(철회)

2차 심사결과(2001. 6. 22) : 재검토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설립허가요건
 - 훈련법인의 출연금을 현재와 같이 3억원으로 하는 것은, 잠재적인 시장참여 희망자의 진입이 억제되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부가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재검토

3차 최종 심사결과(2001. 6. 29) : 원안의결 7(강화 2, 내용심사 5)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설립허가요건(노동부 수정의견 제출로 수정원안의결)
 - 출연재산을 3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재산을 완화하는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 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출연금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출연금 수준을 재조정하기로 하였음

(9) 기능장려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우수기능사 선정에 따른 추천서류 :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은 명장, 우수지도자 이외에 우수기능사까지 확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서류로는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경력증명서, 사업체 개요설명서,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선정(신설)
- 기능전승자의 신청첨부서류 : 기능전승지원 대상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보유자로 기능을 전수하는 자, 기능보유자로부터 기능을 전수받은 자이며, 그 신청서류로는 기능전문교육계획서, 읍·면·동장 또는 해당 단체장 확인서를 제출 받았으나 그 대상자격을 기능전수자까지 확대하고 경력증명서를 추가 규정하여 엄격한 대상자 선정(강화)
- 창업자금 대부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영업할 때 자금대부
 - 그 신청서류로는 종전에는 투자계획서, 경력증명서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창업자금 대부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강화)

심사결과(2001. 8. 10) : 원안의결

(10)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9)

- 기계부분 재료기준 : 리프트의 구조부분에 사용되는 재료규격을 3종 추가, 기계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규격을 11종 추가(강화)
 - 리프트 설계시 지진하중 : 구조부분의 강도계산에 지진하중 추가
 - 용량은 건설용 리프트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으로 계산(강화)
 - 운반구 설치시 기준을 추가(강화)
 - 운반구 출입문 바닥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 바닥에 200mm 이상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하거나 발 등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함
 - 탑승구의 출입문은 운반구 주행시 간섭되지 않아야 함
 - 이탈방지용 가이드 롤러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고 성능유지
 - 승강로 등의 주요부분품에 대한 안전기준(강화)
 - 리프트의 랙·피니언의 치면은 과도한 마멸·변형이 없고 마멸한도 초과사용 금지
 - 피니언 및 피니언축은 적정경로를 유지
 - 피니언축에 대한 초음파 탐상검사시의 탐상방법 및 합격기준을 명시
 - 운반구 주요 구조부의 기준을 추가(강화)
 - 운반구에 부착하는 이름판의 내용 및 적재하중표시 부착위치 지정
 - 배전판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운반구 내의 구동부 고정판, 감속기 등 부착 견고
 - 브레이크 설치기준을 추가(강화)
 - 정전 또는 비상시 운반구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브레이크 개방용 공구나 장치를 구비
 - 브레이크 방호등급은 IP23 이상으로 함
 - 리프트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검사기준 추가(강화)
 - 무선제어기에 제어대상 리프트를 표기
 - 각각의 제어기에 제어대상 리프트를 표기
 - 원격제어기가 정지신호를 수신하거나 계통상 고장신호를 수신시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위험한 작동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 조작반과 무선제어기를 겸용시 선택스위치 부착
-

- 운반구 설치기준(강화)
 - 야간에 사용되는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50럭스 이상의 조명장치 설치
- 리프트 사용설명서의 제공(강화)
 - 리프트 제조자는 사용상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용설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
 - 설비이력관리카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는 검사·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등을 기록한 설비이력관리카드를 상시 비치·관리

심사결과(2001. 09. 7) : 원안의결 9

(11)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1, 내용심사 2)

- 설계시 지진하중 반영(강화)
 - 크레인 설계시 구조부분에 지진하중 추가
 - 옥외에 설치되는 크레인에 한하여 적용하되, 크레인 자중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
- 거더 흔들림에 따른 안전성 확보(강화)
 - 용접구조로 된 박스거더는 거더 높이에 대한 스패의 비가 25, 거더 폭에 대한 스패의 비가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거더 처짐한도 계산시 고려할 사항(강화)
 - 크레인 거더의 처짐은 정격하중 및 달기기구를 합한 자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권상시 거더 스패의 1/800 이하가 되도록 함
 - 크레인 박스 거더는 자중에 의한 처짐과 정격하중의 1/2에 의한 처짐을 합산한 값에 상당하는 캠버를 고려토록 함
- 브레이크 설치조건을 구체화(내용심사)
 - 크레인에 대해 브레이크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제동에 필요한 토오크 값 결정
 -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 설치기준 변경
- 크레인의 권상용 체인의 검사기준 추가(강화)
 -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 검사
 - 심한 부식불가, 깨지거나 홈모양이 결함이 없고, 심한 변형 불가
-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의 검사기준 추가(내용심사)

- 과부하시 선회동작은 가능, 타워크레인의 경우 과부하조건을 정격하중의 1.05 배 이내
 - 시험시 풍속은 8.3m/s를 초과하지 않고, 과부하시 운전자가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함
 -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검사(강화)
 - 잠금장치 설치, 제어대상 크레인 표기, 지정된 신호로 작동, 2대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 통제,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등
 - 크레인 레일의 정지기구 검사기준 추가(강화)
 - 횡행속도가 매분당 48m 이상인 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
 - 크레인 운전실 등의 검사기준 추가(강화)
 - 운전실 등은 혹 등의 달기기구와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 적절한 조명, 바닥 미끄럼 방지
 - 성능유지 조치기준 :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 대형부착물 설치를 금지하되, 과도한 풍압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강화)
 - 하중을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 제작된 크레인은 예외
 - 크레인 주행레일의 검사기준 추가 : 주행레일 스펜편차, 높이편차, 진직도(강화)
 - 크레인 와이어로프의 검사기준 추가(강화)
 -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 와이어로프 교체시에는 크레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크레인 제조자는 사용상 위험예방을 위하여 설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강화)
- 심사결과(2001. 9. 7) : 원안의결 12, 개선 1**
- 성능유지 조치기준 : 광고판 부착금지를 예외하는 단서조항은 구체성이 없음 즉,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과도한 풍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와 같이 출고 당시부착된 이외에는 부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개선권고

(12)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 및검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7)

- 부식성 물질의 재료기준 : 부식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재료에 내성을 고려하여 추가, 구조부분 재료를 35종에서 24종으로 조정(강화)
- 취성과괴 위험이 있는 재료 사용제한 : 탄소함유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재 또는 저합금 강재를 압력용기 용접구조 재료로 사용금지(강화)
- 구조설계시 고려항목 추가 : 기초 및 기초볼트 강도포함(강화)
- 재료의 동일성에 대한 확인 등(강화)
 - 사용재료가 해당 재료규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재료흐름을 관리하도록 함
 - 결함제거시 분탐상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거쳐 확인토록 명시
- 제작공차 기준 : 경판 끝부분의 원통부 진원도가 기준안 지름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강화)
- 맞대기 용접이음의 끝벌림 기준 : 두 개 이상 동체 용접 경우 중심간 거리가 두꺼운 쪽 모재 두께의 5배 이상 격리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교차점 100mm 길이를 방사선투과시험하여 합격토록 함(강화)
- 보수용접시 내압시험 재실시(강화)

심사결과(2001. 9. 7) : 원안의결 7

(1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2)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지정·변경신청 절차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등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
 -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훈련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실업자 등 훈련대상자의 선발기준(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6월이 경과한 자, 중도 탈락한 경우 3월이 경과한 자,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구직등록 후 취업시까지 영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하지 않은 자(내용심사)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취소 기준 별표규정 : 시정명령, 계약해지, 위탁배제 등 부당행위별 제재기준(강화)
-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임원의 요건 : 친족관계는 50/100 미만이어야 하고,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가 없어야 함(내용심사)
- 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20일 이내에 지정여부 결정·통보(강화)

심사결과(2001. 9. 7) :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취소 기준 별표규정(개선권고)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제재기준안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제재기준 운영방지
 - 위탁해지 등 위탁제재의 중복사항 개선
 - 부정수급액 환수는 법에 규정할 사안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 다만, 현상태에서 운용시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타법으로 운용가능

(14) 고용보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육아휴직급여액 : 월 10만원, 지급대상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내용심사)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 상한액 4만5천원,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최저기초일액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의결 2

(15)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 매월 사업주가 교부한 육아휴직확인서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내용심사)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 매월 사업주가 교부한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의결 2

(16) 근로기준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 (신설 1, 강화 2)

- 취직인허 최저연령 : 취직인허 신청의 최저연령을 13세로 규정,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 생략(신설)
- 종전에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한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이번에는 적용범위 확대 : 임신부에 대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임신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제한, 여성의 갱내근로 일부허용 등 확대적용(강화)
- 임신부 등 사용금지 직종을 61종에서 22종으로 별표2 조정(강화)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 남녀고용 평등을 고려하여 임신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을 61종에서 22종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음. 현재선정된 직종은 객관적으로 임상·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함
 - 우선, 고용평등과 임신부 등 보호라는 목적을 감안할 때 각 단체의 불만과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관련법시행(2001. 11. 1)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시행하되, 추후 사용금지 직종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그때 그때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개선권고)

(17)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2)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신설)
 - 임금, 임금외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는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의 요건 강화 :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근로,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

우자가 육아휴직중이지 않을 것,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것(강화)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등 : 출산예정일 이전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내용심사)
-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의무를 완화(내용심사)
- 사업주에 대한 보존서류의 범위 :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에 관한 서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신설)

심사결과(2001. 10. 11) :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를 권고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육아휴직신청시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개시일 및 육아휴직종료일을 육아휴직개시 30일 전에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 남자 배우자가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미리 육아휴직 신청시에는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 개선권고

(18) 고용보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 (강화 4, 신설누락 1, 내용심사 1)

- 적용제외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범위 확대(강화)
 -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64세까지 신규고용자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강화)
- 직업상담원 복무에 관한규정 :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보험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내용심사)
 - 전문인력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외)에 대한 추가적 수급요건(강화)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것)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급여기초일액 산정방법 :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 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기초일액으로 함
 -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 산정
- 소정급여불변일수의 불변기간화 : 소정급여일수를 불변기간으로 함(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 수급자격자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

심사결과(분과위 2001. 10. 19, 본회의 2001. 10. 26) :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본회의 철회 1

-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의 범위 확대 등 4건(원안의결)
- 직업상담원 복무에 관한 규정(개선권고)
 - 노동부에서 심사요청한 직업상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현재 직업안정법과 고용보험법 양쪽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제처 협의시 하나의 법규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급여기초일액 산정방식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은 인식내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산정방식의 합리화방안으로 판단되어 규제업무에서 제외

(19)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7)

- 용자업무 취급기관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이외에 근로자복지기

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 취급 금융기관 규정(강화)

- 우리사주 조합의 설립절차 :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에서 규약안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규약을 확정하며, 수탁기관과 우리사주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강화)
-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제외(강화)
- 우리사주조합의 장부 및 서류비치 의무 : 우리사주 조합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및 대의원 주소록, 회계장부,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서류를 최소 10년 간 보존(강화)
- 우리사주 조합 기금의 자사주 취득기한 :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강화)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절차를 규정(강화)
- 우리사주 의무보유 기간 :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최소 1년 간 보유(강화)

심사결과(2001. 12. 6) :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 용자업무 취급기관(개선권고)
 - 당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외에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새마을금고 추가

(20)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신용보증 용자사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의 용자,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용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장학사업 등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자 등(강화)
- 신용보증지원대상 근로자 : 보증대상 용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산 규모, 근로자의 신용·연령·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보증대상자로 제한(강화)

심사결과 (2001. 12. 6) : 원안의결 2

(21) 고용·산재보험징수법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징수특례제도 : 징수특례사업에 대하여는 공단이 분기별로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고 사업주는 매분기 보험료를 당해분기 익월 말까지 납부함(신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 : 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제기
 -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봄(신설)
-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험료 체납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제공(신설)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사업주가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강화)

심사결과 (2001. 12. 20)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부동의 1

- 징수특례제도(개선권고)
 - 동제도 도입시 노동부는 “사업주가 징수특례 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단의 “승인” 여부가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징수특례제외 요청의사를 구속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만 하는 안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고”등으로 개선권고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부동의)
 - 자진납부를 기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노동부의 취지는 보험료 징수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국세와 보험료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여타 보험료 관련법령에 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매우 높아 동제도 부동의

(22) 산업안전보건법

심사요청 규제내용 (신설 4, 강화 8)

- 재해율 등 공표 : 노동부 장관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신설)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 간 보존(신설)
- 보건상의 조치 : 흙·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 항목 추가(강화)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등에 대한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실시(강화)
- 검정유효 기간만료 방호장치·보호구의 재검정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한 성능검정시 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강화)
- 검정·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합격표시 금지 의무 : 성능검정 불합격 방호장치, 설계·완성·성능·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정에 불합격한 보호구 등에 대하여 합격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신설)
-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된 경우 사후관리(강화)
 - 방호장치·보호구의 수거검정 결과 또는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정기검사 결과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정·검사에 합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보호구 및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과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 신청 제한
- 제조등의 허가 :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이외에 이를 해체·제거하는 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강화)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결과 서류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양도·제공시 근

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
(강화)

-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보호·유지 목적외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강화)
- 감독상의 조치등 : 이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서의 게시 의무 부여(신설)
- 벌칙의 강화 :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양도·대여 목적 진열을 하는 경우 벌칙 강화(강화)

심사결과(2001. 12. 20)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2, 부동의 2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개선권고)
 - 1997. 4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임의교육으로 전환된 바 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개정안 제26조 제4항은 현행대로 준치시키는 대신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동조 제5항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 감독상의 조치 등(개선권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개정안 제8항 내지 제11항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 동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토록 권고
-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재해율 등 공표(부동의)
 - 산업재해 발생의 문제가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벌칙 규정 이외에 사업주의 명예나 신용등에 심리적인 타격을 주어 간접적인 안전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방법론이 사회 통념상 과연 바람직한가와 최선의 대안인가의 가치판단 문제를 검토할 때 부동의함이 타당함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의무(부동의)
 - 동 제도가 설치된다 해도 사업주는 산재율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료 왜곡을 양산할 것이므로, 현재의 산업재해요양신청서 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완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23) 근로자복지사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근로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은 3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
 - 구비서류로는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3종(강화)
- 생활안정자금용자 : 용자대상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는 3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생계비 용자대상은 2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가동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말함
 - 구비서류로는 생활안정자금용자신청서와 용자종류별 첨부서류가 있음(강화)
- 복지시설자금용자 : 용자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자
 - 구비서류로는 복지시설자금용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사산출내역서 등(강화)

심사결과(2001. 12. 27) :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 생활안정자금 용자(개선권고)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신청으로 용자금이 회수된 자의 경우에는 용자금 회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만 다시 용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용자취지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지원일 뿐만 아니라 소액대부인 만큼 자금사정이 허락한다면 기존 용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한기간 없이 용자가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 복지시설자금 용자(개선권고)
 - 복지시설용자금의 경우에서도 생활안정자금용자와 같이 제한기간 삭제권고

(24)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신용보증 지원대상 용자사업을 명확히 규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근로자 학자금, 산재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용자사업(강화)
- 신용보증지원대상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용정보불량자,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

외(강화)

- 신용보증지원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강화)

심사결과 (2001. 12. 27) : 원안의결 3



제10절 _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1. 외교통상부

가. 지난4년 간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3건의 규제를 신설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해외이주법 제10조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나. 2001년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 신설강화규제 없음

2. 통일부

가. 지난4년 간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건의 규제를 신설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취업보호 제한 기간(1년)을 신설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모범사업주에게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절차 신설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하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신설
- 북한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장소내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관계서류 제출 절차 신설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강화규제 2건에 대해 심사
- 심사결과 원안동의 1건, 개선권고 1건으로 의결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반입물품 중 도서에 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규정하여 명확화하고, 반출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컴퓨터를 추가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게(냉동, 산 것, 신선 또는 냉장)를 포함하고, 냉동홍어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
-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영의 안전을 위한 남북한간 선박운행의 승인기준 마련
 - 승인절차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의 명확화로 선사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예방

- 불법·부당행위를 한 선사에 대해 일정기간 선박운행을 제한

심사결과(2001. 11. 8)

-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 : 원안동의
- 남북한간 선박운행 승인기준 : 개선권고
 - 남북한간 선박의 운행승인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 그러나 화물운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 또한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일정한 기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 신설강화규제 없음

4. 병무청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 신설강화규제 없음

5. 국가보훈처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제대군인지원등에관한법률 등 총 2개 법령의 규제심사를 통해 3건의 규제를 신설
-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참전군인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참전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신청 절차 경우 및 구비 서류 징구
-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제대군인에게 응시당한 연령을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총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누락규제 1건에 대한 규제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4건은 동의, 2건은 개선권고토록 의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1, 신설 3)

- 사립대학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그 반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액은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그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동법에 명확히 규정
-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물의 관리자 지정 및 관리의무 부과와, 현충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관리를 위해 사전신고의무부과 등을 규정
-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및 대상을 사망·국적상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으로 사유별 소멸시기를 규정하고 본인의 국적상실·법적용배제시 그 가족의 권리도 소멸토록 명확히 규정

심사결과(2001. 10. 19) : 원안동의 2, 개선권고 2

-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수업료 면제 : 원안동의
- 현충시설물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의무 부과 : 개선권고
 - 국가보훈처장 직권에 의한 현충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관리의무 부과 삭제

- 현충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관리 : 개선권고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입장료 · 사용료 징수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입장료 · 사용료 관리를 위한 조항 삭제
-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및 대상 : 원안동의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 1)

- 사립대학 등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유 · 가족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그 반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액은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그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동법에 명확히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별개의 법률이나 독립유공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고 독립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별도로 분리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규제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통합 등록

심사결과(2001. 10. 19) : 원안동의

(3)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참전기간 중 불명예제대자 등에 대한 법적용 비대상 요건으로 참전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
- 참전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기타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토록 규정

심사결과(2001. 10. 19) : 원안동의 2



제1절 _ 환경분야

*집필자 : 김영환 사무관(Tel.3703-3946, hwan49@opc.go.kr)

1. 환경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6개 분야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3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1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심사(신설 9, 강화 5)
 - 기존 건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 변경하도록 의무화
 -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로 제한하는 강화규제를 건설업면허소지자 등 건축주에게도 허용토록 완화의결
 -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축산폐수처리 의무를 부과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처리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 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당해 영업을 허가한 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

-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신설 4건, 강화 5건)

- 수탁처리자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신설은 삭제
- 과태료(안 제63조)는 폐기물처리 연간 계약 및 감시 위·수탁계약 체결 제도의 신설규정 삭제에 따라 해당 과태료 규정 삭제

• 대기환경보전법(신설 5, 강화 6)

- 방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방지시설 시공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한 실명제는 삭제 의결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용 정지기간 연장 등(안 38조 및 38조의2)의 규정 삭제 의결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생활악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기준 미준수, 불법연료를 사용, 판매한자 등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규정 삭제 의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심사(신설 4, 강화 3, 1999. 1. 29)

- 정도검사의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누출 측정자가 사용 관리하는 측정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 환경측정기기 제작 및 사업장 출입점검을 삭제하고 대행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필요시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
-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설정을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기준으로 수정보완
- 기타 환경부안 수용

•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심사(신설 6, 1999. 4. 23)

- 동일사업장내에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의 업무정지는 철회의결

-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수입의 2~10배로 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토록 하여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도록 조정
-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승계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철거명령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규칙 심사(신설·누락 등 5, 강화 7, 내용심사 7, 1999. 6. 18)
 - 사업장폐기물 운반처리시 폐기물인계서 작성, 인계시기 등 내용심사
 - 폐기물인계서 검인시기를 처리시 7일에서 3일로 완화
 - 강열감량기준의 강화를 적용시기를 2008년 이후로 완화
 -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제도는 관련업체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요건을 현행 3대를 존치하되, 필요시 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으로 기준강화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규칙을 재심사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요건 중 파쇄시설 구비기준을 1일 300톤에서 100톤으로 조정하고 재활용신고업자의 업종전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존치하도록 수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누락규제 6, 강화 10, 내용심사 5, 1999. 6. 25)
 - 축산처리 관리기준 규제강화 중 관리일지 작성 의무화 규정 삭제
 - 축산폐수처리 방법의 농경지 확보면적 강화기준을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3년 부여하고 연차적으로 강화토록 조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심사(신설 1, 내용심사 2, 1999. 6. 25)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의 허가시 향후 원상복구 등의 조건부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정범위를 정하여 허가시 총량계획이행을 평가하는 기관과 허가 전에 협의토록 하는 방안강구로 대체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강화 6, 후속심사 1, 1999. 8. 13)
 - 생활악취 규제대상 중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규정함은 지나치게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이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나열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규제대상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 중 시설설치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간 주도록 조정
- 먹는물관리법 심사(신설 4, 강화 5, 1999. 9. 17)
 - 수질개선부담금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규정 철회의결
 - 먹는물 유통업자에 대한 허가취소규정 철회
- 자연공원법 심사(신설·누락 2, 강화 6, 1999. 10. 29)
 - 공원구역외 계획확대용지는 주차장과 도로만으로 한정토록 조정
 -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 철회(불인정)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예치기준을 각각 5~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보 증보험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원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불을 내는 행위 및 총기·도끼·삽의 휴대행위)는 삭제하고 총기휴대행위는 규제하도록 조정
-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심사(신설 21, 2000. 5. 19)
 - 수변구역지정 및 행위제한에 있어서 수변구역 대상지역임에도 시설입지 가능 지역과 불가능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오 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수정
 - 하천구역 내 농약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유기성농업지원, 정부수매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공사비용 사전예치제를 삭제하고 의무 불이행시 준공, 사용검사의 거부조치 등으로 보완
 - 오염 부하량 할당제도와 함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초과부담률을 2배 이내로 완화조치
 -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 관리의무에 있어서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설치 유예기간 을 3년으로 완화
 - 산업단지입주자의 폐수재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미이행시 조업중지 규제는 삭제, 과태료로 전환하고 가급적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토록 조치
 - 축산폐수시설의 분·뇨 분리시설의무 및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재이용 의무 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
- 수도법개정안 심사(신설 5, 강화 3, 2000. 9. 22)
 - 물수요관리 목표미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등의 인가제한

- 인가제한 대상을 물수요관리 목표미달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물수요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 병행 실시
- 중수도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 물절약 투자대행업의 등록제도 도입 삭제
- 농원여관업, 여인숙업과 같이 영세·노후하여 절수효과가 미미한 업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절수설비 설치의무화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심사(신설 9, 강화 2, 2000. 9. 28)
 - 이행계획서 제출승인, 결과보고, 재활용인정 등 번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으로 자발적이행 유도 및 절차 간소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질 분류표시, 재활용 가능표시와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제도를 통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재활용품 분리 배출표시로 일원화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시행령 심사(신설 1, 강화 5, 2000. 12. 8)
 - 환경, 교통, 재해 등 일부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평가대상을 확대
 - 재해분야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하기에는 무리임으로 재해영향평가 시행 1년 후 검토하여 시·도에 위임할 것을 권고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는 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률, 수도법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등 18개의 법령 등에 대하여 신설 20건, 강화 27건, 내용심사 22건 등 총 6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9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철회, 15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5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부의 2001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19개임

(1) 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심사요청규제내용(신설 14)

- 수변구역지정 및 행위제한
- 수변구역 기존건축물에 대한 방류수질기준강화
- 취수시설 상류 집수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지정·행위제한
- 사업장 최종방류구·시간별 오염부하량 할당지정 등
- 오염부하량 초과자에 대한 제재등
- 오염부하량 총량초과부과금
-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무
- 배수관거설치사업자의 관거검사·관리의무
- 본류·하천인접지역의 폐기물매립시설 입지 제한
- 수질개선사업시 토지등의 수용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 법, 법령, 처분위반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 과태료

심사결과(2001. 2. 16)

- 오염총량시행계획의 승인·시행에 필요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 소속하에 오염총량관리센터(제8조제5항)를 두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삭제

- 기타 내용은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의결

(2)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 방법등에관한규정(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정도관리의 평가항목, 방법 및 기준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심사결과(2001. 2. 22)

- 원안의결

(3)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과징금부과항목의 추가
 - 먹는샘물의 규격위반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현재 15개에서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확대

심사결과(2001. 4. 20)

- 원안의결

(4) 습지보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 습지개선지역 내 출입제한
- 습지개선지역 내 매립면허 및 골재채취 허가의 금지
- 습지개선지역 훼손시 일부습지 존치

심사결과(2001. 5. 18)

- 원안의결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심사요청규제내용(신설 1, 강화 5, 내용심사 1)

-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신설)
- 건물등의 증축 등에 관한 특례(강화)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의무대상(강화)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의무위반시 개선명령 대상(강화)
- 오분법상 보고·검사 등(강화)
- 과태료 부과(강화)
-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의 절차 개선(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6. 29)

- 동일인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에 위배하므로 삭제 권고
- 오수처리시설(63,578개소), 단독정화조(2,454,113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44,557개소)에 대해 현행 출입검사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고 및 자료제출대상으로 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므로 현행과 같이 출입검사로 존치
- 또한 제46조제1항에 추가하는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전부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
- 기타사항 원안의결

(6) 대기환경보전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7)

- 공회전의 제한(신설)
 - 배출가스 과다배출 신고차량의 점검명령 및 개선명령제(신설)
 - 배출허용기준(강화)
 - 권리·의무의 승계(강화)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강화)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강화)
 -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강화)
 - 보고 및 검사 주체(강화)
-

- 과태료부과 대상(강화)

심사결과(2001. 7. 13)

-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때 단속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공회전의 기준, 단속장소, 단속대상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조건)
- 신고차량에 대한 법적처분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민원인의 주관적인 신고만으로 점검을 받도록 처분하는 것(점검 명령)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행정권한의 남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부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었던 규제이며, 현행법상으로도 양수인, 상속인등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1조의2)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함으로 삭제
-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Telemetering System)를 도입하는 것은 자가측정·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지도·단속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횡수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입의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으로 하지말고 TMS의 운영과 기기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한정하도록 권고

(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심사요청규제내용(강화 1)

- 자동차배기가스 중간검사

심사결과(2001. 7. 13)

- 배출가스전문정비업소의 별도지정은 법령 미근거 규제이며 또한 기존 지정정비업소나 일반정비업소를 배제시켜, 자동차 소유주의 정비업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삭제
-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부품 부족과 ‘자동차오래타기’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자동차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전하고 경제적인 자동차생활과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승용자동차의 경우 “10년”을 “12년”으로 연장

- 중간검사를 개정안대로 정기검사 사이의 별도 검사로 한다면 피규제대상의 자동차검사 횟수가 늘어나 차량소유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중간검사 시기를 정기검사와 일치시키도록 권고
- 검사결과 부적합 차량은 어느 정비업체에서든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만 적합하도록 수리하면 되므로 운행차 배출가스전문정비업소 지정은 폐지
- 기타 사항 원안의결

(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심사결과(2001. 7. 20)

- 원안의결

(9)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4)

-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등 강화(강화)
- 비공원사업중 공원위원회 심의대상(내용심사)
- 외래동물 방사행위 금지(내용심사)
- 자연공원내 제한행위(강화)
 -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조정(내용심사)
-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8. 10)

- 취락지구 내에서 이축하는 행위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로서 삭제
 -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참석자가 50인 이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포괄적인 규제이므로 삭제
 - 리조트와 동·식물원의 사용료는 시장원리에 맞게 시설운영자의 자율로 결정토
-

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기타 원안의결

(10)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의무(강화)
- 하수도용 자재기준(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8. 17)

- 원안의결

(11)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4)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의 경작행위 제한(강화)
- 중수도 의무화 대상 건축물 확대 및 시설기준(내용심사)
-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시설·관리기준(내용심사)
- 전용 상수도 변경 인가사항 규정(내용심사)
- 수도사업 원인자 부담금 부과목 추가(강화)
-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설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8. 24)

- 중수도의 통보서식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관서에서 관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으로 간소화(중수도가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건축주, 당해 건축물의 물사용량, 중수사용량, 중수처리용량, 중수의 용도, 중수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만 통보하도록 하고, “설계자,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중수도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은 삭제
- 전용상수도의 변경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인가 사항으로 하고 기타 경미한 변경은 삭제하여 변경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삭제 : 급수인구, 1인당 급수량,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검사결과, 공사 착·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 연월일 등)
- 기타 사항 원안의결

(1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규제심사 요청내용(내용심사 2)

-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 승인(내용심사)
-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10. 12)

- 원안의결

(1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규제심사 요청내용(신설 1, 강화 1)

-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신설)
-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설치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강화)

심사결과(2001. 10. 12)

- 원안의결

(14)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내용(강화 4, 내용심사 2)

-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강화)
-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 등(강화)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심사)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내용심사)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 등(강화)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강화)

심사결과(2001. 10. 26)

- 토양오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확인을 위한 이행보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지 제10호의 3 이행보고서식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간소화 필요(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개선결과 등으로 한정)
 - 토양오염대책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기타 사항 원안의결
-

(15)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지정고시

규제심사 요청내용(강화 1)

- 수입시사전승인 대상에 붉은귀거북 추가

심사결과(2001. 12. 14)

- 원안의결

(16) 운행차배출가스주안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 고시

규제심사 요청내용(내용심사 4)

- 중간검사의 신청 및 검사결과 처리(내용심사)
- 중간검사 기술인력의 관리(내용심사)
- 중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내용심사)
- 중간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신청(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12. 14)

-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총괄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함
- 기타 사항 원안의결

(17)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규제심사 요청내용(내용심사 2)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사전협의 실시 기준(내용심사)
- 소규모 분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실시 기준(내용심사)

심사결과(2001. 12. 14)

- 원안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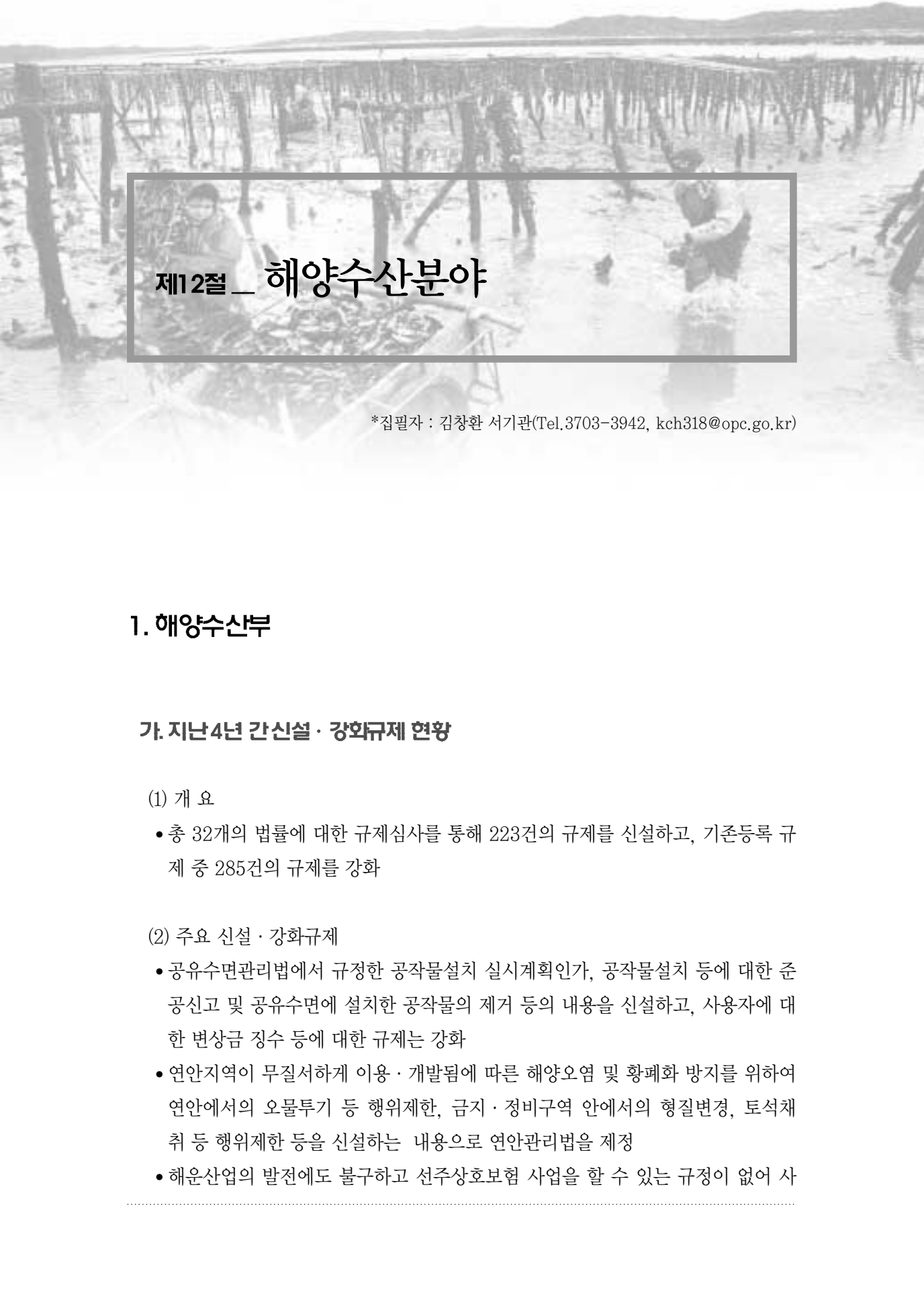
(18) 생물자원의국외반출승인대상종고시

규제심사 요청내용(강화 1)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도마뱀 등 165종 추가(201→366종)

심사결과(2001. 12. 28)

- 원안의결



제12절 _ 해양수산분야

*집필자 : 김창환 서기관(Tel.3703-3942, kch318@opc.go.kr)

1. 해양수산부

가. 지난4년 간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2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 규제 중 285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인가, 공작물설치 등에 대한 준공신고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제거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변상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
 - 연안지역이 무질서하게 이용·개발됨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하여 연안에서의 오물투기 등 행위제한, 금지·정비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을 제정
 - 해운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주상호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
-

업의 허가, 조합의 설립요건 및 절차와 설립인가, 출자 총액의 최저한도 설정, 조합의 사업범위 제한 및 사업주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파괴가 심각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매립이 결정된 수역에 대하여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의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여 매립지의 용도를 장기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 매립예정지에서의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설정 제한, 매립목적 변경제한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매립지 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작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강화
- 연안어장의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 연안어장의 환경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타인 면허·허가어장에의 출입, 양식어장간 거리등의 조정, 환경오염이 심각한 어장에 대한 사전예고 후 휴식제도,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시행 및 수익자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하는 어장관리법 제정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사전준비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변경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등을 규정
- 국제적인 공기(公器)인 항로표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를 제조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임원의 해임,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지도 및 감독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성실의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영역,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조합의 해산 등의 내용은 강화함
- 합리적 수산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무선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

는 내용 신설

-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지정하고, 환경보전해역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해역에 시설설치 제한기준을 2000m³ 이상 폐수배출사업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 해양폐기물 배출금지장소로 선박, 해양시설외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해양에 접해 있는 발전소·제철소·조선소·정유소,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장을 추가 규정
-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가 당해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다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부과 하는 규정 신설
-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시설 중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정하여 등록토록하고 위생점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으로 선박투자업의 인가, 인가취소, 존립기간, 등기, 업무의 범위,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취소 등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2톤 미만 어선 및 내수면어선에 대하여 종전대로 건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조허가는 현행대로 면제하여 불법어선건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
- 규제 등록이 누락된 한국해운조합법을 심사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항로표지관리법, 항만법, 어항법, 어선법, 낚시어선법, 선박투자회사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안전법 등 1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65건, 내용심사 49건, 누락규제 11건 등 총 15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7건중 3건(신설 3)에 대해서는 철회, 10건(신설 4, 강화 6)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나머지 14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신설 25건, 강화 59건, 내용심사 49건, 누락규제심사 11건이며, 해양수산부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40건임

(1)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5)

- 수산물가공업 등록자의 생산실적보고(시행령 제30조)
 - 수산물 가공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는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실적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자로부터 보고받은 생산실적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원산지 미표시(가공품) 상습행위자 과태료 가중부과(시행령 제42조제3항 별표4)
 -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가 당해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다시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함
-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21개 조문에 대한 내용심사(10개 규제)
 - 농수산물가공육성법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물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분리·통합하는 것임

심사결과(2001. 4. 2)

- 수산물가공업 등록자의 생산실적보고 :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의견

(2) 전통식품의표준규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세부기준 추가신설
 - 전통식품의 표준규격에 고추장굴비, 마른미역, 재첩국의 표준규격 추가

심사결과(2001. 5. 7)

- 원안의결

(3)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 등
 -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선에 적용

심사결과(2001. 5. 14)

- “정기운항에 적합한 선박”을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 및 장비 등을 갖춘 선박”으로 수정동의

(4) 항로표지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시행령 제4조의3)
 -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시설 및 자본금 등을 갖추고 위탁관리업에 등록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및 시설 기준(시행령 제8조, 제9조)
 - 사설항로표지 관리자의 자격기준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
 -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항로표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확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자 및 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시행령 제18조)
 - 항로표지 소유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50만원→

100만원)

- 항로표지관리의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신설 60만원)

심사결과(2001. 6. 7)

- 원안의결, 다만, “사설항로 표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에 따른 기존 근무자에 대한 경과규정 필요

(5)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9)

- 선원교육훈련대상 범위확대(시행령 제43조)
 - “로로여객선”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다른 여객선 선원에게도 실시
 - * 로로여객선(ROLLING ON, ROLLING OFF) : 여객과 화물을 함께 싣는 카페리
- 취업규칙의 신고범위 확대(시행령 48조)
 - 어선원의 취업규칙 신고범위를 50톤 이상 → 25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로 확대
- 승무원명부 기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53조)
 -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 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과태료 부과(50만원)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선내 소화훈련 주기 단축(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여객선의 경우 10일마다 선내 소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7일마다 훈련을 실시토록 단축
- 선내비치서류 확대(시행규칙 제13조)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선내 비치토록 함
- 선내비치할 최소의료기구 및 의약품기준 설정(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ILO 권고에서 정한 의료기구 및 의약품을 선내에 비치토록 함
- 선원의 특수건강진단 유효기간 단축(제54조)
 - 월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2년)을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1년으로 단축
- 선박소유자의 건강진단비용 부담범위 확대(제55조제2항)
 - 신규채용한 선원의 건강진단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토록 함

- 여객선교육 대상범위 확대(제57조제1항)
 - 여객선 교육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일반선원에게도 확대 실시

심사결과(2001. 6. 7)

- 원안의결

(6) 수출수산물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세부기준및등록시설의 조사·점검 등에 관한고시, 수출수산물 검사대상 품목지정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설정
 -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시설 중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등록
- 중국수출 수산물 등록시설 위생점검표 및 평가기준 설정
 -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점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위생점검표 및 평가기준 설정
- 수출수산물 검사품목 지정
 -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의무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의무검사 실시

심사결과(2001. 6. 8)

- 원안의결

(7) 어항법시행령,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 100만원→200만원
- 중국측 양자강 보호수역에서의 조업활동
 - 양자강 보호수역의 범위, 조업기간, 조업가능어선 등을 명시
- 과도수역에서의 조업활동

- 중국측 과도수역 내 조업가능 어선 및 준수사항 명시
- 현행 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
 - 현행 조업유지수역에서의 하절기 휴어선 및 기간을 명시

심사결과(2001. 6. 15)

- 원안의결

(8)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34)

- 원산지 등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절차
 - 대상품목, 위반사항, 시정사항, 시정기한, 명령 불이행시 처분사항 서면통보
-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부적합품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품질검사원장은 이식용 수산물이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이식용수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명함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34개 규제관련조문의 내용심사
 - 농수산물가공육성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분리·통합됨에 따른 내용심사임

심사결과(2001. 7. 6)

- 원안의결

(9) 향로표지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8)

- 검사수수료의 징수
 -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예비용향로표지용품 확보기준
 - 등부표 및 부표설치수의 20%
- 향로표지관리법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영업장소, 상호, 성명, 대표자, 시설 및 장비, 관리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서 제출

· 상속, 양수, 합병의 경우

• 영업의 개시 등 신고

-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위반세부사례별 행정처분기준 설정

• 검사의 종류 등

-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 항목 추가

· 광도검사·색도검사·등질검사 및 전기적 특성검사 → 광속검사, 수직·수평 발산각 검사, 유효광도검사, 등질검사, 색도검사 및 전기적 특성검사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감독

-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검사 대행기관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성적 등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7. 6)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안 제9조의3)시 첨부서류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관리자의 명단” 삭제 등 수정동의 3건, 나머지 원안의결

(10)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에관한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 동해구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금지

심사결과(2001. 7. 13)

- 원안의결

(11)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예선의 갑판부 승무기준 강화
 -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현행 갑판부 승무기준에 항해사 1인을 추가하여 승무토록 함
- 항해사 등의 통신사 면허 취득시 면접시험 면제범위 조정
 - 항해사 또는 운항사 면허를 가지고 3급 이하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면제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4급통신사 또는 전파통신사 4급 통신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접시험 면제
- 해기사 면허갱신교육의 대체인정 교육범위 조정
 - 4급항해사 이하, 4급기관사 이하 또는 통신사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심사결과(2001. 7. 13)

- 원안의결

(12)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선박방화구조기준 설정
 - 다층갑판공용실 및 계단 위벽의 통풍기준 등 설정

심사결과(2001. 8. 17)

- 원안의결

(13)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시험기준 및검정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팽창식 구멍뗏목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 자동복원식 및 양면식 구멍뗏목의 시험기준(자동복원성시험, 잠수시험, 자동배

수시험 등) 신설

- 시험항목 중 저온급힘시험, 굴곡균열시험, 위사변형시험, 내블록킹시험, 가수분해성시험, 내오존성시험, 이음매강도시험, 풍속시험 등 추가

심사결과(2001. 8. 17)

- 원안의결

(14) 선박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9)

- 법인격
 -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1척의 선박만을 소유토록 함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선박투자업의 인가, 인가취소, 존립기간
 -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선박투자업의 인가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함 등
 - 발기인·이사 및 감사의 자격
 -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주식의 인수 청약
 - 주식청약서에 기재할 사항 명시
 - 설립의 등기
 - 설립등기는 이사회 또는 창립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함
 - 주식소유의 제한 등
 -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특수이해관계인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이사·이사회 및 감사의 직무
 - 이사가 업무수행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정함
 - 서면결의
 -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의 범위
-

- 선박의 건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으로 제한함
- 자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
 - 자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 경우 사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선박의 대선
 - 선박은 선박운항회사에만 대선하고, 대선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조선업자의 선정
 - 조선업자 선정은 건조능력, 건조경험, 건조가격을 고려하도록 함
- 선박매입 및 거래의 제한
 - 선박투자회사가 기건조된 선박을 매입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급을 유지하고있는 선박일 것
- 보험가입 의무
 - 인명, 선체, 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업무의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취소
 - 선박운용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등을 정함
-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다른 업을 겸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선박운용회사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산보관의 위탁 및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 선박투자회사는 소유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도록 함
 - 자산보관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수행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결산서류 작성 및 승인
 - 결산서류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 금전의 분배
 -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분하도록 함
- 장부 및 서류의 작성

-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 감독·검사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및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함
- 합병의 제한
 -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선박투자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함
- 해산의 보고
 -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청산
 - 선박투자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청산인을 두도록 함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소수의 투자자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규정(20%)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수의 투자자 수 및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심사결과(2001. 10. 12)

- 심사요청한 총 29건의 신설규제 가운데 철회 2건(“서면결의”, “업무보고서제출”), 수정동의 4건 나머지 23건은 원안의결 함

(15) 낚시어선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 수수료의 부과(신설)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토록 함
- 낚시어선의 폐업신고 등
 - 폐업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낚시어선을 조정할 수 없는 음주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항포구에 출·입항시 선박 출·입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영업장소에는 승객의 명부를 비치토록 함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사항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낚시어선업의 폐업 등 신고불이행, 음주운항자, 음주측정거부자 및 음주관련 제한조치 불이행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9. 14)

- “의무사항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을 재검토하도록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4개항은 원안의결

(16) 어선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2톤 미만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 2톤미만의 어선 및 내수면어선에 대해 건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조허가는 현행과 같이 면제함
- 어선의 등록
 - 어선으로 등록시 일반선박은 선박등록말소 확인서를, 수입선박은 국적취득이 전국가의 선박말소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토록 명시함

심사결과(2001. 9. 21)

- 원안의결

(17) 선박방화관련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선박소방설비기준
 - 내항여객선 중 기관구역에 “FRP 선박으로서 주기관 합계출력 1,500kW 이상의 무인기관실을 가지는 내항여객선”에도 고정식 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
 -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소방원장구 비치기준(도끼, 구명줄) 중 총 톤수 100톤 미만 30톤 이상의 FRP (내항)여객선에 대하여는 호흡구 추가비치

- FRP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주기관 합계출력 1,500kW 이상의 무인기관실을 가지는 내항여객선의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설치

•선박기관기준

- 내연기관에 설치된 고압연료유관 중 동관을 피복하여야 하는 내연기관의 범위에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FRP여객선에 탑재되는 합계출력 375kW이상 내연기관에 설치된 고압연료유관”을 추가

•강화플라스틱선의선체구조기준

- FRP 선박중 총 톤수 100톤 이상 여객선의 기관실 내부는 A60급 방열재료(단, 수선하(水線下) 부분은 난연성수지 3회 적층), 총 톤수 100톤 미만 여객선 및 총톤수 10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난연성수지 3회를 적층하는 방열시공을 하도록 신설 등

심사결과(2001. 9. 28)

• 원안의결

(18) 항만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항만배후단지 내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종합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타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

심사결과(2001. 11. 2)

• 원안의결

(19) 이식용수산물수출국가파견절차에관한 고시, 유료납시터및체험어장의관리에 관한규칙, 위험물운송선박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수산물에 관한 검사 및 이식용 수산물 검역(내용심사)

- 수산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유료납시터 등 지정신청 및 취소(강화)

- 어업질서의 유지 및 다른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경우 유어장지정을 제한

- 승객 및 선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등

- 국제협약에 의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내용심사)
 -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협약(SOLAS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위험물의 분류, 포장 등 안전기준에 관한사항을 규정

심사결과(2001. 11. 9)

- “유료납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은 선박의 검사, 승선인원의 제한 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통합방안 검토 권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20) 항로표지기능및규격에관한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시설항로표지 설치 및 확인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권고한 항로표지지침서(NAVGUIDE)의 내용을 국내법령(고시)에 수용

(※ IALA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심사결과(2001. 11. 30)

- 원안의결
 -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로표지를 설치하여 신속한 항행 및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21) 수산물·수산물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 담수산 어류에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은 삭제하여 해수산 어패류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정밀검사기준 중 카드뮴기준 항목 신설
- 이식용수 산물의 검역기준
 -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질병 추가 및 삭제
 - 품질검사원 지정 질병 추가 및 삭제

심사결과(2001. 12. 21)

- 원안의결

(22) 근해통발어업의포획채취물 종류제한고시, 선박설비기준,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표준규격품등의표시방법위반자에대한시정명령절차에 관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3)

- 포획·채취물의 제한
 - 근해통발어업 신규 허가시 장어류, 계류, 골뱅이류 포획 및 채취금지
- 선박설비기준(강화)
 - 총 톤수 200톤 미만 선박의 선원실 정원기준 설정
 - 선박의 탈출경로에 대한 너비기준을 60→70cm 확대
- 선박구명설비기준(강화)
 - 국제협약개정으로 제3종선에 비치된 각 구명정 및 구명뗏목에 3벌 이상의 방수복과 그 외 인원에 대하여 보온구를 비치토록 추가 등
- 수산물원산지 표시업무 및 확인·조사
 - 활어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토록 규정
- 원산지 등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등
 - 표시규격품 등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한 후 동 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과(2001. 12. 28)

- 원안의결

다. 누락규제 심사결과

(1) 한국해운조합법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심사 11)

- 유사 명칭사용 금지(법 제3조제2항)
 -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을 사용하지 못함
- 업무에 대한 승인(법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1항 내지 제3항)
 - 조합은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의 공제 규정(제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법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해상여객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 면허(등록)을 한 자로 함
 -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의 권리, 의무(법 제11조제2항, 제3항 등)
 -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가입·탈퇴(법 제12조제3항)
 -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승계
- 조합의 기관운영(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 정관의 변경, 임원(이사장 등)의 선출, 조합의 해산 및 예·결산(정부의 지원과 보조에 관련된 사업 및 결산에 한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조합의 재무운영(법 제34조제1항, 제2항)
 -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함
- 조합의 감독(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 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조합의 업무 및 회계관련사항이 정관에 위반될 경우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등
- 한국해운조합 해산과 청산(법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 정관에 의한 존립기간 만료 및 총회의 의결 등 해산사유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법 제48조제1항, 제2항)

-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관련 법령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심사결과(2001. 12. 14)

• 원안의결

- 다만, “임원(이사장에 한함) 선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차기 법 개정시 재검토할 것을 권고



제13절 — 농림분야

*집필자 : 정대우 사무관(Tel.3703-2182, dw0327@opc.go.kr)

1. 농림부

가.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9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0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3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농협 지역조합의 설립기준으로 출자금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품목조합의 출자금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
 - 돼지콜레라·구제역 등 6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격리·역류·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가축을 살처분하고, 기구 또는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게 함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로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 가능성 있음」 등 3가지로 표시하도록 함
-

- 농지정리사업의 환지업무를 20인 이상 환지사를 상시 고용하는 법인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환지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축산물취급 영업자 종업원 자체검사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 신규영업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제1종가축전염병 중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으로부터 일정범위를 정하여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강화함
-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미량광물질사료, 남은음식물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손해평가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2001년도 신설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요

- 2001년도에는 농지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인삼산업법시행령, 친환경농업법시행령 등 28개의 농림부 소관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47건, 내용심사 12건 등 총 6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4건 중 2건 철회, 20건 개선권고, 42건은 원안의결하여 농림부의 2001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3건임

(1)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농작물재해의 손해평가인의 자격기준으로 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과, 농촌진흥청, 시·도, 시·군·구에서 농작물재배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

무한 자, 농업계고교나 대학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교사·교수로서 5년 또는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정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등 실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2. 16)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의무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은 삭제하는 대신 재해보험업체가 손해평가인 위촉시 소정기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우제류 동물의 위생조건
 - 한국으로 수입되는 소·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출국에서 과거 2년 내지 5년 간 소해면상뇌증,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질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
-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 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 내에서 사육되어진 소·돼지에서 생산된 것
 - 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됨

심사결과(2001. 2. 22) : 원안의결

(3) 축산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계란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란등급판정신청서를 지정된 계란등급판정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제출하고, 경영자는 그 신청서를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계란의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계란집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1. 3. 23)
- 계란등급판정신청서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1. 4. 6)
- 점검기관별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점검기관별 대상구역과 대상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수정
 - 업소별 연간 정기조사 횟수를 연 1회로 현실화하고, 조사자 실명제의 이행 규정을 명시토록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5) 인삼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제품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미삼, 잡삼에 대하여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검사기관(농협중앙회)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위반한 때 대상행위별로 경고, 자체검사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심사결과(2001. 5. 11)

- 자체검사업체가 시설·인력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 중
 - 자체검사업체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위반행위의 처분효과까지 양수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자체검사정지(6개월), 해당검사원 교체는 삭
-

제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6)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2)

- 농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 시료 채취 등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인증품 등의 검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의 과정 동안 자재사용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농장관리 및 생산관리 기준을 정함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재기준 및 허용품목과 허용가능조건을 정함

심사결과(2001. 5. 18)

- 유기농산물과 전환기농산물의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을 단순하게 정하도록 개선권고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고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삭제하도록 수정,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7)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HACCP 적용작업장(도축장, 가공장)은 위생관리기준, 작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훈련,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 축산물의 회수 등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록을 2년 간 보관토록 하며, 감독기관은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HACCP팀 구성원중 팀장을 포함한 최소한 2인 이상은 HACCP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HACCP의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심사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또는 연구기관 단체 및 HACCP전문가·관계공무원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심사결과(2001. 5. 25)

- 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훈련 관련기록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기록을 유지하도록 수정
-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관련한 사항의 기록·보관 의무화는 삭제하도록 수정
- 감독기관의 기록사항 열람은 “작업장에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원은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로 수정
- HACCP 적용작업장의 팀구성원 2인 이상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는 삭제
- 심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특정단체명은 삭제
-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최초 2년 간은 6개월에 1회씩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8) 농지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농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 농지·처분의무 발생사유·처분의무기간·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안의 설치제한 시설로서, 건축법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과 숙박시설·위락시설(카지노, 무도장, 특수목욕장 등)을 추가함

심사결과(2001. 6. 1)

- 원안의결
-

(9) 식물방역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식물방역관은 규제병해충 등이 붙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물품 등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토지·저장소·창고 등 장소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금지품 중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금지품에 대하여 수입방법·수입 후의 관리방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조건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내륙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역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내륙경유물품 등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요구한 안전조치 이행 및 차량 외부의 규제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 내륙경유물품 등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공·항만까지의 경유기간은 내륙경유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 내륙경유물품 운송업자는 천재지변·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발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내륙경유물품 등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이용되거나 양도·대여 및 전시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식물방역관은 내륙경유물품이 경유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등에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반송 또는 즉시 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6. 8)

- 식물방역관이 규제병해충 또는 수입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대상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 수입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을 허용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 내륙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등에게 농림부장관이 요구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의 내용을 하위법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0)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현행 종자기술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버섯종균 기능사 외에 종자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능사를 추가함
-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에 의한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보증표시 항목에 「유전자변형여부」 표시를 의무화함
 -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에 「유전자변형여부」 표시를 의무화함

심사결과(2001. 6. 8)

- 원안의결

(11) 농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맹독성·고독성농약, 맹·고독성 이외의 농약, 가정 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기 위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 농약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추도록 함
-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맹·고독성 이외의 농약을 판매하기 위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구비한 창고를 갖추도록 함
 - 사람의 거주 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할 것
 -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 콘크리트 바닥에 깔판시설이 있을 것
-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6. 22)

- 창고의 시설기준 중 “콘크리트 바닥에 깔판시설이 있을 것”은 농약제조업의 보관창고시설과 동일하게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2)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현행 수입신고대상 사료품목(145개)에 광우병(BSE) 및 변형 야콥병(vCJD)병의 발생·전이 개연성이 있는 육·골분 등 44개 사료의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수입 신고 의무 강화

심사결과(2001. 6. 29)

- 원안의결

(1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축산관련단체를 대한수의사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으로 정함
-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주사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주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규정함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캐슬병·부루세라병·결핵병 및 돼지오제스키병
 - 기타 농림부장관이 가축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도축장 출하시 검사증명서 또는 주사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낙인·천공·이표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별 검사증명서 또는 주사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7. 6)

- 원안의결

(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에 대하여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에 당해 농지는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

는 농지임을 명시하도록 함

-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매입한 후 8년 이내에 전매하는 경우, 그 농지의 매수인에게 공사가 농지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사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함

심사결과(2001. 7. 20)

- 1998년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의 전매금지제도를 당사자간(공사와 매수자)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폐지(규제개혁위원회)한 규제를 다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의결

(15) 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광우병(BSE : 소해면상뇌증)의 전파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멸균기준을 정함
 - 소해면상뇌증 관련 지정검역물의 멸균기준 : 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써 3기압하에서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처리 한 것
-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에 대한 살균기준을 정함
 - 식용 : 132℃ 이상에서 1초 이상 처리한 것, 72℃ 이상에서 15초 이상 처리한 것
- 광우병(BSE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 고시에의 기준에 의하여 제조된 것은 지정검역물에서 제외함

심사결과(2001. 7. 20)

-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BSE관련 물품은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15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삭제
- “품목별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의하여 제조 또는 처리된 것은 지정 검역물에서 제외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6)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축산물가공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표시는 활자 크기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연·월·일은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하도록 함
- 조제우유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함
- 방사선조사 축산물에 대하여는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연·월·일, 조사처리된 축산물 등을 표시토록 함

심사결과(2001. 8. 10)

- 원안의결

(17)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2)

- 사료 중 남은 음식물사료 및 미량광물질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안전관리인 고용을 의무화함
-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규칙안 제8조)
 - 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약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축산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외국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료안전관리인에 대하여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토록 함
-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대상 시설에 삶는시설 또는 가열시설을 추가함
- 사료의 수입신고시 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 증명서, 한글표시된 포장지 외에 “기타 동물 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 농림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능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사료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대상

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 남은 음식물사료의 가열시설의 기준을 현행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시설」에서 「10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체화함
-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시기 중 유해물질은 6월마다 1회 이상, 잔류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은 연간 1회 이상 검사토록 의무화함
- 사료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장부를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2001. 8. 24)

- 사료검정기관 검정능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구체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내용이므로 사료검정기관이나 검정인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
-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사료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에 반하므로 삭제
 -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는 법 제24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농림부장관이 판단하여 제조시설을 추가 설치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별표1, 별표2, 별표3 후단의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라 집행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 새로운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제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사료제조업체의 ‘등록제품배합율표’와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기록서’ 이외는 삭제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8) 축산물가공처리법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 축산물의 범위(현재 : 식육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에 식용란을 추가함
-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종업원

의 작업시 적용하도록 하고 동규정 위반시 현행 과태료를 부과(30만원)하던 것을 허가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강화함

- 도축업의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 처리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동규정 위반시 현행 과태료를 부과(30만원)하던 것을 허가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강화함
- 가축 이외의 동물로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조 등에 대한 도살 처리와 그 생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입고기 구분판매제가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2001. 9)됨에 따라 식육은 축종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식육의 종류별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기록하여 1년 간 보관토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 1개월)할 수 있도록 강화함

심사결과(2001. 9. 7)

- 원안의결

(19)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광우병 등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반추동물의 종류와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성 사료 등을 고시함
 - 광우병 등 대상동물
 - 광우병 관련 동물 : 소·사슴·산양·면양 등 반추동물
 - 축산법에 의한 가축,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중에서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 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동물 등의 부산물 및 남은음식물
 - 동물성단백질류 · 동물성무기물 · 남은음식물사료
 - 동물성단백질류 또는 동물성무기물이 포함된 배합사료
-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가공기준을 명시
 -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단, 돼지사료 또는 사료원료의 경우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심사결과(2001. 9. 28)

• 원안의결

(20)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검사대상별 검사주기 및 기간을 정함
 - 외부에서 입식하는 돼지 : 15일 이내
 - 과거 1년 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발생농장 3km 이내) 또는 발생 의심이 있는 지역의 모든, 웅돈은 반기별 1회 이상
 - 시·도지사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돼지의 소유자 등에게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게 함
 - 종돈업(정액등처리업·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으로 신고(등록)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 시장·군수는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돼지에 대하여 관할지역 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종돈장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방접종내역을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예방접종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1년 간 보관토록 의무화함
 - 시장·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게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를 하도록 함
 -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
 -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난 돼지 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도태 권고. 다만, 비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 양성률이 10% 이하일 경우 전두수 살처분
 - 항체 양성률이 30% 이상일 경우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권고 기한 후 이행여부 확인
 -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돼지 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지정도축장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출하 도축장은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함
-

- 종돈장·돼지정액등처리업소·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때에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해당업소의 신고·등록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도태권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농장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도태대상 돼지에 대하여 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생농장의 세부내역을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통보하여 축산관련 잡지나 전문지에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정함
-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 또는 후보돈은 생후 18주 이상인 것으로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0. 12)

-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돼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 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이므로 삭제
- 종돈장의 예방접종내역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이므로 삭제
- 종돈장·돼지정액등처리업소 등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미근거 규제이므로 「등록의 취소 조치」는 삭제
- 도태대상 돼지에 대하여 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수정
- 오제스키병 발생지역 안의 모든 돼지가 도태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증상이 없는 돼지는 도태권고”는 “...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는 도태권고”로 수정
- “...양성률이 30% 이상일 경우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는 “...양성률이 30% 이상일 경우 번식용 돼지의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로 수정
-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및 종돈장 등을 잡지 또는 전문지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미근거규제이므로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21) 수입식물의검역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입금지품인 흙이 고철 수입시 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함
 - 수출국으로 반송
 -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수정안)
 -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슬래그를 투입
 - 별도 소각시설에서 소각
 - MB혼증소독 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 MB혼증소독기준: 15℃ 이상, 약량 240(g/m²), 24시간, 흙의 두께는 30cm² 이하 (수정안)
 - 기타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심사결과(2001. 11. 2)

- 매립방법은 MB혼증소독 후 식물검역소장의 방역조치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은 폐기물지정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립처리토록 수정하고 기타 폐기 방법은 원안의결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농협중앙회는 조합예금자가 당해 조합에 보증채무나 피담보채권이 있을 경우, 동 보증채무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9)

- 원안의결

(23)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지침(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
 - 저장방법은 밀폐용기·기밀용기·밀봉용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고 제품 보관조건(온도 명기) 병기 의무화
 - 제품의 유효기간 설정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도록 함

-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의 사용기간을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9)

- 원안의결

(24) 친환경농자재에대한품질규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그 자재의 사용가능조건에 대한 품질규격을 정함
 - 키토산(액상 입상)의 품질기준
 - 함유키토산의 점도(CPS) : 1 이상 100 이하
 - 함유키토산의 최소량 : 키토산 1.0% 이상
 -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 : 크롬 납 등 6개 성분, 비료의 품질검사기준 이하
 - 보존기간 : 2년
 - 키토산(액상·입상)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 점도 측정법, 함량 측정법 등

심사결과(2001. 11. 16)

- 원안의결

(25)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사대상 가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사를 실시함
 - 결핵병 :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결핵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등
 - 부루세라병 :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양성 또는 의양성의 원유를 납유한 젖소, 부루세라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등
- 결핵병 재검사 의심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부터 90일 사이 재검사 실시, 역학상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는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역학상 부루세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부루세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관할 연구소장에게 예방접종신고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파는 때에는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검사 증명서를 인계하도록 함
- 자체적으로 부루세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를 파는 때에는 소유자 등이 스스로 작성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16)

- 부루세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예방접종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예방접종신고서를 시·도 방역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26)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 돼지를 금지지역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11. 23)

- 원안의결

(27) 수출용목재포장재열처리규정(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함
 - 지붕, 벽체, 바닥의 재료 : 단열판넬,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제 바닥 등 내부열기 차단 재료, 온도센서, 고열 발생장치
-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여 기록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열처리 작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검사확인된 열처리시설의 상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열처리시설자는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식물검역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12. 21)

- 열처리시설의 인증, 인증신청, 인증서의 발급,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및
-

- 열처리시설자의 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 중 “인증”, “인증서” 및 “승인”은 “검사”, “검사증명서” 및 “확인”으로 수정
- 열처리시설자에게 현황판 게시, 책임자 지정, 열처리 표지 등록의무 및 열처리 시설 인증의 유효기간(2년)은 삭제
 - “열처리시설자는 …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제5조에 의거 열처리시설에 대하여 확인받은 자는 …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 “열처리시설의 인증의 취소”는 “검사증명(열처리증명)의 중단”으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2. 산림청

가.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산지관리법, 산림법시행령 등 5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3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산림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지역조항을 신설하고 조합원수는 2,000인 이상, 출자금은 2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조합 출자금은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
-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출연금의 범위를 15/10,000 이내로 규정함
-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제한구역에 지방도 연변 500m 이내의 가시지역으로 강화
-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의 경우, 허가신청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현재 평가대상 : 건축·공예용 1ha 이상, 쇄골재용 2ha 이상)
-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는 행위 종료 또는 중단시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함
- 수목원 등록을 한 자는 연간 산림청장이 정한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도록 함

-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기타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 명승지, 유적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벌채허가를 제한
-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원칙 외에 회원사업과 직접 결합하여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을 금지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요

- 2001년도에는 산지관리법,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5개의 산림청 소관 법령 신설 4건, 강화 16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1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림청의 2001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3개임

(1)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6)

-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대상에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지역을 추가함
- 대체조립비 및 전용부담금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함
- 산림형질변경기준을 정함
 - 경사도가 45도이하, 해당 시·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이 150% 이하, 구역 안에 수목의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인 경우

- 채석허가기준을 정함
 - 채석허가 면적이 3만㎡ 이상, 평균 경사도가 45° 이하, 해당 시·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채석 해당 구역안에 평균 나이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면적이 75% 이하인 경우
-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재해예방 및 경관유지와 부실복구 방지를 위하여 복구설계서가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복구공사비의 4/100로 하고 하자보수 담보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담보기간중에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시는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이 대집행 복구하고 그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4. 6)

- 산림형질변경 허가의 제외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를 “환경성 검토를 받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2)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미등록 1)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21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로서
 -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림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심사결과(2001. 7. 6)

- 원안의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수목원 등록요건을 정함
 - 전문관리인 1인 이상 배치
 - 교목류, 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000종류 이상의 수목유전자원 확보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 등록 수목원의 개원 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이며, 1일 개방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함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은 아래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 국립수목원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립수목원의 천연림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장이 요청한 지역
- 심사결과(2001. 8. 24)
- 원안의결

(4) 산지관리법

심사요청 및 규제내용(신설 2, 강화 9)

- 보전임지 중 공익용지의 범위에 산지전용제한지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을 추가함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대상에 주요 산맥의 능선부를 추가함
- 현행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 이외에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여부, 인근 산림의 보전 경영에 지장 초래 여부, 산림의 수원함양·수질보전기능 저해 여부,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에 장애 여부 등을 추가함
- 일정규모 이상의 보존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림전용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산지전용 또는 채석, 토사채취 복구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광업법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공·사유림) 또는 토석매매계약(국유림)을 체결을 하도록 확대함(현재 장식·규석에 한정된 것을 66개 광물질로 확대)

-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지역 등에 대하여 목적사업도중 장기간의 사업중단이나 훼손지 방치 등으로 인한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조립·사방 등 응급복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또는 채석·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기관에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를 시행한 후 복구된 구역에서 계속 형질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 복구로 감소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산지개발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에 따른 주민생활 피해, 재해발생, 산지 전용지의 방치 등에 대한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1. 10. 19)

- 보전산지의 지정대상 중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은 삭제
- 산림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으로서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정
- 산지전용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갯내채굴(시추시설 포함)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수정
-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 타당성검토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를 받은 경우와 채광부대시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 사업중단 등으로 방치된 산지전용지역 등의 산림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한 응급조치명령 및 허가기관의 대집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광산개발사업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5)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보전임지 편입비율 기준을 설정함
 -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은 사업부지 총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과 시·군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등은 적용 예외로 함
- 보전임지 중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은 편입면적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은 2ha 이상 집단화된 산림으로서 그 구역 내의 입목축적이 당해 시·군·구의 평균축적의 150% 이상인 산림
- 임업진흥권역은 사업계획지안 또는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한 경우, 편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할 수 없도록 함.
- 스키장은 편입국유림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50% 이하로서 50ha 이하, 경사 30도 이상이 70% 이상 또는 표고 500m 이상이 70% 이상일 때에만 편입 가능하도록 함
- 현재 골프장·스키장·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것을 집단묘지·산업단지·택지를 추가함
 - 요존국유림은 원칙적으로 편입 금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편입면적 3ha 이하는 가능)
 -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 미만, 20ha 이하)은 사업계획지안 또는 진입로 개설예정지에 위치하여 불가피한 때, 연접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않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편입 가능
(다만, 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면적의 30% 미만, 30ha 이하 편입 가능)

심사결과(2001. 12. 21)

- 원안의결

제14절 _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집필자 : 김영관 서기관(Tel. 3703-2194, young7@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1. 과학기술부

가. 지난 4년 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5개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9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 · 강화규제

-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방사선 취급 면허지를 의무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 방사선 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토록 업무대행자 등록제도 신설
 -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도 사전확인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종전의 시설검사를 대신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 대덕연구단지의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입주승인이 취소된 후 부지양도명령의 불이행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당해 부지 공시지가의 20/100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제강화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과된 원자로의 운전조건 9가지 외에 원자로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년 약물복용,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추가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허가기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도와 안전관리규정 승인제도를 대체하되 허가기준 중 인력기준을 추가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기술사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령 등 13개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16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 중 5건에 대하여 철회, 14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2001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8건임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내용심사 1)

-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과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과기부장관은 교류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를 권고하되, 교류되는 과학기술인의 급여조건 등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준용토록 규정
- 과기부장관은 남북한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문화재단 등의 신청을 받아 협력사업 및 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

- 과기부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
-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2001. 5. 11)

- 과학기술인 상호교류의 경우 교류당사자가 원하면 원소속기관보다 낮은 보수에도 교류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교류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하되, 원자력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원자력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8, 내용심사 3)

- 발전용원자로 검사시 합격기준을 기술기준 외에 기술능력·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등 허가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강화
-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 중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 착공시 검사”를 모든 원자로시설 공사 착공시에 실시하도록 강화
-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기준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요건으로 장비·인력 기준을 추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사용·이동·판매 허가요건 중 인력기준 강화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이동·판매·업무 대행자가 받는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을 강화
- 방사선 작업종사자 외에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강화
-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어 공기 중 및 수중농도가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한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작업종사자 등이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피난경고 등 조치 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화
- 표준설계인가제도 실시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인가 제외대상을 규정

-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평가 시기·내용 규정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의 신청방법·기준 규정
심사결과(2001. 5. 18)
- 발전용 원자로 검사시 합격기준을 기술기준·기술능력·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로 한정하도록 조정
-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공사별 공정·시기를 고시 등으로 마련토록 조정
-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 인력요건 중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면허 취득자 외에 방사선관리기술사를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되, 정기교육훈련 등으로 대체 선택이 가능토록 조정
- 방사선물질이 누설되어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작업종사자 등이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과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은 삭제권고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3)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등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시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액과 보상계약액의 구체적 액수를 상향조정

심사결과(2001. 5. 25)

- 원안의결

(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신기술의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리사용 하는 것을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승계·사용토록 하며 신기술 인정기간 연장은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회에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을 수출할 경우 미리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

전략기술 수출요건 강화

- 국산 신기술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과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대상·인정기간 등을 규정

심사결과(2001. 6. 22)

- 신기술 권리의 양도·판매·대리 사용을 제한하고 별도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의무화가 아닌 범위 내에서 양수자가 신청하면 신기술인정서를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조정
- 전략기술 수출시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 대신 과기부장관이 신청접수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조정
- 인정받은 신기술을 취소할 경우 소명기회를 1회 더 부여하도록 조정

(5) 원자력법시행규칙 등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7, 내용심사 2)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서류 중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강화
- 핵원료물질 사용자의 단순신고로 허가성격의 신고로 변경하고 신고시 필요서류를 첨부토록 강화
-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추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용자의 경우에도 방사성동위원소 취득·폐기 사항의 기록·비치의무 추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 사용자와 폐기물시설 등 건설 운영자의 경우 방사성물질·방사선발생장치 취득·판매현황 보고횟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등의 현황도 보고토록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용자의 경우에도 현황을 보고토록 강화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 미국의 “일반설계기준” 및 “IAEA 안전규제요건”을 반영하여 강화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

- 표준설계 인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
-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방사성물질 등에 대해 운반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대상 등을 규정

심사결과(2001. 6. 29)

- 핵원료물질 사용자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은 삭제권고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체교육훈련은 교육계획 수립만 실시하도록 조정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용자의 기록·비치의무 강화내용 삭제권고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와 폐기물시설 등 건설운영자의 보고의무 강화내용 삭제권고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강화내용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상위 법령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되 법체계상 가능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마련토록 권고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6) 기술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기술사로 하여금 근무처 등 필요사항을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

심사결과(2001. 8. 24)

- 삭제권고

(7)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 등의 사유 발생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비 사용방법을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형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 등이 무단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확인점검
-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며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점검 실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이 참여한 과제 연구개발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없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체결 불가

심사결과(2001. 9. 14)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요건 중 하나인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회피 또는 해태한 경우”는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이므로 제재대상에 참여기업을 포함토록 조정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외규정을 추가하도록 조정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없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예고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조정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정보통신부

가. 지난 4년 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8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2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통신·국방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된 업무를 폐지하거나, 정지·변경할 경우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시설은 취약점 분석을 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 센터 업무를 정지·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함
-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여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함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함과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처리·저장·유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함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도록 함

나. 2001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1년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7건, 내용심사 18건 등 총 2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중 8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20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2001년도 총 신설 규제 수는 3개임

(1)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내용심사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일반인과 직업인의 전신노출에 대한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자속밀도 및 전력밀도 등의 전자파 강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부 노출로 인한 전자파 흡수율의 최대값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심사결과(2001. 2. 9)

- 전기설비(60Hz)에 대한 기준은 산자부가 전기사업법에 의해 이미 고시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부의 고시(안)에서 제외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규제는 정보통신부의 본 고시(안)에 따르도록 하되, 추후 산업자원부가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여 별도 마련할 경우 재협의토록 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신설 1, 강화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고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방법·조건·이용료 등을 공시하고, 송신인이 전화번호 송출을 거부하는 경우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 요청 시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선납비용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과 신규 보험보증증서 등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2001. 3. 9)

- 송신인의 전화번호 제공의무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를 구체화하도록 함
- 별정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변경신고시 신규조문대비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3)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신설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용시설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을 공고하고, 정보이용시설의 운영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3. 30)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4)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강화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업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집중통신설 설치 의무와 면적확보 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업무용 건축물 중 층별 전용면적이 500㎡ 미만인 층구 내 통신설 면적 확보 기준을 규정함

심사결과(2001. 4. 20)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익성 의무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함

심사결과(2001. 4. 20)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6)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2)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도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정하고,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공사를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와 공동계약하고, 관로·인공·수공 등 정보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사업자만이 시공하도록 함

심사결과(2001. 5. 18)

-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외에 단독으로도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관로·인공·수공 등의 건설업자 시공 제한 규정(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7)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 7)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정보공유·분석센터의 납입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해당 인력에 대한 학력·경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의무 등을 정함
-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련한 지정평가기준을 근거로 소관 시설의 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는 구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 센터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함
- 정보보호 전문업체는 대표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시에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시에 관련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함
- 정보보호 전문업체는 업무의 양도·합병 시에 계약서사본, 정관, 법인등기부등

본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2주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체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
- 정보보호 전문업체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관련 자료를 폐기할 때,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기관이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심사결과(2001. 6. 1)

-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현장 실사 횟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점검 실명제를 실시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신설 1, 내용심사 5)

심사요청 규제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업 양도·합병·상속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공지하고,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대신에 2 이상의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함
- 정보제공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19세 미만의 이용 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함
- 영상 또는 음향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자는 방송법 제2조 이외의 사업자라고 하고, 동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함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문구·본문 주요 내용을 표시하고, 본문란에 수신거부 의사표시방법·전송자

의 명칭 및 연락처를 각각 명시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자로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운영자, 여행업·호텔업자, 항공운송 사업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다단계 판매업자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2001. 6. 8)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9) 전기통신기본법(강화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심사결과(2001. 8. 24)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10) 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고시(내용심사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컨설팅 수행실적의 인정요건, 정보보호 관리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1. 8. 24)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11)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내용심사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에는 출입 통제장치·각종 전원장비 보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고, 상근 경비인력·관리책임자 선정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심사결과(2001. 9. 14)

- 정보통신부 원안의결

(12)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강화 1)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정보통신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생산·수입을 중지하고, 2차 위반시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을 하도록 하고, 인증표시를 하지 않을 때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생산·수입중지하고, 2차 위반시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 인증취소를 함

심사결과(2001. 12. 24)

- 정보통신기기가 기술기준에 1차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산·수입 중지명령뿐만 아니라 수거명령 조치까지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1차 미부착할 경우 생산·수입 중지명령하는 것을 삭제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13)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강화 2)

심사요청 규제내용

- 전파연구소장은 지정 후 2년마다, 이용자나 상호인증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절차 및 시험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시험기관을 출입·검사할 수 있고,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을 실시함
- 지정시험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3차 위반)나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3차 위반)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파연구소장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시험업무 전부 정지 1월, 2차 위반 시 시험업무 전부 정지 3월, 3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함

심사결과(2001. 12. 14)

- 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새로운 규제개혁 전략이 필요하다

정강정(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전 규제개혁 조정관)



규제개혁 4차년도인 200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개혁에 대한 다소의 저항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기득권이 약화되는 이익집단의 집요한 로비공세에 대하여 다소 자제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보여오던 정치권이 개혁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의 타당성을 수궁하면서 그런대로 순응해 오던 관료집단도 때맞추어 저항세력에 편승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규제혁파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누린 대기업들은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 개 남지 않은 신뢰성 규제마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티지연구소가 2001년 11월에 발행한 2002년도 경제자유도 종합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56개국 중 38위(2001년도 29위)로서 전년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규제개혁의 실패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기여한 역할을 극찬한 OECD 규제 개혁 평가보고서(Regulatory Reform in Korea 2000), 진입장벽 완화로 적게는 두세배 많게는 수십배로 늘어나고 있는 신설 기업체의 수는 무의미한 것인가?(예를 들면, 영화제작업을 예치금조건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한 후 1년만에 사업자수는 116개에서 901개로,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5%에서 46%로 늘어났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정부주도 개발시대를 거쳐오면서 누적되어 온

규제 중심의 법령체계를 개별 규제단위로 분류하고, 그 절반 수준(14,000건 → 7,200여건)을 감축한 총량 중심의 규제완화(경제규제 중심), 규제품질 개선(사회적 규제 중심)전략은 누가 무어라 해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권위주의 행정문화와 일선 집행관료(Operators)의 행태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개혁의 원칙을 고수한데 따른 반작용으로써 억제되어 온 저항의식이 때맞추어 돌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개혁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기존의 개혁원칙을 보완하는 새로운 개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1년 8월 기업규제 실태조사팀(정부, 경제, 5단체 합동)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등 행태적 요인(79.7%)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은 정책집행단계의 규제주체와 객체(집행관료, 기업, 일반국민)가 공감하며 개혁의 목적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즉, 제도개선과 행태변화를 병행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2001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2002년 초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간 「순응지향적 규제개혁 전략」이다. 현재 각 부처가 규제순응도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있는 이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4~5년 뒤에는 규제법령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으로 바뀌고 일선관료와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준에 공감하며 기대수준 이상의 준수율이 확보되는 선진 규제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 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제7장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2001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집필자 : 조광호 사무관(Tel. 3703-3935, cho117@opc.go.kr)

1. 추진배경

- 1998년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성과의 정확한 전달 및 홍보 필요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폐지, 완화, 존치)하여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품질을 제고
 -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폐지 또는 근거 마련
 -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고취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역신문·방송(유선), 반회보, 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국민 집중 홍보
-

2. 2001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 총 규제사무수 85,921건 중 규제정비 대상은 53,240건이며 이 중 99.7%인 53,072건의 규제정비
 - 자치단체 평균 정비목표 213건의 99.7%(212건)를 정비 완료

규제정비 현황

2001. 12. 31 현재

시도별		총 규제 사무수	정비 대상 사무수		추진 실적	
합계	계	85,921	53,240	62.0%	53,072	99.7%
	광역시	7,531	4,813	63.9%	4,767	99.0%
	기초	78,390	48,427	61.8%	48,305	99.7%
서울	광역시	1,114	834	74.9%	802	96.2%
	기초	7,556	5,376	71.2%	5,318	98.9%
부산	광역시	436	266	61.0%	258	97.0%
	기초	2,869	1,719	59.9%	1,712	99.6%
대구	광역시	407	239	58.7%	238	99.6%
	기초	1,310	858	65.5%	858	100.0%
인천	광역시	569	323	56.8%	323	100.0%
	기초	2,776	1,806	65.1%	1,777	98.4%
광주	광역시	503	270	53.7%	270	100.0%
	기초	1,282	912	71.1%	912	100.0%
대전	광역시	349	223	63.9%	223	100.0%
	기초	1,315	926	70.4%	926	100.0%
울산	광역시	474	339	71.5%	339	100.0%
	기초	1,142	664	58.1%	664	100.0%
경기	광역시	309	160	51.8%	159	99.4%
	기초	12,600	6,844	54.3%	6,836	99.9%
강원	광역시	412	251	60.9%	251	100.0%
	기초	6,722	4,448	66.2%	4,448	100.0%
충북	광역시	314	181	57.6%	181	100.0%
	기초	3,770	2,318	61.5%	2,318	100.0%

시도별		총 규제 사무수	정비 대상 사무수		추진 실적	
충남	광역	466	314	67.4%	314	100.0%
	기초	6,088	4,211	69.2%	4,211	100.0%
전북	광역	567	381	67.2%	381	100.0%
	기초	5,999	3,742	62.4%	3,742	100.0%
전남	광역	489	318	65.0%	318	100.0%
	기초	7,996	5,104	63.8%	5,104	100.0%
경북	광역	381	221	58.0%	221	100.0%
	기초	7,707	4,249	55.1%	4,229	99.5%

3. 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 중점사항

가. 잔존 규제의 지속적 발굴·정비

- 시·도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 과제 선정·관리
-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 잔존 규제 지속 발굴·정비
- 규제 총량 관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심사강화, 최대한 억제
- 조례·규칙상의 행정규제 이외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유사 행정규제 정비

나. 규제정비 및 이행실태 현지 확인·점검 강화

- 중앙 및 시·도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행정감사를 통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다. 규제개혁 추진체제의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지방규제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참여 기회 확대
-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로 주민의견 수렴 확대

라. 지방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및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규제개혁” 교육과정 개설,

교육과목 편성 · 운영

마. 규제관리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관리 사이트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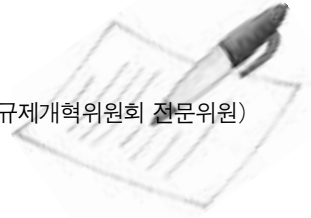
- 1단계로 검색 기능이 우수한 서울시 프로그램 시 · 도 보급
- 2단계로 중앙과 지방간 연계성이 강화된 규제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주민이용 활성화

바. 현장체감지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홍보 매체를 활용 홍보
- 민원처리시 지방규제개혁 홍보자료 제공, 규제 개선 내용을 직능단체 · 협회 등에 파급 홍보

이제는 시스템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이동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의 틀 속에서만 움직여 왔다.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에 근거도 없이 규제의 폐지를 권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경쟁과 창조에 의하여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구축에 있다면 현재와 같은 규제개혁은 그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라든가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의 대상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

정규제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그 동안의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이를 해결해 주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의사항 접수,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운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결과 개별규제의 관점에서 상당한 정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피규제자의 입장에 선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의 한 모습은 미리 만들어진 규제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움직이는 사후감시형 사회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지금의 규제개혁체제는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사후감시형 행정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 마련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 마련이란 정보공개 의무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원칙의 확립, 원칙위반자를 걸러낼 수 있는 행정적 감시체계의 정비 및 벌칙의 강화, 분쟁처리체계의 정비,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을 두루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 마련의 책임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정부부처와 국회, 사법부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부처나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제도적 정비는 해당부처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부처는 부처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규제를 풀겠노라는 입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부처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처에 맡겨서 어느 세월에 규제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건설업이나 전세버스, 상호신용금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자가 합의하에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가 후속적인 보완체계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비난받은 사례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보다 포괄적·계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와 이념을 명확히 규정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시장기능의 활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경쟁의 촉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을 짜고 규제뿐 아니라 행정조직, 예산, 세제, 보조금, 지방행정, 사법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개혁스케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개혁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정부부처에 맡겨서는 신속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야흐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제8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제1절 이행실태 점검개요

제2절 7차 이행실태 점검

제3절 8차 이행실태 점검개요



제철_ 이행실태 점검개요

*집필자 : 이기형 사무관(Tel. 3703-2156, victory31@opc.go.kr)

1.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가. 규제개혁 이행 실태 점검단 구성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조례,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개선된 규제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독려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1999. 4. 18)하였다.

나. 점검단 운영 및 활동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1999년 중 4회, 2000년에 2회, 2001년에 2회 등 총 8회에 걸쳐 14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구분	기간	점검반원	대상기관
1차	1999. 4. 19 - 4. 24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 서울(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남구, 부평구), 경기도(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2차	1999. 7. 5 - 7. 13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북구, 중구, 달성군), 대전(서구, 대덕구), 충남(공주시, 연기군), 전남(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경북(칠곡군)
3차	1999. 9. 13 - 9. 21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 부산(연제구, 중구, 기장군), 충북(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부산 동래소방서, 충북 충주소방서, 전북도 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서
4차	99. 11. 15 - 11. 23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동구, 서구, 광산구), 울산(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 광주세관, 울산세관, 동해세관, 포항세관
5차	2000. 4. 17 - 4. 25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서울시(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인천시(서구, 연수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6차	2000. 11. 20 - 11. 28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수성구, 달서구), 충북(청주시, 보은군) 전남(여수시, 나주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7차	2001. 5. 21 - 5. 30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중소기업청 ● 부산시, 해운대구, 충남, 아산시, 전북, 정읍시, 제주도, 제주시
8차	2001. 10. 8 - 10. 18 2001. 10. 29 - 11. 8	10명 (국조) 40명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자부, 건교부, 행정부, 문광부, 노동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교육부 ● 광주시(본청, 광산구), 충남(도청, 부여군), 부산시(본청, 연제, 동래구), 전북도청
계	연 68일	1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중앙행정기관, 26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기초자치단체, 소방 분야 12개 기관, 경찰 분야 8개 기관, 4개 세관 등 총 1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2. 점검결과

가. 점검실적

1999. 4월 이후 총 8회에 걸친 점검 결과 총 617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는 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규제와 규제 법정주의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와 함께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규제를 신설한다거나 규제 누락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형상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에 의한 폐지된 규제 운용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운용 및 조례개정지연 등 후속조치 미흡이 지적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소계	무심사 규제 신설	규제 누락 등	소계	폐지규제 계속 운영	법령 미근거규제	법정 외 서류 징구	후속조치 지연 등
617건	124	17	107	493	157	115	151	70

* 1차(68건), 2차(91건), 3차(110건), 4차(86건), 5차(57건), 6차(78건), 7차(127건), 8차는 현재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결과 통보 예정

나. 점검 후 조치결과

국무총리 지시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전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를 시달하여 지적 사항 및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였다.

〈국무총리 지시〉

- 지시 1999-10호 : 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이행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지시
- 지시 1999-17호 : 규제개혁추진 관련 법령 조속 정비 및 이행 철저 등에 관한 지시
- 지시 1999-25호 :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및 집행 등 철저한 후속조치

지시

- 지시 1999-31호 : 규제개혁 후속 조치 철저 이행 등 지시

〈 관련자 문책 〉

- 기관 경고 : 2건
- 중징계 및 경징계 : 3건 5명
- 훈계 및 주의 : 77건 111명

제2절_ 7차 이행실태 점검

1. 점검개요

가.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1) 일시 : 2001. 5. 21(월)~5. 30(수)
- (2) 대상기관 (16) : 중앙행정기관(8),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8)
 - 중앙행정기관 : 행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중소기업청
 -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기초자치단체 : 부산 해운대구, 충남 아산시, 전북 정읍시, 제주 제주시

나. 중점 점검사항

- 하위 규정 및 유사 행정 규제정비 추진 실태
 - 추진작업반 구성 여부 및 소관 분야별 규제 파악 실태 등
 - 폐지·개선된 규제의 집행 실태
-

- 부처 정비계획 및 핵심 과제에 대한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상황
-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 상황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이행여부 및 무심사 신설 규제 등

2. 점검결과

가. 총평

- 1999년도 이후 금회까지 7차에 걸친 지도 점검으로 규제개혁 후속 조치 및 이행 실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비가 지연되거나 미이행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일부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정비계획이 국회심의 유보 및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미이행된 사례가 있음
- 일부부처에서는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훈령·예규·공고·고시 등 하위규정을 제·개정하는 사례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및 첨부서류 과다 징구사례는 줄었으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서면심사 위주로 되고 있음
- 따라서 해당부처를 포함하여 전부처에 대하여
 - 연도별 정비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이행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였고, 훈령·예규 등 하위규정 제·개정시에도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주의 촉구
 - 해당 부처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추진 보완 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이행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점검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지적 건수	78	91	110	86	57	78	127

나. 주요 점검결과

- 규제정비계획 미이행

〈주요 사례〉

⇒ 1998년 규제정비계획에서 공사 일부의 하도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2001. 5. 21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 미정비

⇒ 1999년 등록 누락 규제정비계획에서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 중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나 2001. 5. 21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 정비 지연

- 고시·예규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규제 심사 미실시

- 하위 규정 제·개정시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 규제 심사를 미실시

- 폐지·개선된 규제의 계속 운영

- 의료기관의 관리 의사 선·해임 신고서 수리

⇒ 「안전의료법」 제40조의 폐지(2000. 1. 12)에 따라 의료기관의 관리 의사 선·해임 신고서가 폐지되었으나 ○○○정형외과 등 2건의 사례에서 선·해임 신고서를 수리

- 관리약사 승인신청서 수리

⇒ 「약사법」 제19조의 폐지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2000. 2~9월까지 총 4건의 약국관리자 승인 신청서를 수리

-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및 과다 서류 징구

⇒ 「지방도로은행제한차량단속운용규정」(행자부 훈령)의 개정(1999. 12. 30)시 국도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차량단속요령」(건설교통부 훈령)과 동일하게 개정 하면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차량 운행 허가시 첨부서류(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운행 허가 조건 중 “승인을 받은 후 호송원의 입회하에 통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운용

⇒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2001. 11월에 신청된 공익사단법인 설립허가건에 대하여 이 중 제7호의 “수지 예산서”를 신청인이 제출하였음에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토록 보완 요구하여 민

원 처리

- 조례 정비 등 후속 조치 지연
 -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정비 지연
- ⇒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2000. 1. 28)에 따라 관련 조례인 상기 조례의 제6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해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미개정하여 부적합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운용

다. 기관별 지적사항: 16개 기관 127건 지적

〈 기관별 〉

- 중앙행정기관 : 88건

기 관	행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중기청
지적 건수	5	1	3	13	1	5	56	4

- 광역자치단체 : 22건

기 관	부산 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적 건수	3	4	8	7

- 기초자치단체 : 17건

기 관	부산 해운대구	아산시	정읍시	제주시
지적 건수	5	4	8	

〈 유형별 〉

유형	폐지 개선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과다 서류 징구	미등록 규제 운영	조례 정비 등 후속 조치 지연	기 타
건수	8	12	12	5	73	17

라. 분야별 점검결과

(1) 폐지·개선된 규제의 계속 운영

- 중앙정부의 경우 규제개혁 권고사항에 대해 미반영인 경우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종전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음

〈 주요 지적 사례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기준고시」 규제 심사시 동 제정안에 대해 비파괴시험 중 탱크 밀판 용접부의 자기탐사시험방법은 2000년 소방법령 체계 개편시 KS규정의 진공시험, API 규정의 누설시험을 도입하여 피검사자가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권고 사항을 미이행
-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1999. 12. 9일부터 구비서류에서 삭제되었음에도 2000. 11월 신청된 비영리사단법인설립 허가건에 대하여 이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여 민원처리

(2)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및 과다 서류 징구

- 법령에 근거없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반려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 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주요 지적 사례〉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2 “석유판매업 등록 요건”에 의하면 시·도 지사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등록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산업자원부는 「시·도의주유소등록요건고시제정및운용요령지침(통상산업부 석수 57234-352호: 1997. 12. 16) 5. 시·도의 주유소 등록 요건 고시제정 및 운용 요령 “라. 기타 지역 실정”에서 “시도지사는 주유소의 최소·최대 면적 기준(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되게 법령 미근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처리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 양수 신고 첨부 서류는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양수·양도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한 서류 등임에도 2001. 1. 12일 온양 그랜드호텔의 관광사업 양수신고를 수리하면서, 첨부서류로 사용 인감 신청,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징구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으로 서류를 징구

(3) 정비계획미이행 및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등 기타

- 중앙부처에서는 1998년도 정비계획에 따라 즉시 정비되어야 할 법령 제개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정비에 따른 조례·규칙 등의 하위 규정의 정비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주요 지적 사례〉

-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4)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2001. 5. 21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 미정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정에 따른 전북도내 14개 시·군조례의 제정 지연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의무가 건축비의 1% 이상에서 0.5~0.7%로 완화하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개정 전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2000. 7. 1)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000. 10. 23)가 개정되었음에도 도내 14개 시·군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고 폐지되어야 할 도 조례가 존치되고 있음

제3절_ 8차 이행실태 점검

1. 점검개요

가. 점검기관 및 대상기관

- (1) 일시 : 2001. 10. 8(월)~10. 18(목), 2001. 10. 29(월)~11. 8(목)
- (2) 대상 기관 (18) : 중앙부처(10), 광역자치단체(4) 및 기초자치단체(4)
- 중앙행정기관 :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문광부, 노동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교육부
 - 광역자치단체 :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부산시
 -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산구), 충남(부여군), 부산(연제, 동래구)
- * 감사원과 합동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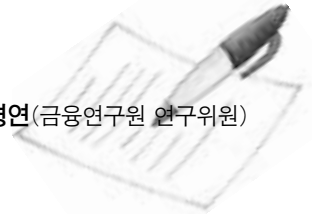
나. 중점 점검사항

- 규제개혁 추진 체계의 정상적 작동 여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
-

-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의 이행 실태
 - 폐지·완화된 규제를 집행 부서에서 종전 관행대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 복합 민원(ONE STOP) 등 형식적인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공무원이 구두로 민원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접촉하며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운용 여부
 - 이익단체 등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규제개혁 내용의 변질 여부
- 기 타
 -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협회, 단체 등의 규제개혁 실태
 - 규제완화에 따른 홍보, 교육 실태
 - 규제개혁 모범 사례 발굴 전파 실태
 - 이익단체 등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규제개혁 내용의 변질 여부 등

금융규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김병연(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성과를 평가한다면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규제가 자동 폐기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양적 성과에 비해서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및 금융업 진입 제한과 같은 핵심적 규제의 정비에 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핵심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고유의 정책수행이 차질을 받거나 금융시장 안정의 근간이 위협받는 것이라며 지엽적인 개선수준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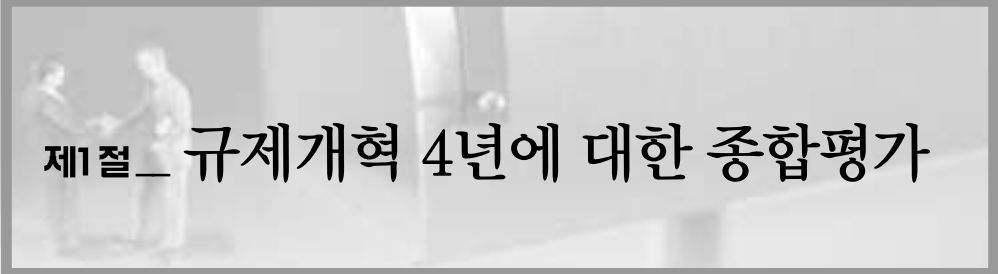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그 간 정부가 금융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제 및 사회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서 중첩적이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향후 금융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규제의 목적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화 정책적, 자금 배분적 및 경쟁 제한적 규제와 같은 비시장 친화적 규제는 가급적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그 대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규제는 존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있어서도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에, 그리고 공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9장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규제개혁 4년에 대한 종합평가

제2절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3절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평가



제1절_ 규제개혁 4년에 대한 종합평가

*집필자 : 김도훈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규제연구회 회장)

1. 들어가는 말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이렇게 규제개혁이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된 배경으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 닥쳐온 외환 및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이른바 IMF 관리체제라는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 내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IMF 관리체제에서 부각되었던 4대 개혁 과제들 즉, 금융구조 개편, 기업구조 조정, 노동시장의 개혁 및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요된 성격으로 추진되었던 데 비해서, 규제개혁의 경우는 오히려 선진화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국민의 정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몇 가지 중요한 규제개혁의 특징, 즉,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1년 내에 규제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식의 추진방식은 각 중앙 행정기관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쿼터를 채우려고 한편으로는 정책 추진에 가장 영향이 적은 규제들부터 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소극적 자세를 유발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쿼터를 채우려다 보니 규제 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짧은 시간에 강도 높게 규제의 정비 작업을 추진한 결과 그 이후에 규제개혁 추진의 강력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 발간된 OECD의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나아가 국내의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그 추진 결과가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 행정 문화의 변화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걸맞게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의 입안,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규제를 운용하는 선진 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개혁 및 규제의 개선을 통해 향후의 바람직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정부 4년 간의 규제개혁 추진 주요 실적 및 성과

가.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국민의 정부 4년 간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규제의 총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 1차 연도에 바로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당시까지 파악되었던 11,125건의 총 규제 중에서 48.8%에 이르는 5,430

건을 폐지하였고 21.7%의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9.5%의 규제만 그대로 존치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 이면에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진 결과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직속하에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추진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OECD의 한국 규제개혁 보고서에도 높이 평가되었고, 국내의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1999년에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 결과 향후 5년 간 국민 비용 절감 효과가 18조원 (1997년 GDP의 4.4%), 정부 비용 절감 효과 6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 것도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첫 해의 획기적인 규제 정비 조치에 이어 1999년에도 당시의 전체 규제 6,811건 중 503건을 추가적으로 폐지하고 570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서 2000년도부터는 법령에 의한 규제 이외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체감 효과가 매우 큰 하위 법령이나 유사 행정규제들을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심사제도의 확립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전체적으로 조사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기존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기존 규제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새롭게 신설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이러한 규제들을 심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할애하여 왔다. 규제의 심사제도는 1998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사전 심사제도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규제영향 분석서를 첨부하고 또한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심사 결과를 다시 심사하여 규제를 바꾸는 것을 철회하게 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 3,621건의 심사 대상 규제 중 8.5%인 338건에 대하여 규제의 변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였고, 24.9%인 902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체계의 확립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이 이전의 정부와 다른 점은 그 획기적인 추진 방식 이외에도 처음부터 규제개혁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은 주로 민간자문기구에 의해 추진되었던 데 비해서, 국민의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정한 후에 출발하였다. 이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였다든지, 공동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였고,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규제개혁 조정관실을 설치하여 추진하였다는 점 등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라.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개혁 작업

규제의 전수를 조사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제도를 확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래 전부터 기업활동을 가로막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이른바 핵심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규제개혁의 본격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에 착안하여 규제개혁 추진 첫 해부터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회생에 시급한 과제 및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중복 규제들을 대상으로 “중점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1998년에는 주택건설산업 관련 규제 등 37개 분야, 1999년에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 등 33개 분야, 2000년에는 의료보험 관련 규제 등 56개 분야, 2001년에는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마. 상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분야규제개혁 작업 추진

2000년에 이르러 당시까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이 규제의 개선,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즉, 향후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상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그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의 정비”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첫 해인 2000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분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분야,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분야 등 4대 분야 총 81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고, 2001년에는 제 2단계로서 총 29개의 추가 과제를 발굴 추진한 바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이른바 “찾아가는 규제개혁”의 경우도 이러한 상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즉, 2001년부터 경제활동의 부진이 눈에 띄게 드러남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5단체 등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합동 기업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애로의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바. 규제개선 및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각종 노력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우선 규제를 개선하는 한 방편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상황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간 총 7,049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에서 기존

규제 정비 및 핵심 과제에 반영된 내용은 11.4%인 807건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규제 개혁 제안이 직접 규제개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이어진 비율이 낮았던 것은 개인적인 민원 사항 및 편의 주장 등이 대종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는 행정 규제의 등록·공표 제도가 주목을 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 사무를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일반국민들 모두가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들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 수준에서 변화된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이행 실태 점검단을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활동하게 한 점도 주목을 끌 만하다.

3. 아쉬운 점

국민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제는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가. 규제를 정비 대상으로 보는 시각우세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도 과거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모두 정비하는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기존 규제를 모두 재점검하여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초기 규제개혁 접근방식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그 이후 이러한 양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핵심과제

중심의 규제개혁 혹은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등의 중점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우세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사이에는 일종의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가 상정되게 되었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측과 규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협조적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모든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규제들의 질을 개선하고 그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방향을 좋은 질의 규제를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 위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규제의 작성,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규제개혁을 위한 협조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확보 미흡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규제들에 대한 심사제도의 핵심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규제개혁의 선진국들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및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에 대한 분석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의 영향분석을 행하고 동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에 따라 대체로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물론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규제의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다보니 규제의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는 경향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이 영향분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신설 강화규제의 심사시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까지

규제심사를 행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심사방식은 규제개혁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껴가고 있다. 더구나 보통 전문성이 해당 중앙행정기관보다는 떨어지는 점을 인정한다면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까지 심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영향분석은 동 규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영향 등에 중점을 맞추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하는 규제의 신설, 강화의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규제의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향은 중앙행정기관들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심사제도의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 의원입법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다. 산업별 혹은 시장별 규제개혁 추진방식 결여

우리 나라에 앞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규제개혁, 그 중에서도 규제완화의 중점적인 대상은 몇몇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된 바 있다. 그 결과 많은 경우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산업에서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이 인하되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절차적인 면에서의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나타나면서 산업별 혹은 시장별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몇몇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산업 및 시장의 규제들을 정비하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노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한 우리 나라 기업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주요 산업 및 시장에서 국내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라.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OECD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피규제자들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각종 부패의 방지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의 투명성 제고는 규제의 신설·강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나아가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의 투명성 제고 노력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공표 의무에서도 나타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집행과정의 대외개방(예: 서울시의 OPEN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의 신설·강화 단계에서의 이해 관계인들과의 정책자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며, 규제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마. 규제개혁 담당인력의 부족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도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무국에 배치되어 있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는 각종 의안을 사전 심사하고 나아가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을 담당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 심의 결과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수로서는 지금까지 하여 왔던 기존 규제의 재정비 및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을 담당 업무의 포괄성 확대, 전문위원 초빙 등으로 해결해 왔으나, 앞으로 규제개혁의 업무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의 사전 대화, 교육 위주로 바뀌어 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4. 결론 :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

앞으로도 경제·사회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게 되고 국민들의 욕구가 바뀔에 따라 정부도 경제·사회 정책을 바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바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규제들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규제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동 규제들이 기업 활동 및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및 영향, 나아가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향후 규제개혁은 좋은 질의 규제를 확보·유지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의 제안자 및 집행 담당자들과 규제개혁 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채널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규제의 제안자 및 집행 담당자들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에 잘 명기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서의 대외 공개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개진의 기회 제공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제 우리 나라도 본격적으로 각 산업별, 시장별 경쟁여건을 점검하고 그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나아가 새롭게 민영화된 시장의 경쟁여건을 담당하게 될 이른바 독립 규제기관들(예: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신설·강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외국 이해관계인들 포함)들과의 협의 체계의 확립 그리고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로의 확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향후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예견하고 이러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시작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강구해 볼 만하다.

제2절_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집필자 : 이창기 한국은행 차장(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1. 규제개혁의 추진 경과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노동, 금융, 기업 및 공공 부문의 4대 개혁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정부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동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1998.3. 1 시행)에 근거를 두었던데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998년 한해 동안에 법령상 존재하는 정부규제 총 11,125건 중 절반 수준인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는 등 총 7,841건(70.5%)을 정비하였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999년에는 잔존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1999년 2월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잔존 규제에 대해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당성이 없는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30개 연구기관(민간 및 국책 각 15개)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금융,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문화·노동, 농림·해양 및 환경·정보통신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504건을 폐지하고 570건을 개선하였다.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2000년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즉, 지식정보화 사회의 조기 구현을 위해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조기 철폐,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저하된 규제의 개선·정비 등에 주력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규제의 폐지·개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관리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이기도 하다.

2001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특정 과제를 선정함과 아울러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 동안 경제 5단체로부터 5차에 걸친 총 363건의 건의를 받아 이 중 252건을 수용(70%)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지 금융 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의 축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계열 금융 회사간 거래시의 공시의무 완화 등이 들어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환경 및 산업 등 5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일선기관은 물론 공공적 법인, 사업자 단체 등에 산재해 있는 하위 규정과 유사 행정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시켰다. 그 외에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일선 행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과 새로운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운영하였다.

2. 2001년도 경제분야 규제개혁 개요

2001년도 경제분야 규제개혁은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가 눈에 띈다. 종래 총자산을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25% 이내) 등의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 총자산을 기준으로 출자 총액 제한 대상은 5조원 이상(단, 결합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제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은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하되 공기업집단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2002년 4월에 지정한 출자

총액 제한대상 기업집단이 19개, 상호 출자·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이 43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으나 진일보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고 동 생산시설 기준을 종래의 연간 72,000kl에서 60~300kl로 완화함과 아울러 동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직접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항으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접도구역 지정제도에 대한 손질을 들 수 있겠다. 접도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증축 허용규모를 확대(15→30m²)하고 건교부로 하여금 동 구역 내의 대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건물·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취락지구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접도구역 지정기준의 변경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나 환경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였다. 먼저 투자자문업의 보유인력 요건 완화(상근임원 1인 및 상근직원 2인 이상 → 상근 임·직원 중 2인 이상) 및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쉽게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은행으로 하여금 인터넷은행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그동안 거래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는 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동시에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상태에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증권업협회의 내부조직이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의 시정을 위해 동 위원회에 협회중개시장 운영관련 제 규정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예산·인사상의 독립성을 확대함으로써 양 시장이 시장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이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감리업무와 금감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이른바 무늬벤처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의 확인 기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일부 부처에서 추진하였던 하위 규정 및 유사 행정규제의 추가적인 정비를 들 수 있다. 2001년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산업자원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부처의 지침·내규 등 하위 규정과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즉,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위 규정의 경우 법령으로 폐지하거나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상향 규정화하였고,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귀결되는 유사 행정규제는 총 122건을 발굴하여 이 중 69건을 폐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경제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주체가 체감 집단인지 전문가 집단인지 혹은 일반국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람직한 개혁의 척도로 보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건설·건축 분야에 대한 기업인의 평가를 보면 아파트 분양 부문을 가장 잘 된 개혁으로 꼽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자율화라던가 채권입찰제 폐지 등 업계의 오랜 숙원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일반국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의문이며,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우려되는 현상황에서는 기업인들조차도 그와 같이 평가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개혁의 효과가 일선 창구에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또한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와의 괴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개별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결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결과는 물론 전경련의 조사결과나 OECD의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또한 당초 설정한 규제개혁의 목표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규제개혁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규제개혁이 외환위기를 포함한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그 목표의 하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외국인투자, 무역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를 희생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4년 간 경상흑자 845억불, 외국인 투자 유치 520억불 달성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23일에 IMF 차입금 195억불을 조기 상환하고도 동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1,028억불(세계 5위)에 달하

고, 1999년 3/4분기에 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말 현재 GDP대비 총 외채 비중은 28.4%로 세계은행 기준 '외채문제 없는 국가' 수준(30% 미만)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보더라도 한때 투자 부적격(Ba1)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이 2002년 3월 28일에는 Moody's가 A3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고 곧이어 Pitch나 S&P에서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GDP성장률도 1998년 -6.7%에서 2002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고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은 규제건수의 획기적 감소라는 양적 효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4. 경제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

정부 출범초기에는 경제위기 타개가 절박한 시기였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전의 형식을 띠고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첫째,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심사숙고 없이 규제를 개혁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민영주택의 재당첨 금지기간 폐지 및 청약 제한 완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조치까지 병행하였다. 한마디로 절박한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정책목표 조기 달성의 동인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금리의 지속 등과 결부되어 집값에 “버블”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성역화되어 있는 규제 불가침 영역이 잔존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 제공자의 하나로 대기업을 드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즉,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과도한 차입, 외형 위주의 기업경영 관행 지속으로 인한 기업부실 등은 지난 30년 간의 정부주도형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고 그 한가운데에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경제력의 집중 억제를 표방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사외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제도의 개선, 공시 대상의 확대와 아울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장규율이 빠르게 확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와 같은 전통적 규제수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일부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의 수준이 미흡하다. 진입규제와 같이 기존 사업자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종국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업이나 운수업의 경우 등록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켰다. 이에 반해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요구됨에 따라 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 규모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금융전문가의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저 자본금을 높게 규정한 금융산업 진입 규정은 동 산업이 IT기술의 발달, 금융공학의 발전 등에 따라 자본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금융기관의 상품판매채널이 종래의 점포망 일변도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off-site)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도 가진다고 하겠으나,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는 해당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직결되므로 금융기관 스스로의 보호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규제개혁의 태풍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규제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신설된 규제가 총 1,216건(2002. 4. 24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감위 129건, 해양수산부 123건, 건교부 117건, 농림부 113건, 재경부 107건 등이다. 물론 신설된 규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자산유동화, 선물거래,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 내지 거래 형태가 생겨난 데 따

른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거래 형태가 생겨날 경우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이를 관리 감독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 총량의 관리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여건 변화나 문제 발생시마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 들 경우 피규제자로 하여금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규제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

규제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규제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행착오의 최소화, 규제품질의 제고 및 엄격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종래에는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쟁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법칙(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의 작용을 늘 경계해야 한다.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결과가 2차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1차선 통행 허용이 몰고온 파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정부는 그 동안 공정과세를 위해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도입해 왔다. 가맹점 공동 이용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복권제 및 사업자 의무가맹점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업은 연 20~30%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현금서비스 비중 확대, 연체채권의 증가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사회문제로 비화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대업무(현금서비스, 카드 론) 취급 비율을 축소 하도록 강제할 경우 카드로 급전을 끌어쓰던 고객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둘째, 규제의 총량 관리에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규제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실익이 없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특정 과제를 제외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는 각 부처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며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잔존 규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대형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경우 감독 당국은 책임 회피 차원에서 규제를 양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정책수단을 먼저 마련한 다음, 규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게 된다. 한 마디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설·강화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과신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편, 비규제 대안의 발굴은 사실상 규제위 사무국에 맡겨져 있는 실정으므로 규제실무부서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제위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규제의 신설·강화보다는 기존 규제의 활용 및 엄정한 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금감위가 취한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영업 일부의 정지 조치 및 주가조작에 개입한 일부 증권사 점포에 대한 폐쇄 조치는 바람직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한편, 적지 않은 법령에서 “○○○장관은 … 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로 하여금 규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삭제하거나 명령 발동이 최소화되도록 그 요건을 객관화·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혁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개혁이 미진한 분야에서 먼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던데다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우려 등으로 인해 진입규제 완화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1998년에 투신운용업, 증권위탁매매업, 선물거래업, 자금중개업, 신용정보업 및 투자자문업 등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자산운용업 등의 설립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데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진전에

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금융기관에게 반사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최저 자본금 요건의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 자본금 요건이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IT투자규모가 1,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킨지에서 예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은행이 3~4개의 선도 은행과 여타 은행 및 서비스·지역·채널·고객 등을 기준으로 특화된 소규모 전문은행 등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자본금요건이 틈새시장을 노린 소규모 은행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의 요구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금융전문가의 창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 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의 대폭적인 완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투신운용·투자자문(일임)·자산운용업을 비롯한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최저 자본금 요건은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기관 퇴직인력의 재활용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개혁이 미진한 분야로서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이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반 조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외국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의 감시 또한 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배주주의 분별없는 의사결정이나 불합리한 경영행태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에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법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합병 등 구조조정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이나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는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일부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설득이라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방화, 세계화라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언제까지나 현재의 대기업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정부의 역할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확대가 요구된다. 금융 및 외환 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크게 강화시켜 왔다. 하지만 공적 규제는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Regulatory Forbearance가 발생할 경우 무의미해지기 십상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이 새로운 규제수단을 적기에 마련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보완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유지하여 이를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감독 당국은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함께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회계 및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부실공시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3절_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집필자 : 권미수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1.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의의

1998년 4월 제1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이 4주년을 맞았다. 규제개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회적 형평의 실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보건, 안전, 환경,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들을 사회적 규제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자본주의가 성숙됨에 따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 역시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규제의 합리적 수준을 정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 대다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이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규제가 양산되는 논리가 되었으나, 바로 이 점이 역으로 과도하게 양산된 사회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적정

한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된다.

규제가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공익을 위해 소수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 존재의 정당성을 가졌으나, 시간이 흐르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희생 위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규제가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가 오히려 전문자격사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 것이 이러한 예라고 하겠다.

지난 4년 간의 규제개혁에서도 사회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폐지보다는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1998 – 2001년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주요 실적

1998년 “현존 규제의 50% 이상의 연내 폐지”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전까지 대체적인 규제개혁의 목표를 ‘폐지와 개선을 합쳐 50%’의 개혁을 연도별 계획을 통해 달성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수준의 개혁요구였다. 이 원칙은 사회적 규제의 비중이 높은 행자부, 교육부, 문광부 등의 부처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정부의 기본적 기능과 사회적 규제의 비중이 큰 부처는 폐지율 50%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들 부처 역시도 상당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규제 총량 감소를 달성한 후 1999년부터는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규제 총량 관리와 함께 건설, 자동차, 물류, 외국인 투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IMF 극복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사회분야에서도 전문자격사, 증명민원, 비영리법인, 국가자격사, 저작권, 학원, 소방 등의 분야에 대한 핵심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1999년 한해 동안 전 부처에서 신설·강화를 신청한 1,325건의 규제 중 870건만이 원안대로 수용되었고, 288건은 개선권고, 167건은 철회권고되어, 원안수용률은 65.7%에 불과했다. 사회 행정 분야는 총 464건의 신설·강화 신청 규제 중 292건 만이 원안대로 수용되어 62.9%의 원안수용률을 보임에 따라, 보다 엄격

하게 규제의 신설·강화를 통제한 실적을 보였다.

여기에 각 부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피하여 입법화한 효과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즉 공무원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능한한 규제를 넣지 않고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의 신설·강화가 통제되는 정도는 명시적인 심의과정에서의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율보다 훨씬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는 그동안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이 사실상 규제수준과 수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던 무제한적인 규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규제개혁 3년차인 2000년에는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내규, 지침 등으로 운영되는 하위 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단체, 협회 등의 내부 규정에 포함된 유사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하였다. 전체 1,675건의 유사 행정규제 중 교육, 일반행정 보건복지, 노동, 환경 등 사회 분야의 유사 행정규제가 1,138건에 달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특히 노동 분야는 전체 유사 행정규제의 60%를 넘는 1,018건을 발굴하고 이 중 89%를 폐지·개선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금융, 건설 등 10개 분야의 8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중 사회분야인 일반행정(전자정부), 보건복지, 노동, 교육분야에서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2001년의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규제 및 유사 행정규제를 재정비하고, 일선 현장의 국민불편·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운전면허, 식품위생, 교육과정,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보건의료, 전자정부, 노동 분야의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하여, 2000년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년 간의 사회 분야에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은 가정의례준칙 폐지, 자동차속도 개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폐지, 소방관련 규제개혁, 사업자 단체 규

제개혁, 민원서류 감축 등이 있다. 이들 규제는 규제준수율이 낮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었던 규제, 특정집단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던 규제, 행정 편의적인 규제들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과제들이었다.

3.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지난 4년 간의 규제개혁 실적은 역대 정부 중 최고였다. 이는 단순히 규제개혁 건수에 근거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명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둬으로써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규제개혁이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지를 정부부처와 국민 모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민관의 균형있는 시각에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였다.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며 범부처적인 시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관련 부처장관을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적 추진력도 겸한 것이다. 여기에 분야별 전문위원 및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 분야 규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자 단체,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등 사회적으로 힘있는 이해집단에 대한 ‘성역화’ 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한 점은 이전의 규제개혁과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말에 실시한 규제개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규제개혁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개별 규제위주의 개혁과제 도출보다는 매년 개혁이 필요한 핵심규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규제를 일괄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인 점도 바람직한 규제개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분야의 규제는 특히 개혁 후에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이를 규제개혁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소방 관련 규제개혁 후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이것

을 규제개혁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규제개혁 후 남아 있는 규제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그간의 규제 수준이 현실성이 없어 소방 관련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피규제자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를 지키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규제개혁이 규제 만능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지만 합리적인 규제수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한 것이다. 즉, 규제는 국민과 정부가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행정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규제도 규제준수를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규제심의과정에서는 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 청소년보호 등과 관련된 사회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을 막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일례로 2000년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되 정지 중이거나 핸즈프리 등을 사용하여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는 허용하여 합리적 수준의 사회규제를 정하였다. 그 결과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시키면서도 과도한 단속에 따른 국민불편이나 부정부패 소지는 줄일 수 있었다.

4.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

사회분야의 규제개혁은 경제 분야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전 국민이 지지를 보냈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경제규제는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은 물론 그 효과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였다. 반면, 사회 분야의 규제는 규제의 비용·편익을 계량화하기가 힘들고, 특히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1998년에 음식점과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풍속업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규제개혁 조치는 규제개혁 이후 5년 간 3,600억원의 국민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670억원의 정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더하면

상당한 편익이 기대되는 것이다(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1999)

그러나 이것은 계량화가 가능한 명시적 편익에 불과하고 여기에 국민의 자유감이 증대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뇌물 제공 등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효과, 규제 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질서가 확립되는 효과 등을 더하면 그 편익은 상당한 것이다. 반면 청소년의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른 탈선 가능성 증가, 퇴폐영업 증가 가능성 등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규제개혁의 비용이 되고 이점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특성상 기존의 제도적 틀을 지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게 된다. 즉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자율협약, 성과기준 규제 등 수준높은 규제 대안이나 정보 제공의 활성화, 민간보험시장 활용 등 시장친화적인 규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결국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점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규제는 정부가 예산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민간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다.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정부역할을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예술조형물로 설치해야 하는 것,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민간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한 것 등 사회분야에도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규제들이 민간에 지웠던 부담을 다시 정부의 부담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이런 규제들이 대부분 대기업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5.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이 4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OECD 등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규제개혁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규제 총량의 감축에서 시작해, 신설·강화규제의 사전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총량 관리, 핵심규제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하위규제개혁

등 지난 4년 간의 규제개혁은 효율적인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고민했던 준수 지향적 규제개혁의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준수 지향적 규제관리는 규제의 결과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관리이다. 즉 성과 중심의 규제관리인 것이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의 결과가 규제의 의도와 같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성도 좋을 것이다. 코즈(R.H.Coase)는 경제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개인간의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고, 협상결과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경제 분야는 물론 사회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자율규제, 협상 등 비규제적인 대안을 사용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부처에 제시하여 행정수단을 비규제적인 대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상당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규제를 집행하는 각 부처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은 부족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는 예산과 함께 민간이 경제에 개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규제를 양산하는 부처는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의 규제준수 비용을 담보하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규제수단을 덜 사용하는 기관에는 예산을 비롯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정부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규제개혁의 보상·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의 협력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요인은 바로 감사원 등의 감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이다. 규제의 수준이 걱정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규정을 따른 일처리는 적법하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부분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감사로 감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향후 부처 공무원과 공조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단계로 선정한 10대 분야에서 상당한 과제가 도출되었으므로 이 분야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함께 2단계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문화재 보호 등의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법·제도적 구현이 필요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지난 4년 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부처평가와 함께, 규제개혁의 계량적 효과분석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에 추진된 규제개혁의 계량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제 규제개혁이 4주년을 맞으면서 특히 1998년의 규제폐지 효과가 가시화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에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특히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효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 분야의 규제는 상당한 규제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비용편익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근거한 규제개혁 전략은 사회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화하는데 좋은 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비규제 대안의 지속적 연구 및 정부조직·예산·감사 등 관련된 정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개혁 효과의 평가를 통한 규제개혁 방안 도출의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건설분야만 보더라도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 등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 작업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하게 하는 바람직한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신규 규제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순기능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느낌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건설분야의 규제개혁 성과를 볼 때, 대부분 경미하거나 잡다한 행정규제 완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 등과 같은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

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와 같은 다부처 관련 규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합리적인 생산체제 개편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건설업역과 하도급과 관련된 핵심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규제 개선효과가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규제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매우 큰 틀에서의 규제개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법령을 보면, 모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8조에서는 대수선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의 제9조에서는 대수선행위를 건축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건축법 제8조에서 대수선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해당 법령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없으나, 「기업활동의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가 일괄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 법령을 계속 다루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렇다보니 해당 법령에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일반 민원인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행령이나 혹은 시행규칙에서 어떻

게 규제가 변질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지침이나 예규·훈령 등에서 법의 기본정신을 쉽사리 뒤집어 놓는 사례가 많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 작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규제의 강도나 범위를 완화하거나 혹은 규제를 없애는 작업에서 더 나아가 규제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산업의 업역이나 입찰, 면허, 조달 관련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 등의 규제 개혁에 치우쳐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기술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나 건설현장에서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은 1987년에 급조되어 제정된 이후, 매년 개정이 반복되면서 "누더기법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법령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규제도 매우 복잡다단하며, 타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도 재건축을 위한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많다.

건설분야의 준조세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각종 부담금 제도가 양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준조세가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과 같은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법적 타당성이 미약한 준조세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골재채취관련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 자원의 수급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골재채취를 제약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골재채취단지나 채석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관련 법령의 통합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재 건축행위와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등 90여 개에 달한다. 참으로 난해하기가 그지없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규제하에서는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진다. 따라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법령들을 모두 통합해서 외국의 Uniform Building Code와 같은 통합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제10장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추진계획

제1절_ 기본 방향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불리한 제도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국민의 창의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지식 기반 사회의 토대를 구축한다.

⇒ 지식 기반 시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정보·기술의 활용·확산, 전자정부의 구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주력한다.

- 환경·식품·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대안의 개발 등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 철저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순응도 제고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제2절_ 세부 추진계획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1. 경제 활력 회복 및 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어 정비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를 근본적으로 타개

가. 경제관련 규제의 일괄 정비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규제, 기업인·단체 등으로부터 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를 2002년도 특정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해 나간다.(첨부 1 특정과제 목록 참조)

예) ·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 석유·가스의 유통 체계 개선방안
·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 관련 규제개선방안 등

나. 경제 5단체 등 건의 과제의 정기적 수렴·정비

- 금년에도 경제 5단체 및 전문 분야별 단체 등으로부터 분기별로 건의 과제를 접수, 정비하여 기업 애로 타개에 진력한다.

다. 경제규제 현지실태조사 실시

-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산업·건설 등 주요 분야별로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정비하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물론 관행·행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추진 방향

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에 이어 내년에도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구현

-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국가 민원 분야 및 시·군·구의 21개 대민업무 주요 정보의 연계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 - 교육청 - 교육부를 잇는 학사 및 교육행정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성적·졸업·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 세금 신고, 고지, 납부, 민원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Home Tax Service 체계를 구현한다.
- 전자 민원행정서비스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다.

나.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적 활용 체계 마련

- 지리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GIS표준, 유통모델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한다.
- 의료기관의 대국민 의료정보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상담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 건설 기능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경력에 대한 DB를 구축·활용한다.

다. 교육시스템 정비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단위 학교의 책임경영제 강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장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기존 학교·학원·사내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형태의 강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한다.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에 기초하여 국가자격 기준을 개편하고 국가 기술 자격 수준의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 기업·금융 환경 조성

-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 방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 주파수경매제도 시행, 소출력 FM방송제도 추진 및 번호이동성제도의 조기 도입 등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전문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민간 부문도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금융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카드 가맹점 공동망 이용 제한 및 금융기관의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마. 지식정보화시대 사회적 규제의 효율적 운용시스템 구축

- 지식정보화 사회의 이점을 활용,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로서비스를 확대한다.
- 사교육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3.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

추진방향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기존규제 및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하고 일선 현장의 국민 불편·애로 사항을 직접 발굴하여 정비

가. 7대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기존 규제 재정비

- 금융·산업·건설·보건·교육·환경·농림해양 등 7개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재검토한다.
-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 규제를 선정,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 의원입법을 통하여 신설·강화된 중요 규제에 대하여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규제영향분석을 의뢰, 품질제고방안을 모색한다.

나. 유사 행정규제의 전면 정비

- 유사 행정규제 정비모델(기준)을 마련, 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 단체·협회 등에 통보하여 자체 정비토록 유도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특정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 및 지방 합동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아울러 마련하여 시행한다.

라. 국민 여론 수렴 확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사항 중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종합,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규제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방향

규제 총량의 엄격한 관리, 철저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존속기한의 원칙적 설정 등 규제의 수량과 품질을 함께 관리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

가. 규제 총량의 관리

- 부처청별로 「규제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연도별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 총량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한다.
- 규제 신설시에는 신설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품질제고방안(폐지, 완화, 규제대안 등) 마련을 의무화한다.

나. 철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순응도 조사 의무화

- 중요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규제영향 분석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시행 3년 이내에 순응도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도 필요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내용을 개선·보완한다.

다. 규제 존속기한의 엄격한 적용

- 영구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한다.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에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 설정여부를 철저히 심사한다.

라. 규제등록 및 관리의 강화

- 규제 관련 법령 제개정시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규개위 및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신속히 등록토록 하여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개선 또는 존치가 필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 등 신설·강화 규제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한다.

5. 규제개혁 성과 확산 및 중장기 비전 제시

추진 방향

2002년도를 규제개혁 성과의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 규제개혁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가. 규제개혁 성과의 홍보

-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강화, 그 동안의 개선 사항과 성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 2002. 10월 OECD/APEC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

나. 규제개혁 중장기 비전의 제시

- 산업연구원 등 9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과제로 금융·산업·교육·정보통신·농림 등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다. 규제개혁 점검·평가등 환류 기능 강화

- 규제개혁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관별 평가를 실시한다.
- 우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02년도 추진 대상 특정 과제

과 제 명	소관부처
①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정비	재경부, 금감위
② 금융기관의 유사 업무 관련 법규 통폐합을 통한 규제정비	재경부, 금감위
③ 석유유통체계 개선방안	산자부
④ 입찰제도의 개선	재경부
⑤ 항공안전 관련 규제개혁	건교부
⑥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선	행자부
⑦ 식품위생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복지부
⑧ 설립주체에 따른 학교 유형의 다양화 방안	교육부
⑨ 교육과정 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	교육부
⑩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부
⑪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환경부
⑫ 청정연료 사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환경부
⑬ 주류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국세청
⑭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	해양부

과 제 명	소관부처
⑮ 항만노조 관련 규제개선방안	해양부
⑯ 통신설비 이전시 합리적 비용분담방안	정통부
⑰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범위조정	정통부
〈 규제순응도 미흡 정비대상과제 〉	
①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개선	교육부
② 전화이용 모집시 증거자료 확보 의무 개선	금감위
③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자격 제한 개선	농림부
④ 오수 처리 시설의 공동 운영시 운영 기구 설치 및 신고 의무 개선	환경부
⑤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의무개선	정통부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 보고체계 개선 필요



문○○(경기도 안성시 계동)

정부에서 석유수급 거래상황기록부 수합을 주유소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산하 회원 주유소 등에게 과중한 회비를 부담케 하는 사례에 대하여 이의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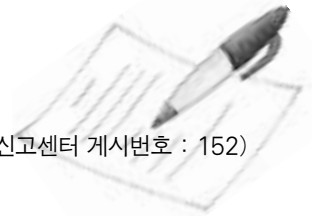
일선 시·군의 주유소 신규등록시 면허세가 약 2~5만원 내외인 바, 주유소협회에서는 거래상황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코드 하나를 부여받는데 등록세의 10~25배인 50만원의 입회비를 내라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산업자원부의 일부 행정기능을 위탁받은 것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이권으로 악용하는 권력유착형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27호 서식의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 1건당 1만원 이상을 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강매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서식을 교부하지 않아 거래상황기록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거래상황기록부 미제출업소로 신고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입니다.

임의 가입 사회단체 운영에 있어 그 입회의 자유와 회비 징수에 관하여 관계 당국이 간섭할 사안은 분명 아니나, 주유소협회를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결과로 허가권에 상응하는 행정권을 위탁함으로써 주유소

사업자는 사실상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강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고업무 수합기능의 위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재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고 비용은 현행 회비의 10% 정도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 외에 각 주유소들이 협회에 가입 여부 또는 회비를 얼마 부담하던지 등은 별개의 사유로써 회원 주유소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인 바, 관계 당국의 묵시적 지원으로 협회에 강제 가입을 유도하는 보고업무 위탁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로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하는군요...



이근재(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 152)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 202동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구입하여 처가 기존에 운영하던 영유아보육시설(놀이방)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관청인 남양주시청에서는 아파트 해당 동의 2/3 이상 입주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거주 동의 입주자수가 150세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100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아파트의 규모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동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청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안락한 생활 추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되나 대다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원발생을 우려할 경우 해당 동 해당 라인이나 옆집, 윗집 등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해당 동 전체의 2/3라는 것은 사실상 영유아시설을 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십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과 공인중개사 사전교육 폐지 요청



김지주(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 660)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현직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주택관리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및 전국부동산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수 의무교육인 주택관리사 법정교육과 공인중개사 사전교육제도의 폐지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들 교육은 해당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이들의 지식수준으로는 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필요한 내용이면 의무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너도나도 다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사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서 하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면 기타 내용은 자기가 스스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법정교육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능력은 시험준비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활용하면 되고, 실무능력은 법정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법정교육을 받지 않

있다고 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는 실제 근무 과정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몇 집 건너 하나요, 주택관리사도 전국의 아파트단지 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대표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을 초월하여 주택관리사를 해고하고 또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다 운 좋게 먼저 취업한 주택관리사 초보들은 3일 이상의 주간 집합교육을 받겠다고 해도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취지는 주택관리사 초보들이 실무에 적응력을 높이는 등등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택관리사 실무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취업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거나,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범법자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질도 높이고,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록

제1장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절_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997. 8. 22 법률 제53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

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 · 강화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

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리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

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총무처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 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 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 · 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 · 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 · 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 일관성 · 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 모사전송 · 컴퓨터통신 · 구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2. 규제의 내용 ·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 공공단체 · 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

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 전 5년 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_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2000. 5.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1분과위원회
2. 경제2분과위원회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금융·농림 등 재정경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산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해양수산 등 산업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국방·환경·복지·교육·문화·노동 등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 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외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
-

- 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사항
-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 인사 · 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 평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 · 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 조사 ·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 5. 1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2장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제2절 경제1분과위원회 일지

제3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일지

제4절 경제2분과위원회 일지

제 절 _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차	1998. 4. 18	제1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간사위원 지명	의결보고사항	원안의결
		제3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차	1998. 4. 24	제4호	• 1998년 규제개혁종합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호	• 전문연구기관지정안	의결사항	보 류
		제6호	• 외국인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호	• 규제개혁 기본계획시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차	1998. 5. 8	제9호	•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호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호	•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호	•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4차	1998. 5. 22	제13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1) -해운항만부문 규제개혁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호	•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16호	•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차	1998. 6. 5	제17호	• 풍속영업및식품접객업관련규제 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8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차	1998.6.19	제19호	• 건설분야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1호	•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2호	• 관광산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Ⅰ)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3호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규제 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4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7차	1998. 7. 3	제25호	• 주차장관련 규제개혁방안(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1) (판매·물류시설의 설립관련 규제 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7호	• 1998년 규제개혁실적평가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차	1998. 7. 16	제29호	• 수출입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중 개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호	• 항만행정 간소화 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3호	• 도심지주차 정책방향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4호	• 1998 부처별 기준규제 정비계획종합 및 심사계획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5호	• 1998 상반기 신설·강화규제법령안 심사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차	1998. 8. 14	제36호	• 1998 부처별 기준규제 정비계획종합	의결사항	원안접수
		제37호	• 1998 통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호	• 1998 조달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호	• 1998 관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9차	1998. 8. 14	제40호	• 1998 국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호	•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2호	• 항만하역 노무공급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43호	• 건설기계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4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차	1998. 8. 28	제45호	• 1998 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6호	• 1998 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7호	• 1998 산림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8호	• 1998 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1차	1998. 9. 11	제49호	• 1998 통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0호	• 1998 외교통상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1호	• 1998 국방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2호	• 1998 병무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3호	• 1998 국가보훈처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4호	•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5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12차	1998. 9. 18	제56호	• 1998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57호	• 1998 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8호	•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59호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차	1998. 9. 25	제60호	• 1998 기상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1호	• 1998 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2호	• 1998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3호	• 1998 환경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64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 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차	1998. 10. 2	제65호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보 류
		제66호	• 1998 교육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7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5차	1998. 10. 16	제68호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69호	• 1998 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70호	• 1998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1호	• 1998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72호	• 1998 철도청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3호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74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6차	1998. 10. 26	제75호	• 1999 규제정비지침(안)	의결사항	보 류
		제76호	• 1998 문화재관리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77호	• 1998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78호	• 「수상레저안전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79호	• 1998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0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7차	1998. 10. 30	제81호	• 1998 법무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82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3호	• 1998 보건복지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4호	• 「장기이식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5호	• 199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정비계획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6호	• 1998 노동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7호	• 1998 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8호	• 1998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0호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91호	•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7차	1998. 10. 30	제92호	•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재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93호	• 1999 규제정비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8차	1998. 11. 6	제94호	• 1998 부처청별 기준규제 추가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5호	• 1998 기준규제 정비결과 종합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6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7호	• 「수상레저안전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2차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98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19차	1998. 11. 20	제9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재심사	의결사항	부 결
		제100호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01호	•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2호	• 「주택저당채권유통화중개회사법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차	1998. 12. 4	제10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04호	• 환경분야 각종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5호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6호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폐지」에 대한 재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7호	• 1998 하반기 신설·강화 규제법령안 심사 실적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08호	• 규제개혁관련 법률정비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1차	1998. 12. 18	제109호	• 「은행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0호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1호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보 류
		제112호	• 1998 부처청별 기준규제폐지계획(2차분)	보고사항	원안접수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정안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22차	1999. 1. 29	제113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4호	• 1999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5호	• 지방자치단체의 1999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6호	• 1998 규제개혁법률 입법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7호	• 1999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8호	• 1998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9호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0호	•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준비 관련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3차	1999. 2. 12	제121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및시행규칙사항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제122호	• 「연안어장환경관리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3호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4호	•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5호	•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6호	• 규제등록 및 전산화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4차	1999. 2. 26	제127호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8호	•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9호	•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5차	1999. 3. 12	제130호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기준(고시)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1호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2호	• 자동차운전속도제한관련제도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차	1999. 3. 26	제133호	•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34호	• 「1999 부처별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35호	• 1998 규제개혁유공자 포상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27차	1999. 4. 9	제136호	• 전자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7호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38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제 운영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차	1999. 4. 23	제139호	•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중개정고시안」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0호	•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1호	• 비업무용 공장용지 종과세제도 및 공장 업종구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42호	•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9차	1999. 5. 7	제143호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 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44호	•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 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45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46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47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48호	•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준비 관련보고(II)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0차	1999. 5. 21	제149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50호	• 「굴뚝자동측정기부착대상사업장측정 항목 및부착시기지정고시」 신설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1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 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2호	• 「농업인협동조합법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1차	1999. 6. 4	제153호	• 향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4호	•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6호	•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7호	•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정안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2차	1999. 6. 18	제158호	•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59호	•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0호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1호	• 「지역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강화규제심사	의결안건	보류
		제162호	• 규제총량변경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3차	1999. 7. 2	제16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4호	• 증명민원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5호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관련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차	1999. 7. 16	제166호	•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재심사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7호	• 전문가격사관련규제개혁 추진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8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안건	보류
		제169호	•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9-1호	• 개발제한구역관리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0호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1호	• OECD규제개혁심사팀 방안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5차	1999. 7. 30	제172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73호	• 1999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4호	• 1999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5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6호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운영 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6차	1999. 8. 13	제177호	• 19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8호	• 1999년 산림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9호	•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0호	• 약용자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의결안건	보류
		제181호	• 중앙일보 「규제개혁 기획보도」관련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7차	1999. 8. 27	제182호	• 19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3호	• 1999년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4호	• 1999년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5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8차	1999. 9. 3	제186호	• 1999년 환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7호	• 1999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8호	• 기업의 준조세 관련 규제개혁(1)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9호	• 19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1호	• 규제개혁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9차	1999. 9. 17	제191호	• 자격제도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2호	• 1999년 과학기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3호	• 1999년 농림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4호	• 1999년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0차	1999. 10. 1	제195호	• 1999년 재정경제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6호	•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7호	•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8호	• '99년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9호	• '99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0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1호	• 2000년 규제개혁추진 지침(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2호	• 교육부잔존규제 정비계획 중 의결유보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3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1차	1999. 10. 29	제204호	•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5호	•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6호	• 「약사법개정안」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1차	1999. 10. 29	제207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8호	• 「전기사업법 개정안」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9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0호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2차	1999. 11. 12	제211호	•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12호	•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3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조정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4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5호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6호	•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7호	• 타조의 식용허용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3차	1999. 11. 26	제218호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 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19호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0호	•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발간계획	의결안건	원안접수
제44차	1999. 12. 10	제221호	•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2호	• 소방관련 법령·규제정비계획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3호	• 증명민원 서류감축 추진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4호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5호	•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26호	• “고시 등” 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5차	1999. 12. 24	제227호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8호	• 「노동조합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9호	• 대학원·박사과정 설치관련 규제재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5차	1999. 12. 24	제230호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31호	• 규제대안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6차	2000. 1. 28	제232호	• 소형어선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33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 강화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34호	• 행정규제의 판단 및 단위분류기준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35호	• 2000년도 부처별 중점규제개혁 추진 과제	보고안건	일부수정접수
제47차	2000. 2. 11	제236호	• 2000년도 규제개혁 업무계획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37호	•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38호	• 보험관련 전문가격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39호	• 폐기물관리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40호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신설· 강화규제 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41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0년 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8차	2000. 2. 25	제242호	• 자동차보험의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43호	• 외국인 국내활동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44호	•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45호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9차	2000. 3. 10	제246호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2)	의결안건(개별)	수정의결
		제247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Model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48호	• 통합방송법령 시행관련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49호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 2000년 추진계획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50차	2000. 3. 24	제250호	• 도시계획지역·지구제도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51호	• 청소년보호연령 기준관련 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수정의결
		제252호	•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상정보류
		제253호	• 임산물 굴취·채취·매각관련규제 개혁 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54호	• 생태계 보존협력금에 대한 규제 재심사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55호	•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중점)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1차	2000. 4. 7	제256호	•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일부수정)
		제257호	•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58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계획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59호	• KOSDAQ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방안	보고안건(중점)	원안접수
제52차	2000. 5. 15	제260호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일부보류) *추후보고
		제261호	•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후속조치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62호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개정(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53차	2000. 5. 26	제262호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일부보류) *추후보고
		제264호	• 산업안전관련 건축물시설기준합리화 방안	의결안건(개별)	원안의결
		제265호	• 「최저임금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266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	의결안건	상정보류 (추후재상정)
		제267호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중 의결 보류사항 검토 보고	보고안건	접수보류 (추후재보고)
제54차	2000. 6. 9	제268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안」 신설·강화규제 심사	의결안건	의결보류 (차기회의 재상정)
		제269호	•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70호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71호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선방안 중 의결보류 사항(의료전달체계) 검토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72호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중 의결보류사항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5차	2000. 6. 23	제2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 보험영업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일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분야 규제개혁 방안 	의결안건(중점)	조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명민원 서류 감축방안 	의결안건(중점)	일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 신설규제심사 	의결안건	재 논 의 조건부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56차	2000. 7. 7	제2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중점)	일부사항
		제2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시행령」 신설규제 심사 	의결안건	재논의조건부 원안의결
		제27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결안건	일부조정 의 결 원안의결
제57차	2000. 7. 21	제28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중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심사 	의결안건	상정보류 (추후재상정)
		제28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모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00년 규제정비계획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에 대한 국가 검정 폐지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58차	2000. 8. 18	제2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운전학원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8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8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규제재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59차	2000. 9. 1	제28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개선 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법개정안」 관련 규제 재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명민원감축 추진결과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60차	2000. 9. 15	제29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9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설립·운영관련규제개혁방안(1) 	의결안건(중점)	원안의결
		제2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시험법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 	보고안건	차기회의 재 논 의 접수보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61차	2000. 9. 29	제295호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96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중점)	수정의결
		제297호	•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규제 합리화방안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298호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299호	•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중점)	보 류
		제300호	• 「청소년보호에관한법시행령제정안」 규제 심사	의결사항(중점)	수정의결
		제301호	• 「사법시험법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02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03호	• 「건축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04호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심사안 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62차	2000. 10. 13	제305호	• 수돗물 절수 및 상수원 수질보전 개선 대책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6호	•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2차)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8호	• 「소비자보호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9호	• 「지하수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0호	•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3차	2000. 10. 27	제311호	• 통신산업 규제의 합리화방안 규제 심사 (*내용보완 후 서면의결)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12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규제심사(*내용보완 후 서면의결)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3호	• 고용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심사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14호	• 외국인학교설립 · 운영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심사	의결사항(중점)	원안의결
		제315호	• 제대군인지원관련 규제 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6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 규제 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7호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8호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64차	2000. 11. 10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 문화재보호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심사 경제5단체규제개혁 건의과제조치계획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사항 의결사항(중점)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65차	2000. 11. 24	제324호 제325호 제326호 제327호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 농지관련 규제개선 방안심사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정비계획심사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경쟁제한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의결사항(중점)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제66차	2000. 12. 8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군 규제개혁 추진현황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환경·교통·재해등영향평가법시행령제정안」 규제심사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67차	2000. 12. 22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환경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결과 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검사관련 규제심사 「출판및인쇄진흥법제정안」 규제심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 2차) 	의결안건(중점)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68차	2001. 1. 19	제339호 제34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규제심사보고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68차	2001. 1. 19	제341호	• 2000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계획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42호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 재심사 관련 보고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9차	2001. 2. 2	제343호	•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44호	• 「새마을금고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5호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0차	2001. 3. 2	제346호	• 「금강·영산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7호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8호	•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관련 규제 개혁방안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49호	• 규제개혁 여론조사 결과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1차	2001. 3. 16	제350호	• 영재교육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51호	•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문화관광부 특정과제)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52호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72차	2001. 3. 30	제353호	•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54호	• 중등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55호	•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결과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3차	2001. 4. 13	제356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 (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357호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 시장 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 정(안)」 규제심사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74차	2001. 4. 28	제35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75차	2001. 5. 11	제359호	• 규제개혁제안 처리상황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60호	• 경제5단체 건의과제(건설·산업부문)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1호	• 경제5단체 건의과제(소방·도로 교통·노동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2호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II)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76차	2001. 5. 25	제363호	• 경제5단체건의(공정거래, 교통, 농림 해양수산분야) 과제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4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제365호	• 「고용보험시행령」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6호	• 정부규제 업무평가 지침(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7차	2001. 6. 8	제364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67호	• 농지거래제한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68호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69호	• 경제5단체 제3차 건의(환경, 농림 등 4개 분야)과제 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0호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관련 추진 경과 및 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8차	2001. 7. 6	제371호	• 경제5단체 건의(재경·건설분야)관련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2호	• 경제5단체 건의(광고물·소방·노동·통일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3호	• 「민간합동기업규제실태조사」 추진 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9차	2001. 7. 20	제374호	• 접도구역제도개선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5호	• 「대기환경보전및통법시행규칙」 규제심사(특정과제)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76호	•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정안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80차	2001. 8. 17	제377호	•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8호	• 대학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고사항	수정접수
		제379호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보고사항	수정접수
		제380호	• 2단계 금융규제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1차	2001. 8. 31	제381호	•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2호	•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83호	• 국민불편·애로사항 개선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2차	2001. 9. 14	제384호	• 자동차대여법 등록기준 완화방안 재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5호	• 산업자원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86호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Ⅲ)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3차	2001. 9. 28	제387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8호	•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사항 조치계획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9호	•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90호	• 환경관련 중복규제 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4차	2001. 10. 12	제391호	• 「선박투자회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2호	•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관련 규제 정비계획(Ⅱ)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3호	• 기업규제실태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94호	•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5차	2001. 10. 26	제395호	• 오수처리시설기준관련 규제개선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96호	•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97호	• 「고용보험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8호	• 산자부 소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 규제 종합정비추진 보고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99호	•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6차	2001. 11. 9	제400호	• 금융감독규제자율기능 활성화 및 보고 부담경감 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01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86차	2001. 11. 9	제402호	•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403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7차	2001. 11. 23	제404호	•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규제개혁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05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규제정비계획 재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406호	• 「주택조합공급비율지침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407호	•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8차	2001. 12. 7	제408호	• 「변리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09호	• 행정사제도 폐지 재심사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410호	• 기업규제 개선방안(Ⅰ) (행자부, 노동부 소관)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1호	• 기업규제 개선방안(Ⅱ)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관)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412호	• 무선국운용 및 검사관련 규제개선 방안(특정과제)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9차	2001. 12. 21	제413호	• 기업규제 개선방안(Ⅲ)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4호	• 기업규제 개선방(Ⅰ-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5호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6호	• 건설·자원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7호	• 해양수산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8호	• 환경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9호	• 부대입찰제 연장심사 재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90차	2002. 1. 18	제420호	• 「세무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제421호	• 소음·진동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22호	• 2001년도 규제개혁 백서 발간 계획(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91차	2002. 2. 1	제423호	• 전자자격사 및 사업자단체관련 규제 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24호	• 사회복지시설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25호	• 문화관광분야 하위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92차	2002. 2. 22	제426호	•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27호	•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안)	의결안건	원안접수
제93차	2002. 3. 8	제428호	• 「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29호	• 규제개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안건	수정접수

제2절 _ 경제1분과위원회 일지

나. 경제1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안건구분
제112차	2001.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관련도서의 연계 및 공유촉진관련 규제개혁방안(지식정보화과제)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통합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3차	2001.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제114차	2001.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심야전력기기관련 규제개혁방안 • 전자상거래관련 규제개혁방안 • 입장권 통합전산망 독점운영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5차	2001.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6차	2001.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합리화관련 규제개선방안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령기간 완화조정관련 보고 •항공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17차	2001.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검사기준개정안 규제심사안 •완구 및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안전검사기준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8차	2001.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제119차	2001.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재경부, 금감위)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산자부, 특허청, 중기청)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건교부, 철도청)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0차	2001.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투자자문업 등 등록관련 규제개선방안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1차	2001.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2차	2001.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유형및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1차)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3차	2001.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유형및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24차	2001.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도·궤도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조경공사업포지보유의무폐지에 대한 재심사안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유형 및 기준고시제정안 규제심사안(3차)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5차	2001.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안(산업자원·건설교통부문) • 건설업 등록기준 및 수목재배용 토지관련 검토보고안 •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재정경제부 지식정보화관련 보고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26차	2001.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안(공정거래 및 통관부문) 	의결안건
제127차	2001.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2차 검토안(교통부문)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투신사등의 성과보수제도 도입방안(금감위 지식정보화과제) •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2차검토안(공정거래 부문)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8차	2001.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교통부 재심의 요구사항 관련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29차	2001.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폐지 재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0차	2001.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2/4분기) 심사안 •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규제심사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 보고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31차	2001.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 심사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2차	2001.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안전기준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 심사안 •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료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완화 보완대책 보고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33차	2001.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체대상고시폐지안 규제심사안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특례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4차	2001.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제135차	2001.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발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정안 규제심사안 • 접도구역 규제개선방안(특정과제)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6차	2001.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보고(통계청, 특허청) • 광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석탄산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전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45대 개선과제(안) 보고 	보고안건
제137차	2001.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금융규제 정비 추진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석탄산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8차	2001.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거래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공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1차) 국민불편 애로사항 관련 규제개혁방안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9차	2001.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보고(공정거래위원회)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특정과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40차	2001.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보수제관련 재심사(지식정보화 과제) 공간정보 유통 촉진방안(지식정보화 과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합리화방안(특정과제)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41차	2001.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측량성과 심사제도개선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개선 산업자원부 소관 지식정보화 과제 광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142차	2001.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제143차	2001.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가스 안전대책 전국확대 시행계획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산업자원부 소관) 자동차 민원행정 간소화 방안(지식정보화 과제) 전자화폐 표준약관 마련(지식정보화 과제)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44차	2001.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단계 금융규제정비계획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관세청, 국세청 소관) 	보고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건설교통부 소관) 	의결안건
제145차	2001.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건설교통부 소관)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재정경제부 소관)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 추진계획(금융부문) 전자거래기본법 등 검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제146차	2001.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1차)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건설교통부문)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47차	2001.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의발행및공사등에관한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48차	2001.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지하수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상공회의소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벤처기업특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산업자원부, 특허청)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산업자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149차	2001.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 규제심사안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안 각종 신고(보고)부담 경감방안(특정과제)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특정과제)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50차	2001.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은행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회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거래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보고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보고안건</p>
제151차	2001.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4/4분기 건의관련 기업규제 개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소관)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제152차	2001.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4/4분기 건의관련 규제개선방안(중소기업청, 관세청, 조달청 소관) • 유기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제153차	2001.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4/4분기 건의관련 기업규제 개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상호신용금고 지점 인가요건 규제완화방안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규제심사안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1차) • 변리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1차)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제154차	2001.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2차) • 변리사법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4/4분기 건의관련 기업규제 개선방안(산업자원부 소관)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 건축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상황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55차	2001.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회계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하위규정·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산업자원분야) •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보고(건설교통부) •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보고 • 하위규정·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건설교통분야) • 기업규제 개선방안(건설교통부 소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업 진입 및 겸업관련 규제개혁방안(지식정보화과제) • 동일인 신용공여 규제합리화방안(특정과제) • 전경련 건의과제 심사안(금융부문) • 기업규제 개선방안(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소관) • 부대입찰제 존속기간 연장 심사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56차	2001.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제3절 _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일지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96차	2001. 1. 9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의결안건
제97차	2001. 1. 15	• 새마을금고법(개정안)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8차	2001. 1. 26	• 새마을금고법(개정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 고등교육기관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99차	2001. 2. 1	•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추진계획 • 보건의료정보공동활용 추진방안 •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합리화방안 • 고등교육기관설립운영관련규제개혁방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제100차	2001. 2. 9	• 재해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제정안) • 전자정부구현의실효성확보를위한규제개선 • 교과서 발행·공급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1차	2001. 2. 23	• 대한약전고시(개정안)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기관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2차	2001.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회분가위원회소관 부처청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차)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103차	200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수리기술허가자격관련 규제개혁방안 2001년도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고시(개정안)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관광진흥관련 규제합리화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4차	2001.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안)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5차	2001.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2차심사 중등학교교원의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6차	2001.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5단체 규제개혁관련 건의사항 여성근로자 보호제도관련 규제개선방안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제도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7차	2001.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차량 도심 통행제한 완화 건의과제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사회복지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08차	2001.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소방관련 규제개선 경제5단체 건의과제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9차	2001.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소방법관련 규제개혁방안 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10차	2001.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소방관련 규제개선 경제5단체 건의과제(2차)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2차)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1차	2001.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2차)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2차) 	의결안건
제112차	2001.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 	의결안건
제113차	2001.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 편의시설이행강제금산정기준고시(제정안) 청소년기본법(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4차	2001.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제정안) 새마을금고법(개정안)2차심사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5차	2001.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 직업안정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전자직업소개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상황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16차	2001.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안) 2차심사 직업교육 평가제도관련 규제개선 국가자격제도 응시요건관련 규제개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사이버체제의 구축·운영관련규제개선방안 및 학원설립운영 제도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7차	2001.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본법(개정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개정안) 계약직 근로계약관련규제합리화방안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합리화방안 퇴직금 및 퇴직총당금제도 개선방안 근로자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8차	2001.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자부소관 경제5단체 3차 규제개혁 건의과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개정안)2차심사 경제5단체 3차 규제개혁 건의과제(노동부) 전자의료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방안 	의결안건
제119차	2001.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3차 규제개혁 건의과제(통일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개정안) 3차 심사 • 기능장려법시행령(개정안) •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0차	2001.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전산화사업에 민간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정비(3차 심사)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1차	2001.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개정안)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 변호사법관련보고(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22차	2001.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애로 · 불편사항의 제도개선(노동부) • 변호사법 개정안 재심사요청의 처리계획 • 도로교통법 개정안관련 주요내용 보고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제123차	200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 기능장려법시행규칙(개정안) •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안)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개정안) • 식품등의기준및규격(개정안)및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4차	2001.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개정안) • 공연법(개정안) • 국민불편 · 애로사항 개선(대학등록금 납부관련) • 자립형 사립고교 추진상황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25차	2001.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관련 규제개혁방안(외교부) 	의결안건
제126차	2001.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및시행규칙(개정안) • 의약품등안전성시험기준(개정안) •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7차	2001.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제작기준 ·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개정안) • 협찬고시에관한규칙(개정안) • 제조용동물의사용및관리에관한기준(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의결안건
제128차	2001.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보호법(개정안) 소하천법(개정안) 깨끗한 정부 구현의 행정개혁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 시행령(개정안) 요양급여적정성평가고시(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29차	2001.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 경제5단체건의과제규제개선안(행자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개정안)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0차	2001.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병원설치법및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 의료용구의안전성 ·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경제5단체건의과제(노동부, 법무부) 경제5단체건의과제(문화재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1차	2001.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제연설비기술기준고시(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2차	2001.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개정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3차	2001.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분석평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안) 지적전산화 활성화방안 소방법관련 규제개혁방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34차	2001.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벽탱크의구조에관한기준(제정안) • 장기등이식에관한법(개정안) • 오송생명과학단지법(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5차	2001.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규제개혁방안 용역결과 • 물품의 반출반입승인기준(개정안) 및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제정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136차	2001.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제정안) • 직업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37차	2001.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안(개정안) • 의료용구입상시험관리기준(제정안) • 기업규제 실태조사관련 건의 과제(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확대에 따른 분석결과 • 행정사 폐지관련 2차 심사 •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8차	2001.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 실태조사 건의과제(노동부) • 기업규제 실태조사 건의과제(복지부, 식약청) • 기업규제 실태조사 건의과제(행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39차	2001.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 공중위생법고시(제정안)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 기업규제실태조사관련 건의과제(노동부) • 문화·관광·체육분야 하위·유사행정규제 정비 계획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40차	200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 • 기업규제 실태 조사관련 건의과제(복지부, 식약청, 보건처)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41차	2001.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제정안) • 공중위생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고시(제정안)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 고용산재보험징수법(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42차	2001.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요양급여및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안) • 근로자신용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개정안)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4절 _ 경제2분과위원회 일지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78차	2001.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전자파인체유해기준 제정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79차	2001.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파인체유해기준 제정안 	의결안건
제80차	2001.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정안 금강수계법 및 영산강수계법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1차	2001.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우제품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 제정안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방법등에관한규정 제정안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폐지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2차	2001.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연접시설의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광업시설에 대한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3차	200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4차	2001.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관련 중복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대기측정기기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5차	2001.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 배출업소 통합지도 · 점검 개선방안 보고	보고안건
제86차	2001. 3. 30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정안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7차	2001. 4. 6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 산림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및 산불예방및진화에관한규칙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8차	2001. 4. 13	•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관련 재심사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89차	2001. 4. 20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0차	2001. 5. 4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우수소평물에 대한 포상 ·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 • 수산물품질인증제의세부기준및대상품목 개정안 • 전통식품의품질규격 개정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1차	2001. 5. 11	• 인삼산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심사 • 남 · 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 제정안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2차	2001. 5. 18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 습지보전법 개정안 •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3차	2001. 5. 2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 소규모 농지거래 제한 규제개선방안 •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안 및 원자력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4차	2001. 6. 1	• 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안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 • 선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향로표지법시행령 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암호이용촉진법 제정 추진방안 재검토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95차	2001.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개정안 •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수출수산물생산·가공시설의위생관리세부기준및등록시설의 조사·점검등에관한고시 개정안 • 수출수산물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 제정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6차	2001.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 어항법시행령 개정안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 시행에관한고시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7차	2001.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농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8차	2001.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제조업등록기준 규제개선방안 및 수입신고대상사료의품목고시 개정안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 원자력법시행규칙개정안및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99차	2001.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정안 • 향로표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0차	2001.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 선박직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예관한고시 제정안 •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01차	2001.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안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2차	200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3차	2001.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안 •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활성화방안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04차	2001.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기술사법 개정안 •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 정보보호 전문업체의지정심사에관한고시 제정안 •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5차	2001.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시험기준및검정기준고시개정안 •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6회	2001.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심사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7차	2001.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심사 •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 제정안 • 낚시어선업법 개정안 •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8차	2001.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어선법시행규칙 개정안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09차	2001.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사료의범위외기준 제정안 • 선박화재관련고시 개정안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제110차	2001.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개정안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 지식정보화과제 추진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제111차	2001.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안) 보고 • 오수처리시설및정화조설치관련규제 개선 • 산지관리법 제정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2차	2001.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수입식품검역요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3차	2001.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실태조사결과규제 개선방안 • 수입식품의검역요령 개정안 • 항만배후단지지정고시관련 보고 •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제114차	2001.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실태조사결과규제 개선방안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지침 개정안 • 이식용수산물수출국파유검역절차에관한고시 제정안 •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5차	2001.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실태조사결과규제 개선방안 • 친환경농산물의생산을위한사용이가능한자재및사용조건에 대한품질규격고시 제정안 • 결핵병 및 부루세라방역 실시요령 개정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6차	2001.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콜레라방역 실시요령 개정안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실태조사결과 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7차	2001.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선박운송기준및항로표식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 개정안 • 무선국운용및검사관련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제119차	2001.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시행 요령등에관한고시 제정안 • 생태계위해 외래 동·식물지정고시 개정안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및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 등에관한규칙 개정안 • 한국해운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누락)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안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하위·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해양분야 하위·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제120차	2001.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역기준고시 개정안 • 수출용목재포장재열처리규정 제정안 • 보전입지전용협의기준 제정안 •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제121차	2001.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자원의국외반출승인대상종고시 개정안 • 근해통발어업의포획·채취물종류제한고시 제정안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제정안 • 표준규격품등의표시방법위반자에대한시정명령절차에관한요령고시 제정안 • 선박시설관련 고시 개정안 • 소음·진동관련 규제 개선방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2001년도

규제개혁 백서

발행처 · 발행인 규제개혁위원회

편집협력 엔더블유기획정보

인쇄 · 제본 엔더블유기획정보

발행일 2002. 5. 31

ISBN 89-950708-1-1 13350

규제신고센터 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206호 규제개혁위원회(우: 110-760)

전화 (02) 722-9797

팩스 (02) 720-2056

인터넷 <http://www.rrc.go.kr>(참여마당-규제신고센터)